2025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 토 보 고

▣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 학 진 흥 기 금
▣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 우 정
전 문 위 원 강 대 훈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총괄		이동훈	5185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선화	518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광호	5187
	글로벌교육기획관	김광호	5187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오규환 이동훈	5188 5185
	지역인재정책관	오규환	51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박원일	5193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김수환 창성현	5186 5184
	학생건강정책관	창성현	5184
	교원학부모지원관	이선화	5189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김수환	5186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김광호	5187
영유아정책국		조성희	5192

목 차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1. 총 괄 ---- 1

가. 2025년 교육분야 재원배분 현황 ---- 1
나. 총수입·총지출 ---- 3
다. 세입예산안 ---- 4
라. 세출예산안 ---- 5
1) 개요 ---- 5
2)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 6
마. 기금운용계획안 ---- 12
1) 개요 ---- 12
2) 주요 증감 사업 ---- 13

2.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17

가. 일반회계 ---- 17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23
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5

3. 2025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27

가. 사학진흥기금 ---- 27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35

4.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45

가. 2025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45
나. 2025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46

Ⅱ. 검토의견 ---------- 47

1. 총괄 ---------- 49

1) 교육부 회계기금별 예산 편성의 문제점 ····· 51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4
: 특별회계 세출기준 및 운영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집 관련 사업 지특회계 편성 문제 ····· 56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62
: 예산추이를 고려한 재원 검토 필요 ····· 64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67
① 자체재원이 제한적인 한시회계의 적절한 사업규모 유지 필요 ····· 69
② 세출 : 법률상 세출 목적을 고려한 사업 편성 필요 ····· 72
③ 세입 : 교육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원배분 불균형(고특회계) ····· 74
(4) 사학진흥기금 ····· 78
: 기금 재정을 고려한 사업수행방식 검토 필요 ····· 79
(5) 특별회계 소결 ····· 83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84
(1) 내국세 세수결손 ····· 90
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세수결손 처리 필요 ····· 90
②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 대응 필요 ····· 93
③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 필요 ····· 97
(2) 교육세 세수결손 ····· 101
: 교육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원배분 불균형(보통교부금) ····· 101
(3)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 검토 필요 ····· 107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09
② 교원연수 운영·지원, 늘봄학교 등 사업별 기준재정수요 포함의 적절성 검토 ····· 113
③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등 검토 ····· 122
④ 자체노력 반영항목 신중한 운영 필요 ····· 126
⑤ 결론 :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필요 ····· 130
(4)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 132
① 입법과 예산 관점에서 검토 ····· 134

② 특별교부금 제도 관점에서 검토 ····· 139
3) 교육부 신규사업 편성 절차 검토 ····· 144
: 교육부 신규사업 예산안 심사시 법률에 따른 재정절차를 고려할 필요 ····· 149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검토 ····· 169
: 내실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운영 필요 ····· 171
5) 총괄적 검토의견 ····· 175

2. 기획조정실 ---------- 182

【일반회계】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184
: 재외한국학교 운영비 증액 및 사업비 전액 국고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18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인건비 ····· 192
: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국립대학 교수 증원을 위한 채용 문제 ····· 194
2)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 200
: 한국체육대학교 급식비 인상 필요 ····· 202

3. 디지털교육기획관 ---------- 208

【일반회계】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 210
(1)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212
(2) 프로젝트 팀 운영 성과를 고려한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216
2) 교육정보보호사업 ····· 219
(1) 실제 사업 수행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220
(2)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223
3)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227
: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29

4. 인재정책기획관 ---------- 241

1)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부 지원 사업 ····· 243
: 의대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예산편성 필요 ····· 24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 256
(1) 의학교육평가원 등에 대한 평가인증 체계 구축 지원 필요 ····· 258
(2)「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중)의 위법성 검토 필요 ····· 261
(3)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 예산 보전 필요 ····· 275
(4)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의 비목 변경 필요 ····· 278
3) 학술연구조성 R&D ····· 281
: 신규(계속)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283

5. 지역인재정책관 ---------- 29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300
(1) 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302
(2) RISE 사업의 지역지원 플랫폼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307
(3)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내역사업 편성 필요 ····· 321
【사학진흥기금】
1)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 325
(1) 사립의대 융자수요액 융자 조건 및 한도 검토 필요 ····· 327
(2)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 지급율 보전 필요 ····· 335
2)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 338
: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 339

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342

【일반회계】
1)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 344
: 미취학・저학년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필요 ····· 346
2)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 352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35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한국장학재단출연 ····· 365
: ICL 이자면제 사업규모 적정성 재검토 필요 ····· 367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371

(1)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373
(2) 국가장학금 전체 불용규모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378
(3) 양질의 교내 근로 업무 확보 노력 강화 ····· 384
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 391
(1) 양질의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적정규모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393
(2)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 ····· 397

7. 책임교육정책관 ---------- 403

【일반회계】

1)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405
(1)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내역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 ····· 407
(2) 사업 성과 개선 및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417
2)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424
(1) 교과용도서 심의회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 ····· 426
(2)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필요 ····· 433
3)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436
: 면밀하지 못한 산출근거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 부적절 ····· 439

8. 학생건강정책관 ---------- 445

【일반회계】

1) 고등학교 무상교육 ····· 447
: 법률안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448

9. 교원학부모지원관 ---------- 45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 454
: 사업 예산 규모 및 수행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45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연금급여 ····· 463
: 연금급여 사업의 수요를 고려한 기금 내 계획액 배분 조정 필요 ···· 464

10. 교육복지늘봄지원국 ---------- 468

【일반회계】
1)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 470
(1) 예산 감액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471
(2) 세부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신규 내역사업과 기존 사업 간의 연계 강화 필요 ····· 474
2)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476
(1)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477
(2) 사업비 이월에 따른 이자수입 정산 필요 ····· 482

11.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487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 ····· 488
: 정부의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마련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증액 필요 ····· 491

12. 영유아정책국 ---- 500
【일반회계】
1) 영유아보육료 지원 ····· 502
(1)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와 산출기준을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504
(2)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509
2) 시간제보육 지원 ····· 512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관리 필요 ····· 514
3)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 525
: 유치원교사 · 보육교사 통합연수체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통한 원활한 제도도입 추진 필요 ····· 526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531
: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 533
5)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539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54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547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지원방식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549
(2)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영유아교육 · 보육 재원의 안정성 확보 필요 ····· 555

13. 소속기관 ---------- 561

가. 국립특수교육원 ····· 563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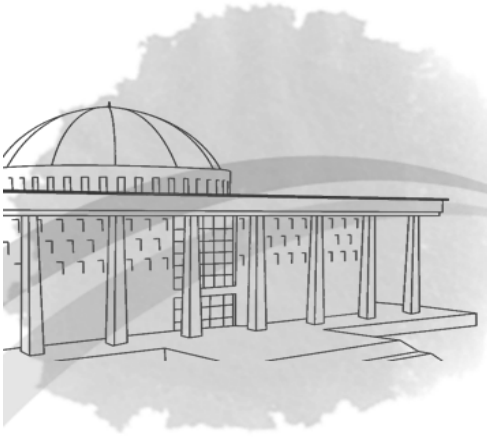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 563
(1) 지원 종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자체운영 유인 마련 필요 ····· 564
(2)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참여 독려 필요 ····· 568

나. 국립국제교육원 ····· 572

【일반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 572
: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 필요 ····· 574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괄

가. 2025년 교육분야 재원배분 현황

❑ 2025년도 예산안 677.4조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98.5조원으로 '24년 95.2조원 대비 3.3조(3.5%)증가하였음.

재원배분 규모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249.0조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11.3조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

(단위: 조원)

구분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	656.6	677.4	20.8	3.2%
·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11.4	4.8%
· 교육	95.2	98.5	3.3	3.5%
· 문화・체육・관광	8.7	8.8	0.1	1.3%
· 환경	12.5	13.0	0.5	4.0%
· R&D	26.5	29.7	3.2	11.8%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0.3	1.1%
· SOC	26.4	25.5	Δ0.9	Δ3.6%
· 농림・수산・식품	25.4	25.9	0.5	1.9%
· 국방	59.4	61.6	2.2	3.6%
· 외교・통일	7.5	7.8	0.3	3.7%
· 공공질서・안전	24.4	25.1	0.7	2.6%
·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0.8	0.6%

자료: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부 소관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1], 고등교육 부문이 1조 802억원(7.5%) 증가하였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4,062억원(4.9%) 증가하는 등 총 7조 6,516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액 규모가 가장 크나, 이는 보건복지부 이관액(영유아보육 소관) 4.7조원이 포함된 것임.

<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교육부 소관[2])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 총지출	95,788,833	104,876,735	9,087,902	9.5
◦ 예산	89,614,625	98,097,937	8,483,312	9.5
◦ 기금	6,174,208	6,778,798	604,590	9.8
【교육분야】	89,566,518	98,190,557	8,624,039	9.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73,729,047	81,380,742	7,651,695	1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09	72,279,438	3,406,229	4.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10,631	3,102,013	△108,618	△3.4
▪ 고등교육	14,477,200	15,557,432	1,080,232	7.5
▪ 평생·직업교육	1,216,239	1,102,260	△113,979	△9.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041,182	15,871,804	830,622	5.5
▪ 교육일반	144,032	150,123	6,091	4.2
【사회복지분야】	6,222,315	6,566,128	343,813	5.5
▪ 기초생활보장	160,399	165,171	4,772	3.0
▪ 공적연금	6,061,916	6,400,957	339,041	5.6
【보건분야】	-	120,050	120,050	순증
▪ 보건의료	-	120,050	120,050	순증

* '24년 예산 복지부 이관액(4.7조원) 미포함
자료: 교육부

1) 교육 분야는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됨.
2) 12대 분야의 교육분야 예산과 교육부 예산은 거의 유사하나, 교육부 예산 중 사학연금, 교육급여, 필수의료 융자 등은 보건복지고용 분야(각각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 부문)에 포함되고, 타 부처 중 교육분야(고등교육 등)로 편성되는 예산도 일부 있음

나. 총수입 · 총지출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8조 44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71억 5,700만원(10.3%) 증가하였음.

❑ 예산은 4,872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1억 900만원(37.6%) 증가하였고, 기금은 7조 5,171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40억 4,800만원(8.9%)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예 산	354,156	487,265	133,109	37.6
기 금	6,903,149	7,517,197	614,048	8.9
총 수 입	**7,257,305**	**8,004,462**	**747,157**	**10.3**

자료: 교육부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104조 8,76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조 879억 2백만원(9.5%) 증가하였음.

❑ 예산은 98조 979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833억 1,200만원(9.5%) 증가하였고, 기금은 6조 7,787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45억 9,000만원(9.8%)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예 산	89,614,625	98,097,937	8,483,312	9.5
기 금	6,174,208	6,778,798	604,590	9.8
총 지 출	**95,788,833**	**104,876,735**	**9,087,902**	**9.5**

주1) 2024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2024.6.27.) 예산 4조 7,726억원 미 포함

자료: 교육부

다. 세입예산안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조 1,507억 600만원(총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7,795억 4,400만원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세입 예산안(총계) >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2024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342,903	371,737	28,834	8.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24	5,032	1,208	31.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2,168	3,102,013	△130,155	△4.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792,267	16,671,924	879,657	5.6
합 계	**19,371,162**	**20,150,706**	**779,544**	**4.0**

자료: 교육부

라. 세출예산안

1) 개요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8조 8,986억 7,900만원(총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9조 398억 2,300만원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총계) >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2024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90,968,627	99,335,461	8,366,834	9.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8,484	325,595	△32,889	△9.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2,168	3,102,013	△130,155	△4.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299,577	16,135,610	836,033	5.5
합 계	**109,858,856**	**118,898,679**	**9,039,823**	**8.2**

주1) 2024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2024.6.27.) 예산 4조 7,726억원 미포함

자료: 교육부

2)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가) 신규사업

❑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35억 9,7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음.

❑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인재육성지원 17억 2,000만원,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지원 18억 7,700만원임.

< 교육부 세출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예산안	비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인재육성지원	1,7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1,877	
합계		3,597	

자료: 교육부

나) 종료사업

❑ 교육부 주요 종료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유아 사교육비 조사 5억 6,000만원,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11억원 등이 종료되었음.

❑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79억원,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142억원, 마이스터대 지원 151억 1,000만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96억원 등이 종료되었음.

< 교육부 세출 예산안 종료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4 예산	비고
[일반회계]			
1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	1,100	
2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82)	
3	보육실태조사	(690)	
4	유아 사교육비 조사	560	
5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197	
6	에너지 환경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R&D)	60	
[고등·평생교육지원회계]			
7	마이스터대 지원	15,110	
8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14,200	
9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9,600	
10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7,900	
11	인재정책기획관연구기획평가(R&D)	731	
합계		53,667	

자료: 교육부

다) 증액사업

❑ 주요 증액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3조 3,211억 1,000만원(5.0%) 증액된 69조 6,595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669억 3,900만원(21.2%) 증액된 3조 2,400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전년 대비 7,985억원(66.4%) 증액된 2조 10억원이 편성되었고,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929억 2,600만원(12.6%) 증액된 5조 3,133억 7,900만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은 전년 대비 814억 5,100만원(15.9%) 증액된 5,93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1	보통교부금	66,338,469	69,659,572	3,321,103	5.0
2	영유아보육료 지원	(2,673,100)	3,240,039	566,939	21.2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886,306)	1,961,911	75,605	4.0
4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00,426	743,713	143,287	23.9
5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00,142	247,905	47,763	23.9
6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20	560,839	27,519	5.2
7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119,093	134,464	15,371	12.9
8	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	9,077	12,614	3,537	39.0
9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1,635	4,200	2,565	156.9
10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1,860	4,080	2,220	119.4
11	보육사업관리	(3,650)	5,514	1,864	51.1
12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224	4,660	1,436	44.5
13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2,300	3,100	800	34.8
14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1,750	2,450	700	40.0
15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390	595	205	52.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00	2,001,000	798,500	66.4
1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5,313,379	592,926	12.6
18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5,309	1,092,909	87,600	8.7
19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511,597	593,048	81,451	15.9
20	국립대학 인건비	1,825,887	1,872,672	46,785	2.6
2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612,917	658,772	45,855	7.5
22	한국장학재단 출연	367,382	407,913	40,531	11.0
23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351	1,673	1,322	376.6

주1) 주요 증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 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라) 감액사업

❑ 주요 감액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이 전년 대비 1,334억 4,300만원(△11.1%) 감액된 1조 67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91억원(△15.7%) 감액된 1,02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년 대비 9,386억 3,100만원(△99.4%) 감액된 5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698억 8,300만원(△19.5%) 감액된 2,88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086억 1,800백만원(△3.4%) 감액된 3조 1,020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2,610억 6,500만원(△58.8%) 감액된 1,827억,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2,084억 9,600만원(△20.8%) 감액된 7,961억 1,100만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전년 대비 1,479억원(△25.8%) 감액된 4,243억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1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200,852	1,067,409	△133,443	△11.1
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21,480	102,380	△19,100	△15.7
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8,075)	77,292	△30,783	△28.5
4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20,248	9,752	△10,496	△51.8
5	고등학교 무상교육	943,898	5,267	△938,631	△99.4
6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6,484	3,346	△3,138	△48.4
7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338	1,916	△1,422	△42.6
8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93	1,574	△819	△34.2
9	학생건강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680	380	△300	△44.1
10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	13	8	△5	△3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58,484	288,601	△69,883	△19.5
12	어린이집 확충	(41,654)	26,684	△14,970	△35.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3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31	3,102,013	△108,618	△3.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4	대학혁신지원	1,004,607	796,111	△208,496	△20.8
15	전문대학 혁신 지원	617,900	555,500	△62,400	△10.1
16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00	424,300	△147,900	△25.8
17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327,709	195,666	△132,043	△40.3
18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443,765	182,700	△261,065	△58.8
19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4,030	2,001	△2,029	△50.3
20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1,464	680	△784	△53.6

주1) 주요 감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감액 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총지출기준)

마. 기금운용계획안

1) 개요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조 2,783억 1,200만원(총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8,243억 4,600만원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총계) >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2024년		2025년	증 감	
	계획(A)	수정	계획안(B)	(B-A)	(%)
사학진흥기금	307,268	307,268	565,039	257,771	83.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146,698	13,146,698	13,713,273	566,575	4.3
합 계	**13,453,966**	**13,453,966**	**14,278,312**	**824,346**	**6.1**

자료: 교육부

2) 주요 증감 사업

가) 사학진흥기금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5,650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7억 7,100만원(83.9%) 증액되었음.

❑ 2025년에는 1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에 1,200억 5,000만원임.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신규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계획안	비고
[사학진흥기금]			
1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120,050	

자료: 교육부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융자) 사업이 전년 대비 1,490억 6,300만원(216.0%) 증액된 2,180억 6,300만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 감	
				(B-A)	%
[사학진흥기금]					
1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사학진흥기금)(융자)	69,000	218,063	149,063	216.0

주1) 주요 증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 또한, 주요 감액사업으로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학진흥기금) 사업이 전년 대비 42억 5,000만원(△95.5%) 감액된 2억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 감	
				(B-A)	%
[사학진흥기금]					
1	정보시스템 운영(사학진흥기금)(정보화)	1,057	696	△361	△34.2
2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학진흥기금)	4,450	200	△4,250	△95.5

주1) 주요 감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13조 7,132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65억 7,500만원(4.3%) 증액되었음.

❑ 2025년에는 1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연금드림콜센터 17억 1,400만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신규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계획안	비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연금드림콜센터 운영	1,714	

자료: 교육부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사업이 전년 대비 4,371억 5,200만원(9.7%) 증액된 4조 9,216억 8,100만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 감	
				(B-A)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484,529	4,921,681	437,152	9.7
2	정보시스템 구축(사립학교연금기금)(정보화)	3,654	5,845	2,191	60.0

주1) 주요 증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 또한, 주요 감액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사업이 전년 대비 1,063억 6,500만원(△16.9%) 감액된 5,245억 9,400만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 감	
				(B-A)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생활안정자금대여 (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630,959	524,594	△106,365	△16.9
2	고객지원(사립학교연금기금)	2,405	868	△1,537	△63.9

주1) 주요 감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2.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일반회계

1) 세입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17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3,429억 300만원 대비 288억 3,400만원(8.4%) 증액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수입 218억 1,800만원, 경상이전수입 2,853억 6,0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억 8,3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117억 7,500만원, 관유물매각대 26억 4,800백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6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98억 9,700만원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342,903	371,737	28,834	8.4
일반회계	11.재산수입			21,416	21,818	402	1.9
		51.관유물대여료		1,271	1,271	-	-
			511.토지대여료	571	571	-	-
			512.건물대여료	700	700	-	-

구분	관	항	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53.전대차관이자수입		1	1	-	-
			534.기타민간전대차관 이자수입	1	1	-	-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144	20,546	402	2.0
			546.기타재산이자수입	20,144	20,546	402	2.0
	12.경상이전수입			262,016	285,360	23,344	8.9
		56.벌금,몰수금및과태료		76	133	57	75.0
			563.과태료	10	67	57	570.0
			564.징계부과금	66	66	-	-
		57.변상금및위약금		324	328	4	1.2
			571.변상금	208	212	4	1.9
			572.위약금	116	116	-	-
		58.가산금		10	10	-	-
			581.가산금	10	10	-	-
		59.기타경상이전수입		261,606	284,889	23,283	8.9
			596.기타경상이전수입	261,606	284,889	23,283	8.9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9	183	4	2.2
		69.잡수입		179	183	4	2.2
			691.기타잡수입	179	183	4	2.2
	14.수입대체경비수입			14,521	11,775	△2,746	△18.9
		65.면허료및수수료		6,546	6,775	229	3.5
			651.면허료및수수료	6,546	6,775	229	3.5
		69.잡수입		7,975	5,000	△2,975	△37.3

구분	관	항	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691.기타잡수입			7,975	5,000	△2,975	△37.3
	15.관유물매각대			2,601	2,648	47	1.8
		71.고정자산매각대		559	606	47	8.4
			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559	606	47	8.4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29	1,929	-	-
			721.토지매각대	1,929	1,929	-	-
		73.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매각대		113	113	-	-
			731.재고자산매각대	113	113	-	-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56	56	순증
		77.전대차관원금회수		-	56	56	순증
			774.기타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	56	56	순증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42,170	49,897	7,727	18.3
		91.전입금		42,170	49,897	7,727	18.3
			913.기금전입금	42,170	49,897	7,727	18.3

자료: 교육부

2) 세출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9조 3,354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668억 3,400만원(9.2%)이 증액되었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1조 103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조 6,397억 6,200만원(10.4%) 증액되었고, 고등교육 부문은 17조 4,891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77억 9,700만원(4.3%) 증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5,206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8,800만원(△2.2%) 감액되었음.

❑ 또한, 교육일반 부문은 1,501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9,100만원(4.2%)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전년 대비 47억 7,200만원(3.0%) 증액된 1,651억 7,100만원임.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90,968,627**	**99,335,461**	**8,366,834**	**9.2**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73,370,563	81,010,325	7,639,762	10.4
고등교육 부문	16,761,365	17,489,162	727,797	4.3
평생 · 직업교육 부문	532,268	520,680	△11,588	△2.2
교육일반 부문	144,032	150,123	6,091	4.2
기초생활보장 부문	160,399	165,171	4,772	3.0

주1) 2024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2024.6.27.) 예산 미 포함
자료: 교육부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50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00만원(31.6%)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3,824	5,032	1,208	3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재산수입			703	925	222	31.6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03	925	222	31.6
			546.기타재산이자수입	703	925	222	31.6
	12.경상이전수입			3,121	4,107	986	31.6
		59.기타경상이전수입		3,121	4,107	986	31.6
			596.기타경상이전수입	3,121	4,107	986	31.6

자료: 교육부

2) 세출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255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8억 8,900만원(△9.2%) 감액되었음.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이 전년 대비 698억 8,300만원(△19.5%) 감액된 2,88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확충 사업이 전년 대비 140억 2,000만원(△28.4%) 감액된 35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고등교육 부문에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이 2025년 신규사업으로 17억 2,000만원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358,484	325,595	△32,889	△9.2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58,484	323,875	△34,609	△9.7
고등교육 부문	-	1,720	1,720	순증

주1) 2024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2024.6.27.) 예산 미 포함
자료: 교육부

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3조 1,020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1억 5,500만원(△4.0%) 감액되었음.

< 2025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3,232,168	3,102,013	△130,155	△4.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4.세계잉여금			21,106	24,641	3,535	16.7
		89.세계잉여금이입액		21,106	24,641	3,535	16.7
			893.전년도세계잉여금	21,106	24,641	3,535	16.7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3,211,062	3,077,372	△133,690	△4.2
		91.전입금		3,210,631	3,055,471	△155,160	△4.8
			911.일반회계전입금	3,210,631	3,055,471	△155,160	△4.8
		92.예탁원금회수		-	21,537	21,537	순증
			923.기금예탁원금회수	-	21,537	21,537	순증
		95.예탁이자수입		431	364	△67	△15.5
			953.기금예탁이자수입	431	364	△67	△15.5

자료: 교육부

2) 세출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조 1,020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1억 5,500만원(△4.0%) 감액되었음.

< 2025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3,232,168	3,102,013	△130,155	△4.0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232,168	3,102,013	△130,155	△4.0

자료: 교육부

라.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6조 6,719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96억 5,700만원(5.6%) 증액되었음.

< 2025년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합 계				15,792,267	16,671,924	879,657	5.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재산수입			3,088	4,348	1,260	40.8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088	4,348	1,260	40.8
			546.기타재산이자수입	3,088	4,348	1,260	40.8
	12.경상이전수입			40,109	150,000	109,891	274.0
		59.기타경상이전수입		40,109	150,000	109,891	274.0
			596.기타경상이전수입	40,109	150,000	109,891	274.0
	14.수입대체경비수입			6,402	6,045	△357	△5.6
		65.면허료및수수료		6,402	6,045	△357	△5.6
			651.면허료및수수료	6,402	6,045	△357	△5.6
	34.세계잉여금			-	120,942	120,942	순증
		89.세계잉여금이입액		-	120,942	120,942	순증
			893.전년도세계잉여금	-	120,942	120,942	순증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742,668	16,390,589	647,921	4.1
		91.전입금		15,742,668	16,390,589	647,921	4.1
			911.일반회계전입금	15,742,668	16,390,589	647,921	4.1

자료: 교육부

2) 세출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6조 1,356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60억 3,300만원(5.5%) 증액되었음.

❑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전년 대비 7,985억원(66.4%) 증액된 2조 10억원이 편성되었고,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전년 대비 5,929억 2,600만원(12.6%) 증액된 5조 3,13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마이스터대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이 RISE 사업 과목구조 개편으로 고등교육 부문으로 전액 이관되었음.

< 2025년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15,299,577**	**16,135,610**	**836,033**	**5.5**
고등교육 부문	14,615,606	15,554,030	938,424	6.4
평생 · 직업교육 부문	683,971	581,580	△102,391	△15.0

자료: 교육부

3. 2025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사학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3] 내지 제18조[4]에 따라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2025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전년 3,073억원보다 2,577억원(83.9%) 증가한 5,6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 >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24 계획(A)	2025 계획안 (B)	증 감 (B-A)	항 목	2024 계획(A)	2025 계획안 (B)	증 감 (B-A)
합 계	3,073	5,650	2,577	합 계	3,073	5,650	2,577
자체수입	1,706	1,763	57	사업비	1,043	3,698	2,655
정부내부수입	1,044	3,573	2,529	기금운영비	80	80	-
여유자금회수	322	315	△7	정부내부지출	1,635	1,626	△9
				여유자금운용	315	246	△69

자료: 교육부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항 사학지원계정 각 호의 재원 및 제2항 청산지원계정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입계획안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잡수입, 융자원금 회수)과 정부내부수입(기금예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 등 모두 5,650억 3,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 감	
				(B-A)	%
수입	○ 자체수입	170,630	176,255	5,625	3.3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0,059	34,700	4,641	15.4
	-기타경상이전수입	2,243	2,397	154	6.9
	-잡수입	1,229	1,099	△130	△10.6
	-융자원금회수	137,099	138,059	960	0.7
	○ 정부내부수입	104,374	357,264	252,890	242.3
	-기금예수금	104,374	235,477	131,103	125.6
	-일반회계 전입금	-	121,787	121,787	-
	○ 여유자금회수	32,264	31,520	△744	2.3
	-정부예금회수	32,264	31,520	△744	2.3
합 계		307,268	565,039	257,771	83.9

자료: 교육부

❑ 수입계획안의 증감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56억 2,500원 증가한 1,762억 5,5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1,217억 8,700만원이 신규 반영되어 전년 대비 2,528억 9,000만원 증가한 3,572억 6,400만원으로 계획하였음.

❑ 여유자금회수는 전년도 이월액이 감소함에 따라 7억 4,400만원 감소된 315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였음.

2) 지출계획안

가) 개요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지출은 경상지출(학교경영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융자지출(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 폐교대학 청산지원융자), 기금운영비(인건비, 기타경비), 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원리금 상환) 및 여유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5,650억 3,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 감 (B-A)	증 감 %
지출	ㅇ 사업비	104,299	369,845	265,546	254.6
	- 경상지출	2,226	1,795	△431	△19.4
	- 융자지출	102,073	368,050	265,977	260.6
	ㅇ 기금운영비	7,993	7,996	3	0.0
	ㅇ 정부내부지출	163,456	162,568	△888	△0.5
	- 공자기금 원금상환	126,480	123,500	△2,980	△2.4
	- 주택도시기금 원금상환	16,042	17,800	1,758	11.0
	- 공자기금 이자상환	9,662	8,768	△894	△9.3
	-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	11,272	12,500	1,228	10.9
	ㅇ 여유자금운용	31,520	24,630	△6,890	△21.9
	- 통화금융기관 예치	31,520	24,630	△6,890	△21.9
합 계		307,268	565,039	257,771	83.9

자료: 교육부

나) 주요 증감 내역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경상지출은 학교경영 지원사업이 10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 감소,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사업은 6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6,100만원 감소함.

❑ 융자지출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자금 융자사업 2,180억 6300만원, 행복기숙사지원사업 297억 3,700만원,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지원 1,200억 5,000만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2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659억 7,700만원이 증가함.

❑ 기금운영비는 79억 96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함.

❑ 정부내부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원금상환액이 1,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8,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상환액은 87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400만원 감소함. 주택도시기금에서 예수한 원리금 상환액으로는 원금상환액이 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상환액은 125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800만원 증가함.

❑ 여유자금운용은 전년보다 68억 9,000만원이 감소한 246억 3,0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임.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기금운용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계획 (A)	2024 수정	2025 계획안 (B)	증 감	
				(B-A)	%
총 계	307,268	307,268	565,039	257,771	83.9
[사학지원계정] 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1,169	1,169	1,099	△70	△6.0
[사학지원계정] 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학진흥기금)(융자)	69,000	69,000	218,063	149,063	216.0
[사학지원계정]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지원 (사학진흥기금)(융자)	-	-	120,050	120,050	-
[사학지원계정]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융자)	28,623	28,623	29,737	1,114	3.9
[청산지원계정] 폐교대학청산지원융자(사학진흥기금)	4,450	4,450	200	△4,250	△95.5
[사학지원계정] 인건비(사학진흥기금)	5,894	5,894	6,197	303	5.1
[사학지원계정] 기타경비(사학진흥기금)	1,999	3,988	1,699	△300	△15.0
[사학지원계정] 대학재정분석(사학진흥기금)	100	100	100	-	-
[사학지원계정] 정보시스템운영(사학진흥기금)(정보화)	1,057	1,057	696	△361	△34.2
[사학지원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126,480	126,480	123,500	△2,980	△2.4
[사학지원계정]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원금상환	16,042	16,042	17,800	1,758	11.0
[청산지원계청]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731	731	415	△316	△43.2
[사학지원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931	8,931	8,353	△578	△6.5
[사학지원계정]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11,272	11,272	12,500	1,228	10.9
[사학지원계정] 통화금융기관예치	30,667	28,678	24,323	△6,344	△20.7
[청산지원계정] 통화금융기관예치	853	853	307	△546	△64.0

자료: 교육부

3) 2025년 기금운용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 현황 및 재정상태

가) 추정 재정운용 현황

❑ 2025년 기금운용안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표에 따르면, 융자지원학교로부터 받은 융자이자 수입 및 수입대체경비(연수 및 컨설팅) 등 사업수익 337억 4,700만원과 사업외 수익 1,263억원 2,200만원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이자비용 등 303억 6,300만원을 비용으로 추정한 결과 당기순손익은 1,018억 7,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 2025년 사학진흥기금 추정 재정운용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30,039	30,039	33,747	3,708
2. 사업비용	33,542	33,542	30,363	△3,179
3. 사업총이익(1-2)	△3,503	△3,503	3,384	6,887
4. 사업관리비	-	-	-	-
5. 사업이익(3-4)	△3,503	△3,503	3,384	6,887
6. 사업외 수익	3,492	3,492	126,322	122,830
7. 사업외 비용	883	883	912	29
8. 경상이익	-	-	-	-
9. 특별이익	-	-	-	-
10. 특별손실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94	△894	128,794	129,688
12. 법인세비용	430	430	26,918	26,488
13. 당기순이익	△1,324	△1,324	101,876	103,200

자료: 교육부

나) 추정 재정상태

❑ 동 기금의 추정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총자산은 2조 250억 2,900만원으로 이 중 80.4%인 1조 6,287억 7,100만원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융자금 지원으로 운용하고, 유동자산 3,766억 3,100만원은 단기 융자 원금 상환에 따른 유동자산이며, 현금성 대기자금이 있을 경우 연기금 투자풀로 운용할 계획임.

< 2025년 사학진흥기금 추정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270,051	270,051	376,631	106,580
2. 고정자산	1,417,625	1,417,625	1,648,398	230,773
(1) 투자자산	1,398,780	1,398,780	1,628,771	229,991
(2) 유형자산	17,931	17,931	17,931	-
(3) 무형자산	880	880	1,576	696
(4) 기타비유동자산	34	34	120	86
자산총계(가)	**1,687,676**	**1,687,676**	**2,025,029**	**337,353**
1. 유동부채	142,522	142,522	141,300	△1,222
2. 고정부채	1,052,501	1,052,501	1,289,200	236,699
부채합계(나)	**1,195,023**	**1,195,023**	**1,430,500**	**235,477**
1. 자본금	195,832	195,832	195,832	-
2. 이익잉여금	296,821	296,821	398,697	101,876
자본합계(다)	**492,653**	**492,653**	**594,529**	**101,876**
자본 및 부채 총계	**1,687,676**	**1,687,676**	**2,025,029**	**337,353**

자료: 교육부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한 적절한 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임.

❑ 동 기금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2[5]에 따라 설치되어 금융기관에의 예입·신탁, 유가증권 매입,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등 기금증식과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관리·운영되고 있음.

❑ 동 기금의 2025년 수입 및 지출규모는 13조 7,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6억원(4.3%)이 증가하였음.

---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2025년도 사학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 >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목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 감 (B-A)	항목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 감 (B-A)
합계	131,467	137,133	5,666	합계	131,467	137,133	5,666
자체수입	67,325	73,409	6,084	사업비	60,296	63,694	3,398
정부내부수입	10,112	9,693	△418	기금운영비	324	316	△8
여유자금회수	54,030	54,030	-	정부내부지출	422	499	77
				여유자금운용	70,426	72,624	2,198

자료: 교육부

1) 수입계획안

❑ 2025년 사학연금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사회보장기여금, 관유물대여료, 이자수입, 잡수입, 융자원금 회수 등)과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 전입금), 여유자금 회수(유가증권 매각대, 정부예금 회수) 등 모두 13조 7,13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사학연금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 감	
				(B-A)	%
수입	ㅇ 자 체 수 입	6,732,519	7,340,942	608,423	9.0
	-사회보장기여금	3,885,318	4,031,283	145,965	3.8
	-관유물 대여료	17,322	17,930	608	3.5
	-기타이자및재산수입	1,568,476	1,964,815	396,339	25.3
	-기타경상이전수입	41,131	40,813	△318	△0.8
	-잡수입	909	909	-	-
	-융자원금 회수	1,219,363	1,285,192	65,829	5.4
	ㅇ 정부내부수입	1,011,154	969,306	△41,848	△4.1
	-전입금	1,011,154	969,306	△41,848	△4.1
	ㅇ 여유자금회수	5,403,025	5,403,025	-	-
	-유가증권매각대	2,240,248	2,240,248	-	-
	-정부예금회수	3,162,777	3,162,777	-	-
합 계		13,146,698	13,713,273	566,575	4.3

자료: 교육부

❑ 수입계획안의 증감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2024년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법인 및 개인부담금) 1,459억 6,500만 원, 관유물대여료 6억 800만원, 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3,963억 3,900만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65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은 3억 1,800만원 감소하였음.

❑ 정부내부수입의 경우는 9,693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8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여유자금회수(금융자산)의 경우 유가증권매각대 2조 2,402억 4,800만원과 정부예금회수 3조 1,627억 7,700만원으로 총 5조 4,030억 2,50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2) 지출계획안

가) 개요

❑ 2025년 사학연금기금의 지출은 경상지출(회관운영사업, 정보화사업, 고객지원, 자금운용사업비), 의무지출(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융자지출(생활안정자금 대여, 국고학자금 대여), 기금운영비(인건비, 기타운영비), 정부내부지출(국고학자금 반환) 및 여유자금운용(예치금, 유가증권 매입 등) 등 13조 7,13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 사학연금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 감	
				(B-A)	%
지출	ㅇ 사업비	6,029,555	6,369,366	339,811	5.6
	- 경상지출	24,598	26,667	2,069	8.4
	- 의무지출	5,336,873	5,784,693	447,820	8.4
	- 융자지출	668,084	558,006	△110,078	△16.5
	ㅇ 기금운영비	32,361	31,591	△770	△2.4
	ㅇ 정부내부지출	42,170	49,897	7,727	18.3
	ㅇ 여유자금운용	7,042,612	7,262,419	219,807	3.1
	- 예치금	2,560,070	3,094,481	534,411	20.9
	- 유가증권매입	4,482,542	4,167,938	△314,604	△7.0
합 계		13,146,698	13,713,273	566,575	4.3

자료: 교육부

나) 주요 증감 내역

❑ 2025년도 사학연금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경상지출은 회관운영사업이 4억 8,100만원 감소하였고, 정보화사업은 21억 9,100만원, 고객지원사업은 1억 2,700만원, 연금드림콜센터사업은 5,000만원, 자금운용사업은 1억 8,200만원이 증액, 전년 대비 20억 6,900만원 증가함.

❑ 의무지출은 연금급여 4조 9,216억 8,100만원, 재해보상급여 486억 9,700만원, 퇴직수당급여 8,143억 1,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78억 2,000만원이 증가함.

❑ 융자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여 1,063억 6,500만원, 국고학자금대여 37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00억 7,800만원이 감소함.

❑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223억 7,400만원, 기타운영비 92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음.

❑ 정부내부지출은 일반회계전출(대여학자금반환)에 국고학자금 미집행 반환금으로 498억원을 반영함.

❑ 여유자금운용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198억 700만원 증가한 7조 2,624억 1,9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임.

< 202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기금운용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A)	2024 추경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3,146,698	13,146,698	13,713,273	566,575	4.3
회관운영사업(사립학교연금기금)	17,418	17,418	16,937	△481	△2.8
정보시스템구축(사립학교연금기금)(정보화)	3,654	3,654	5,845	2,191	60.0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37,125	37,125	33,412	△3,713	△10.0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630,959	630,959	524,594	△106,365	△16.9
고객지원(사립학교연금기금)	741	741	868	127	17.1
연금드림콜센터(사립학교연금기금)	1,664	1,664	1,714	50	3.0
자금운용사업비(사립학교연금기금)	1,121	1,121	1,303	182	16.2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484,529	4,484,529	4,921,681	437,152	9.7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6,297	46,297	48,697	2,400	5.2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806,047	806,047	814,315	8,268	1.0
인건비(사립학교연금기금)	22,523	22,523	22,374	△149	△0.7
기타경비(사립학교연금기금)	9,838	9,838	9,217	△621	△6.3
일반회계전출(대여학자금반환)	42,170	42,170	49,897	7,727	18.3
통화금융기관예치	512,746	512,746	451,101	△61,645	△12.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47,324	2,047,324	2,643,380	596,056	29.1
국채매입	577,087	577,087	436,502	△140,585	△24.4
국채외채권매입	682,962	682,962	516,586	△166,376	△24.4
주식매입	2,053,916	2,053,916	2,031,139	△22,777	△1.1
기타유가증권매입	1,168,577	1,168,577	1,183,711	15,134	1.3

3) 2025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 현황 및 재정상태

가) 추정 재정운용 현황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표에 따르면, 교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수입과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6조 9,419억원, 사업외수익 9억원에서 연금급여 등 사업비용 5조 7,610억원, 사업관리비 558억원, 사업외비용 238억원 등을 감하여 총 1조 1,0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계획하고 있음.

< 202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추정 재정운용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말 계획		2025년말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6,466,851	6,466,851	6,941,982	475,131
2. 사업비용	5,313,243	5,313,243	5,761,063	447,820
3. 사업총이익(1-2)	1,153,608	1,153,608	1,180,919	27,311
4. 사업관리비	58,282	58,282	55,851	△2,431
5. 사업이익(3-4)	1,095,326	1,095,326	1,125,068	29,742
6. 사업외 수익	909	909	909	-
7. 사업외 비용	23,760	23,760	23,760	-
8. 경상이익[(5+6)-7]	1,072,475	1,072,475	1,102,217	29,742
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72,475	1,072,475	1,102,217	29,742
10. 당기순이익	1,072,475	1,072,475	1,102,217	29,742

자료: 교육부

❑ 수익부문에서 교원은 2.8% 감소했지만, 사무직원 증가율 0.8%, 기준소득월액 증가(교·직원 : 4.0%)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941억원 증가하였음. 또한 자금운용수익 등은 전년대비 3,811억원(2024년 1조 5,612억원→2025년 1조 9,42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비용부문에서는 급여지출이 전년대비 4,478억원 증가(2024년 5조 3,132억원→2025년 5조 7,610억원)하는 것으로, 국고대여학자금반환은 국고학자금 미집행액에 대한 운용수익 반환 예산 편성에 따라 77억원 증가(2024년 422억원→2025년 499억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은 8억원이 감소(2024년 324억원→2025년 316억원)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나) 추정 재정상태

❑ 동 기금의 추정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총자산은 29조 1,971억원으로, 이 중 13.1%인 3조 8,393억원을 단기매매채권·주식 등 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86.9%인 24조 988억원을 만기보유채권·대여사업대여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임.

< 2025년 사학연금기금 추정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말 계획		2025년말 계획안(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 동 자 산	4,576,036	4,576,036	3,839,346	△736,690
2. 비 유 동 자 산	23,439,172	23,439,172	25,357,790	1,918,618
(1) 투 자 자 산	21,508,834	21,508,834	24,098,832	2,589,998
(2) 기 타 자 산	1,302,154	1,302,154	678,127	△624,027
(3) 국고위탁대여금	221,710	221,710	175,335	△46,375
(4) 유 형 자 산	396,151	396,151	394,799	△1,352
(5) 무 형 자 산	10,322	10,322	10,696	374
자 산 총 계(A)	**28,015,208**	**28,015,208**	**29,197,136**	**1,181,928**
1. 유 동 부 채	120,395	120,395	81,549	△38,846
2. 비 유 동 부 채	421,524	421,524	371,854	△49,670
부 채 총 계(B)	**541,919**	**541,919**	**453,403**	**△88,516**
1. 적립금및잉여금	25,232,525	25,232,525	26,368,255	1,135,731
2. 순자산조정	2,240,765	2,240,765	2,375,478	134,713
자 본 총 계(A-B)	**27,473,289**	**27,473,289**	**28,743,733**	**1,270,444**
자본 및 부채 총계	**28,015,208**	**28,015,208**	**29,197,136**	**1,181,928**

자료: 교육부

4.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2025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교육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생활기반시설인 국립대 기숙사시설 등에 대하여 BTL방식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함.

❑ 교육부가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5,225억 7,300만원 감액되어 미편성하였음.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한도액 (A)	2025 한도액안 (B)	증감		2025년 사업내역
			(B-A)	%	
총한도액	522,573	-	△522,573	순감	
1. 국가사업	522,573	-	△522,573	순감	-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	-	-	-

자료: 교육부

나. 2025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2025년도 교육부 소관의 BTL 정부지급금 규모는 전년 대비 337억 5,900백만원 증액된 1,390억 4,800만원임.

❑ 국립대 기숙사 및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236억 5,200만원 증액된 1,223억 6,600만원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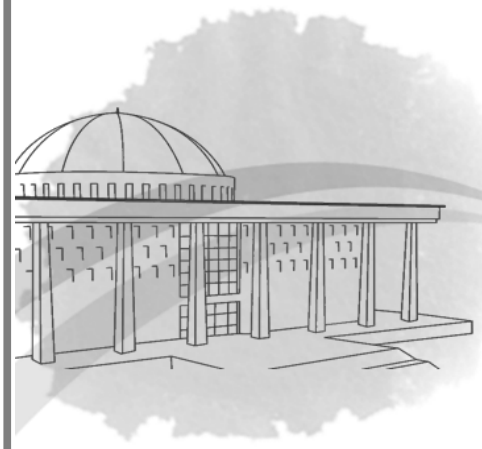
❑ 전국 초·중·고등학교(국립 제외)의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01억 700만원 증액된 166억 8,200만원임.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
소 계	105,289	139,048	33,759	32.1
국립대학 시설확충(국립대학)	98,714	122,366	23,652	24.0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6,575	16,682	10,107	153.7

Ⅱ. 검 토 의 견



1. 총 괄

1) 교육부 회계기금별 예산 편성의 문제점[6)]

가) 개 요

(1) 교육부 예산회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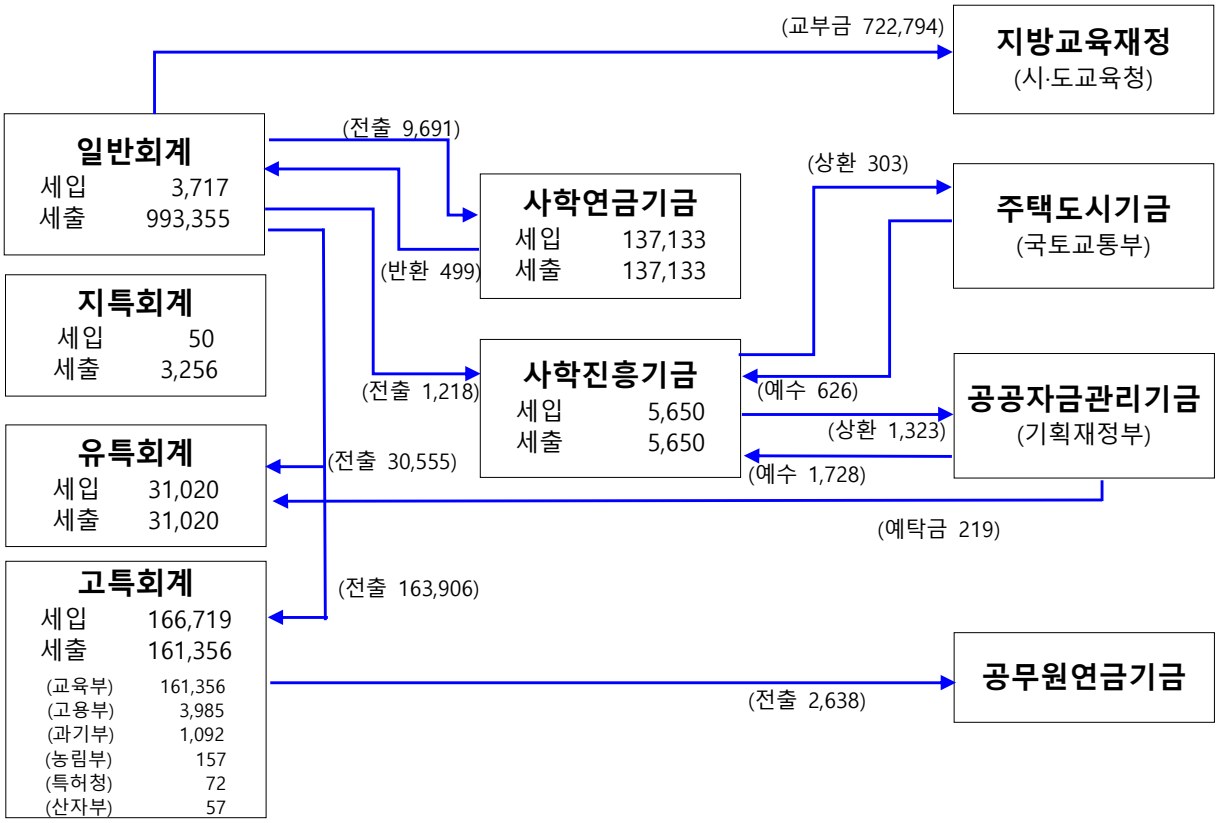
❑ 교육부 소관 예산회계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사학연금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부 재정구조의 가장 큰 특색은 국가·지방간 재원이전(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조 2,794억원) 규모가 상당하고,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3조 555억원,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16조 3,906억원 등이 전출되는 등 특별회계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임.

6) 문의: 02-6788-5185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재정 흐름도 >

(단위 : 억원)



※ 총계 기준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회계별 교육부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5조 7,888억원 대비 9조 879억원(9.5%) 증액된 104조 8,767억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일반회계는 78조 7,985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2조 2,794억원을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19조 2,994억원인데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15조 8,718억원[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1,02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55억원임.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3,778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조 4,009억원 수준임.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A)	'25년 예산안 (B)	증감 (B-A)	%
□ 총지출	**95,788,833**	**104,876,735**	**9,087,902**	**9.5**
Ⅰ.예산	**89,614,625**	**98,097,937**	**8,483,312**	**9.5**
1. 일반회계	71,004,328	78,798,525	7,794,197	1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73,209	72,279,438	3,406,229	4.9
2. 특별회계	18,610,297	19,299,412	689,115	3.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8,484	325,595	△32,889	△9.2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10,631	3,102,013	△108,618	△3.4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041,182	15,871,804	830,622	5.5
Ⅱ.기금	**6,174,208**	**6,778,798**	**604,590**	**9.8**
■ 사학진흥기금	112,292	377,841	265,549	236.5
■ 사학연금기금	6,061,916	6,400,957	339,041	5.6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 '24년 예산에는 복지부 이관액(4.7조원) 미포함

7) 실제 동 회계 총지출액 16.6조보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육부 외 타부처 소관 지출 및 내부거래(예산→기금간 거래)가 일부 있기 때문임.

나) 회계기금별 검토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2005년 도입)하는 특별회계로[8], ’24년 3,584억 8,400만원 대비 328억 8,900만원(9.2%) 감액된 3,255억 9,500만원이 ’2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총 계	358,484	325,595	△32,889	△9.2
○ 지역자율계정 소계		8,309	8,309	순증
- 어린이집 기능보강		8,309	8,309	순증
○ 지역지원계정 소계	358,484	317,005	△41,479	△13.1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58,484	288,601	△69,883	△19.5
- 어린이집 확충		26,684	26,684	순증
- 지역인재육성지원		1,720	1,720	순증
○ 세종특별자치시도 계정 소계		81	81	순증
- 어린이집 기능보강(세종)		81	81	순증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소계		200	200	순증
- 어린이집 기능보강(제주)		200	200	순증

* 자료 :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구성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지특회계 소관 사업으로 종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만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어린이집 확충”이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이관되어 편성(’24년)되었고(「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2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관련 사업소관 변경), ’25년에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24년 6월)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계정	세부사업	2024 예산	2025 예산안	비 고
지역지원	어린이집 확충	41,654	26,684	복지부 이관 (**2024년 일반회계에서 이관**)
지역자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자율)	7,384	8,309	
세종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세종)	71	81	
제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제주)	185	200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지특회계는 목표와 편성방식이 다른 4개 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지역자율계정은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속하기 위한 목적의 재원으로 포괄보조금 방식[9]으로 운영되고 둘째, 지역지원계정은 지역특화산업, 지방대학육성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되며 셋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지역자율+지역지원계정 지원대상 사업)하는 재원임.

9) 포괄보조금(Block-grant)은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큰 범위로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 및 시군구가 부여받은 지출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해 운용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예산안 편성체계 >

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구분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개선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 등 (제78조 중 일부예시)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제79조 중 일부예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지원대상 사업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지원대상 사업
편성방식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	부처 직접편성	자율편성 및 직접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024

(나) 검토의견 : 특별회계 세출기준 및 운영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집 관련 사업 지특회계 편성 문제

❑ 어린이집 확충(지역지원계정)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266억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역자율계정 등 합산) 사업은 기존 어린이집의 노후시설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억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

❑ 이상의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오다가 2024년도부터 지특회계로 편성하고 있는데, 지특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지특회계의 세출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특정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확충[10] 및 기능보강[11]은 각 계정별 법률에서 정하는 세출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 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11)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어린이집 관련 사업별 계정 및 법령근거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5년 예산안	계정	법률상 세출목적(예시)	비고
어린이집 확충	26,684	지역지원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제79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8,590	지역자율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지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제78조

이에 대해 정부는 각각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해당한다는 편성근거를 밝히고 있으나[12],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며[13],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자금의 융자도 아니기 때문에[14]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15].

---

12) 제78조제2항제7호 및 제79조제2항제16호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법률에서는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으로 규정하여 자금의 융자를 사업수행 방식의 예시로 들고 있으나, 첫째, 동 호는 사업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사업수행방식도 재량으로 할 경우 사실상 상기의 각 호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둘째, 각 호에서 융자 또는 보조, 출연 등으로 사업수행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해당 호의 경우 융자사업 수행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됨.

❑ 둘째, 지특회계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영유아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특회계(지역자율 계정)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좌우될 수 있고, 지역별 편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 회계는 연례적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상보육 및 관련 비용의 보조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16] 하여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

15)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지역자율계정)함을 지침으로 정하였으나(3쪽), 어린이집 확충(지역지원계정)사업의 경우 별도로 정함이 없이 지특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별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역지원계정으로 언급(57쪽)하였음.

16)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참고로, 종래 지특회계 편성 이후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17], 최근 지특회계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재정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21년 39개 세부사업(3.6조원), 2022년 26개(1.0조원), 2023년 15개(1.2조원) 등 총 80개 사업(5.8조원 규모)이 지특회계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음.

< 최근 지특에서 지방이양된 재정사업 규모 >

(단위 : 개, 억원)

구분	이양시기	세부사업수	이양규모
1단계	2021년	39	35,681
2단계	2022년	26	10,312
	2023년	15	12,210

* 자료 :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113면(재정분권과 사무이양 현황)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은 자치분권 실현 등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하나 과거 지방이양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추진과정 등에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일례로, 과거 사회복지분야 시설사업을 지방이양(노인양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아동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및 지역별 편중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국고로 환원조치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186면에 따르면, 지방이양 사업의 적용대상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기타 지방이양 대상사업"임.

1. 적용대상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기타 회계·기금사업 중 <별첨>의 지방이양 대상 사업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관련 논의경과 >

연도	주요내용	비고
2002~2006	사회복지분야 사업 지방이양	
2007	국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에 관한 감사 청구」	2006회계연도 결산
2009	감사원,「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감사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국고환원 등 권고
2013	정부,「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발표	3개 사업, 국고 환원 확정
2014	국회,「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의결	의안번호 1912746 (2014.12.2. 의결)
2015	3개 시설 국고환원	아동시설 제외

*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작성

❑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 지특회계로 편성된 어린이집 시설 관련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세출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특회계로 편성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보육인프라 마련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며, 지자체 자율 또는 이양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18], 유보통합 추진과 재원분담 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사업들의 지특회계 편성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사무가 이관된 후 최초로 예산을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8) 어린이집 시설 관련 사업을 유보통합 이후 지방이양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됨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가) 개 요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약칭 “유아교육회계법”)」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른바 3~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24년 3조 2,321억 6,800만원 대비 1,301억 5,500만원(4.0%) 감액된 3조 1,020억 1,300만원이 ’2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총 계	3,232,168	3,102,013	△130,155	△4.0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31	3,102,013	△108,618	△3.4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1,537	-	△21,537	순감

* 자료 :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구성

❑ 동 특별회계는 무상보육 추진시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재원부담에 관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19], 유치원 지원분은 교육세로, 어린이집 지원분은 국고로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한시로 설치한 것이나, 당초 법 제정시 유효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3년) 이후 2번에 걸쳐 연장되어 현재 2025년까지로 동 법률 및 특별

19) 2016년 일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보통교부금으로 미편성 등

회계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분 비교 >

구분	지원대상	재원	2025년 예산안 (백만원)	비고
유특회계 전출	어린이집	국고	1,353,296	2025.12.31. 유효기간
유특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유치원	교육세	1,702,17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약칭: 유아교육회계법)」

제1조(목적),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3조(세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3. (생 략)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6조(차입금)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③ (생 략)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10조(예비비)

부칙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31.**>

(나) 검토의견 : 예산추이를 고려한 재원 검토 필요

❑ 유특회계 재원분담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2017년 당시 3.9조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5년 예산안에는 3.1조 수준인데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대상 인원이 감소한데 기인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유치원에 대해 지원하는 교육세 지원분의 경우 '18년 1.8조원에서 '25년 예산안에는 1.7조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는 국고의 경우 '18년부터 '22년까지 2.0조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23년 1.7조, '24년 1.5조, '25년(안) 1.4조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당초 유특회계 전출은 국고지원분이 교육세분보다 많았으나 '24년 소폭 적어진 후 '25년 예산안에는 3,489억원이 적게 계상되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안)
어린이집 (국고)	8,600	20,586	19,812	20,978	20,169	19,870	16,959	15,310	13,533
유치원 (교육세)	30,809	18,341	18,341	18,457	16,907	16,664	16,624	16,797	17,022
합계	39,409	38,927	38,153	39,435	37,076	36,534	33,583	32,107	30,555

주1) 17년 교육세로 어린이집 일부 지원, 18년부터 국고(어린이집), 교육세(유치원) 지원분 분리
주2) 17년부터 24년까지는 확정예산액, 25년은 예산안 기준

❑ 국고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예산 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을 교육부는 전체 취원대상 인원수 감소와 함께 기관별 취원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출생률 감소로 전체 취원대상 인원은 매년 감소(연평균 △6.1%)한 가운데, 유치원의 경우 감소폭이 적거나 오히려 증가한 반면(공립 △3.9%, 사립 0.3%)[20], 어린이집의 경우 '23년 40.8만명에서 '25년 32.0만명으로 크게 감소(△11.3%)한 점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 산정시 아동수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감률(%)
전체 유아 수	969,912	919,836	855,433	△57,240	△6.1%
취원예정아 수	907,151	823,435	809,378	△48,887	△5.5%
공립유치원	151,006	134,339	138,757	△6,125	△3.9%
사립유치원	347,965	337,637	349,959	997	0.3%
어린이집	408,180	351,459	320,662	△43,759	△11.3%

주) 예산안 산정시 유아수는 전년도 4월 기준 각 기관별 취원율을 기준으로 함[21]

❑ 이상과 같이 유특회계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 기관별 취원율에 따른 취원 예정아 수를 고려하여 규모가 산정된 것으로 보임.

---

20)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아동 1인당 지원 규모(28만원 vs 10만원)가 크고 아동 비율(70.7% vs 29.2%)이 높아, 사립유치원 아동 증가가 예산 증가에 영향

21) 24년 4월 기준 각 기관별 취원율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15.8%	40.4%	36.8%

전년도 중기계획보다 실제 예산안이 상당 수준 적게 편성되는 등 저출산 추세의 가속화로 취원예정아 수가 매년 예상보다 더 큰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국고지원분(어린이집) 감소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계획)과 예산안 비교 >

(단위 : 억원)

구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23년 제출)에 따른 25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B-A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31,576	30,555	△1,021

주) 단, 중기계획상 예산규모는 총액, 일반회계전입금 외 세계잉여금 이입액 등 기타수입 모두 포함시 25년 예산안은 31,020억원

다만, 최근 3년간 전체 유아수 감소비율(△6.1%)보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수 감소비율(△11.3%)이 급격하게 낮아진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유특회계의 유효기간은 현재 2025년말까지이고, 유보통합 추진경과에 따라 재원분담(지방교육재정교부금 vs 국고지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부담 논의 시 이상의 유특회계 지원 경과, 최근 국고지원분(어린이집) 규모가 감소한 점 및 그 원인과 추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가) 개 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한시로 설치되었는데[22], ’24년 15조 2,995억 7,700만원 대비 8,360억 3,300만원(5.5%) 증액된 16조 1,356억 1,000만원이 ’2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교육부 소관[23]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총 계	15,299,577	16,135,610	836,033	5.5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5,313,379	592,926	12.6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00	2,001,000	798,500	66.4
○ 국립대학 인건비	1,825,887	1,872,672	46,785	2.6
○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5,309	1,092,909	87,600	8.7
○ 대학혁신지원	1,004,607	796,111	△208,496	△20.8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612,917	658,772	45,855	7.5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511,597	593,048	81,451	15.9
○ 전문대학 혁신 지원	617,900	555,500	△62,400	△10.1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4,684	522,478	△2,206	△0.4
○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00	424,300	△147,900	△25.8

주) 세부사업은 5,000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안규모 상위 10개 사업만 예시
자료 :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구성

22)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설치함.

23) 과기부, 농림부, 고용부, 산자부, 특허청 등 고특회계에 편성된 교육부 외 부처 소관예산(소계)는 ’24년 4,926억 9,000만원 대비 436억 2,400만원(8.9%) 증액된 5,36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특회계의 세입은 교육세 세입예산액(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 제외)의 100분의 50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고등교육 부문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4. (생 략)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6. (생 략)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7조(차입금),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10조(예비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검토의견

① 자체재원이 제한적인 한시회계의 적절한 사업규모 유지 필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자체재원이 교육세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 등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체 세입재원은 교육세 일부(1.5조~2조원 수준)밖에 없는 실정(전체 세입 중 비중 '23년 18.5%→'24년 16.6%→'25년 13.0%)이나, 세출 규모는 23년 9.7조에서 24년 15.7조, 25년 예산안의 경우 16.6조로 대부분의 사업(25년안 기준 87%)을 일반회계 전입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3	24	25(안)
수입	기타 일반회계 전입	8,222,813	13,501,256	14,221,576
	교육세 전입 (전체 세입 중 비중)	**1,519,917 (18.5%)**	**2,241,412 (16.6%)**	**2,169,013 (13.0%)**
	경상이전수입 등	-	49,599	160,393
	세계잉여금	-	-	120,942
	계	**9,742,730**	**15,792,267**	**16,671,924**
지출	일반지출	9,742,730	15,533,872	16,408,118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	258,395	263,806
	계	**9,742,730**	**15,792,267**	**16,671,924**

자료 : 교육부

❑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함[24].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데, 내부거래등으로 재정체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우리나라는 5개 기업특별회계와 16개 기타특별회계 등 총 2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25], 이 중 고특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규모가 가장 큰 실정임. 특히, 동 회계는 2025년이면 종료되는 한시회계라는 점에서, 이와 같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전체(21개)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규모 5조 이상 회계 현황 >

특별회계(24년)	고등평생교육지원	교통시설	지역균형발전	환경개선
일반회계 전입액 (백만원)	15,742,668	13,042,075	6,197,012	5,665,729

24)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5) 2024년 총계기준 100조 4,874억 9,600만원

❑ 유사한 교육부 소관 한시회계로서 「유아교육특별지원특별회계」의 경우 영유아교육·보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26]을 해당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3~5세 누리과정 교육(보육)비만을 편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시에도 한시적 특별회계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고특회계 및 유특회계 사업편성 비교>

구분	세부사업 개수	추이	2025년 예산안 (백만원)	일몰시한
고특회계	55	예산 및 사업 증가	16,135,610	2025년
유특회계	1	예산 감소	3,102,013	2025년

주) 고특회계의 경우 교육부 소관사업에 한정

❑ 고특회계는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 별도의 재원이 일부에 불과하고, 한시회계로서 일몰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고등교육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회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27].

따라서, 교육부는 고특회계의 세입 및 유효기간 등 제한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일반회계 전입을 줄이고 회계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임.

---

26)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27) 특별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하나의 회계에 편성하는 것의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임.
국가재정은 12대분야(ex 교육 등) 및 각 분야별 부문(ex 초중등, 고등, 평생, 교육일반 등)으로 구분하는데, 특정 부문을 하나의 특별회계에 편성할 이유나 사례는 없음

② 세출 : 법률상 세출 목적을 고려한 사업 편성 필요

❑ 고특회계는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역 인재양성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목적을 정하고 있음[28].

동 특별회계법의 제정경과 및 제명, 목적(대학의 미래 인재양성)등을 고려할 때 “대학(사업주체)”의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사업성격)”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특히, 고특회계는 자체 세입재원이 제한적이고 한시회계인 점등을 고려할 때 세출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우선, 사업주체가 대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과 함께 인문사회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고전번역원 지원 출연 등이 고특회계에 편성되어 있음.

---

2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6. (생 략)

해당 사업들은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할 수 없고, 법률상 세출목적에도 명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음[29].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성 사업 중 사업주체가 대학이 아닌 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5년 예산안	주요내용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6,045	동북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동북아역사재단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5,521	국내외 사료조사 수집편찬 및 한국역사정보화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수입대체경비)	6,40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34,658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25,367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다음으로, 국립대학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의 경우 간접적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시적인 특별회계에 편성하기는 법령의 취지상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됨.

또한, 교육부는 국립대학 인건비 편성에 따라 '공무원 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을 동 회계에 편성한 후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시키고 있는데 2번의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30].

---

29) 또한, 한국사, 한국학, 한국고전 연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한시회계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30) 일반회계 → 고특회계 → 공무원연금기금 (예산 총계와 순계차이 3배)

❑ 따라서, 교육부는 고특회계 법률상 세출기준 및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주체(대학) 및 성격(직접적 연관 사업)을 고려하여 세출사업 편성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③ 세입 : 교육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원배분 불균형 문제[31)]

❑ 교육세의 배분 연혁을 살펴보면, 종래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였으나, 2017년도에 유아교육특별회계 신설시 일부[32)]를 교육세에서 부담하도록 하였고, 2023년도에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시 교육세에서 유특회계 전출분을 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특회계에 배분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시 정부는 남은 교육세 전액(3조)을 고등교육으로 이관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33)]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특회계를 신설하면서 각각 50/100(1.5조)으로 배분하였음.

---

31) 상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검토의견 중 “2) 교육세 세수결손” 참조
32) 3~5세 누리과정 재원 중 유치원분 전출(어린이집 지원분은 국고로 부담)
33) 국회심사와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였음.

< 교육세 재원 배분 >

(단위 : 백만원)

연도	교육세입안(A)	유특회계 교육세분(B)	A-B	
			고특회계 [C=(A-B)/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A-B-C]
2023	4,702,200	1,662,365	1,519,917	1,519,917
2024	6,162,500	1,679,676	2,241,412	2,241,412
2025	6,040,200	1,702,175	2,169,013	2,169,013

주) 예산안 기준으로 정산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자료 : 교육부

❑ 최근 교육세입 예산액을 보면, 24년도 6조 1,625억원, 25년도 예산안 6조 402억원으로 종래('23년도 4.7조[34]) 예산액보다 1조 이상 높게 예산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실제 징수액(5조 초반)은 이에 못미침에 따라 '24년도의 경우 세수결손이 발생할 예정임[35].

< 교육세 예산액 및 결산(징수)액 >

(단위 : 백만원)

	21	22	23	24	25
예산액	5,306,600	4,726,600	4,702,200	6,162,500	6,040,200
징수액	5,103,866	4,644,380	5,151,619	5.2~5.4조 예상*	-

주) 24년도의 경우 정부는 5.4조 예상(기획재정부, 2024 세수 재추계 결과, 9.28.), 국회예산정책처는 5.2조 예상(2024년 상반기 세수부진 및 하반기 재정·경제 여건 점검,9.11.)

❑ 이상과 같은 교육세입 과다 산정 및 세수 결손은 고특회계 신설 이후 예산안 편성(24년도 및 25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34) '23년도 세입예산안은 고특회계 신설 이전인 정부 예산안 편성('22년 6월경)에 산정한 금액임
35) 내국세수의 경우 변동 비율이 7.5% 상당이 반면, 교육세수의 경우 그 2배인 15% 상당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시 교육세(유특회계 제외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등교육)과 고특회계(고등교육)로 100분의 50상당 배분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및 국회의 심사와 달리 결과적으로 고특회계에 재원을 더 배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정산규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만 있음에 따라 세수결손에 따른 감정산은 교육재정교부금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기인함. 이에 따라 24년도 세수결손분(약 1조 예상)은 차차년도인 26년도 예산안편성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규모가 약 1조원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고특회계 지원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편성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분)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교육세 예산액 및 결산(징수)액 >

구분	법률규정	정산여부	26년도 예산규모(예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연도 교육세 세입액 중 유특,교특 제외	정산**필요**	1.5조-1.0조(정산) = **0.5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36]	정산**불요**	**1.5조**

주) 26년도 예산규모는 예산액을 23년도와 같이 각각 1.5조로 상정하고 24년 징수액을 최종 5.2조(예산정책처 예상)로 산정시 1.0조를 교육재정교부금에서만 정산함에 따른 차이임

3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분담 필요성에 따라 2025년말 고특회계 종료시 연장 여부를 포함하여 고등교육 예산편성 및 재원마련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정부(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는 고특회계 운영에 있어서 당초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시 교육세입의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함과 동시에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원배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사학진흥기금[37]

(가) 개 요

❑ 사학진흥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며, 2025년 계획안에는 '24년 3,072억 6,800만원 대비 2,577억 7,100만원(83.9%) 증액된 5,650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38].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 계획안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계획안 (B)	증 감	
			(B-A)	%
□ 총 계	307,268	565,039	257,771	83.9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	120,050	-	순증

주) 세부사업으로 신규 융자사업만 예시
자료 :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구성

❑ 동 기금에는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 1,200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지역·필수의료 유지를 지원하는 내용임.

37) 회계기금간 예산편성 등 총괄적 검토사항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인재정책기획관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4333-353)"사업 검토 참조
38) 사학지원계정 5,641억원, 청산지원계정 9억원

(나) 검토의견 : 기금재정을 고려한 사업수행방식 검토 필요

❑ 사학진흥기금은 「2024년 기금존치평가[39]」에서 높은 차입의존도, 부채 규모 등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조건부존치 평가를 받았음.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금의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이 높아지는 등(과거 5년간 27.22% → 향후 3개년 44.12%) 외부재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사학진흥기금은 2025년도에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편성에 따라 상응한 일반회계 전입금 1,217억원뿐 아니라 기금예수금[40]도 ’24년 991억원 대비 137% 증가된 2,345억원임. 이는 주요사업의 자원을 예수금 등 차입의존으로 수행함에 따라 조건부존치 평가를 받은 사학진흥기금의 재정구조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사업 수행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9)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2024.5.

> 사학진흥기금은 주요 사업의 부족자원을 공자기금 및 주택기금 예수금을 통해 조달하는 기금 구조상 부채 규모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 정원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대상 교육환경 개선이나 기숙사 지원 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장기적으로 안정된 기금의 운영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및 기숙사 지원 등 중기적 사업내용 조정 및 부채상환을 통한 차입의존도 축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존치를 권고함.

40) 공자기금 및 주택기금

< 2025년도 사학진흥기금(사학지원계정) 수입계획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총 계	301,234	564,117	262,883	87.3
○ 일반회계 전입금	-	121,787	121,787	순증
○ 기금 예수금	99,193	235,477	136,284	137.4

자료 :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구성

❑ 사업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액 전입을 통한 융자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41] 사업 형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재정융자사업은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채무의 적절한 관리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42][43].

참고로 메르스, 코로나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을 응급의료기금에 편성하여 집행한 것에 대해, 국회 결산 심사시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융자 사업을 민간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사업(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음.

41)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
42)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43) 만약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경우, 예산액이 1,200억원이 아닌 10억대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

< 2020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 개선	관련 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의료기관 융자 (2833-326)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지적 사항	❍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 일반회계로는 그 특성상 융자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응급의료기금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설치·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		
	시정 요구 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융자사업을 민간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사(일반회계)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편, 신규 편성된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지원(융자)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에 명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음.

교육부는 필수의료 역량 강화지원은 그 밖의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학진흥기금의 법령상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44], 필수 지역의료 제공은 진료영역으로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학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4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45].

❑ 따라서, 교육부는 사학진흥기금의 높은 차입의존도, 부채규모 등 재정구조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사학진흥기금의 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사업(일반회계)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5) 필수의료 제공은 사학기관의 수익성을 가져오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만일, 사립학교(또는 병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사학진흥기금의 목적 내에 해당한다고 보면, 제19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서 교육환경 개선, 교육용 설비 확충, 기숙사 설치운영 등 기금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5) 특별회계 소결

❑ 교육부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상 문제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이 있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설치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한시로 설치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당초 교육세 세입(유특회계 전입금은 제외) 전액을 재원으로 설치하려 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각 1/2씩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특회계 전입으로 배분한 것임.

지특회계(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지방이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됨.

❑ 특별회계는 예산단일주의·총계주의의 예외로서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데, 교육부 소관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수입이 없이 일반회계 전입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구조임.

이는 재정운용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고특회계 및 유특회계의 일몰기한('25년) 도래시 이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46]

가) 제도 개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제1조), 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47]로 구성됨(제3조).[48]

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제

---

46) 문의: 02-6788-5185

47) 교육세입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4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0., 2019. 12. 31.>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3조제1항), 이 중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으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배분되나(제5조의2)[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제5조의3 신설, ’23. 12. 31.)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상향비율(0.8%p)에 해당하는 재원은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됨[50].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되, 필요시 교부시기 조정 가능(통상 3월 학기 시작 전 교부)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수시)
	재난안전관리 (10%)	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년 신설) 전출금 제외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한시적 교부 기준 비교>

종류		교부기준	한시적(2024~2026)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	내국세의 20.79% 중 96.2% + 교육세 일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	내국세의 20.79% 중 3.8%
	국가시책	3%의 60%	3%의 60% (180/380÷47.4%)
	지역현안수요	3%의 30%	3%의 30% (90/380÷23.7%)
	재난안전관리	3%의 10%	3%의 10% (30/380÷7.9%)
	디지털교육혁신	<신설>	0.8%의 100% (80/380÷21.0%)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17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년) 전출금 제외

자료: 직접 작성

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 12. 31.]

[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51]에 따라 교부금도 함께 조절하되, 줄어드는 경우에는 2년간 교부금 조절을 유예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 제90조[52]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은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결산상 차액(세계잉여금)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양(+)의 값(증 정산)일 경우 다음연도 4월경 기획재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 처리하고, 음(-)의 값(감 정산)일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52)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나)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72조 2,794억 3,800만원으로, ‘24년 68조 8,732억 900만원 대비 3조 4,062억 2,900만원(4.9%)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감	
					(B-A)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405,659	68,873,209	72,279,438	3,406,229	4.9
◦ 보통교부금		63,502,570	66,338,469	69,659,572	3,321,103	5.0
◦ 특별교부금		1,903,090	2,534,740	2,619,866	85,126	3.4
	국가시책	1,141,854	1,200,852	1,067,409	△133,443	△11.1
	지역현안	570,927	600,426	743,713	143,287	23.9
	재난안전관리	190,309	200,142	247,905	47,763	23.9
	디지털	-	533,320	560,839	27,519	5.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토대로 재구성

❑ 구체적으로 보통교부금은 69조 6,595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66조 3,384억 6,900만원 대비 3조 3,211억 300만원(5.0%)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2조 6,198억 6,600만원으로 851억 2,600만원(3.4%) 증액되었음.

❑ 특별교부금별로는 국가시책 1조 674억 900만원, 지역현안 7,437억 1,300만원, 재난안전관리 2,479억 500만원, 디지털 5,608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가시책 특교는 전년 대비 1,334억 4,300만원이 감액(△11.1%)된 반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교는 각각 1,432억 8,700만원, 477억 6,300만원이 증액(23.9%)되었고, 디지털 특교는 275억 1,900만원 증액(5.2%) 되었음.

이와 같이 특별교부금별 증감액 규모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2023년도에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예산액 전액을 교부한 반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일부 미교부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정산분을 반영한 것임[53].

<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불용액	결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0,666	75,760,666	65,363,666	10,397,000	65,405,659
보통교부금		73,533,444	73,533,444	63,416,456	10,116,988	63,502,570
특별교부금		2,227,222	2,227,222	1,947,210	280,012	1,903,090
	국가시책	1,336,333	1,336,333	1,336,333	0	1,141,854
	지역현안	668,167	668,167	458,158	210,009	570,927
	재난안전관리	222,722	222,722	152,719	70,003	190,30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53) 이는 법령상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미준수 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시정요구되었음 ('24.10말 기준, 상임위 의결)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502-302)	시정
	지적사항	○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세수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조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확정 금액을 그대로 교부하고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은 감액하여 교부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할 것	

다) 검토의견

(1) 내국세 세수결손

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세수결손 처리 필요

❑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344.1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4.3조원을 감액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24.10.28)[54)55)].

❑ 이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금 예산 66조 3,385억원 중 4조 1,135억원(△6.2)이 감액되어 62조 2,249억원이 최종 예산액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액 예상액 >

(단위: 억원, %)

2024년 예산			감액예상액* (B)	최종 예상교부액 (C)	미교부액 비율(B/A)
확정교부액 (A)	기 교부액 (1~10월)	교부잔액 (11~12월)			
663,385	546,924	116,461	△41,135	622,249	6.2

* 감액추계액은 기재부 보도자료('24.9.26.)의 세수 재추계 결과 및 기재부 발표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24.10.28.)」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내국세 연동비율 등에 따라 추산한 추계액으로, 추후 국세수입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교육부

5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 9. 19.
기획재정부,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2024. 10.28.

55) 교육교부금은 세수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5.4조원 중 20% 수준(약 1.1조원) 교부

❑ 이와 같이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액 대비 감액 문제는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23년도의 경우 세입경정이나 교부 후 정산없이 10.4조원을 불용처리함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시정요구(10월말 현재, 상임위 의결 후 예결위 의결 전)되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세수결손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 시정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502-301), 국가시책특별교부금(1502-302)	시정 및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조 7,606억원 중 10조 3,97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불용 처리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교육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시정) ○ 교육부는 추후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자료 :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 이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 없이 연도 중에 감액 교부를 결정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경정을 하여야 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여야 함.

즉,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56]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가 증감된 경우를 전제로 교부금도 함께 조절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2년간 교부금 조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국세의 감액 추경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취지임.[57]

❑ 대규모 세수결손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지방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56)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4157호, 2016. 5. 29. 개정·시행)

정부의 자체적인 세출감액(불용)은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하는 재량행위로서 그 규모가 큰 경우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이러한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경정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점에서 정부(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58].

②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 대응 필요

❑ 기획재정부는 10월말 현재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금(연내 사용가능액 안정화기금 3.1조원, 시설기금 5.5조원)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개정이유> 교육교부금과 유사한 제도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법률 제12151호, 2014.1.1)이 개정된 바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음.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국세 감액 추경에 의해 교육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지방교부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도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육교부금 감액 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58)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2024. 김춘순, 140~147면

❑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도의 경우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예산액 대비 10.4조원 미교부(통보 '23년 9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보유기금 활용, 기금 전출금 예산 감액과 함께 시설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였음.

구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조 9,449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6,736억원을 활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3조 9천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1조 4,341억원 등 약 2조 9천억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였음.

<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 >

(단위: 억원)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 (자체전출금등)	기금 활용		기금전출금	지출 구조조정	
		안정화기금	시설기금		시설비	기타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14,743

주1) 기재부 재추계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경정예산 증감액 기준

주2) 보통교부금 감액분(△10.4조원)의 경우 부산교육청에서 교육부 통보액(△5,961)보다 적은 금액(△4,500억원)을 세입경정처리하여 당초 감액추계액(△10.5조원)과 상이

주3) 기타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인건비 약 5,000억원, 예비비 약 3,000억원 등

자료 : 교육부

❑ 2024년도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도교육청별로 기금활용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추계액 및 가용재원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확정 교부액	교부액 (9월말)	교부 잔액	기금전출금 편성액	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계	663,385	509,936	153,449	9,314	31,210	55,770
서울	59,141	45,461	13,680	2,120	28	12,396
부산	36,828	28,310	8,518	-	3,219	4,245
대구	30,683	23,586	7,097	-	1,322	6,396
인천	33,543	25,784	7,759	-	1,863	124
광주	19,751	15,182	4,569	-	99	841
대전	19,322	14,853	4,469	-	2,376	547
울산	16,443	12,640	3,803	-	354	1,999
세종	8,167	6,278	1,889	-	1,531	505
경기	160,967	123,734	37,233	7,194	8,191	3,015
강원	30,798	23,674	7,124	-	5,134	4,914
충북	27,791	21,362	6,429	-	1,837	2,521
충남	38,131	29,311	8,820	-	13	26
전북	35,279	27,118	8,161	-	33	4,282
전남	38,351	29,480	8,871	-	990	4,133
경북	45,061	34,638	10,423	-	1,711	5,083
경남	52,714	40,521	12,193	-	2,496	3,074
제주	10,415	8,006	2,409	-	12	1,672

* 기금전출금: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에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에 적립하기 위하여 편성해둔 일종의 여유재원으로, 기금적립금은 주로 정기예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됨

자료: 교육부, 10월 15일 현재 기준

❑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도 및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은[59] 구조적 특성상 세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59) **(세입)** 2023년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중은 6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세출) 2023년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기준 **고정지출(인건비, 학교 전출금 등)의 비중은 약 76.3%**임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60]은 조례로써 사용요건과 연내 사용 한도를 따로 정하고 있어(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85%) 시도교육청별로 적립금 활용 여건에 차이가 있고, 일부 대응 여력이 부족한 교육청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 일몰 가능성[61], 유보통합 관련 추가적인 재원 부담 가능성 등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62].

❑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청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60) 동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운용되는데, 이 중 통합계정은 회계·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야 하는 차입의 개념이므로, 실질적인 여유재원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인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으로 볼 수 있음.

61) 10월 27일 현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제출 상태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몰됨.

62) 해당 내용은 24년 정기국회 중 변동가능성이 있음.
①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고(10.29.), ②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046」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부처간 협의도 진행중임.

③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 필요

❑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오류가 계속되면서('21년 21.7%, '22년 15.3%, '23년 △14.8%, '24년 8.6%)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초과 세수가 문제된 2021년 및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약 10.4조(보통교부금은 10.1조)를 불용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도 보통교부금 5.1조(실제 4.3조)[63]가 예산액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예산 대비 변경액이 '20년 3.3%에서 '21년 13.4%, '22년 25.0%, '23년 △13.8% 등 두자리수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4년의 경우 △7.7%(실제 △6.4[64])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낮지는 않음.

63) 2024.10.28.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수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5.4조원 중 20% 수준(약 1.1조원)을 교부하기로 하였음.
*이하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와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당초 세수 오차와 관련되는 수치인 5.1조를 기준으로 서술함.

64) 각주 56과 같은 사유로 2개 수치로 병행 표기함

<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및 변경(정산)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예산(A)		552,488	553,722	532,300	650,595	735,334	688,732
추가 교부 (변경)	당해연도 추경	-	18,611	63,658	109,854	-	
	전년도 정산금 (세계잉여금 정산)	52,817	319	7,413	52,526	-	
	자금 미교부(불용)	-	-	-	-	△101,170	
	소계(B)	52,817	△18,292	71,071	162,380	△101,170	△53,156*
지방교육재정교부금(A+B)		605,305	535,431	603,371	812,975	634,165	635,577*
본예산 대비 변경액(B/A)(%)		9.6	3.3	13.4	25.0	△13.8	△7.7*

*주) 세수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5.4조원 중 20% 수준(약 1.1조원)을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변경금액은 △42,524억원, 변경액 비중은 △6.4%임(당초 세수추계 오차와 관련되는 수치로 적시함)

자료: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3.9조원 가량 세수 부족(정부 382.4조원, 예정처 378.5조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중기(2024~2028년) 국세수입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17.0조원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65].

65) 이러한 차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향후 5년간 명목 GDP 성장률을 낮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함

< 중기(2024~2028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증가율 ('24~'28)
예산정책처(A)	337.4	378.5	397.3	416.8	439.3	6.8
정부(B)	337.7	382.4	400.4	421.4	444.3	7.1
차이(A-B)	△0.3	△3.9	△3.1	△4.7	△5.0	합계 △1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4.10.31.참조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정부의 경제 전망과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년) >

(단위: 조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예산정책처(A)	63.4	71.5	79.2	83.2	87.8
정부(B)	68.9	72.3	79.7	84.0	88.7
A-B	△5.5	△0.8	△0.5	△0.8	△0.9

* 2024년의 경우 정부 전망치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 24.8.29.), 국회예산정책처(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24.10.31.)

❑ 세수추계의 오차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것일 수 있으나, 과도하게 오차가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세수입의 장기적 추이와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과 예산 및 기금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교육세 세수결손 : 교육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원배분 불균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합산한 금액을 그 재원으로 함[66]. 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는 교육세의 일부는 교육세 세입액에서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규모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

구분	상세	비고(2025년 예산안)
내국세의 20.79% (A)	내국세(목적세 및 종부세 등은 제외) 총액의 20.79%	69조 6,975억원
교육세의 일부 (B)	교육세 세입액 - 유특회계 전출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2조 5,81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A+B)		72조 2,794억원

자료 : 교육부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교육세의 경우는 보통교부금으로만 합산됨[67].

❑ 교육세의 교육재정교부금 합산 연혁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3년부터 교육세(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켰는데[68], 2017년도에 유아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일부[69]를 교육세에서 부담하였고, 2023년도에 고특회계를 신설하면서 교육세에서 유특회계전출분을 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특회계에[70], 그 나머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음.[71][72].

---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유(법률 제3561호, 1982. 4. 3., 일부개정」

69) 3~5세 누리과정 재원 중 유치원분 전출(어린이집 지원분은 국고로 부담)

7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72)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남은 교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의 부담을 고려하여 각각 1/2씩으로 배분하였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서의 교육세 규모 연혁 >

	1972~	1983~	2017~	20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산규모(교육세)	-	교육세 추가(전액)	교육세-유특회계 전출분	교육세-유특회계 전출분-고특회계 전출분
교육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산 비율		100%	약 65%	약 33%
비 고			유특회계 신설 (2025년 일몰)	고특회계 신설 (2025년 일몰)

자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및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국회예산정책처)」

즉,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세는 유아교육, 고등교육 관련 특별회계 신설시 계속 일정부분이 배분되어 왔음.

❑ 교육세는 목적세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금융 및 보험업자 수익금액, 주세액의 일부 등 본세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부가세(surtax)로서[73] 최근 10년간 세입액을 살펴보면 4.6조에서 5.2조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73)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세월별 징수현황

과세표준	세율	22년 징수액 현황(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16,692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12,527
주세액	10%	8,649
개별소비세액	30%	4,044

주) 22년 징수액은 국내분으로 수입분은 4,523억원임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최근 교육세입 예산액을 보면, 24년도 6조 1,625억원, 25년도 예산안 6조 402억원으로 종래 예산액 4.7조보다 1조 이상 높게 예산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실제 징수액(5조 초반)보다도 높은 실정임.

< 교육세 예산액 및 결산(징수)액 >

(단위 : 백만원)

	21	22	23	24	25
예산액	5,306,600	4,726,600	4,702,200	6,162,500	6,040,200
징수액	5,103,866	4,644,380	5,151,619	5.2~5.4조 예상*	-

주) 24년도의 경우 정부는 5.4조 예상(기획재정부, 2024 세수 재추계 결과, 9.28.),
국회예산정책처는 5.2조 예상(2024년 상반기 세수부진 및 하반기 재정·경제 여건 점검,9.11.)

특히, 이러한 세입예산 과다산정 및 세수결손의 가능성은 고특회계 신설한 이후[74]의 예산안 편성(24년도 및 25년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상과 같은 교육세수 결손은 실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규모를 그만큼 적게 산정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구체적으로, 정산규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만 있음에 따라 세수결손에 따른 감정산은 교육재정교부금에 한해서만 이루어짐. 이에 따라 24년도 세수결손분은 차차년도인 26년도 예산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만 정산됨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규모가 약 1조원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세 예산액 및 결산(징수)액 >

구분	법률규정	정산여부	26년도 예산규모(예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연도 교육세 세입액 중 유특,교특 제외	정산**필요**	1.5조−1.0조(정산) = **0.5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75]	정산**불요**	**1.5조**

주) 26년도 예산규모는 예산액을 23년도와 같이 각각 1.5조로 상정하고 24년 징수액을 최종 5.2조(예산정책처 예상)로 산정시 1.0조를 교육재정교부금에서만 정산함에 따른 차이임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뿐 아니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시 교육세(유특회계 제외분)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각각

74) 고특회계는 23년 1월 신설, 23년도 교육세입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시(22년 6월경) 산정함.
7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00분의 50상당 배분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76] 및 국회의 재정에 관한 심사(입법 및 예산안)결과와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음[77].

❑ 따라서, 정부(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내국세 세수결손뿐 아니라 교육세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78].

특히, 이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국회의 심사결과를 세입추계 오류 및 세수결손에 따라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세수추계 등 예산안 편성시 주의가 요청됨.

---

76) 당시 국회 법률안 심사중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원분담을 합의하였음.

77) ① **내국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는 절차상 문제(세입경정 또는 교부후 정산이 아닌 불용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내국세의 20.79%)자체는 문제가 없는 반면, ②**교육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는 금액 자체가 고특회계 신설 당시의 사회적 합의 및 국회의 심의결과(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각각 절반씩 배분)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78) 원칙적으로 교육세수 예산안을 최근년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요청됨. 또한, 세수결손 발생시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특회계 지원분을 정산분만큼 반영하여 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됨.(고특회계법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결손만큼을 반영하여 차년도에 교부금분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이 가능)

(3)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 검토 필요[79]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신설변경 검토 필요

(가) 제도 개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함(제5조).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으로(제2조),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수치로서, 측정항목·단위 등은 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음(제6조)[80].

---

79) 「국회법」제98조의2 제9항에 근거한 검토내용임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모든 재정수입으로서 제7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측정단위"란 지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 양(量)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한다.
4.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보통교부금(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

[보통교부금] = [기준재정수요] - [기준재정수입]

[기준재정수요] : 인건비, 학교운영, 교육행정·시설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금액

*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데, 측정항목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교육기관등 시설비 등임.

< 현행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시행령 별표1) >

측정항목	측정단위
1. 교직원 인건비	교원수, 교원 증원수,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2. 학교운영비	학교경비, 학급경비, 학생경비, 교과교실 운영비, 추가운영비
3. 교육행정비	기관운영비, 지방선거경비
4. 교육복지 지원비	지역간 균형교육비, 계층간 균형교육비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학교교육환경 개선비, 공립학교 신설·이전 증설비,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청사 신설·이전비
6.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자유수강원 지원
8. 고교무상교육 지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9. 재정결함 보전	지방채상환, 민자사업 지급금, 재정안정화 지원

(나) 검토의견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교육부는 최근('24.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으로 "늘봄학교" 및 "교원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지원", "디지털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보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임.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현행 및 개정령 비교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1. 교직원 인건비		
2. 학교운영비		
3. 교육행정비		
4. 교육복지 지원비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6. 유아교육비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7.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라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 재정지원 통일
8. 고교무상교육 지원		
9. 재정결함 보전		
<신 설>	10. 교원연수 운영·지원 - 교원연수운영, 교원역량개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 필요
<신 설>	11. 기초학력 보장지원 - 기초학력 진단, 기초학력보장 지원	기초학력보장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
<신 설>	12. 디지털기반 교육 활성화 - AI디지털교과서, 인프라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위한 구독료, 클라우드 운영비 및 학교의 인프라 조성
<신 설>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보조 - 인건비, 운영비	학평시설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주) 그밖에 기존 측정항목 중 측정단위를 신설, 수정한 내용은 생략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유로, ① AI, 디지털대전환 등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사용 구독료, 운영비 및 학교의 인프라조성, ②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 ③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른 늘봄학교 재정지원 ④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개정령안은 2024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

❑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69조 6,595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준재정수요 80억 5,657억 7,200만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13억 9,756억 7,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66조 5,901억 100만원에 교부유보액 1조 9,758억 1,5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임.

즉,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교부금이 되나, 예산안에는 예산심사과정에서 변동에 대비하여 일정한 교부유보액을 두고 있는 것임.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준재정수입 및 수요액(안) >

(단위 : 백만원, %)

2025 예산안 (A)	기준재정수요* (B)	기준재정수입 (C)	예정교부통지 (D=B-C)	교부유보액** (E)
69,659,572	**80,565,772**	13,975,671	66,590,101	1,975,815

*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국세, 교육세 재원 변동에 대비, 예정교부통지 시점에서 측정할 수 없는 일부 항목은 확정교부 시 반영 예정

자료 : 교육부

❑ 2025년도 기준재정수요액 80조 5,657억 7,200만원을 측정항목별로 구분하면, 교직원 인건비 48조 7,151억 1,700만원(60.5%), 학교운영비 16조 362억 3,100만원(19.9%), 교육기관 시설비 6조 401억 6,200만원(7.5%) 등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교원연수 운영·지원에 5,256억 7,500만원(0.7%), 기초학력 보장 지원 3,453억 3,400만원(0.4%),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3,253억 1,400만원(0.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859억 9,400만원(0.1%) 등 신설 측정항목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되었으며, 종래 방과후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비로 확대하여 1조 5,454억 1,600만원(1.9%)이 반영되었음.

< 2025년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별 산정액 및 비중(안) >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2025	
	산정액(백만원)	구성비율
합계	80,565,772	100.0%
1. 교직원 인건비	48,715,117	60.5%
2. 학교운영비	16,036,231	19.9%
3. 교육행정비	856,632	1.1%
4. 교육복지 지원비	4,173,192	5.2%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6,040,162	7.5%
6. 유아교육비	1,174,329	1.5%
7. 늘봄학교 사업비	1,545,416	1.9%
8. 고교무상교육 지원비	-	0.0%
9. 재정결함보전	601,477	0.7%
10. 교원연수 운영·지원	525,675	0.7%
11. 기초학력 보장 지원	345,334	0.4%
12.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325,314	0.4%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85,994	0.1%
※ 자체노력수요	140,899	0.2%

❑ 또한, 최근 3년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율이 80% 수준에 달하고 있는 등 금액이나 비중의 큰 변동은 없는데, 2025년도에 시행령 개정안 반영으로 신규 측정항목 재정수요 산정 및 늘봄(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증가(25년은 전년대비 2,953억 증액)하였음.

< 최근 3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별 산정액 및 비중 >

(단위 : 백만원, %)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2023		2024		2025	
	산정액	비중	산정액	비중	산정액	비중
합계	89,813,353	100.0%	81,243,585	100.0%	80,565,772	100.0%
1. 교직원 인건비	47,345,104	52.7%	48,045,189	59.1%	48,715,117	60.5%
2. 학교운영비	14,775,703	16.5%	16,231,801	20.0%	16,036,231	19.9%
3. 교육행정비	739,415	0.8%	764,476	0.9%	856,632	1.1%
4. 교육복지 지원비	3,917,427	4.4%	4,207,904	5.2%	4,173,192	5.2%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6,820,816	7.6%	7,891,764	9.7%	6,040,162	7.5%
6. 유아교육비	728,394	0.8%	954,634	1.2%	1,174,329	1.5%
7. 방과후학교 (25년 늘봄)사업비*	739,788	0.8%	1,250,061	1.5%	1,545,416	1.9%
8. 고교무상교육 지원비	985,778	1.1%	1,030,315	1.3%	-	0.0%
9. 재정결함보전	13,469,581	15.0%	564,919	0.7%	601,477	0.7%
10. 교원연수 운영·지원					525,675	0.7%
11. 기초학력 보장 지원					345,334	0.4%
12.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325,314	0.4%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85,994	0.1%
자체노력수요**	291,346	0.3%	302,524	0.4%	140,899	0.2%

* 시행령에 따르면 2025년에는 방과후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비로 확대됨

**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자체노력수요 포함,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률 배분액(1.57%) 및 「세종시특별법」에 따른 세종시 보정액은 각각 작성 제외

② 교원연수 운영 · 지원, 늘봄학교 등 사업별 기준재정수요 포함의 적절성 검토

❑ 교원연수 운영·지원, 디지털교육혁신, 방과후학교 등 늘봄학교, 기초학력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킨 사업)에 대한 현행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로 지방비 또는 특교(국가시책 또는 디지털),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① 교원연수지원은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보통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하고 있고,

② 디지털교육혁신에 대해서는 교사연수, 플랫폼 구축, AIDT 검정심사, 디바이스 구매 등에 대해서 각각 디지털혁신, 국가시책 특교 및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81]

③ 늘봄학교는 국가시책 특교, 방과후학교는 보통교부금과 특교로 각각 지원하고 있고,

④ 기초학력지원은 국가시책 특교를 중심으로 일부 국고와 지방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81) 상세내용은 “③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등 검토”에서 전술하였음.

< 2024년 현재 재정지원 현황(개정령에 따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역	예산액	지원형태
10. 교원연수 운영·지원	교원 연수 지원	-	교육청 자체
11.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900	국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	123,739	**특교(국가시책)**
	기초학력 보장 지원	약 210,000	교육청 자체
12.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교사대상 AI기반 교수학습역량강화 연수 등	381,800	**특교(디지털)**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원, AIDT 플랫폼 구축, 개발 및 활용지원	138,573	**특교(국가시책)**
	AIDT 검정심사 운영지원 등	2,921	국고
	디바이스 구매, 네트워크 확충	775,896	교육청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	교육청 자체
7. 방과후학교 (25년 늘봄학교) 사업비	늘봄학교	212,750	**특교(국가시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100,000	**특교(디지털)**
	방과후학교 사업비	1,250,062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교원연수 운영·지원 등 신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4개)이 신설되었고, 방과후학교 사업비 지원을 늘봄학교 사업비로 확대 개정하게 됨.

구체적으로 첫째, “교원연수 운영·지원”(’25년도 산정액안 5,256억 7,500만원)은 디지털 대전환 및 핵심요구 역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원

연수는 일반연수로서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특별연수를 포함함[82)83)].

방과후학교 사업비는 ’23년 7,397억 8,800만원(0.8%)에서 ’24년 1조 2,500억 6,100만원(1.5%)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25년에는 늘봄학교로 확대하여 1조 5,454억 1,600만원(1.9%)을 재정수요로 산정하고 있음.

더하여 기초학력 보장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기설 운영 지원,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등 일정한 사업성격의 측정항목을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켰음.

한편 고교무상교육지원비는 일정비중(전체 예산의 47.5%)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으나, 국고지원이 일몰 예정임에 따라 2025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84)].

82) 2023년 기준 교원연수 현황

구분		인원(명)	유형	사례
일반연수	직무연수	508,850*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수학습·생활지도·상담 등교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	학교폭력 예방 직무연수, 2022개정교육과정 관련 직무연수 등
	자격연수	23,323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상위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교(원)감 자격연수 교(원)장 자격연수
특별연수		1,696	「교육공무원법」 제 40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특별연수 계획에 따른 연수	학습연구년제 대학원 파견 특별연수 등

* 모든 교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60시간 이상 권고)
(법적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등

83) 다만, 현재는 디지털 특교로 수행(’24년 기준 3,818억원)하고 있는 연수와 구분되나, 디지털 특교 일몰 이후에는 이역시 교원연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84) 다만, 이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심사경과에 따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별 산정액 및 비중 >

(단위 : 백만원, %)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2023		2024		2025	
	산정액	비중	산정액	비중	산정액	비중
7. 방과후학교 사업비* (25년은 늘봄학교 사업비)	739,788	0.8%	1,250,061	1.5%	1,545,416	1.9%
8. 고교무상교육 지원비	985,778	1.1%	1,030,315	1.3%	-	0.0%
10. 교원연수 운영·지원					525,675	0.7%
11. 기초학력 보장 지원					345,334	0.4%
12.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325,314	0.4%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85,994	0.1%

* 시행령에 따르면 2025년에는 방과후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비로 확대됨

❑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재원배분을 하위법령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제3조제1항),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로 산정·교부되는 보통교부금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서 운영되고 있음[85][86].

❑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약 “1.5조원(기존 방과후학교까지 포함시 2.8조)[87]”의 사업비가 종래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88].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법률상 정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 및 특별교부금간의 비율 등을 하위법령을 통해 변경(또는 변경기준 설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둘째, 특정 사업비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키는 기준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인지 여부와 보통교부금 비율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당초 교육재정교부금은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았으나[89], 2008년 지방교육재정

---

85)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으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배분되나(제5조의2),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상향비율(0.8%p)에 해당하는 재원은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됨(제5조의3).

86) 이상과 같이 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목적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23년에는 2조 2,272억원(전체 교부금의 3%), 2024년 2조 5,347억원(3.8%), 2025년 예산안에는 2조 6,198억원(3.8%)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87) ① 교원연수 5,257억 + 기초학력보장지원 3,453억 + 디지털기반교육활성화 지원 3,253억 + 학평 860억 + 늘봄학교 사업비 전년대비 증액분 2,954억 = **15,777억**
② 교원연수 5,257억 + 기초학력보장지원 3,453억 + 디지털기반교육활성화 지원 3,253억 + 학평 860억 + 늘봄학교 사업비 전체 15,454억 = **28,277억**

88) 현재 일부는 지방비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교 감소분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내국세 19.4%→20.0%)하면서 방과후학교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이를 포함시켰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0632호, 2008. 2. 22.,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법률 제814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재원 확충분을 시·도별로 균형 배분하고, 유아교육비 지원사업과 방과 후 학교 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을 구성하는 보통교부금의 본질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인지 여부가 측정항목 포함에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재정 부담등을 고려할 때 2008년의 경우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이면서 일정 사업을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기존 특교 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려는 경우 보통교부금 교부비율(현행 20.79%) 증감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정당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1. 교원인건비 2. 교원인건비 가산금 3. 학교신설비 4. 재정결함보전 5.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

❑ 셋째, 지방재정 중 일반재정(일반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비교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97%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며, 3%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데,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특교 비율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제도임).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비교>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구분	교육청(교육부)	일반지자체(행안부)
내국세 비율	내국세 총액의 20.79%	내국세 총액의 19.24%
보통교부금(세) vs 특별교부금(세)	97:3 (3년 한시 96.2 : 3.8)	97:3
특별교부금 사업간 규모	국가시책 : 지역현안 : 재난안전관리 = 6:3:1 * (3년한시) 디지털혁신 0.8%	국가지방협력 : 지역현안 : 재난안전관리 = 1:4:5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등 4개 항목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고 일반행정비의 경우를 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으로 공무원수, 인구수 등을 측정단위로 산정하고 있음.

<지방교육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1. 일반행정비	가. 인건비	공무원수	명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수	명
	다. 안전관리비	인구수	명
2. 문화환경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수	명
	나. 환경보호비	인구수	명
3. 사회복지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명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명
	다. 아동복지비	아동수	명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명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수	명
4. 지역경제비	가. 농업비	경지면적	천제곱미터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제곱미터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명
	라. 도로관리비	도로면적	천제곱미터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대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면적	천제곱미터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교하면 늘봄학교, 디지털혁신 등 특정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상의 관점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측정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교육)재정은 그 자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총액으로 보통교부금(세)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절한 재정조정 노력,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 장려 의무와 함께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시책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90]. 또한,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의무와 함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91].

❑ 기준재정수요는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율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92], 법령으로 명시된 기준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임[93].

---

90)「지방자치법」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91)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92)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에 특정사업 수요를 추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특수성 및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청됨[94].

③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 등 검토

❑ 교육부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관련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개발 및 활용, AIDT 학습데이터 연계체제 구축, 교사 대상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연수, 학교 디지털인프라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도에 해당 디지털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① 디지털혁신 특별교부금에서 교사대상 AI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연수등에 3,818억원[95], ②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서 AIDT 개발 및 활용 지원에 169억 6,000만원, AIDT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73억원 등을 사용하였으며[96], ③ AIDT 검정심사등에 일부 국고 지원, ④

93) 정부는 이를 일종의 권고로서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은 보장된다고 설명하나, 기준재정수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고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존중해야 할 것이고, 단순한 권고로 볼 경우 시행령등 개정의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임.

94) 구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늘봄학교 및 디지털전환 등 정책사업 확대와 함께 2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 보통교부금 교부비율 유지, 한시적 디지털특교 신설(보통교부금에서 특교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95) **디지털특교** 5,333억원 중 일부(1,515억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디지털새싹_AI기반 학습관리 및 AI 디지털교육지원 515억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000억원)에 교부집행함.

96) **국가시책특교**는 정책사업(2. 디지털교육혁신) 내 단위사업으로 06. 디지털 역량제고, 07 디지털 기반구축, 08.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해당 단위사업 예산 총계는 203,913백만원으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관련 예산(디지털전환담당관실 제출) 138,573백만원과 일부 차이가 있음.

지방비(교육청별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활용)에서 디바이스 구매 등 6,958억원을 분담하여 총계는 1조 2,948억 7,800만원 상당임.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련 예산현황(24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내역
특교	디지털	381,800	- 교사대상 AI기반 교수학습역량강화 연수 등
	국가시책	70,000	-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원
		47,301	- AIDT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16,960	- AIDT 개발 및 활용지원
		(계)134,261	
국고		2,921	- AIDT 검정심사 운영지원, 국립학교 인프라 구축 등
지방비		695,857	- 디바이스 구매
		80,039	- 네트워크 확충
		(계)775,896	
합계 1,294,878			특교 516,061, 국고 2,921, 지방비 775,896

자료 : 교육부

❑ 교육부는 이상과 같이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관련 재정을 디지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및 국고,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관련 재원을 일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켜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측정항목별 구체적인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보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및 클라우드 이용비와 함께 학교의 인프라 구축[97]을 위한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령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2.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가. AI디지털교과서	학생수 및 교원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AI 디지털 교과서 이용 학생 및 교원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AI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 이용 학생 및 교원 수
	나. 인프라 구축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기기의 이용 학생 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 충전설비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자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 취지에는 일응 공감할 수 있으나, 이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를 전제로 재원부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됨.

97) 학생별 기기보급 및 교실당 관련 시설 확충

❑ AI 디지털교과서 책당 가격은 현재 미정으로 AIDT 도입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98].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규모를 추계한 결과 4년간(2025~2028년) 학생용 구독료로 총 4조 7,25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는데[99][100], 이는 교과서 구독료, 연간 구독기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학년 및 교과범위에 따라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디지털교육 혁신에 소요되는 재원은 상기의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뿐 아니라 클라우드 사용, 학생별 교육용 기기 보급 및 교실 인프라 구축, 교원 연수 등 범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교육 혁신과 관련한 재정지원은 그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부담 주체와 정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전담할지, 국고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 또는 디지털혁신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98) 교육부는 국립학교 운영경비 중 “교과서·지도서 구입지원”을 전년 대비 70.7% 증액 편성(‘24년 23억 1,200만원→‘25년 39억 4,700만원)하여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구독료 증액분을 반영하였음.

99) 국회 입법조사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2024.10.17.

100) 디지털교과서 책당 평균 월 구독료를 5,000원(중위)로 설정하여 추계시,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교과서 지원예산은 ’24년 5,546억원 대비 3,921억원(70.7%) 증가한 총 9,467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전제로,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학년 및 교과 범위가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됨을 고려하여 추산하였음.

다만,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보통교부금의 배분비율을 낮추고(내국세의 20.79% 중 0.8%) 그만큼을 디지털혁신 특별교부금으로 한시적으로(24~26년 3년간) 배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참작하여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로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 지원을 포함하는 것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01].

④ 자체노력 반영항목 신중한 운영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02].

자체노력 반영항목으로 학교통폐합 등 지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재정집행 효율화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등 개정을 통해 재정집행 효율화 측정단위로 '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포함시켰음.

---

101) 참고로, 현재 디지털혁신 특별교부금 등 특별교부금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977호)」이 발의되어 있음.

10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측정단위 개정안(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라.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1)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2) 전전년도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 예산의 이월률·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	전년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	전전년도 세출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

자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4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 산정공식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여 10억원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율 산정공식 >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중)으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5호에 따른 금액

7. 라목의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 산정공식란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단위: 억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 실제값	0미만	0이상
적용금액	-10	0

비고: 위 표에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실제값"이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중)으로 산출된 값을 말한다.

자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3

❑ 이는 현금성복지 지출 비중이 중위기준보다 높은 교육청에 대해 일정금액(10억원)을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으로[103], 과도한 현금성복지 지출을 관리하려는 취지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한편, 지방교부세(행정안전부)의 경우도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에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104].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교(현금성복지 지출) >

<table>
<tr><th colspan="2">산정 공식</th></tr>
<tr><th>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th><th>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3]</th></tr>
<tr><td>(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td><td>(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율의 중위값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결산액 비중)으로 산출된 값에 해당하는 비고 제5호에 따른 금액
(단위: 억원)
<table>
<tr><td>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중의 중위값 - 실제값</td><td>0미만</td><td>0이상</td></tr>
<tr><td>적용금액</td><td>−10</td><td>0</td></tr>
</table>
</td></tr>
</table>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와 자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원칙을 지키면서 개정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함.

103) 25년 결산분에 대해 27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반영
10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

참고로, 시도교육청 현금성 복지지원 사업 중 전체 학생대상 지원 사업으로 입학준비금, 학습진로지원금 등 지원이 있음.

< 시도교육청 현금성 복지 지원 사업 >

(단위:백만원)

사업명	'24 예산액	지원 내역
입학준비금	59,384	서울(중·고 교복대금), 인천, 광주, 울산, 충남(다자녀 추가), 전북, 경북(체육물품)
학습진로지원금	78,091	전북, 전남, 제주

주) 기준 : 조례에 의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기반(현금, 페이, 바우처 등) 사업 중 전체 학생 대상 지원 사업(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제외)

⑤ 결론 :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필요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시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05].

또한,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송부(부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105)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신설 2020. 2. 18.>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 행정입법 유형별 국회 통제(국회법 제98조의2)>

구분	판단기준	상임위	본회의/정부
대통령령 (시행령)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 의장 제출	본회의 의결로 처리 정부는 처리여부 검토 후 처리결과 국회 제출
부령 (시행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용 통보	처리계획과 결과 소관 상임위 보고

이는 정부가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통제하려는 취지임.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국회에서 법률로서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간 역할분담 및 특별교부금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행정입법 개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변화 >

현행	⇒	개정(시행령,시행규칙)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디지털,늘봄등 포함_1.5조)
특별교부금 - 국가시책 - 지역현안 - 재난안전 - 디지털(3년)		특별교부금 - 국가시책 - 지역현안 - 재난안전 - 디지털(3년)

(4)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가) 사업개요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

※ 지역 4대 특구 :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자료 :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타 특구와 연계를 강화하며, 교육개혁과제(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를 우선지원하면서, 지역별로 특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106][107].

106)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2023.12.6.

107) 교육부는 ①유아돌봄 ②초중고 ③고교대학연계 ④대학 등 교육단계별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적용 특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는 3개 유형(신청단위별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등)으로 구분되는데[108], 2024년 2월 1차로 31건, 7월 2차로 25건을 지정하였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에서 특구당 30~100억원 상당을 재정지원하여, 8월말 현재 1차 지정지역을 대상으로 1,773억원을 교부하였으며, 2차 지정지역을 대상으로 10월중 추가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24년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교부일	교부 지역	교부액
2024-07-12	1차(11개 지역)	123,881
2024-08-28	1차(10개 지역)	53,503
소계		**177,384**
2024 10월	2차 선정지역	**교부예정**

일례로 초중고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개혁 과제 우선지원을,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지원 강화 등을 예시로 제시함

108) 수도권이 아닌 지역 원칙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음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나) 검토의견

① 입법과 예산 관점에서 검토

❑ 교육발전특구는(당초 명칭은 교육자유특구[109])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110]」에서 기회발전특구[111]와 함께 지방특구로서 규정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 우려,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미제정 등을 이유로 삭제되었음[11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경과[113] >

상임위원회 의결안(대안)	본회의 의결안
제36조(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삭 제>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109)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교육부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2023.11.2.)

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함.

111)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함(시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정)

112) 2023.3.24.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교육위원장 의견」에 따르면, “국가가 교육과정 교원자격, 교과용도서 등의 특례를 둘 수 있는 교육 특구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호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을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일부 교육위원이 발견함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에 반영해 주기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13) 제404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년 3월 27일), 제405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년 4월 26일), 제406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년 5월 25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안에 따른 특구 비교 >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법적근거	균형발전법	삭제
지정권(국가)	산자부장관	교육부장관
예산	지특등, 주로 지원혜택	특교 1,773억원(추가교부예정)
지원	세재지원, 금융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개선 등	
지정현황	18개 지정(8개시도)	1차 31건 / 2차 25건 7개 광역, 83개 기초

❑ 또한, 2024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을 위한 정책연구비 명목으로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신규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이견이 있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었음[114)115)].

<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중 일부 발췌) >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감액	비고
교육부	일반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200	△200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교육부는 2024년도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추진하여 특별교부금으로 1,773억원을 집행하였고(10월중 추가교부집행 예정), 2025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114) 제410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제1차(2023년 11월 13일), 제3차(11월 21일)
115) 당시 쟁점으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고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으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 부대의견[116]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첫째, 동 특구는 근거법률 제정논의시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미제정을 이유로 삭제된 내용으로, 논의경과 등에 비추어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특구는 법정 규제[117]의 예외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서 공교육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국회 등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하여야 함.

참고로, 기회발전특구 등 다른 특구의 경우 근거법률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의 경우도 법률상 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116)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
117)「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타부처 특구 운영 현황>

구분	소관부처	근거법률(예산지원[118])
기회발전특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구	통일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둘째,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범위는 당초 정부 예산안의 내용(정책연구)과 규모(2억원)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시범사업이란 본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시험삼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일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함. 따라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1,773억원 기집행 및 10월 중 추가집행 예정)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119].

1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19)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시범사업을 특별교부금에서 2억원 상당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제기하였음(예산심사소위원장)
제410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제1차(2023년 11월 13일), 속기록 제28면

< 2024년도 예산안 및 집행현황 비교 >

예산안	실제 집행
일반회계 2억원 시범사업 (전액 감액)	특별교부금 1,779억원 집행

또한,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절차(예비심사-종합심사-본회의)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사업은 본회의(수정안)에서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본회의)」에 부대의견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 예비심사 단계의 부대의견이 본회의 감액에 대해 우선한다고 할 수 없음[120].

<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교육자유특구 관련) >

	예비심사(상임위)	종합심사(예결위)	본회의
예산안	△200	미의결	△200
부대의견	있음	-	없음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에 비추어 볼 때[121], 상임위원회는

120) 또한 관련 심사경과에 비추어 볼 때, 예비심사 부대의견이 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임
제410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제3차(2023년 11월 21일), 속기록 제3면

12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후단 생략)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후단 생략)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예비심사로서 “종합심사(또는 본회의)에서 예산의 감액이 있고” 이와 상충되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심사(또는 본회의) 단계에서 부대의견”이 필요함[122].

❑ 교육발전특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으며,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2억원도 전액 감액되었는데, 사업을 상당 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② 특별교부금 제도 관점에서 검토

❑ 교육부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비추어 볼 때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령상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등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123], 대학을 비롯한

122) 일례로 예비심사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시 예결위 또는 본회의에서 최종 증액되지 않은 경우 효과가 없음

12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이하 생략)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은 소관 사무범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124].

그러나, 교육발전특구는 유초등교육뿐 아니라 지자체-대학-지역산업 연계 강화, 지역대학 운영 및 구조개혁을 위한 지원 등 대학 단계에서의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부금(특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고예산 편성이 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125].

<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안) 중 대학부문 >

단계	제 목	내 용
대학	지역 지원 강화	▷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인력양성,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자체-대학-지역산업 연계 강화 ▷ 지역대학 운영 및 구조개혁을 위한 지자체 차원 투자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학교-교육청 선정 지역연계 장학제도 운영

자료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지정 추진계획」, 2023.12.6.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124) 제410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제1차에서 감액의견에 대해 교육부차관은 교육발전특구가 유초중등 교육만 있는게 아니고 지역대학에 대한 모델도 있으므로, 특교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125) 다만, 이역시 특구관련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고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한편, 실제 24년도에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통해 집행한 내역에도 “늘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유보통합모델 시범운영”, “디지털인재 양성” 등 기존 특교(국가시책 특교) 등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을 다수 수행하고 있고, 지역혁신사업(RIS) 연구개발 지원, “성과확산 및 홍보” 등 특교만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있는 실정임.

< 교육발전특구 집행사업 사례(예시[126])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24년		비고
	특교	대응투자	
디지털 인재 양성	11,220	1,250	국가시책 특교 사업과 중복
AI 디지털 융합혁신 플랫폼 구축	1,000	0	
지역특색 늘봄학교 운영	3,206	5,062	
유보통합모델 시범운영	2,628	13,724	
지역혁신사업(RIS) 핵심분야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0	200	특교만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글로컬캠퍼스 한국어학당 운영지원	0	320	
혁신인재 양성 및 지역정착	200	5,535	
성과확산 및 홍보	1,445	855	

자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둘째, 동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의 성격으로 지역현안 특교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27]의 교부대상은 체육관 보수, 교실 개선 등

126) 이는 유형별 1개지역 사례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전체 사업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시·도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임.

반면, 교육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핵심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로, 당초 논의되었던 법안에서도 국가를 설치·운영 주체로 명시하고 있음[128].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운영, 시설비, 인프라 구축, 홍보 등 항목별로 일반적인 지역현안특교의 성격과는 다름.

< 일반적인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육발전특구 비교(예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육발전특구
ㅇㅇ중 체육관전면보수 △△중 교실출입문 및 중연창교체 □□고 문화관 교육환경개선사업 xx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중 체육관 외벽방수 및 옥상방수 공사	지역특색 늘봄학교 운영 구조개편을 통한 특목고 전환 운영 유학생-지역주민 지원거점 마을센터 구축 및 운영 지역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고 모델 구현 MOU 체결국과 문화교류

자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참고로, 교육부 소관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2023년 결산심사시 지역현안특교로 집행하지 않고 국가시책 특교로 집행하도록 시정요구(제도개선)된 바 있음.

128) “제36조①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도 “국가의 교육사무”를 전제로 논의하였음(제405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속기록 19쪽)

<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2023년 결산심사 시정요구(본회의 의결전)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교육국제화특구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국가사업으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집행하는 것은 동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교부금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것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교부금 교부방식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결론적으로 교육발전특구는 현재 법적 근거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특별교부금 제도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제기됨.

< 교육발전특구 사업추진상 문제점 >

법적 근거	예산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한도 초과 가능
특구는 기존 교육제도 예외로서 법적 근거 필요	시범사업으로서 사업범위 적정성(1,773억+)	지역현안특교 성격 검토 필요

❑ 따라서, 교육부는 국회의 입법권 및 예산심사권,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존중하여 시범사업으로서 적정한 수준에서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교육부 신규사업 편성 절차 검토[129)130)]

가) 개 요

❑ 2025년도 교육부 주요(“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① 의과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의대여건 개선 1,432억원이 편성되었고,

② 국가장학금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이 344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교육부 신규사업 예산안 현황(300억원 이상) >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	25년 예산안	비고
의대여건 개선	국립대학 시설확충	1,432	의대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44	장학금

❑ 예산·기금 등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국가재정법」은 신규 대규모 재정사업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비용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 또는 추진방식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129) 개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로 소관 실국에서 검토하고, 이하에서는 예산편성상 절차에 대해서만 논의함
130) 문의: 02-6788-5185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으로[131], 타당성조사 대상과 관련한 제도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음[132].

또한, 10개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는데, 제10호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타 면제 대상 사업과 달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면제 결정 시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131)「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지능정보화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32) (2008년) 순수 R&D 사업 및 사회복지, 교육 등 기타 재정부분으로 대상 범위 확대
(2014년) 조사대상 및 면제대상 법률 규정,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 국회 제출
(2020년) 면제시 사업적정성 평가 실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적정성 평가를 하여야 함[133]. 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의 경우도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134], 면제 사업일지라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이를 의결로 요구할 수 있음.

❑ 한편,「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사업을 신설·변경시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원의 규모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전달체계 및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사회

133)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134)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장위원회 사무국)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135].

이는 교육, 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136] 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대됨에 따라, 여러 사업간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타당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타 중장기 사회보장사업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수혜자에 대한 효과성을 높임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국가(중앙행정기관)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137]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4월말까지 협의요청이 있어야 하고[138]

---

135)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13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37) 협의조정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국회 예산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검토함.

138)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151쪽

국회에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이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되어야 함.

또한,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139] 등 다양한 이행강제 방안[140]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상 국가사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제기됨.[141]

---

* 4월 30일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9)「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40) 범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예산집행지침),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행자부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으로 반영

141) 일례로 협의·조정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지출전 협의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수시배정함.

나) 검토의견: 교육부 신규사업 예산안 심사시 법률에 따른 재정절차를 고려할 필요

(1) 의대여건 개선 관련

❑ 의대여건 개선 사업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5년 신규로 1,432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국립대학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거점국립대 9개교 의대 확충 예산 및 환경개선을 내용으로 함.

< 2025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의대여건 개선)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설 확충	994,077	1,005,309	1,092,909	87,600	8.7
○ 의대여건개선	-	-	143,200	143,200	순증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142].

14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부는 의대여건 개선사업 추진시 “경북대학교 의대신관 개축”사업에 대해서만 총 사업비가 873.6억원으로 500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았으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함)에 해당함을 이유로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음[143].

<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

연번	소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22	교육부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 (사업목적) 의대정원 확충에 따른 적정 의대학습 환경 적기 조성 □ (기대효과) 의대 교육 선진화, 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 (면제사유) 제10호 법령에 따라 추진

자료 : 국회제출 2025년도 예산안

❑ 의대여건 개선 사업은 큰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및 이에 대응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예산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3)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① 국가재정법상 사업적정성평가 등 미반영(경북대학교)

❑ “경북대학교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25년 예산안 27억원, 총사업비 873.6억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제10호 법령)하였으나,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적정성 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예산을 제출하였음(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144].

❑ 사업적정성 평가는 당초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나, 정부의 제10호 사유로 인한 타당성조사 면제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수행이 방만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 국가재정법에 신설되었음[145]. 이에 따라 제10호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적정성 평가가 의무화되었음[146].

---

144)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1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753

146)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안별로 다르나 평균 19개월(20년 기준)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업적정성평가는 이보다 간이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취지임.

❑ 그러나, 정부는 경북대학교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후, 사업적정성평가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직전('24.8.28.)에 검토를 의뢰하였는데[147], 사업적정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 법률을 위반하였음. 또한,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월 중순에 보고하였음[148].

< 경북대 의대신관 등 증개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상 절차 진행 개요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정정성평가	예산안 제출	상임위 보고
면제	'24.8.28. 적정성 검토 의뢰 (기재부 → KDI)	국회 제출(9.2.)	'24.10.16.
제10호 근거	실시중	사업적정성평가 예산안 미반영	제출(지체)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시(2018년) 유사 규모의 사업(국비 300~900억원, 총사업비 500억~1,500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상당수준(33%, 50개 사업 중 17개 사업 2

147) '24.8.28.~'25.2.28(6개월) 예정

148)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생 략) 10. (전단 생략)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2,059억원)의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AHP[149] 0.5 이하)으로 나타났음[150].

< 국비 300~900억(총사업비 500억~1,500억)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단위: 억원, 개)

예타 완료 사업 수	예타 통과		예타 미통과	
	사업 수	총사업비(국비)	사업 수	총사업비(국비)
50	33	45,457 (25,730)	17	22,059 (13,258)

주: 1. 최근 5년(2014~2018년) 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 예타가 완료되어 결과가 도출된 사업임.
2. 총사업비 및 국비는 요구액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사업적정성평가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편성 과정에서 재정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해야 하나, 지출전 협의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적정성평가를 이행할 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할 수 있고 필요시 국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음.

149)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란 종합평가법으로서,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순위화시키는 기법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미시행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함. (기획재정부)

1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8.7. 31면

② 국가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검토(충북대 등)

❑ 정부는 국립대학 시설확충 중 의대여건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북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업예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음.

< 국립대학별 의대여건개선 사업 예산안 및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대학	구분	25년 예산안	총사업비	비고
경북대	경북대학교 의대신관 개축	27	873.6	국고 100%
충남대	충남대 의대신관	146	484.5	
	충남대 세종신관	145	484.5	
	소계	291	**969**	
전북대	전북대 의대5호관	142	473.2	
전남대	전남대 의생명교육연구관 1호관	142	473.2	
	전남대 의생명교육연구관 2호관	8	334.3	
	소계	150	**807.5**	
부산대	부산대 신축 1호관	142	473.2	
	부산대 신축 2호관	7	334.3	
	소계	149	**807.5**	
강원대	강원대 의학3-2호관	10	473.2	
	강원대 의학3-1호관	126	420.5	
	소계	136	**893.7**	
충북대	충북대 의대 4호관	142	473.2	
	충북대 의대 5호관	10	473.2	
	충북대 의대 6호관	10	473.2	
	소계	162	**1,419.6**	
경상국립대	경상국립대 제2의학복합관	142	473.2	
	경상국립대 제3의학복합관	10	473.2	
	경상국립대 제4의학복합관	8	388.7	
	소계	160	**1,335.1**	
제주대	제주대 의대3호관	115	382.2	

❑ 구체적으로 충북대의 경우 충북대 의대여건 개선 사업의 총 사업비는 1,419억원이나, 의대 4호관, 5호관, 6호관을 각각 다른 사업으로 보아 총 사업비가 473억원으로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지 않았음[151].

이는 총사업비가 1,335억원인 경상국립대(제2, 제3, 제4 의학복합관), 969억원인 충남대(의대신관, 세종신관), 893억원인 강원대(의학 3-1, 3-2호관), 807억원인 전남대(의생명교육연구관 1, 2호관)와 부산대(신축 1호관, 2호관)에도 공통적인 사항임.

❑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지역 또는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하고[152],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를 고려

151) 특히 충북대학교의 경우 신축 예정인 3개 동이 인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52) < 202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

사업지역 기준	사업내용 기준
- 계룡 간부숙소 BTL사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건설사업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사업 - 동해시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김해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 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청도군 공공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고성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 순천시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민간투자사업 -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이설확장 -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 장성 교육시설(2차) BTL사업 -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 전업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 AI 혁신펀드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

할 때, 운용지침에 따른 고려사항[153] 및 평가방법[154] 등도 기본적으로 특정 건물이 아닌 사업을 대상으로 함을 예정하고 있음.

❑ 정부는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건설사업 유형으로 “건물 단위”로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특히, 의대여건 개선사업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라 운영중인 국립대학에 학생 증원으로 필요한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용도별[155], 사업추진 시기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관리를 위해 발주방식, 사업기간, 부지위치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신설	

자료: 2025년 예산안 첨부서류

153) 사업계획 및 필요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요인 등과 함께 사업 예정부지, 관련 국토이용계획 등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을 고려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 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안) :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
2. 사업 추진의 필요성
3. 국고 지원의 적합성
4.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정책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사업특 화항목 등
6.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② 그 밖에 사업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154)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경제사회 환경 분석 등인 점에서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개별 건물 단위로 이를 고려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제43조(경제성 분석), 제44조(정책성 분석), 제45조(지역균형발전 분석), 제46조(기술성 분석),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제4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

155) 학생기본시설, 학생지원·복지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기본시설, 연구부속시설 등

❑ 기존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특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관리보다 고려사항 및 평가방법 등이 포괄적이고, 상황에 따라 개별 건물을 단위로 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일례로 충북대 등 동일 부지내 인접한 3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156].

또한, 개별 건물당 사업비가 500억원에 소폭 못미치는 금액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의대 정원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건물의 규모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임.

❑ 따라서, 의대여건 개선을 위한 충북대 등 의대시설 확충 사업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6) 3개 건물이 아니라 좀 더 큰 규모의 2개 건물 신축, 동일 규모로 건물 신축이 아닌 1개 동은 보다 큰 규모로 신축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상정해 볼 수 있음.

③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 필요(전북대 등 9개교 전체)

❑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년도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취지임[157].

총사업비의 경우 예산안에 사업별 개요, 총사업비 증감내역과 사유, 해당 연도까지 연부액 및 이후 지출예정액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158].

---

157)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158)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또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를 충족시킨 경우 등의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의대여건 개선 사업에서 대부분의 신설예정 의대건물의 총사업비(국고지원 100%)는 473.2억원(9개 건물) 또는 484.5억원(2개 건물)임.

따라서, 개별 건물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도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건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이므로,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함.

또한, 500억원에 소폭 못미치는 금액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2025년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에 따르면, ’23년말 기준 280조 9,392억 9,400만원에서 ’24년 6월말 기준 292조 3,149억 300만원으로 11조 3,756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부 소관의 경우도 2조 7,244억 2,400만원에서 3조 846억 200만원으로 3,60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 >

소 관	총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건 수	2023년말(A)	2024.6월말(B)	증감(B-A)
합계	971	280,939,294	292,314,903	11,375,609
교육부	51	2,724,424	3,084,602	360,178

자료 : 국회 제출 예산안 첨부서류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의대건물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전북대(473.2억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의대건물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에서 소폭 못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비 증가의 경우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이 됨. 또한, 사업비 증가가 500억에 못미치는 경우에도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국회가 의결로 이를 요구시 타당성재조사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정부는 의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재정운용의 낭비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① 국가재정법 관련

❑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5년 신규로 344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교육분야의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해당됨(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 구체적으로 장학금 사업은 사업지원 대상 및 정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도 5년간 최소 1,720억원(=5년 x 연간 344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임.

<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맞춤형 국가장학금	4,446,000	4,720,453	5,313,379	592,926	12.6
○ 국가장학금 지원	3,901,796	4,097,498	4,485,299	387,801	9.4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	**34,435**	-	**신설**

주) 기타 내역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운영비 등은 생략

❑ 정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규 세부사업이 아님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국가재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함.

첫째,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실무상 정부의 사업 편성 방식에 따라(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신규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B/C)등을 고려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에 따라 지출분야·대상·정도 등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됨.

동 사업은 ①사업분야가 주거비 지급으로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이 교육비 지급인 것과 상이하고, ②사업대상도 소득분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기초·차상위 vs 기초·차상위 및 1~8구간), 본거주지와 다른 시도로 진학하거나 본래 거주지에서 대학까지 통학이 사실상 어려울 것(대중교통 기준 2시간 거리)을 별도의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등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이 다르며, ③지원내용도 주거비 월 20만원(연 8개월, 계절학기 수강시 방학중 지원)으로 국가장학금이 소득기준에 따라 학자금의 전액에서 일부인 점과도 상이한 등 사실상 별도의 사업으로서 타당성평가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

<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안 >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구분	교육비	주거비
사업대상	기초·차상위 + 1~8구간(Ⅰ유형)	①기초 및 차상위 ②본거주지와 다른 시도로 진학 or 통학이 어려운(대중교통 2시간)
지원내용	학자금 (소득기준별 차이)	월 20만원(주거비 용도 한정) 연 8개월(방학제외)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장학금 사업은 학자금과 생활비의 지원으로서 생활비 성격으로서 다른 사업으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를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159]의 경우도 사업분야 및 대상, 지원정도가 각각 다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 교육/주거급여 비교 >

	교육급여	주거급여
구분	교육비	주거비
사업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등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급
근거법률(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교육부)	주거급여법(국토교통부)

15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둘째, 현행 규정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이 있는 경우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60]. 주거안정장학금은 교육비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의 다른 내역사업들과 독립적인 사업으로 해당 규정상 단서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됨. 유사한 사례로 2025년 예산안의 교육부 소관 사업중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임. 즉, 실무적인 정부의 예산 편성방식으로 법률상 재정운영 제도를 우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②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신설변경 사회서비스 사업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신설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보건복지부)에 신설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16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협의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161].

❑ 사회보장위원회는 동 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함을 근거로 협의제외대상으로 해석하였으나, 신설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마련 등 면밀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유사사업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162].

❑ 이상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생(청년)에 대하여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유사중복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타 중장기 사회보장사업 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우려가 있음.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국토교통부)의 ①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②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사업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연령 및 소

161)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

<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외)대상 예시 >

(예시3)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학비, 교육비 등) 지원 사업 - (협의대상) 특정 대상 및 용도를 지정해 장학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 (협의제외대상)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장학재단(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반복적·정기적 성격의 경상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장학재단 등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

162) 2022년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에서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소득산정시 부모소득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신설과 관련하여 동 신설협의를 거친 사례도 있음

득/재산기준, 지원내용 등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청년 주거지원) >

지자체	사업명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인천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만 35~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만 18~45세 무주택자 근로유형/소득 기준	매월 20만원씩 전월세 주거비 지원
경북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만 19~39세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근로자 소득/재산/주택 기준	월 최대 10만원 월세 지원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 소득/주택 기준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전북 남원시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만 19~45세 무주택자 소득/주택 기준	월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전북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만 19~45세 무주택자 소득/주택 기준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4년 지원
전북 순창군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졸업/주택 기준	관내 졸업 최종학력별 학기당 100~200만원 지원
울산시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 소득/주택 기준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4년 지원
전북 익산군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재산/주택 기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경기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무주택 월세가구 소득/재산/주택 기준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전북 김제시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학 재학 중인 기숙사생 및 1인가구	학기당 30만원 지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만 19세~39세 청년 소득/주택 기준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2~11월) 지원
경기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소득/주택 기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전남 강진군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만 19~45세 무주택 청년가구 전입/주택 기준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전북 진안군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만 18~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소득/주택 기준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 주거비 지원
대전시	대전 청년 월세지원	만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및 청년부부 소득/주택 기준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전남 해남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만 18~49세 무주택자 소득/재산/주택 기준	월 10만원씩 주거비 지원

주) 교육부는 복지서비스 통합포털 “복지로”에서 확인가능한 현행 지자체 운영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으로, 복지로에 미등록한 경우도 존재하는 등 지자체 운영 사업 현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

자료 : 교육부

< 청년 주거지원 사업(국토부)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8% 이하)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교육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제시하고 있는데[163], 단순히 사후적 중복방지뿐 아니라 사업간 구체적인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연계방안 마련 등 사업설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164].

163)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25년 사업 시행 전 각 지자체에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학생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중복지원금 반환서약서을 함께 징구하여 추후 지자체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 확인 시 지원금 반환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164) 일례로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동 사업보다 지원정도가 높은데,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대학생등에 대한 주건안정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더라도 동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수 있음.

(3) 소 결

❑ 의대여건 개선 관련 사업 및 주거안정장학금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별론으로,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함.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정서류로는 '24년 8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165]」에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확대" 등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음.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중 교육분야 >

(교육)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분야 인재양성, **의대 교육여건 개선 적극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

❑ 해당 사업들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검토가 요청됨. 예산 편성시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은 면밀한 준비를 위한 취지이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166].

---

165)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6)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지출전 협의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방안 등이 가능함.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검토[167]

가) 개 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168]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부터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제27조 및 제68조의3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작성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169].

❑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따르면, 총 311개 사업(전년대비 17개, 5.8% 증가) 12조 526억원(감축예산[170] 기준 10조 2,828억원)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음.

---

167) 문의: 02-6788-5185

16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69)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70) 세부사업 내 여러 내역사업 중에서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하는 내역사업기준 예산 규모임

<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억원, 개)

구 분	'24년(A)	'25년(B)	증감(B-A)	증감률(%)
예 산 (감축예산)	108,776 (100,887)	120,526 (102,828)	11,750 (1,941)	10.8 (1.9)
사업 수	294	311	17	5.8

자료 :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이 중 교육부 소관 사업은 노후학교 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는 내용(에너지 절감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그린스마트스쿨조성”사업 1건(2,886억원)임.

<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중 교육부 소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CO_2eq)

회 계	구 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	비고
		'24년 (A)	'25년(안)						
			전체(B)	감축	'25년	'30년까지 누적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358,484	288,601	288,601	-	-	△69,883	△19.5	

자료 :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나) 검토의견 : 내실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운영 필요

❑ 첫째, 교육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도 동 예산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은 1개로, 부처마다 사업별 성격의 차이는 있겠으나 교육부 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15.5%)을 고려할 때 적다고(2.5%) 판단됨.

< 전부처 및 교육부 예산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비교 >

구 분	전부처(A)	교육부(B)	비율(%)
예산(조원)	677.4	104.8	15.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억원)	120,526	2,886	2.5

❑ 특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사업”은 ’24년 160억 4,800만원 대비 89억 5,200만원(55.8%) 증액된 2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7년까지 전기 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학교시설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관리를 위한 학교맞춤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추진을 내용으로 함.

< 2025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5,309	1,092,909	87,600	8.7
○ 정책사업	116,828	93,493	△23,335	△19.9
- 탄소중립	16,048	25,000	8,952	55.8%

* 자료 :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구성

동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온실가스 감축[171]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가 동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용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의 효과, 목표 등을 재정운용에 반영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172].

❑ 둘째,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디지털교과서 사용 등을 통한 학교의 전력사용량 증가 등을 분석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교육부는 학교교실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71)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타 목적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을 의미함(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3쪽)

172) 그밖에도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25년 예산안 335억 6,000만원) 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으로 검토할 만한 사업이 상당수 있음.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련 예산현황(24년) >

구 분	예산내역(단위 : 백만원)
국고	- AIDT 검정심사 운영지원(886) - 국립학교 인프라 구축(1,635)
특교	- AIDT 개발 및 활용지원(16,960) -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연계체제 구축(47,301) -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원(70,000) - 교사대상 AI기반 교수학습역량강화 연수 등(381,800)
지방비	- 디바이스 구매(695,857) - 네트워크 확충(80,039)

* 자료 :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으로 증가하는 초중고 전력사용량은 스마트기기의 시간당 전력사용량(약 15Wh)을 기준으로 하루 2시간씩 수업에 활용 시 10개 학급 기준 약 100~200kWh[173]의 추가 전력 사용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온실가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셋째, 교육부 예산의 상당부분(25년 예산안 기준 69%)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고, 동 교부금은 일반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지방교육재정(24년 기준 92.5조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173) 학생용 디바이스의 사용 전력량은 디바이스 유형(패드형, 노트북형)에 따라 다르며, 만일 10개반 약 250명이 패드형(갤럭시탭, 아이패드 등)으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하루 2시간 주 5일(월 20일) 사용한다면, 1개교의 월간 추가 사용 예상 전력량은 100kWh가 됨(250명×10Wh×2시간×20일). 노트북을 활용할 경우는 한 학교 사용 예상 전력량은 200kWh 추가됨.(출처: 디바이스 충전환경 개선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진행 중)

<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예산 비교 >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지방교육재정	92.5조	미정
교육재정교부금(A)	68.9조	72.3조
교육부 예산(B)	95.8조	104.8조
(교육부 예산 내 비중)A/B	(72%)	(69%)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등 교육 분야 재정운용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방재정 및 지방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참고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후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등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임[174].

17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4425, 2024.9.3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4424, 2024.9.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4426, 2024.9.30.

5) 총괄적 검토의견

❑ 교육부의 2025년도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국가재정법」등 재정 관련 법률상 제도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

특별회계 및 기금등 운영에 있어서 회계기금 설치목적 및 지출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대부분의 회계기금에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신규사업 편성시 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적정성 평가, 신규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등 재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비용 대비 효과 등 타당성 및 유사사업과의 중복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음.

❑ 둘째, 국회의 입법권 및 예산심사권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거나 재정관련 행정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삭제) 및 예산심사(전액 감액)와 달리 시범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추진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내국세수 결손뿐 아니라 교육세수 결손으로 인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 예산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예상됨. 더하여 디지털교육혁신, 늘봄학교 등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개정은 현행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미흡함.

유특회계 및 고특회계는 한시회계로서 25년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고특회계는 특별한 재원없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유특회계에 대해서는 재원분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지특회계에 이관편성한 어린이집 관련 사업은 지방이양 검토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학진흥기금은 재정구조의 문제로 제한적 존치 판정을 받았음. 더하여,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부 예산안의 총괄적 문제점 >

구분	관련 지적사항	총괄보고서 목차
국가재정법 등 법률	- 특별회계/기금 설치목적 및 지출근거 미부합	1) (1) (3)
	- 국가재정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고려	3)
국회 입법 및 예산심사권	- 국회의 입법 및 예산심사권 고려(교육발전특구)	2) (4)
	- 교육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 부적정 배분	2) (2)
	- 행정입법의 법률위반 검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신설변경)	2) (3)
중장기 시각	- 지특회계 이관(지방이양 가능)	1) (1)
	- 유특·고특회계 일몰 - 고특회계 확대	1) (2), (3)
	- 사학진흥기금 운영	1) (4)
	-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형식적 운영	4)

❑ 이상과 같은 교육부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상 문제와 함께 정책적 필요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인함.

❑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서 적정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유특회계 및 고특회계, 지특회계 등 특별회계로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합리적인 세수추계의 미흡등으로 세수 결손(내국세수 및 교육세수)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별교부금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남용하여 편성·심의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재정운용이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재정법령 등 법률을 우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2025년도 신규사업인 의대여건개선과 관련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법령상 요구되는 사업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재정운용의 관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음.

❑ 교육예산은 이른바 백년지대계라고 명명하는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가재정법 등 재정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국회의 예산심사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운용에 있어서 충분한 중장기적인 시각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상 의무지출

천우정 행정학박사, 국회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2024.10.28.)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5.4조원 중 20% 수준(약 1.1조원)을 교부하기로 하여[175], 4.3조원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배정 유보 및 집행 보류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헌법 제31조 제2항)으로 하고 있다.

헌법의 동 조항으로 인해 의무교육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지출이다. 의무교육의 재원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배정 유보 및 집행 보류권으로 헌법상의 의무지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불용처리한 것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법률이 헌법을 이길 수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확정되는 지출”로, 재량지출은 “예산심의에 의해 결정되는 지출”로 정의하고 있다.[176]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4호의2는 의무지출에 대해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

175) 한편, 지방교부세는 세수재추계에 따라 ‘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4.3조원 중 50% 수준(약 2.1조원)을 교부하기로 하였음.

176) 국회예산정책처 (2010.7).「2009회계연도 결산분석 가이드라인」61p., 결산분석시리즈 1.

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7].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는 예산의 예산총칙에는 의무지출 항목들이 부족할 경우 다른 항목들로부터 이용 및 전용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한,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에 대해 헌법 제54조 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敎育)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에 대해 의무지출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불용처리하게 되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 의무지출은 현 연도에 세수가 부족해서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재원이 마련되는 다음 해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헌법상 의무지출이므로 국가재정법에 의해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원이 마련되는 다음 해 또는 다음다음 해까지 부족분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경제 내생변수인 인적자본에 투자를 늘리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도 시사

177)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법률상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가진 자원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정부 수립 이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 해왔고 인적자원을 통해 경제가 성장했다. 의무교육을 헌법상 의무지출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난 현실과 미래 성장전략을 잘 반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재정법상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배정 유보 및 집행 보류권에 의해 2023 회계연도 10.4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처리한 것은 의무교육 즉 그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헌법상 의무지출 규정으로 명시한 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향후 당초 예산액 대비 미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산과 내국세 감액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들을 헌법 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17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4331-300) 사업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지원,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재외동포 어린이 대상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등을 통한 재외동포 교육 진흥사업, 교육전문성을 갖춘 재외교육기관장 및 우수교직원 선발·파견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 서비스 질 제고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3억 7,500만원(△9.2%)이 감액된 82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178) 문의: 02-6788-5187

< 2025년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78,417	91,153	82,778	△8,375	△9.2
○ 재외교육기관 지원	71,555	83,295	74,920	△8,375	△10.1
○ 교과서 및 교재개발 보급	5,839	6,813	6,813	-	-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935	935	935	-	-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8	110	110	-	-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재외한국학교 운영비 증액 및 사업비 전액 국고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재외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재외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해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운영비 감액과 시설비 수요 감소[179]로 전년대비 51억 4,000만원 감액(△8.9%)된 528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외교육기관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예산(A)	2025예산안(B)	증 감	
			(B-A)	%
□ 재외교육기관 지원	83,295	74,920	△8,375	△10.1

179) 시설비의 경우 시설비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시설비 총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함.

< 2025년도 재외한국학교 시설비 수요조사 결과 >

순	학교명	사업내용	시설비 총액 (USD)	국고지원 비율(%)	국고지원액	
					USD	백만원
1	연변	경비실 신축 및 정문 및 진입로 공사	135,537	50%	67,769	93

자료 :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구 분	2024예산(A)	2025예산안(B)	증 감	
			(B-A)	%
○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57,951	52,811	△5,140	△8.9
- 파견공무원 인건비	3,463	3,548	85	2.5
- 현지채용 인건비	25,055	25,552	497	2.0
- 운영비	18,935	16,392	△2,543	△13.4
- 저소득층 학생 학비지원	1,747	1,790	43	2.5
-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830	850	20	2.4
- 교수학습자료 지원	1,174	1,202	28	2.4
- 한국학교 NEIS 시스템 운영 지원	102	102	-	-
- 임차료	1,162	1,266	104	9.0
- 대수선비	1,230	2,016	786	63.9
- 시설비	4,253	93	△4,160	△97.8

자료 : 교육부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80]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181]에 따른 학교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국외에 설립을 승인한 정규학교로서 16개국에 34개교[182]가 설치되었음.

---

18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18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182) **< 재외한국학교 현황(16개국 34개교) >**

구분	계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	기타
학교수	34	4	13	2	2	2	11*

※ 자료: 교육부

* 자카르타, 싱가포르, 방콕, 필리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모스크바, 테헤란, 카이로, 말레이시아, 프놈펜

❑ 교육부는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①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유치원 포함)들에게 연간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② 다양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③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 증·개축, 노후 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④ 한국학교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현지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며, ⑤ 한국학교 나이스(NEIS)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의 국·내외 연수실시,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운영비 감액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1억 4,000만원 감액(△8.9%)된 528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비의 경우 전년대비 25억 4,300만원 감액(△13.4%)되어 16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는 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경직성 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감액 지원시 예산 절감이 어렵고[183], 한국학교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83) (교육부 제공) 학교운영비 비목 구성: 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세금·공과금, 소모품비 등), 교육운영비 (도서관운영비 등 학생 교육활동 지원 경비), 학생복지비(장학금, 동아리지원비 등) 등

❑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한국학교의 학생 수 감소[184]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국고 지원 감액시 기관 운영을 위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나, 학부모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학교 운영비 증액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재외국민 자녀에게 양질의 학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85]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186]에 따라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외국민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학교 운영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84) (교육부 제공) ('21) 13,791명 → ('22) 13,619명 → ('23) 13,494명 → ('24) 13,337명

18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186)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또한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187], 교육부는 재외한국학교 사업에 대하여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87)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참고

재외한국학교 현황('24.4.1.기준, 16개국 34개교)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동경한국학교	'62.03.16		718(18)	348(9)	346(9)	1,412(36)		39	17	17	1	2	76
교토국제학교	'61.05.11			22(3)	137(9)	159(12)			5	13	1		19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153(6)	67(3)	70(4)	290(13)		19	8	9	1	2	39
건국한국학교	'76.10.01	58(4)	145(6)	60(3)	129(8)	392(21)	9	11	12	20	1	4	57
소계(4개교)		**58(4)**	**1,016(30)**	**497(18)**	**682(30)**	**2,253(82)**	**9**	**69**	**42**	**59**	4	**8**	**191**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27(2)	165(8)	154(7)	241(11)	587(28)	2	21	15	29	1		68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30(3)	154(8)	99(6)	133(6)	416(23)	4	19		32	1	1	57
상해한국학교	'99.07.06		299(14)	255(10)	329(14)	883(38)		31	5	51	1	2	90
무석한국학교	'08.03.01	42(3)	161(8)	112(6)	136(6)	451(23)	3	13		34	1	1	52
소주한국학교	'13.02.22	12(1)	131(6)	99(6)	128(6)	370(19)	1	11	6	16	1		35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5(2)	45(6)	25(3)	21(3)	106(14)	4	11		11	1		27
옌타이한국국제학교	'02.09.01		102(6)	67(3)	102(5)	271(14)		9	3	16	1		29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37(2)	244(10)	241(9)	220(9)	742(30)	3	20	2	34	1		60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130(6)	73(3)	91(3)	294(12)		12	8	9	1		30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15(1)	61(6)	53(3)	76(3)	205(13)	1	11	10	10	1		33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41(6)	25(3)	25(3)	91(12)		10	5	9	1		25
연변한국국제학교	'98.02.19	5(1)	38(6)	14(3)	25(3)	82(13)	1	8	9	6	1		25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133(6)	110(6)	139(7)	382(19)		13	2	28	1		44
소계(13개교)		**183(15)**	**1,704(96)**	**1,327(68)**	**1,666(79)**	**4,880(258)**	**19**	**189**	**65**	**285**	**13**	**4**	**575**
타이뻬이한국학교	'61.10.01	5(1)	44(5)			49(6)	1	4			1		6
까오슝한국국제학교	'61.01.28	9(1)	33(6)			42(7)	2	3			1		6
소계(2개교)		**14(2)**	**77(11)**			**91(13)**	**3**	**7**			2		**12**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063(32)	613(18)	514(15)	2,190(65)		47	30	31	1	2	111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40(2)	997(30)	503(15)	488(15)	2,028(62)	3	66	34	34	1	2	140
소계(2개교)		**40(2)**	**2,060(62)**	**1,116(33)**	**1,002(30)**	**4,218(127)**	**3**	**113**	**64**	**65**	2	**4**	**251**
젯다한국학교	'76.09.18		6(4)			6(4)		3			1		4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17(3)			17(3)		4			1		5
소계(2개교)			**23(7)**			**23(7)**		**7**			2		**9**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215(12)	248(9)	333(13)	796(34)		25	23	24	1	2	75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35(3)	147(6)	63(3)	90(3)	335(15)	5	17	6	17	1	1	47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95(6)	42(3)	44(3)	181(12)		9	6	6	1	1	23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31(2)	74(6)	36(3)	51(3)	192(14)	4	14	6	8	1		33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34(3)	52(6)			86(9)	2	6			1		9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52(5)	62(6)			114(11)	10	14			2		26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8(3)	36(6)			44(9)	1	6			1		8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5(3)			5(3)		3			1		4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8(6)			28(6)		6			1		7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8(1)	30(6)			38(7)	1	6			1		8
프놈펜한국국제학교	'18.08.27		53(6)			53(6)		6			1		7
소계(11개교)		**168(17)**	**797(69)**	**389(18)**	**518(22)**	**1,872(126)**	**23**	**112**	**41**	**55**	**12**	**4**	**247**
합 계(16개국, 34개교)		**463(40)**	**5,677(275)**	**3,329(137)**	**3,868(161)**	**13,337(613)**	**57**	**497**	**212**	**464**	**35**	**20**	**1,285**

자료 :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18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립대학(37개교) 소속 공무원(25,141명[189])의 인건비(법정의무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67억 8,500만원(2.6%)이 증액된 1조 8,726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188) 문의: 02-6788-5187
189) 교육공무원 19,125명, 일반직 5,929명, 연구직 82명, 기타직 5명(교육부 제공, 2024년 8월 16일 기준)

< 2025년도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인건비	1,686,171	1,825,887	1,872,672	46,785	2.6
○ 국립대학 인건비	1,686,171	1,825,887	1,872,672	46,785	2.6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국립대학 교수 증원을 위한 채용 문제

❑ 동 사업은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으로는 국립대학 교원(교수 및 교수 외 교원[190]), 일반직·연구직·기타직 공무원이 있음.

❑ 이중 국립대학 의대 교수[191]에 대한 인건비를 살펴보면, 정부는 필수의료 전공 기피 고착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를 위하여 대학의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였는바[192],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국립대학 의대 교수 증원을 위하여 33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인건비 259억 6,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259억 6,900만원 증액(21.9%)된 1,44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193].

---

190) 국립대학교 총장, 조교 등이 해당함.

191) 교육부에 따르면「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 및「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함.

192) [교육부 제공] 의과대학 정원 : ('24학년도) 3,058명 → ('25학년도) 5,058명(+2,000명)

193) 국립대학병원 겸직에 따른 보수는 별도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7조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2025년도 국립대학 교수 인건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예산(A)	2025예산안(B)	증 감	
			(B-A)	%
□ 국립대학 인건비	1,825,887	1,872,672	46,785	2.6
○ 국립대학 인건비(의대교수)	118,500	144,469	25,969	21.9

자료 : 교육부

❑ 정부는 국립대학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25~'27년) 의대 전임교수 증원(1,000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국립대학 의대 학생 정원 증가 규모와 지역거점의료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도별 전임교수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음[194].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신규 채용 예정인 의대교수 330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2024년도 5월 급여 기준, 전국 국립대학 소속 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급여명세, 각종 수당, 초과근무 수당 내역 등을 전수조사하였고, 그 결과 국립대학 인건비 중 교수에 대한 평균단가(연봉)를 94,002천원으로 산출하였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4)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 2025년도에 신규 채용 예정인 의대교수 330명의 경우 교수에 대한 평균단가(94,002천원)를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195], 대학별 채용절차 및 1학기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필요 예산은 교수 평균연봉의 10개월분(3월～12월)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신규 채용 예정인 의대교수 330명에 대한 인건비는 25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한편,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전임교수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대 44명, 부산대 50명, 전남대 43명, 전북대 32명, 강원대 23명, 제주대 18명, 경상대 44명, 충남대 41명, 충북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음[196].

<2025학년도 국립대학 의대 전임교수 증원 현황>

(단위: 명)

대 학	정원* ('24.3.1. 기준)	증원**	증원 후 정원	현원 ('24.9.30. 기준)
경북대	163	44	207	164
부산대	155	50	205	155

195)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도 1월에 개정 예정임.
196)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 의대 학생 정원 증가 규모와 지역거점의료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결정함.

대 학	정원* ('24.3.1. 기준)	증원**	증원 후 정원	현원 ('24.9.30. 기준)
전남대	193	43	236	193
전북대	150	32	182	147
강원대	122	23	145	120
제주대	105	18	123	103
경상대	137	44	181	135
충남대	160	41	201	154
충북대	137	35	172	133
계	1,322	330	1,652	1,304

자료 : 교육부

* 정원 : 의대 전임교수 현원 + 채용중 또는 채용예정 전임교수 수

** 증원 : 2025학년도 국립대학 의대 전임교수 증원 가배정

❑ 그러나, 9개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교수 모집 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10월 28일 기준 9개 대학 중 6개 대학이 모집 및 채용일정을 공고하였고[197], 나머지 3개 대학(전북대, 제주대, 경상대)에서는 아직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 교수의 임용권한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및 제33조[198],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199], 「교육공무

197) 교육부 제공

198) **「교육공무원법」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원임용령」 제3조의2[200]에 근거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학 의대 교수 모집에 대해서는 각 국립대학별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음.

❑ 또한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의 경우 통상적으로 2024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 공고 및 심사를 거쳐 2025년도 3월에 임용되며, 대학교원 공개채용 절차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201].

❑ 따라서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채용되는 전임교원의 경우 최소 2024년 10월 내지 11월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10월 28일 기준 3개 대학이 아직 채용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국립대학 교수 증원을 위한 채용절차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②「초·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고등교육법」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99)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200)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①교육부장관은「정부조직법」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교수·부교수의 임용

201) 교육부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이보다 단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함.

참고 **경북대학교 2025학년도 제1차 교수공채 추진 일정**

업무구분		내용	일정
교수초빙 공고		·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활용	2024. 10. 2.(수)
지원서 등록·접수		· 지원자가 등록·접수 http://prad.knu.ac.kr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 등 제출 불가	2024. 10. 15.(화)~10. 21.(월)
서류심사위원회		·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등 심사	2024. 10. 29.(화) ※ 서류 인계 및 학과 검토 10. 30.(수)~11. 6.(수)
학과(부) 심사위원회 (위원장: 학과장) ※ 학과(부)장이 특별관계 등 사유 발생 시 별도 지정	1~2단계	[전공일치 및 연구실적·경력] · 학내위원 심사 ※ 학과심사위원장 주관 · 심사결과 입력·출력※ 출력물은 학내위원만 해당 · 외부위원 심사 ※ 대학공채인사위원장 주관 · 3단계 심사대상자 선정·공고	2024. 11. 12.(화)~11. 15.(금) 2024. 11. 18.(월) 2024. 11. 19.(화)~11. 22.(금) 2024. 11. 27.(수)
	3단계	[공개강의] ※ 학과장 주관 · 학내위원 심사 · 심사결과 입력·집계·출력 · 심사총괄표 대학 송부	2024. 12. 11.(수)~12. 18.(수)
대학공채인사위원회 (위원장: 학·원장)		· 학과 심사의 타당성 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2024. 12. 20.(금)~12. 26.(목)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 학과 및 대학심사 타당성 심사	2024. 12. 30.(월)
본부 면접대상자 결정		· 홈페이지 공고	2024. 12. 31.(화)
대학교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 총장)		· 본부 면접심사	2025. 1. 14.(화)~1. 17.(금)
임용후보자 결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별 안내	2025. 1. 20.(월)
임용결격사유 조회		· 신원조사 및 개인 전력조회	2025. 1. 21.(화)~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 임용후보자 임용 동의 등	2025. 1. 24.(금)
신임교수 발령		· 2025. 3. 1.자 인사발령	2025. 1. 31.(금)
임명장 수여식			2025. 3. 4.(화)

자료 :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2704-306)[20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2704-306) 사업은 국가차원의 특정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교육 등 특수목적대학의 설립 및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 실험·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육특시생 전지훈련 지원,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항공운항과 실습 지원, 한국체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의 법정경비(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200만원(0.2%)이 증액된 98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 문의: 02-6788-5187

< 2025년도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028	9,785	9,807	22	0.2
○ 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2,185	2,123	2,123	0	0
○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736	736	758	22	3.0
○ 항공운항학과 실습지원	944	879	879	0	0
○ 한체대, 한국교원대 급식비 지원	5,184	6,047	6,047	0	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한국체육대학교 급식비 인상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한국체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법정경비(급식비) 지원 사업은 우수 체육인재 및 예비교원 양성을 위하여「국립학교 설치령」제16조 및 제20조[20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제12조[204]에 따라 법정경비(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한국체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법정경비(급식비)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예산(A)	2025예산안(B)	증 감	
			(B-A)	%
□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785	9,807	22	0.2
○ 한체대, 한국교원대 급식비 지원	6,047	6,047	0	0
- 한국체육대학교	4,948	4,948	0	0
- 한국교원대학교	1,099	1,099	0	0

자료 : 교육부

---

203)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등)** ③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⑦ 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은 재학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비행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20조(경비부담 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204) **「학교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학비보조 등)**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동 사업 중 한국체육대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경우 2025년도 생활관 수용가능인원(898명)보다 다소 적은 882명[205]에 대하여 하루 식비 1만 7000원을 330일[206] 동안 지원하는 금액(4,94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국체육대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생활관 식당 운영(고용직원 임금, 조리기구 수리 및 교체, 식재료 구매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체육특기생 882명 × 17,000원 × 330일 = 4,948백만원

❑ 한편,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207] 2022년 5.1%, 2023년 3.6%이고, 2024년의 경우 9월 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이 2.6%[208]로 나타났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2022년 5.9%, 2023년 5.5%이고, 2024년의 경우 9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물가지수(124.72)가 2023년 동 품목에 대한 물가지수(118.29)에 비해 5.4% 높게 나타났는바, 2025년도의 경우 소비자물가와 식재료비 모두 전년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생활관 식당 고용직원(17명)의 경우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 고려 시 인상이 불가피하며[209], 조

205) (한국체육대학교 제출) 한국체육대학교 기숙사 입사 가능 평균 학생 수
206) (한국체육대학교 제출) 연중 훈련 및 대회출전일(평균 35일)을 제외한 일수
207) KOSIS 국가통계포털 및 지표누리 참조
208) 2024년 9월 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중 전년누계비

리기구 노후화로 수선 및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210] 한국체육대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역대 올림픽(하계 및 동계)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출신 선수[211]가 획득한 메달은 하계 메달의 35%(106개/301개), 동계 메달의 43%(43개/79개)를 한국체육대학교 출신 선수[212]가 획득하였고, 특히 금메달의 경우 하계 메달의 39%(42개/108개), 동계 메달의 42%(14/33개)를 획득하였는바,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체육대학교 출신 선수들이 국위선양(國威宣揚)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선수 양성지원 사업(세부사업, 5261-312)을 운영하면서 국가대표훈련지원, 선수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 사업 중 국가대표훈련지원 사업에서는 2024년도와 2025년도(예산안) 하루 급량비 및 식비 단가를 하루 5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213],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식비의 경우 하루 17,000원에 불과하여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하

---

209) (한국체육대학교 제출)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여, 복리후생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가 임금 내역에 포함되며, 매년 임금교섭이 이루어짐.
※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시간급)으로, 2024년도에 비해 1.7% 인상되었음(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10) (한국체육대학교 제출) 식당물품 대부분은 종전 생활관에서 운영하던 2011년 구입 물품을 사용중이고, 내구연한 초과 상태(2024년 말 기준 내용연수 도래 건수 약 513건/1억5천만원), 특히 조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리흄 해결을 위해서는 환기 시스템 개선 및 정기 점검·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211) 재학생 포함

212) 재학생 포함

213) (급량비)6,822백만원(1,483명x**50천원**x160일x57.5%), (식비)3,670백만원(1,483명x**50천원**x50일x99%)[재정자료관리시스템 참조]

는 선수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식비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단가를 국가대표훈련 지원 사업의 급량비 및 식비 단가 만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 **한국체육대학교 역대 올림픽 메달 현황**

□ 하계 올림픽 메달 현황

구 분		금	은	동	계	비고
1984년 제23회 미국 LA	한국메달	6	6	7	19	
	한국체육대학	–	2	2	4	
	비 율	-	33%	29%	21%	
1988년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한국메달 수	12	10	11	33	* 시범종목 포함(금 5, 은 1, 동 1)
	한국체육대학	7	4	6	17	
	비 율(%)	58%	40%	55%	52%	
1992년 제25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국메달 수	12	5	12	29	* 시범종목 포함(금 2, 동 1)
	한국체육대학	9	1	2	12	
	비 율(%)	75%	20%	17%	41%	
1996년 제26회 미국 아틀란타	한국메달	7	15	5	27	
	한국체육대학	3	6	1	10	
	비 율	43%	40%	28%	37%	
2000년 제27회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한국메달	8	10	10	28	
	한국체육대학	3	4	3	10	
	비 율	38%	40%	30%	36%	
2004년 제28회 그리스 아테네	한국메달	9	12	9	30	
	한국체육대학	2	4	2	8	
	비 율	22%	33%	22%	27%	
2008년 제29회 중국 베이징	한국메달	13	11*	8	32	
	한국체육대학	4	3	3	10	
	비 율	31%	27%	38%	31%	
2012년 제30회 영국 런던	한국메달	13	9	8	30	
	한국체육대학	3	1	3	7	
	비 율	23%	11%	38%	23%	
2016년 제31회 브라질 리우	한국메달	9	3	9	21	
	한국체육대학	3	-	3	6	
	비 율	33%	0%	33%	29%	
2021년 제32회 일본 도쿄	한국메달	6	4	10	20	
	한국체육대학	2	1	5	8	
	비 율	33%	25%	50%	40%	
2024년 제33회 프랑스 파리	한국메달	13	9	10	32	
	한국체육대학	6	3	5	14	
	비 율	46%	33%	50%	44%	
총 계	**한국메달**	**108**	**94**	**99**	**301**	
	한국체육대학	**42**	**29**	**35**	**106**	
	비 율	39%	31%	35%	35%	

자료 : 한국체육대학교

□ 역대 동계 올림픽 메달 현황

구 분		금	은	동	계	비고
1990년 제16회 프랑스 알베르빌	한국메달	2	1	1	4	
	한국체육대학	-	-	-	-	
	비 율	-	-	-	-	
1994년 제17회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한국메달	4	1	1	6	
	한국체육대학	-	-	-	-	
	비 율	-	-	-	-	
1998년 제18회 일본 나가노	한국메달	3	1	2	6	
	한국체육대학	-	1	-	1	
	비 율	-	100%	-	17%	
2002년 제19회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한국메달	2	2	-	4	
	한국체육대학	-	-	-	-	
	비 율	-	-	-	-	
2006년 제20회 이탈리아 토리노	한국메달	6	3	2	11	
	한국체육대학	4	1	2	7	
	비 율	67%	33%	100%	64%	
2010년 제21회 캐나다 밴쿠버	한국메달	6	6	2	14	
	한국체육대학	3	2	-	5	
	비 율	50%	33%	-	36%	
2014년 제22회 러시아 소치	한국메달	3	3	2	8	
	한국체육대학	2	1	-	3	
	비 율	67%	33%	-	38%	
2018년 제23회 대한민국 평창	한국메달	5	8	4	17	
	한국체육대학	4	6	3	13	
	비 율	80%	75%	75%	76%	
2022년 제24회 중국 베이징	한국메달	2	5	2	9	
	한국체육대학	1	3	1	5	
	비 율	50%	60%	50%	56%	
총계	**한국메달**	**33**	**30**	**16**	**79**	
	한국체육대학	**14**	**14**	**6**	**34**	
	비 율	42%	47%	38%	43%	

자료 : 한국체육대학교

3. 디지털교육기획관

<일반회계>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21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1301-301)은 공교육에 맞는 에듀테크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에듀테크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를 구축·운영하고, 교사·기업이 함께 에듀테크를 개발·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214) 문의: 02-6788-5189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7억 4,500만원(18.0%)이 감액된 79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1,788	9,683	7,938	△1,745	△18.0
○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1,788	5,283	3,278	△2,005	△38.0
○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	1,400	1,400	0	0.0
○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	1,600	1,600	0	0.0
○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	1,400	1,660	260	18.6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1301-301)에 편성된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내역사업은 2024년에 1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대학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고등교육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혁신적 교육 모델을 확산하는 고등교육 특화 소프트랩을 운영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과목 AI 코스웨어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개발과 교수·학습 및 수업 운영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024년 사업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프트랩 운영대학 1개교와 해당 학교에서 확보한 참여대학 9개교 등 총 10개교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22개 교과목에서 AI 코스웨어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며 실증을 진행하고 있음.

AI 코스웨어 교과목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 영어, 수학 등 기초과목이 운영되는 한편, 간호연구와 통계분석(대학3), 보육과정(대학6) 등 당초 동 사업에서 제시한, '많은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과목 AI 코스웨어'로 보기 어려운 교과목도 운영되고 있음.

< 2024년 사업 운영·참여 대학의 AI 코스웨어 운영 교과목 현황 >

대학	과정	학과(부서)	교과목/프로그램
대학1	교과	의료신소재학과/물리학	일반물리학 및 실험
	교과	휴머니티칼리지/영어교육	DYC-글로벌 지식여행-지구촌 여행영어
대학2	교과	리버럴아츠칼리지	디지털 기술과 미래사회
	비교과	교육학과/교육혁신원	대학생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완전정복
대학3	교과	간호학과	수학으로 여는 세상(대학수학)
	교과	간호학과	간호연구와 통계분석
대학4	교과	영어교육과	영어학개론
	교과	수학과	기초수학
대학5	교과	경제학부	경제통계학
	교과	교육대학원	성인 학습 및 상담
대학6	교과	교양교육원	미래사회와 소트웨어의 이해
	교과	아동보육학과	보육과정
대학7	교과	빅데이터	수학과 통계의 세계
	교과	응용수학부	대학생을 위한 기본수학
대학8	교과	일어일문학과	중급 일본어강독
	비교과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공동체(스터디그룹)
대학9	교과	융합과학수사학과	범죄와 형벌
	교과	자유교양대학	컴퓨팅사고-데이터기초
	교과	자유교양대학	창의코딩-모두의R
	교과	소프트웨어학과	C프로그래밍
대학10	교과	간호학과	AI융합영어(초급)
	교과	간호학과	초급토익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기초과목 외 개별 교과목에서도 에듀테크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며, 특히 개별 교과목의 경우 교수자가 생산·제공하는 강의 콘텐츠를 AI 코스웨어로 변환해 주는 에듀테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등에 따라 공통된 교육과정이 운영[215]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므로,[216] 동 사업에서 개발된 AI 코스웨어가 많은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별 교과목의 경우 이러한 한계가 더욱 클 수 있음.

교육부와 운영대학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AI 코스웨어는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므로,[217] 교육부는

---

215)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6)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학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많은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AI 코스웨어가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17) (2024년) 수학, 물리, 화학 등 AI 코스웨어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기초과목 중심, 10개 컨소시엄 참여 → (2025년) 기초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까지 확대, 20개 컨소시엄 참여 예정

(2) 프로젝트 팀 운영 성과를 고려한 지원 계획 수립 필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1301-301)에 편성된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내역사업은 2024년에 1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025년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교원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특수 교육 등 민간 차원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에듀테크 분야에 대해 교사와 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지원하여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가 개발·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2024년 사업은 교원업무 경감, 취약계층(특수, 다문화) 교육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에듀테크 기획안을 마련한 프로젝트 팀을 심사·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총예산 16억원은 프로젝트 팀 사업비 14.5억원과 사업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비 1.5억원으로 구성됨.

2024년의 프로젝트 팀당 지원액은 사업기간 중 2차례 변경된 바 있는데, 먼저 동 사업의 최초 계획인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2024.2.)」에서 4~6팀에 대한 팀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3.6억원이었음.

그러나 사업 수행을 위한 「2024년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 모집 공고(2024.4.)」에서는 6~10팀에 대해 팀당 연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1차 공고), 추가로 추진된 「2024년 제2차 교육현안 해결형 프로젝트 모집공고(2024.7.)」에서는 3팀에 대해 팀당 연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2차 공고).

< 2024년 사업 프로젝트 팀당 지원액 변경 내역 >

구분	기본계획	1차 공고	2차 공고
수립/시행시기	2024.2.	2024.4.	2024.7.
지원 규모	4~6팀(분야별 2~3팀)	6~10팀(분야별 3~5팀)	3팀 이내(분야 무관)
팀당 연간 최대 지원액 * 총사업비의 50% (나머지 50% 자부담) * 동일금액 2년간 지원	3.6억원	2억원	1.5억원
비고	-	5팀 선정	3팀 선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는 사업의 기본계획과 달리 1차 공고에서 팀당 지원액을 변경한 것은 많은 교사와 기업이 프로젝트 팀 참여를 희망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에듀테크로 개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참여 기업의 자부담금 매칭 규모(50%:50%)와 실제 프로젝트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2차 공고에서는 1차 공고로 선정된 팀과의 차등 지원 필요성 및 예산 잔액 규모(총 4.5억원) 등을 고려하여 팀당 지원액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은 2년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2024년에는 사업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25년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1차 공고와 2차 공고에서 선정된 팀 모두 동일하므로, 프로젝트 팀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교육정보보호사업(7034-305)[21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정보보호사업(7034-305)은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보안 관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 행정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제공, 정보보호 인식 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5억 3,700만원(39.0%)이 증액된 12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교육정보보호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정보보호사업	9,002	9,077	12,614	3,537	39.0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3,930	5,408	8,925	3,517	65.0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1,089	650	680	30	4.6
○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2,692	2,558	2,548	△10	△0.4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1,291	461	461	0	0.0

자료: 교육부

218) 문의: 02-6788-5189

나) 검토의견

(1) 실제 사업 수행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교육정보보호사업(7034-305)에 편성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은 교육기관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사업으로 수행됨.

3개 내역사업에는 각각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각 사업의 2024년 계약내역을 살펴보면, ① 교육부 사이버안전 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과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되었음.

그러나 ②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세부사업의 ④ 사업비 내역사업에서 체결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계약에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포함되었음.

또한 ③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 운영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에도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와 같이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은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되는 부분이 있음.

< 2024~2025년 교육정보보호사업 내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 예산		2024 계약		2025 예산안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교육정보보호사업 (정보화) (7034-305)	①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운영	2,322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포함	3,683	2,322
		유지보수	1,286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유지관리	924	1,288
	②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탁운영	407	-	-	407
		유지보수	213	-	-	243
		소계	4,228	소계	4,607	4,260
	③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운영	1,066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 운영	1,483	1,066
		유지보수	906	-	-	915
		소계	1,972	소계	1,483	1,981
		합계	6,200	합계	6,090	6,24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정보화) (1303-500)	④ 사업비	위탁운영	4,78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포함	4,641	4,71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는 교육정보보호사업 내 업무 성격 및 협력 체계가 필요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항목을 통합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개별 사업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실제 수행되는 업무 범위의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예산과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음.

또한 3개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62억원 대비 4,100만원 증가한 6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향후 증액된 예산이 해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실제 사업 수행에 부합하도록 예산 내역을 산출하여 편성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노후 탐지장비 교체 세부내역사업은 교육정보보호사업(7034-305) 세부사업의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노후된 사이버위협 탐지장비를 교체하여 신·변종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노후 탐지장비 교체 사업으로 신규 탐지장비가 설치될 경우, 기존 탐지장비에 비하여 사이버위협 수집정보 범위가 확대(2개 → 5개)[219]되므로, 교육기관에 대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220]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19) 기존: 페이로드, 악성파일 → 확대: 페이로드, 악성파일 + 네트워크 플로우, 메타데이터, pcap 정보
- 페이로드: “A”라는 값이 들어갈 경우 탐지하라는 신호(시그니처)가 제작되면 “A”값이 들어간 정보흐름(트래픽)을 모두 탐지
- 악성파일: 알려진 악성파일의 고유값(Hash)을 탐지 신호(시그니처)로 제작하여 네트워크 상의 악성파일을 탐지
- 네트워크 플로우: 네트워크 상의 흐름 정보를 활용하여 이상징후 탐지 및 연관관계 분석에 사용
- 메타데이터: 기존에 알지 못했던 악성 공격 명령(C&C) 서버 및 IP등 탐지에 활용
- pcap 정보: 네트워크 상에 흐르는 정보흐름(트래픽)을 파일단위로 저장한 것으로, 위협을 조기에 판단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

220) < 2021~2024년 교육기관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현황 >

(단위: 건)

구분	침입시도	해킹메일	악성코드	웹 해킹	경유지 악용	서비스 거부 등	합계
2021	33,604	1,000	7,005	82	868	5	42,564
2022	55,105	747	5,508	53	1,904	8	63,325
2023	58,380	598	3,799	35	2,276	8	65,096
2024	48,649	773	2,927	19	856	8	53,232

주: 2021~2023년은 각 연도말, 2024년은 9월 30일 기준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은 2024~2026년 동안 440개 보안관제 대상기관[221] 중 일부 기관을 제외[222]한 3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장비 구축(네트워크 최상단 구간)은 국고로 지원하고 그 외 필요장비 구축(내부시스템 등)은 수요기관인 교육기관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구축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여, 전체 사업비 중 필수장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비(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됨.

2024년도 예산은 104개 기관에 대하여 H/W구입 및 설치용역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1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한 H/W의 규격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단가 상승(1,100만원 → 1,500~2,200만원)과 설치용역 노임단가

---

221)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대상기관) 센터의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 보안관제를 위탁한 경우
2. 자체 정보시스템(서버) 및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기관자체 공인IP 미사용)
3. PC단말 100대 이하 또는 재학생 수 100명 이하인 경우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⑤ "교육·행정 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산하기관, 각급학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22) 44개 제외기관

· 교육부(1), 시도교육청(17): 「2023년 차세대 사이버위협 탐지체계 구축」 사업으로 탐지장비 설치
· 국립대병원(14): 관리 부처 이관 검토 중
· 기타 관제 제외기관(12): 자체 정보시스템 미운영 및 재학생수 100명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승인에 따라 제외

상승(310만원 → 362만원)에 따라, 59개 기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추진 중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수를 200개로 확대한 사업비 4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에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던 것과 달리, 2025년도 예산안에는 H/W구입비는 50%를 지원하고 설치용역비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됨.

< 2024~2025년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노후 탐지장비 교체 사업 예산(안) >

구분	2024 예산	2025 예산안
전체	· 13억 1,200만원	· 48억 2,700만원
H/W구입	- 104개 기관×2,200만원×50% =11억 4,400만원	- 200개 기관×4,105만원×50% =41억 500만원
설치용역	- 104개 기관×322만원×50% =1억 6,750만원	- 200개 기관×361만원 =7억 2,200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부는 단가상승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차세대 탐지체계 확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교육기관에서 구입한 H/W의 설치용역비를 포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H/W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은 하나의 작업으로 수행되므로 H/W구입과 설치용역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모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교육·행정 기관으로 지원받는 연도에 따른 차별성이 없으므로, 2024년과 2025년에 서로 다른 비중으로 사업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업대상의 수요, 이행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원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1502-303)[22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 사업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동 사업 예산은 2023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24]으로 신설된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인상(3% → 3.8%)한 금액으로 편성됨.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재원 >

구분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내국세 20.79%의 **97.0%** + 교육세 일부[2]	내국세 20.79%의 **96.2%** + 교육세 일부[2]
특별교부금	내국세 20.79%의 **3.0%**	내국세 20.79%의 **3.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의 60/100	특별교부금의 180/38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의 30/100	특별교부금의 90/38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의 10/100	특별교부금의 30/380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의 **80/380**

주: 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17년~'25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23년~'25년) 제외
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5조의2, 제5조의3

223) 문의: 02-6788-5189
22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제19938호), 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교부사유 >

구분	교부사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재정수요 ·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생긴 특별한 재정수요 ·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자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75억 1,900만원(5.2%)이 증액된 5,608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33,320	560,839	27,519	5.2
○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	381,800	329,319	△52,481	△13.7
○ 방과후교육활성화 지원	-	151,520	201,520	50,000	33.0
○ 교육혁신 우수지자체 재정지원	-	-	30,000	30,000	순증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2024년 71.6%, 2025년 58.7%)을 차지하는 단위사업으로, 2025년부터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수업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교원역량체계에 따른 교원 연수,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및 환경 구축 등을 실시하는 것임.

동 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2024년도 예산에서는 교원연수 기반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사업 예산이 3,818억원 중 43.5%인 1,661억 5,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3,293억 1,900만원 중 39.0%인 1,2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25년도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381,800	329,319	△52,481	△13.7
-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48,900	37,730	△11,170	△22.8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166,150	93,289	△72,861	△43.9
-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79,450	69,900	△9,550	△12.0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87,300	128,400	41,100	47.1

자료: 교육부

2024년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은 시·도교육청 직접사업 또는 위탁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24년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41.3% 수준임.

세부사업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①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50.7%, 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42.5%, ③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38.4%, ④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36.5%로 나타남.

< 2024～2025년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편성 및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			2025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안
①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 연수 콘텐츠 제작 및 질관리	9,050	3,540	39.1	2,000
	ⓑ 지식샘터 플랫폼 운영	4,600	3,063	66.6	6,000
	ⓒ 선도교사양성 연수·운영	19,160	12,458	65.0	12,640
	ⓓ 교사 기획 연수 지원 및 컨퍼런스 운영	7,410	1,717	23.2	8,690
(성취평가제 연수 운영)	ⓔ 성취평가제 연수 기획 및 모듈 개발	680	369	54.3	600
	ⓕ 성취평가제 연수 과정 운영	3,000	1,841	61.4	2,800
	ⓖ AIEDAP	2,800	1,527	54.5	2,800
(글로벌 연수 운영)	ⓗ 디지털교육 연구대회 입상 교원 및 우수 리더 교원	630	276	43.8	630
	ⓘ 수업혁신 교사상 입상 교원	800	0	0.0	800
	ⓙ 수업혁신 사례연구대회 입상 교원	700	0	0.0	700
	ⓚ 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입상 교원	70	0	0.0	70
	소계	**48,900**	**24,791**	**50.7**	**37,730**
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166,150**	**70,675**	**42.5**	**93,289**
③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79,450**	**30,520**	**38.4**	**69,900**
④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 디지털튜터 양성 및 지원단운영	3,000	3,000	100.0	3,900
	ⓑ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연수	100	100	100.0	100
	ⓒ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60,000	20,529	34.2	60,000
	ⓓ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7,200	1,475	20.5	32,400
	ⓔ 테크센터 운영	17,000	6,744	39.7	17,000
	ⓕ 시·도교육청 디지털 인프라 소요지원	-	-	-	15,000
	소계	**87,300**	**31,848**	**36.5**	**128,400**
합계		**381,800**	**157,834**	**41.3**	**329,319**

주: 1. 사업명은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2. 2024년 실집행액은 2024.9.25. 기준임
자료: 교육부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연수를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사업 중 선도교사양성 등 교원 연수 관련 사업은 전국 단위의 선도교사를 육성하는 ①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세부사업의 ⓒ 선도교사양성 연수·운영 내역사업(이하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과, 시·도교육청 단위로 선도교사 그룹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세부사업에 포함된 사업임(이하 “교육혁신 교사 연수”).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는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선도교사가 학교마다 2~3명씩 배치되어 학교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3년 동안 총 3만 4,000명에 대한 연수가 계획되었으며,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2024년 계획 인원 1만 1,500명 중 약 1만명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었음.

또한 교육혁신 교사 연수는 교원의 역량과 선호에 따른 맞춤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총 32만명에 대한 연수가 계획되었으며,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2024년 계획 인원 15만명 중 5만여명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었음.

해당 연수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교과목 담당 교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 교과목별 연수 인원에 대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 2024~2026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연수 현황 및 계획 >

(단위: 명)

구분	2024			2025	2026	합계
	연수완료	연수예정	소계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	9,491	2,009	11,500	11,500	11,000	34,000
교육혁신 교사 연수	53,247	96,753	150,000	85,000	85,000	320,000

주: 2024.9.25. 기준
자료: 교육부

<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연수 시·도별 연수 현황 >

(단위: 명)

구분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	교육혁신 연수
서울	1,496	34,189
부산	446	2,638
대구	397	4,697
인천	666	4,906
광주	287	1,767
대전	303	828
울산	159	281
세종	102	(연수 진행 중)
경기	2,301	(연수 진행 중)
강원	267	364
충북	345	(연수 진행 중)
충남	305	(연수 진행 중)
전북	661	256
전남	511	682
경북	520	1,651
경남	584	988
제주	141	(연수 진행 중)
합계	9,491	53,247

주: 2024.9.25. 기준
자료: 교육부

교원 연수 관련 사업 예산의 2024년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각각 65.0%(①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세부사업 중 ⓒ 선도교사양성 연수・운영 내역사업), 42.5%(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지원 세부사업) 수준임.

해당 예산 집행에 따라 이루어진 연수에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완료되는 11월말 이전에 실시된 연수에는 연수용 프로토타입(시제품)이 사용되어, 교원이 실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해당 연수에는 핵심기능이 구현된 연수용 프로토타입(시제품)이 사용되었고, 교원이 자신의 수업혁신에 필요한 핵심기능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연수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미집행 예산은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절차가 완료되는 2024년 11월말 이후와 겨울방학 기간(2025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연수에 집행될 예정임.

학교 현장에 사용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원 연수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2025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집중 연수로 진행 과정 또는 관리 측면에서 과부하가 발생하여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연수 인원에 대한 통계는 11월말 이후,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수 실적을 연계하여, 지역별・교과목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교과목의 교원에 대해 필요한 연수가 실시되었는지를 파악하여, 2025년 연수 계획에 반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교원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사업이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세부사업은 디지털 기반 교육 전환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학교 전체의 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3년 동안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

학교(1만 2,000개교)에 연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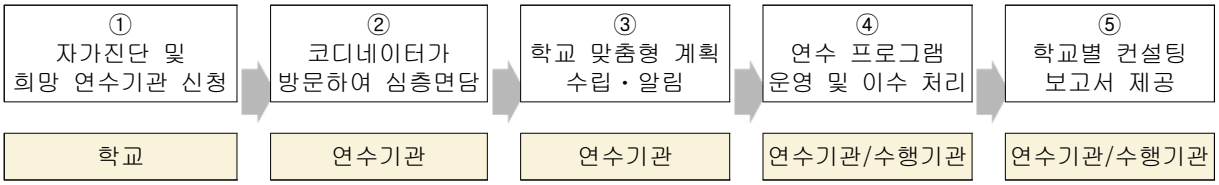
< 2024~2026년 찾아가는 학교 연수 계획 >

(단위: 개교)

구분	2024	2025	2026	합계
찾아가는 학교 연수	3,000	4,000	5,000	12,000

자료: 교육부

< 2024년 찾아가는 학교 연수 절차 >



자료: 교육부

2024년 사업은 선도운영과 정규운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선도운영은 7월부터 학교별 특성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디지털 선도학교 중 ① 243개교의 신청을 받아 ② 심층면담 및 ③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④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운영은 10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① 학교 신청과 ② 심층면담이 진행되고 있음.

2024년 10월 기준으로, 선도운영 243개교의 연수 프로그램은 1,392개가 신청되어 391개에 대한 운영이 완료되었고, 1,011개는 운영예정임(운영 중 포함).

< 2024년 찾아가는 학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단위: 개교)

프로그램명	연수 신청	연수 완료	연수 예정[1]
①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지원	42	19	23
②교원의 교실혁명 역량 이해[필수]	243	116	127
③학교의 지속 가능 리더십 함양[필수]	243	34	209
④교실혁명을 위한 학부모의 이해[필수]	243	41	202
⑤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2]	-	10	-
⑥학교 교육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필수]	243	84	159
⑦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지원	35	4	31
⑧교과별 전문과정	55	23	32
⑨주제별 심화과정	45	11	34
⑩학교 교육과정 평가-환류[필수]	243	49	194
합계	**1,392**	**391**	**1,011**

주: 1) '연수 예정'에는 연수 중인 프로그램과 연수가 계획된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됨
2) '⑤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은 연수 신청 당시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적 필요에 따라 진행됨
1. 각 학교는 필수프로그램(5개)과 선택프로그램(필요시)을 신청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사업은 2025년 5월까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으므로, 교육부는 남은 기간 동안 선도운영에서 계획된 연수 프로그램과 정규운영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결정되는 연수 프로그램 등 3,000개교에 대한 연수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사업은 2025년에 4,000개교에 대한 연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 기간 동안 학교의 참여를 제고하고 해당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셋째,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단위사업 예산안에서 ④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세부사업 예산안은 2024년 예산 873억원 대비 47.1% 증가한 1,284억원이 편성됨.

동 세부사업은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등 오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튜터 등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를 점검·지원하는 것임.

동 세부사업의 2024년 예산 실집행률은 9월말 기준 36.5%로 저조한 상황이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 디지털튜터 양성 및 지원단운영 내역사업과 ⓓ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내역사업이 각각 9억원, 252억원 증액되었고, ⓕ 시·도교육청 디지털 인프라 소요지원 내역사업이 150억원 신규로 편성됨.

교육부는 동 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별, 위탁기관별로 사업 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보조 및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와 기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24년 사업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고 예산이 증액된 2025년 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사업은 공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므로, 사업에 대한 적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제3항의 위임[225]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조항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26]

준용 조항에는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227]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디지털교

---

2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 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7조제2호를 준용한다.

2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육혁신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 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를 2024년 3월에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고, 평가방법·절차·환류계획 등을 담은 평가계획은 11월중 수립하여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CIPP 모형 기반 연수 운영 성과평가 영역 및 지표(안) >

영역	항목	평가지표
상황 context	연수요구(1)	· 지역의 교원 요구 수렴 및 반영도
	연수목표(1)	· 핵심가치를 반영한 연수 목표의 명확성·구체성
	운영조직(1)	· 조직의 체계성(기관장 실행의지, 연수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기관 간 협력 체계 수립)
투입 input	연수자원(2)	· 인적자원(교실혁명 선도교사 강의율, 연수기관별 평가·성과 관리자 배치) · 물적자원(AIDT 실습에 적합한 환경 제공, 공통 연수교재 활용)
	연수체계(2)	· 연수 기본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 자발적 연수참여 전략의 수립
	연수평가(2)	· 교육청 내외 연수기관 평가의 체계성 · 인센티브(해외체험연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연수지원(2)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운영 지원(홍보, 연수기관 담당자 및 강사의 사전워크숍)의 적절성
과정 process	연수실행(1)	· 연수방식의 효과성(대면/비대면, 학교급/교과/주제별, 수요 기반형, 모듈형 등)
	평가수행(2)	· 평가·성과 관리자의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월1회) · 차월 연수에 개선점 반영 및 성과 정리
	실행관리(2)	· 배움누리터를 활용한 연수신청 및 이수 관리 · 예산 집행 관리
산출 product	연수효과성(2)	· 연수생 성과(연수만족도, 교원역량 향상도, 현업 적용도) · 기관 성과(연수 이수(참가)율)
	연수결과 환류(2)	· 성과관리의 적절성(지식샘터의 연수성과 공유 체계 활용, 연수 이력 및 성과 데이터 관리) · 질 관리의 적절성(평가 결과의 활용 노력, 연수 체계 및 지원 제도 개선 노력, 연수 효과 체감도 제고 노력)

자료: 교육부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동 예산으로 수행되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사업은 2025년부터 초·중등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등 공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임.

이와 같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이에 부합하는 환류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의 평가를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기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4. 인재정책기획관

1)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부 지원 사업[228)]

가) 개 요

❑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국고 투자를 추진할 것을 밝혔음. 그 중 교육부 소관 사업은 약 2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관련한 2025년 교육부 예산은 약 6,062억원에 달함.

<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고 투자 계획 >

(단위: 억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	정부안 ('25)	총 투자계획 (~'30)
교육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	약 2조원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1,728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229)]	1,445	
	국립대병원 지원	829	
	교육부 소계	**6,062**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지원	**812**	약 3조원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11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701**	
	의사과학자 지원 등	**867**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	**3,089**	
	복지부 소계	**5,579**	
총 지원 예산		**11,641**	**약 5조원**

228) 문의: 02-6788-5188
229)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24년 기준 1,185억원)는 '25 예산에 포함,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 교육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국고 투자 계획은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의 내역사업으로서 국립대(9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연구·실습을 위한 공간구축 및 노후시설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사업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의 내역사업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의 실험실습 교육에 필요한 추가 기자재를 구입하는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사업

-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증원이 이루어지는 사립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2861-300)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2301-400)에 포함되어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혁신 계획을 제출받고, 증원규모·설립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

-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 예산 증액을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채용을 지원하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 '25년 국립대병원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을 지원하는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의대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예산편성 필요

❑ 지난 2024.3.20. 교육부는 총 2,0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국고 투자를 계획하고, 2025년에만 1조 1,64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동 예산은 의과대학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원 충원, 대학병원 R&D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임.

❑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건부 휴학 허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기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9,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2.8%(548명)에 불과한 상태로, 대부분 수업을 거부하고 있음.

❑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2024년 7월 기준 전국 전공의 미복귀율은 전체 임용대상자 13,531명 중 12,380명인 91.5%에 달함.

<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

(단위: 명)

지역		대학명	현정원	신청	배정	'25학년도 정원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365		135
		경희대	110			110
		연세대	110			110
		한양대	110			110
		고려대	106			106
		가톨릭대	93			93
		중앙대	86			86
		이화여대	76			76
	서울		**826**	**365**	**0**	**826**
	경기	성균관대	40	565	80	120
		아주대	40		80	120
		차의과대	40		40	80
	인천	인하대	49		71	120
		가천대	40		90	130
	경기·인천		**209**	**565**	**361**	**570**
	수도권 소계		**1,035**	**930**	**361**	**1,396**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49	2,471	83	132
		연세대 분교	93		7	100
		한림대	76		24	100
		가톨릭관동대	49		51	100
	경북	동국대 분교	49		71	120
	대구	경북대	110		90	200
		계명대	76		44	120
		영남대	76		44	120
		대구가톨릭대	40		40	80
	경남	경상국립대	76		124	200
	부산	부산대	125		75	200
		인제대	93		7	100
		고신대	76		24	100
		동아대	49		51	100
	울산	울산대	40		80	120
	전북	전북대	142		58	200
		원광대	93		57	150
	광주	전남대	125		75	200
		조선대	125		25	150
	제주	제주대	40		60	100
	충남	순천향대	93		57	150
		단국대(천안)	40		80	120
	충북	충북대	49		151	200
		건국대 분교	40		60	100
	대전	충남대	110		90	200
		건양대	49		51	100
		을지대	40		60	100
	비수도권 소계		**2,023**	**2,471**	**1,639**	**3,662**
합계			**3,058**	**3,401**	**2,000**	**5,058**

❑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인재 양성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짐.

❑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예산[230]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 현재 교육부에서 밝힌 국고투자계획상 사업은 대부분 시설, 설비 투자 및 교수 증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한번 늘어난 공무원 정원은 고용계약, 공무원법 등으로 인해 인력 감축이 매우 어려우며, 공사비 또한 한번 시설 건축 절차에 들어가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 정부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2,000명을 증원[231]하였으나,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재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바 있음. 그렇

230)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총 1조 1,641억원
231) 모집인원은 1,509명이나, 2,000명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중

다면 2,000명을 기준으로 투자되고 있는 국고예산이 이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재변동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의학교육 여건 개선 추진일정 >

<table>
<tr><th>구분</th><th>'24</th><th>'25</th><th>'26</th><th>'27</th><th>'28</th><th>'29</th><th>'30</th></tr>
<tr><td>교원</td><td>가배정·
대학별 채용</td><td colspan="3">330명 → 400명 → 270명</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기본시설</td><td>리모델링·
재구조화</td><td colspan="4">기존시설 운영</td><td></td><td></td></tr>
<tr><td>대학별
계획수립</td><td colspan="3">설계·공사</td><td colspan="3">신규시설 운영</td></tr>
<tr><td>지원시설</td><td>대학별
계획수립</td><td colspan="2">설계</td><td colspan="3">공사</td><td>운영</td></tr>
<tr><td>기자재</td><td>대학별
계획수립</td><td colspan="3">기초의학 실습실 / TBL·PBL실
중점 확충</td><td colspan="3">CPX실 / OSCE실
중점 확충</td></tr>
<tr><td>사립의대</td><td>대학별
계획수립</td><td colspan="6">대학별 자체 투자 추진
교육환경개선 융자 지원</td></tr>
<tr><td>임상교육
훈련센터</td><td>제주대('21)
충남대</td><td></td><td>경북,
서울, 전북,
전남대</td><td>부산대
충북대</td><td>강원대
경상국립대</td><td></td><td></td></tr>
</table>

자료 : 교육부

❑ 이상을 고려했을 때,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는 2025년도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고투자계획은 이후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현재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통해 정원 합의를 완결짓고 그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참고자료 :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사태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대국민 입장문

우선 이번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사태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석학 의학자 단체로서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법정 원로 석학단체로서 가급적 의사 표현을 절제하여 왔습니다. 다만,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로 삼은 세 개의 보고서'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현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부 결정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이 많으나 특히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과 의학교육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작금의 조치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합니다. 미래의 의료와 의학교육이 위태로워지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 석학 단체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대 증원 정책의 강행

- (올바른 의대정원 증원 방법론 무시) 2022년 가을부터 의학한림원은 지속적으로 외국의 경험을 반영한 올바른 의대증원의 방법을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정부에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근거 선택과 해석의 문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OECD 통계를 인용할 때 인구 당 의사 수만 언급합니다. 그 수도 실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OECD 통계에 제시되어 있는 많은 항목의 우수한 의료지표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학한림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인력 수요 추계에 있어 상기 세 개의 보고서에서 다룬 인구구조 뿐 아니라, 정부가 조속히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수가(비보험 부문과 실손보험 포함), 의료전달체계,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비 지출의 한계 등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한 변수가 정해지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의 활동 분야와 지역별 분포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즉, 현재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상태이며 향후 이런 요소들을 반영한 추계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현장의 변화를 추적하며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게 당장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합

니다.

- (의대정원 증원 규모 조사 문제) 각 대학교에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문의할 때 의학교육의 내실보다는 대학의 규모 확장을 원하는 총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증원 능력의 근거를 단기간에 졸속으로 조사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의료계의 합리적 사전 증원 제안 거부) 2023년 12월경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비록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나 국민과 정부가 의사 인력의 부족을 우려함을 감안하여 지난 2000년에 감원하였던 규모이자, 증원에 비교적 무리가 없는 규모로서 우선 350명을 증원하고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의사인력 수요를 판단하며 조정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직접 또는 의학한림원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정책 결정 절차의 문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정책은 절차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 외에는 공개된 근거자료가 없고 그 회의록도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의문이 많습니다.

- (출구전략 부재) 이미 상기 세 개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고 의학한림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간 지속되는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은 조만간 정원 환원 내지 추가 축소의 필요성을 초래합니다. 이번 증원 절차에서는 조만간 축소될 정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새로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의 근무 의욕 박탈) 주변에서 고수익, 편안한 일상생활, 낮은 사법리스크 영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있어도 여러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나보다 우리,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자아실현에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긍심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의정갈등 과정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들을 '낙수과'로 폄하하고, 이기심 가득한 집단으로 '악마화'하였으며, 각종 명령으로 행동을 옥죄며 '노예화'하여 이들의 근무 의욕을 꺾었습니다. 이에 미래의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이탈하였고 전문의들도 전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에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소위 의사 카르텔을 격파하겠다는 '정면돌파'로 대응하고 있어 보입니다.

- (2025년 증원 규모 고수로 대화 단절) 정부는 모든 대화에 2025년 정원 절대 불변을 전제로 하며 고집스럽게 증원을 강행하여 결국 입시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과 학생들, 나아가 의료계와 대화 단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전공의 결원으로 인한 중증 질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형병원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하여 국민 세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의료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만 명 이상의 핵심 의료진이 갑작스럽게 빠져도 의료에 문제가 없다면 대규모 의사 증원의 이유도 없어집니다.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퇴행적 조치

- (휴학 불허와 강제 진급) 현재 의대생들이 휴학신청을 한 채로 8개월의 시간이 흘러가 이제는 정상적인 진급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서울의대는 휴학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을 피하고자 취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 진급시킬 계획인 듯합니다. 4,500명의 신입생 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6개 학년 의대 학생들 18,000명에 대하여 교육 원칙을 무시할 계획입니다. 무엇을 위한 증원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교육환경 준비 부족) 증원 전 의대정원은 약 3,000명이었는데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의대정원은 4,500여 명입니다. 휴학한 예과 1학년 학생들이 복귀하면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만 당장 4개월 후 닥칠 일이므로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의학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 (의학교육 여건을 맞추기 보다는 기준을 하향 조정)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순조롭지 않자 교수임용규정을 하향 조정하고 의평원의 의대 인증평가 기준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국제 의학교육 수준에 올려놓은 의학교육 인증체계를 근거가 약하고 절차도 문제가 있는 150% 증원을 위하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무엇을 위한 증원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0명 증원, 과연 (350명 우선 증원안을 포함하여) 여러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며 이처럼 우리나라 의료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일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동경대학교에 69학번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인해 새로 신입생을 받을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이는 일본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대학문제간담회와 문부성의 권유를 동경대학교가 받아들여 결정한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결정이었으며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작금의 조치들은 의사의 역량은 상관없이 그저 면허를 가진 ‘의사’를 많이 배출만 하면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료와 의학교육의 현장에서 집단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만 걱정하는 의학교육의 앞날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140년 전 근대의 의료와 의학교육을 이 땅에 도입한 이래 오랜 세월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 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가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 뿐 아니라 정치권 조차도 대화를 차단당하고 있어 오히려 의료개혁의 절대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2256-302)[23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2256-302)사업은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공학교육인증원 등 10개 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의 (재)지정・중간평가 및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인증기구 지정·지도로 구성된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인천대의 성과를 정부가 평가하고 행·재정 지원 및 컨설팅 등으로 환류하여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사업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학사회 인식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려는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사업

232) 문의: 02-6788-5188

- 공학교육인증 확산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으로 구성됨.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예산안은 20억 1,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억 5,000만원(28.8%) 증액되었음.

< 2025년도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 (B)		증 감	
			요구안	조정안	(B-A)	%
□ 대학창업활성화	2,017	1,564	2,249	2,014	450	28.8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의학교육평가원 등에 대한 평가인증 체계 구축 지원 필요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사업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9개 평가인증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도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		증 감	
			요구안	조정안(B)	(B-A)	%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374	337	787	787	450	133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의학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 지원 예산 2억 5,000만원 및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약학교육 성과기반의 평가·인증 선진화와 시스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 2억원이 증액되어 총 7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약학교육 성과기반의 평가·인증 선진화와 시스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다음과 같음.

< 약학교육 성과기반의 평가·인증 선진화와 시스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 세부내역 >

(단위: 원)

구분	실행항목	예산액	상세내역
평가인증 체계 구축	인건비	30,000,000	- (내부)위원/업무보조원 인건비 - (외부)회의비/자문료/특강수당/연차수당 등
	수용비	20,000,000	- 워크숍/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문헌조사 등 - 학술대회/포럼 참가비/ 회의경비(음료, 식대) - 장소 사용료
	소계	50,000,000	
평가인증 체계 관련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인건비	20,000,000	- (내부)위원/업무보조원 인건비 - (외부)회의비/자문료/특강수당/연차수당 등
	외부용역비	115,000,000	- 스마트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외주 용역비
	수용비	15,000,000	- 워크숍/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문헌조사 등 - 학술대회/포럼 참가비/ 회의경비(음료, 식대) - 소모품비/인쇄비/교통비 등
	소계	150,000,000	
합계		200,000,000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평가인증체계 관련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평가인증과 관련한 온라인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는 타 인정기관에도 존재함. 최근 의대증원 사태로 주요변화평가 등 업무가 늘어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경우도 2023년도 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평가인증 전산화 구축 기초작업을 수행한바 있음.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전산화 사업계획 요약서 >

A. 배경 및 목적

- 평가인증 사업의 모든 단계와 자료의 정리 및 보관은 현재까지 수기에 의한 디지털 문서 생성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물은 인쇄물과 디지털 문서파일 형태로 병행하여 보관하고 있음.
- 국가의 행정 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인증 사업 전반에 전산화 기조를 구축하여 피평가대학과 평가 기관의 작업 편의성, 효율성, 투명성, 보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B. 전산화 사업 범위

-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방문평가 및 서면평가 활동과 보고서 작성 활동
- 의학교육 평가인증 보고서 리뷰, 심사 및 평가와 판정 활동
- 평가인증 활동의 모니터링 및 관련 인력 관리 체계
- 평가인증 자료의 종단적 자료 축적 및 분석
- 재단의 정책 개발 및 내·외부 정보 제공 체계

C. 사업 방법

- 타 평가인증기관의 전산화 상황 조사
- 전산화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작업
- 전체 사업 틀과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
- 시범 사업 시행과 단계별 본사업의 병행 추진

D. 조건 및 기대효과

- 예산 확보 및 의대협회와의 '한국 기본의학교육 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 상황
- 평가인증 활동의 편의성, 보안성 및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
- 평가 및 피-평가 기관의 상시 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관련 신뢰도와 효율성의 향상 효과
- 대외 정보 제공과 홍보 등에 활용하여 국내외 기관의 신뢰도 향상 효과

자료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이러한 평가인증체계의 전산화는 의평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정기관에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 피평가기관의 인증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입법예고 중)의 위법성 검토 필요

❑ 교육부는 2024년 9월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는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의 효력을 연장하고,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를 명확화하며, 불인증 처분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교육부는 동 시행령의 개정 이유를 평가·인증 업무의 공백, 중단 혹은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동 시행령의 개정은 이러한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음.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단은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동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의평원은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인증 평가를 내릴 경우 그에 앞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임.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요 교육병원 변경
2.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3. 소유권 변경
4.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이상 증원
5.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작성 및 제출) ① 대학은 제2조에서 정의한 주요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와 [표 1]의 주요변화 유형별 기술항목에 따라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조 제5호의 경우 [표 2]의 기술항목에 따른다.
② 인증단은 주요변화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가 서면평가에 부적합한 경우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절차) ① 인증단은 주요변화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후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상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단은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판정위원회를 통해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주요변화가 기본의학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에 상당한 수준의 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동 개정안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바, 동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동 시행령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233]의 입법취

23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시정이 필요함.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는 새롭게 지정된 인정기관이 최초로 평가・인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4(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완기간동안 해당 학교가 받은 기존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7항 중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를 “변경할 때에는”으로, “알려야”를 “미리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정기관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는 새롭게 지정된 인정기관이 최초로 평가·인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조의4(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완기간동안 해당 학교가 받은 기존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 ⑥ (생 략) ⑦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변경할 때에는 ---------- 미리 알려야 ----------.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⑨ 인정기관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2024. 9. 25.자로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평가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보건위생 보호)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의 관련 조항에 반하는 개정안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합니다.

□ 교육부 개정안 주요 내용

1.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 · 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 제2조의3(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 ·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 ·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 ·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평가 · 인증을 받은 학교는 새롭게 지정된 인정기관이 최초로 평가 · 인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기존 평가 ·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 · 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

- 제2조의4(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 · 인증에 대한 특례)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완기간동안 해당 학교가 받은 기존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평가 · 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 · 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

-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7항 인정기관은 평가 · 인증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9항 인정기관은 평가 ·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평가 · 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

-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8항 인정기관은 평가 · 인증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 · 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안과 관련 있는 헌법과 법률 조항

- 헌법과 법률(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의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등 의학교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1) 국가(국회와 대통령, 교육부장관)는 교육 기관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헌법31조,36조, 교육기본법 1조 5조).

- (2)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등교육법 제11조의2).

- (3) 의학교육 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대통령령(고등교육기관의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의료교육기관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위 (3)항의 보장과 보호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에 그 개정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면 그 행정처분은 위헌 위

법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개정안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조의3)

가. 개정안과 개정이유

- 제2조의3(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는 새롭게 지정된 인정기관이 최초로 평가·인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

나. 개정안의 문제점

-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2025학년도 갑작스런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맞물려 인정기관 부재의 상황을 가정하여 기존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은 정부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의 책무이고 법률이 정한 의료인 교육 및 의료인 면허제도의 목적에 충실해야 법령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평가인증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려를 초래한 2천 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 (교육의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의 무력화) 개정안은 어떠한 이유로든 인정기관이 부재한 경우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 등에서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정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2.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가. 개정안과 개정이유

- 제2조의4(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 · 인증에 대한 특례)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완기간동안 해당 학교가 받은 기존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규정(평가인증단 규정 10조 2항 단서) 적용 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나. 개정안의 문제점

-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 위배)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과 법률 조항에 따라 인증과 불인증, 보완기간 부여 등은 평가대상 분야의 특수성과 평가기관의 엄격한 평가와 판정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평가기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평가활동은 의과대학 재학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다.

-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 의평원은 과거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평가인증을 수행한 바 있다. 대규모 재난을 빌미로 교육여건이 미흡한 의과대학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유보하고 무조건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대학의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연시켜서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매우 크다.

- (평가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간섭)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을 반영한 유예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 평가하고 불인증 결정을 할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지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평가기구에 부여된 권한이어야 한다.

3.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가. 개정안과 개정이유

-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7항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9항 인정기관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영 제6조제7항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인증 대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등의 중대한 변화나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사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대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의 문제점

-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 위배) 기존의 법령은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시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국가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책임을 헌법과 법률에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시에 교육부에 사전보고를 해서 사전심사를 받게 함으로 상위법과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평가기구의 자율성 침해와 통제 수단) 고등교육 평가 · 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5조 제1항은 이미 평가인증 기구 지정요건(평가 · 인증 기준, 방법, 절차, 특히 기준 결정 · 변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방안, 원칙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7조 제1호에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사전 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 평가 · 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가. 개정안과 개정이유

-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8항 인정기관은 평가 · 인증의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 · 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일부 인정기관에서만 자체 규정을 통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대해 평가 대상 학교가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평가 · 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의 문제점

- (의학교육의 부실 방치 우려) 대통령령으로 「1년 이전 사전예고제」를 규정하는 것은 의료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평가인증 기준 등을 변경해야 하는 사

정이 발생했지만 1년 전에 사전예고를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최장 1년간은 평가인증을 유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의학교육의 부실을 한시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다.

- (예고기간 결정에 대한 평가기관 자율성 침해) 평가인증기준의 변경시에 예고기간 등을 결정하는 것을 평가기구에 맡기는 현재 방식이 헌법과 법률에 더욱 부합한다.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평가기구는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 전문성과 계속성을 갖고 있다. 한편, 의평원은 평가인증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 2년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변경하고 있다. 평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평가기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 (사전 예고 강제로 평가 무력화) 의평원에서 충분한 기간 사전 예고 없이 평가의 절차를 변경한 경우는 과거 서남의대 특별 편입학이나 이번 의과대학 대규모 정원 증원과 같이 주로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조치와 요구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의평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의 변경 시 1년 전에 사전 예고할 것을 강제하는 본 개정안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주요변화평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4. 10. 16.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3)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 예산 보전 필요

❑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은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의 (재)지정·중간평가 및 지도·감독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		증 감	
			요구안	조정안(B)	(B-A)	%
□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81	73	300	73	0	0

자료: 교육부

< 2025년도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 예산 요구내역 >

(단위: 원)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인건비	116,032,000	(위촉직) 학사 급여 2,480,000원×12개월×3명=89,280,000원
		(위촉직) 교통비 120,000원×12개월×3명=4,320,000원
		(위촉직) 법정부담금 93,600,000원×12%=11,232,000원
		(위촉직) 퇴직금 8,000,000원
		(위촉직) 기타수당(연가보상, 복지비, 건강검진 등) 3,200,000원
공공요금	108,000	우편료 국내일반 108,000원
수용비	5,350,000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자료집 50원×200매×25부×4회=1,0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워크숍) 자료집 50원×200매×25부×1회=250,000원
		(재지정심사) 자료집 50원×200매×15부×5회=750,000원
		(중간평가) 자료집 50원×200매×10부×3회=300,000원
		(인정기관 평가편람) 자료집 50원×200매×80부×1회=800,000원
		(인정기관 워크숍 및 간담회) 자료집 50원×200매×80부×2회=1,600,000원
		(사업결과보고서) 자료집 50원×200매×50부×1회=500,000원
		소모품 및 업무 자료 인쇄 150,000원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1,800,000	(모니터링) 회의실 임차료 700,000원×2회=1,4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회의실 임차료 700,000원×4회=2,8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워크숍) 회의실 임차료 1,000,000원×1회=1,000,000원
		전산기기 임차료 550,000원×12개월=6,600,000원
여비	8,900,000	(모니터링) 국내여비 600,000원×2회=1,2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국내여비 700,000원×4회=2,8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워크숍) 국내여비 700,000원×1회=700,000원
		(재지정 심사) 국내여비 600,000원×5회=3,000,000원
		(중간평가) 국내여비 400,000원×3회=1,200,000원
연구정보활동비	300,000	영상회의 솔루션(Zoom,프로) 300,000원×1회×계정 1개=300,000원
전문가활용비	37,200,000	(모니터링) 전문가협의회 200,000원×10명×2회=4,0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150,000원×14명×8회=16,8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워크숍) 강의 수당 400,000원×1명×1회=400,000원
		(재지정 심사) 심사 수당 300,000원×8명×5회=12,000,000원
		(중간평가) 심사 수당 300,000원×4명×3회=3,600,000원
		(인정기관 워크숍) 강의 수당 400,000원×1명×1회=400,000원
회의비	6,720,000	(모니터링) 간담회비 30,000원×15명×2회=9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간담회비 30,000원×20명×4회=2,400,000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워크숍) 간담회비 30,000원×20명×1회=600,000원
		(재지정 심사) 간담회비 30,000원×12명×5회=1,800,000원
		(중간평가) 간담회비 30,000원×8명×3회=720,000원
		(사업결과보고서) 간담회비 30,000원×5명×2회=300,000원
외부용역비	70,000,000	(모니터링) 설문조사 용역 15,000,000×2식=30,000,000
		(인정기관 워크숍 및 간담회) 행사운영 용역 40,000,000×1식=40,000,000
간접비	43,590,000	(14.53% 계상)
합계	300,000,000	-

❑ 정부(교육부)는 평가인증의 공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24년 한시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출연금 사업인 ‘대학 진단평가 정책 지원 연구 및 사업’의 세부사업인 ‘새로운 평가체제 안착을 위한 전문적 지원’ 예산[234]을 활용하였으나, 대학 진단평가 중단에 따라 동 사업은 2024년에 종료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의학, 한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이 국가고시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23 신규지정),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인정기관 지정 심의 중) 등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하여 3억원 가량의 예산이 요구되던 사업에 7,300만원만 편성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감액되는 사업 예산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4) 총 11억 8,000만원 중 약 2억 2,000만원을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에 활용

(4)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의 비목 변경 필요

❑ 동 사업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보조금(민간경상보조)을 지원하여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23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개발연구원	15. 한국법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산업연구원	22. 국토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연기관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236] 다만, 업무유관 및 전문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접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나, 개별법에서 출연기관에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출연과 보조의 근거를 동시에 두어[237] 국립대병원 시설, 장비 확충 사업은 출연금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유사한 사례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6주기('22.~'26.)까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2027년부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사업의 변경을 검토하기로 조치한 바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

---

2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7)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한 보조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을 민간경상보조(320-01)가 아닌 민간위탁(320-02) 또는 사업출연금(350-02) 등으로 비목을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학술연구조성 R&D(2432-302, 2446-300 등)[238][239]

가) 예산안 편성 현황

❑ 학술연구조성(프로그램)에는 인문사회와 이공학으로 구분하여 여러개의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 연구 조성은 3,186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700만원(0.5%)이 감액되었고[240], 이공학학술 연구 조성은 전년 대비 811억 500만원(15.8%) 증액된 5,958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학술연구조성 프로그램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	증 감	
				(B-A)	%
인문사회학술 연구 조성	317,272	320,331	318,604	△1,727	△0.5
인문사회 기초연구(R&D)	241,372	248,865	256,981	8,116	3.3
인문학 진흥(R&D)	42,483	37,486	28,121	△9,365	△25.0
한국학 진흥	22,619	21,796	19,832	△1,964	△9.0
사회과학 연구지원(R&D)	10,798	12,184	13,670	1,486	12.2
이공학학술 연구 조성	538,367	514,695	595,800	81,105	15.8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529,046	511,597	593,048	81,451	15.9
개인기초연구(교육부)(R&D)	9,321	3,098	2,752	△346	△11.2

2024년도에 전부처 R&D 사업예산이 감액된 후, 이공학 학술연구의 경우 상당부분 증액되었으나, 인문학의 경우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38) 문의: 02-6788-5185

239) 교육부의 학술연구와 관련한 사업은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2433)”, “학술자원 관리체계 및 연구윤리기반 구축(2437)”, “학술단체 지원(2438)”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인문사회 및 이공학의 학술연구조성 프로그램(2432, 2445)에 한정하여 논의함

240) 이는 “인문학진흥(R&D)”세부사업 중 HK+ 사업이 신규과제가 없이 계속과제로만 편성됨에 따라 93억 6,500만원(25.0%) 감액편성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학술연구조성 관련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사업에서 국가연구소 100억원, 글로컬 R&D지원 136억 8,500만원, 미래도전연구지원 50억원이, 인문학진흥(R&D)에서 HK 3.0 (인문한국) 10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이공학학술 연구기반구축 (R&D)	529,046	511,597	593,048	81,451	15.8
○ 국가연구소	-	-	10,000		순증
○ 글로컬 R&D 지원	-	-	13,685	-	순증
○ 미래도전연구지원	-	-	5,000		순증

주) 신규 내역사업 외의 내역사업은 생략

< 2025년도 인문학진흥(R&D)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인문학진흥(R&D)	42,483	37,486	28,121	△9,365	△25.0
○ 인문한국지원	33,475	33,640	28,121	5,519	△16.4
- HK 3.0	-	-		10,400	순증

주) 신규 내역사업 외의 내역사업은 생략

❑ 교육부는 해당 신규사업은 각각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 인문한국(HK)사업 등 기존 사업을 개편 또는 발전시킨 신규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 비교 >

기존사업	신규사업	비고(주요 차이)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국가연구소	부처공동지원, 지원규모 증액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글로컬 R&D 지원	국제협업연구 추진
HK+	HK 3.0	컨소시엄 지원유형 신설, 공동연구 장려

나) 검토의견: 신규(계속)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R&D 사업의 경우 관행적인 사업 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후 사업을 종료 또는 재검토하는 R&D 일몰제를 도입하여, 일몰 도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R&D 사업은 일몰제 도입으로 재정지출 효율화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241],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거나[242]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부작용[243]이 제기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음[244][245].

241) 일몰관리혁신제도 도입(2020년) 전인 2019년 기준 일몰 대상 사업 예산 감소 규모가 6510억원
242) 일몰 후속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500억원 미만의 소형사업으로 기획하거나,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이른바 R&D사업 쪼개기, 기존 R&D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재기획 과정에서 단년도 또는 단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함.
243) 도전적인 대형 R&D의 추진이 어려워진 점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244) 이에 따라 2015년 도입된 R&D 일몰제에 이어, 2020년부터 일몰관리 혁신대상 사업으로 선정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관리 혁신제도를 도입하였음.
245)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및 일몰제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음.
(관계부처합동 “R&D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개편” 2024.5.17.)

❑ 또한, 현행「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주요 R&D의 경우 예산요구서 및 중기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의 배분방향 및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46].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시 추진방향,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예산 배분·조정내역, 유사중복 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부처별 역할 분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 이와 같이 관계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제도와 함께, R&D 사업 종료시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 등을 통해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사업성과 제고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246)「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국가연구소

❑ 국가연구소는 교육부·과기부간 협업을 바탕으로 대학 내 연구소의 육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개방형 연구거점으로서 기관·국가간 벽을 허물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특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교육부, 과기부가 연간 100억원(양 부처 합계)을 10년간 지원('25년 4개소 선정)하는 내용으로, 사업 특성상 Block funding[247] 방식 지원으로 연구소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연구·인력·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248], 대학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재정지원 규모 확대)하는 점에서 기존 대학연구소와 차이가 있음.

<국가연구소와 기존 유사사업 비교>

	국가연구소	혁신연구센터(IRC)	대학중점연구소
지원목적	국가 차원의 연구소 육성	연구집단 육성	안정적 연구소 운영 지원
수행주체	과기정통부·교육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지원대상	대학 내 부설연구소	15인 이내 연구그룹	대학 내 부설연구소
지원기간/규모	10년(3+4+3) / 연 100억원	10년(3+4+3) / 연 50억원	9년(3+3+3) / 연 7~11억원
지원방식	블록 펀딩 (Block Funding)	일반 출연	일반 출연
지원분야	대학 강점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자율
지원내용	패키지 지원 (연구·시설·인력 등)	연구 수행 및 정착 지원	핵심연구과제 수행 지원

자료 : 교육부

247) 선정 단계부터 세부연구과제를 정하는 기존 지원방식과 달리 연구자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방향과 총액 등을 중심으로 검토·평가하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248) 인력, 장비 등 개별 사업 형태로 각각 지원하지 않고 연구소 육성을 위해 패키지로 지원

❑ 기존 대학연구소가 안정적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대학 내 연구에 치중하였고, 부처별로 구분하여 사업지원을 하였으며, 지원방식, 내용, 규모등에서 자율성이 제한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249] 각 부처간 연계를 긴밀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대학중점연구소 사업과 지원방식 및 내용이 다르고 지원규모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충실한 사업관리를 통해 소기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글로컬 R&D

❑ 글로컬 R&D 지원은 비수도권 대학(4대 과기원, 포스텍 제외) 소속 연구자의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예산으로 신규과제(최대 3년, 연 1.8억원 이내[250]) 119개 내외 136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신규과제 선정은 Bottom-up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과제 제안시 지역발전·혁신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한다는 계획임.

249) 교육부는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학내 거버넌스 조정지원등, 과기부는 혁신도전적 연구 및 글로벌 협력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임

250) 연구자 인당 1억원 연구비 지급, 국제 협업연구로 진행하는 경우 최대 연 5,000만원 추가 지원

❑ 동 사업은 지역대학 소속 연구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동일하나, 지역산업발전 혁신과 연계된 분야에 있어 2인 공동연구 및 글로벌 연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소규모 공동연구로서 단기간 지원으로 빠르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251].

<글로컬 R&D와 기존 유사사업 비교>

구분	기존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글로컬 R&D 지원
지원대상	지역대학 소속 연구자	지역대학 소속 연구자
연구방식	개인연구	2인 공동연구 장려
지원기간	3~10년	3년
과제단가	연평균 0.5억원 *박사과정생 이상 채용시 연 0.5억원 추가지원	연평균 1.8억원 *글로벌협업연구로 추진시 연 0.5억원 추가지원
과제 선정방식	Bottom-up	Bottom-up *지역발전, 혁신과의 연관성 평가

자료 : 교육부

❑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연구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대학 소속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R&D)사업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252]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51) 과기부 소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와 차별화됨

25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① 정부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문한국(HK) 3.0

❑ 인문한국(HK) 3.0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된 인문한국(HK 및 HK+)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는 후속사업 모델로서, 2025년에 신규과제 10개(연구거점형 8개, 컨소시엄형 2개)를 선정할 예정임.

❑ 기존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과 비교시 연구소간 컨소시엄 지원유형을 신설하고, 공동연구를 보다 장려하는 등 일부 사업설계를 조정·개편하였음.

<인문한국 3.0사업과 기존 사업 비교>

구 분	인문한국플러스(HK+)	인문한국 후속(HK3.0)
지원대상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 + 연구소 간 컨소시엄
지원내용	인문학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인프라(시설, 인력) 구축 지원	인문학 기반의 국내·외 사회문제(아젠다) 발굴 및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지원단가	(1유형) 최대 17억원 이내 (2유형*) 최대 3.3억원 이내 * HK 1단계 사업('07~) 종료 후 재진입 유형이며, 1유형(신규)과 달리 HK교수 인건비 미지원 (연구소 운영비, 연구비만 지원)	(연구거점형) 최대 8억원 내외 (컨소시엄형) 최대 20억원 내외 ※ 컨소시엄 : 4개 내외 연구소 구성
지원규모	'24년 총 336억원, 계속과제 41개 '25년 총 138억원 계속과제 19개	'25년 정부안 기준 104억원 (연구거점형 신규과제 8개, 컨소시엄형 신규과제 2개)
지원기간	7년(3+4) ※ '17년 신설, '24년부터 계속과제 지원	6년(3+3)

❑ 인문학 R&D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24년부터 기존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이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사업 추진을 통해 인문학 분야 신규과제 지원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동 사업과 같은 장기 대규모 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에 대한 충실한 평가를 통해 후속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총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253)254)], 사업 수행시 해당 총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53)「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제6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3조(전문가 자문), 제34조(자체평가), 제35조(수시점검), 제36조(연차점검), 제37조(단계평가)
제38조(총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연구소의 최종 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 년도에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최종 지원연도 연구개시일 이전에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분석.평가하여 연구소별 총괄평가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보고서에는 HK교수의 정년트랙 임용 결과 및 정년보장 완료 결과가 적시되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정년보장이 완료 되지 못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향후 정년보장 완료 계획(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한다)이 명시되어야 한다.
254) 교육부는 '17년도 선정 연구소의 경우, 과제가 종료된 후 '24년말 경에 총괄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기업문제해결형R&D

천우정 행정학(과학기술정책 전공) 박사, 국회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 국가예산 약 29.7조원 규모(교육분야 1조 4,864억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가진 **문제점은 그동안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100개 연구개발과제 중 98개가 성공할 정도로 성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된 실적(기술활용률)은 저조(2019년 기준 3.8%)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과제선정 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인 연구개발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선정되고 있다는 점, 당장 시장 및 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완성체인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추진이 아니라 요소기술 위주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출연연구기관별 칸막이로 인해 협동연구도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5년 +α의 긴 연구기간에 따라 연구과제가 비록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노후화된 기술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결과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연구자보다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해결책은 기업문제해결형R&D를 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과제 선정을 공급자인 엔지니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의 협회, 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원사들의 연구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게 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지원과 함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스탠포드대학의 연구자들은 논문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기업들

이 돈을 들고 찾아와서 제품개발을 같이 하자고 해서 이것 한다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구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SCI급 논문들을 영문으로 열심히 써서 인터넷에 올려주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필요한 연구내용을 4시간 안에 요약해준다고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를 SCI급 논문으로 하여 추진한 결과가 위와 같다. 대규모의 국가예산을 들여서 남 좋은 일을 해준 것이다. 스탠포드대학의 연구자 케이스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세계화된 시장에서 라이벌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조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제품개발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는 관계로 글로벌기업들도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경쟁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도에서 경쟁기업들보다 앞서야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2년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는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장 시장에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요소기술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완성품을 만드는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을 해야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를 팀장으로 하여 그의 책임 하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게 된다면 출연연구기관별 칸막이식 운영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넷째, 수요자 위주의 기업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은 과제선정에 관여하지 않게 해야 하며 연구자가 아닌 경영자 출신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과제를 지원하고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기업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제에 국가도 기업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여 투자분만큼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과제가 성공할 경우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 국가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대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연구자

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과제가 성공할 경우 그 과실이 자신에게 확실하게 부여된다면 그 만큼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정의 참여결과 큰돈을 벌게 되는 연구자들의 사례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사보다는 이공계에 더 진학하려고 할 것이다. 이공계에 진학하려는 인재가 많아질수록 국가경제발전에 보다 유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다음에서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심의과정에서 나온 일화를 소개하자면, KTX 열차의 속도가 기존 300KM/H인 것을 수백억원의 예산과 5년의 기간을 들여서 50KM/H 높이는 연구를 추진하다가 이를 완성한 후 새로 50KM/H를 더 높이는 연구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과 5년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자의 주된 기술은 KTX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고 이를 50KM 더 높이면 운행시간은 5분 단축된다고 한다. 이 연구자가 아는 주된 기술이 이것이므로 이 분야를 더 심화하겠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세상은 2025년부터 드론택시가 상용화될 예정이고, 서울-부산 간 16분에 주파하면서 건설비용은 기존 KTX의 54%밖에 들지 않는 하이퍼튜브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2020년 11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독자 개발한 1/17 축소형 튜브 공력시험장치에서 하이퍼튜브 속도시험을 하여 진공 상태에 가까운 0.001 기압 수준에서 시속 1019km의 속도를 달성했다. 이는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해외의 에어건 형식 튜브 공력시험장치는 일본과 중국의 시속 600km, 1기압이 최고 수준이며, 0.001기압의 튜브 시험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8년 강철진공관의 1/3 비용이면 되는 콘크리트진공관 기술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완성하였다. 이렇게 게임의 룰이 확연히 달라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심의에서는 예전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들고 와서 심화시키겠다는 연구자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KTX의 이용객이 많아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층열차를 개발하겠다는 연구개발과제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층열차가 다니려면 기존 노선의 터널을 더 높게 뚫어야 되어서 터널구간이 많은 KTX 구간

의 현실을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초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출연연구기관 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자기 관심분야의 과제를 5년짜리 과제로 추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의 사업은 원장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이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이 연구하게 될 연구자의 전공과는 다른 분야로 이끌기도 해서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고 한다.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이나 과학기술분야 내에 있는 인맥의 끈에 의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아닌 원장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밖에서 보기에 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가로 보일 수 있으나 공학별 세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연연별 과제 선정 시 원장이 대부분 관여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보다는 수직권위에 의한 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과제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한다. 이는 성공할 수 있는 과제만 연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 위주 과제보다는 실패하지 않을 요소기술 위주 과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간도 5년 + 알파로 장기간을 잡고 추진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제품 사이클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5년 뒤에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될 수 있다. 요즘 글로벌기업들은 2년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라이벌들이 세계시장에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라이벌에 의해 시장이 선점되어 개발해봐야 소용이 없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급자 위주의 과제선정과 실패하지 않을 요소기술 위주의 연구 진행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2년 기준 약 30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우선 수요자가 과제를

선정토록하고 출연연은 이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수요자에는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라이벌인 TSMC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도 이를 도와줄 능력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한다.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드론택시, 백신 등 기업들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들이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총 등 기업협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프로젝트별로 헤쳐모여 할 필요가 있다. 2년 안의 기업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연구과제 선정에 이사회 및 연구원장이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연구원장은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뉴노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 조직문화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문화는 그 기업의 CEO가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 부문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자인 부문의 경우 CEO가 아닌 디자인 부문장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 회의할 경우에도 자기가 관여된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는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적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개편될 출연연에서는 기업협회들이 제기한 기술개발요구를 프로젝트별로 구분하고 그 프로젝트에 가장 정통한 사람을 책임자로 하여 그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는 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업기간도 2년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기술개발에 2년 이상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세계 도처에 있는 라이벌들과의 시간, 속도전에서 밀리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상기 대안들을 통해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기술된 과학기술의 존재이유를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및 성과확산이 100%됨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끝)

고전번역 적극적 지원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경제시대에 돈이 되는 데이터는 주로 문화체육관광에서 나온다.

K콘텐츠가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누구도 아냐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도 알아서 4년간 25억 달러(3조 3천억원) 투자를 한다. 오징에 게임에 넷플릭스가 250억원 투자해서 방영되고 한달도 안되어서 시총으로 54조원 벌었다. 오징어게임은 한국 민속놀이가 기반이 되었다.

넷플릭스에 방영되었던 악귀라는 드라마에는 태자귀라는 귀신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호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에 태자귀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드라마가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데는 한국고전번역원(25년도 예산안 253억 6,700만원)의 고전번역이 있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드라마 작가실에서 한국고전번역원으로 문의전화가 온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도 K드라마 열풍에 기여하고 있다.

한류가 천년 만년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야 한다. 한국고전번역원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번역 등은 예산 부족으로 3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팔만대장경도 1차 한글화작업은 마쳤으나 미진한 부분이 조선왕조실록 1차 번역처럼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2차 번역작업에 들어가 있다. 팔만대장경도 조선왕조실록처럼 2차 한글화사업이 필요하다. 종전과 달리 제대로 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팔만대장경 속 부처님은 수많은 이야기로서 예시를 들고 있다. 부처님은 이야기꾼이셨다. 팔만대장경도 우리 고전이며 K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아직 활용되지 않은 이야기 보물창고다.

K콘텐츠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잘 하는 분야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감수성을 가진 이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잘 열어갈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자퇴하고 알파벳 필기체가 예뻐서 이를 대학에서 18개월 동안 청강했다고 한다. 이후 애플 매킨토시 초기 버전에 경쟁회사에는 없은 예쁜 알파벳 필기체를 넣었고 애플은 경쟁회사들을 가볍게 이겼다고 한다. 이는 문화적 감수성에 기반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교육부 산하 고전번역 및 인문학연구사업들은 K콘텐츠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다. 인프라 및 기초가 튼튼해야 K콘텐츠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

고전번역 및 인문학연구사업에 예산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충분한 이유가 된다.

5. 지역인재정책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01-400)[25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01-400)사업은

-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별 강점 및 특성을 고려한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글로컬대학 등 지역의 우수대학 육성 지원

- 2026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통합 예정인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마이스터대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255) 문의: 02-6788-5188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예산안은 2조 1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985억원(66.4%)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 (B)		증 감	
			요구안	조정안	(B-A)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346,000	1,202,500	2,001,000	2,001,000	798,500	66.4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RISE 예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2025년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RISE로 통합하여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등 8개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RISE에 추가로 통합할 예정임.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



자료: 교육부

❑ 기존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사업출연금(350-02)

형식으로 지자체 플랫폼에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과 달리 동 사업은 RISE 예산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각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추진,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내역사업 산출내역 >

□ 글로컬대학의 2025년 지원 가정치

<전제 1> 약 3,900억원+α

○ (전제) 단독유형 지원액 50억→100억→200억→325억→325억
통합유형 지원액 80억→150억→400억→435억→435억

※ 2·3차년도 지원액은 글로컬대학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변동 可

○ (2023년 지정, 3차년도 지원금) 2,800억원 (단독 200억원×6개 + 통합 400억원×4개)

○ (2024년 지정, 2차년도 지원금) 1,100억원 (단독·연합 100억원×8개 + 통합 150억원×2개)

○ (2025년 지정, 1차년도 지원금) 추후 결정 예정

<전제 2> 약 4,400억원+α

○ (전제) 단독유형 지원액 50억→100억→250억→300억→300억
통합유형 지원액 80억→150억→400억→435억→435억

※ 2·3차년도 지원액은 글로컬대학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변동 可

○ (2023년 지정, 3차년도 지원금) 3,100억원 (단독 250억원×6개 + 통합 400억원×4개)

○ (2024년 지정, 2차년도 지원금) 1,100억원 (단독·연합 100억원×8개 + 통합 150억원×2개)

○ (2025년 지정, 1차년도 지원금) 추후 결정 예정

□ 의대 교육혁신 지원

○ 32개교*평균 1,723백만원 = 55,100백만원

○ 정원이 증원된 32개교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와 각 학교가 공동으로 제출한 계획을 심사하여 차등지원 예정

□ **지역 협력 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 21,241 백만원

○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제출한 계획을 심사하여 지역별 차등지원 예정

주요 과업	예산
• 지역 협력 체계 구축 - 지역 여건 분석,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 편성하여 활용
• 대학 프로그램 개발·고도화 : 150개 내외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개발, 효과 분석 및 고도화	
• 대학 프로그램 공급 : 6,000학급 이상 - 학교에 프로그램 공급, 소속 강사 확보·연수, 학교 현장 지원	
• 외부 프로그램 고도화 지원 : 개인 강사 6,000명 연수 - 개인 강사 연수 지원, 외부 기관 프로그램 고도화 컨설팅 등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지역대학은 지역혁신을 위해 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과 대학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다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하향식 사업추진 방식과 비교하면 사업관리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하에서 검토함.

❑ 일례로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7.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중 3개 글로컬대학(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울산대)이 본지정 실행계획서와 비교해 수정실행계획서상 추진과제(또는 성과목표)를 축소·제출함에 따라 본지정 실행계획서로의 원복을 요구하였으며, 3개 대학 모두 실행계획서를 원복한 바 있음.

❑ 또한, RISE 사업의 전신격인 RIS 사업 수행과정에서 전라북도 RIS 예산의 부적절한 배분 및 사용이 문제[256]가 되면서, 현재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조사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원도 동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였음.

❑ RISE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재정지원방식과 다른 지자체 주도의 재정지원과, 글로컬대학과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동 사업과 같이 중앙부처가 아닌 지자체, 대학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상향식 사업은 하향식 사업에 비해 위와 같은 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교육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립, 추진할 때부터 전 과정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협약 해지, 지원 중지, 사업비 환수 조치 등을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명시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RISE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경우,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자율평가와, 교육부가 지자체의 사업관리를 평가하는 연차평가·중간평가·종합평가의 일종의 상위평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위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 설계와 예산 배분 등을 통해 환류할 계획임.

❑ 이러한 자율평가-상위평가의 이중 성과관리 체계 설계는, 지역의 자율성

256) "'복마전' 교육부 지역혁신 사업, 감사원도 칼 빼들었다", 주간조선, 2024.10.17.

에 기반한 사업운영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임.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요 >

⑥ RISE 성과관리

○ **(지표종류)** △교육부가 제시하는 **핵심성과지표***, △**지역 주도로 선택·수립**하는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RISE 사업 평가 추진

* **핵심 성과지표**는 필수관리지표로서 시도가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지표

** **자율 성과지표**는 시도에서 단위과제별로 제시한 성과지표로서 사업의 운영,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목적으로 수립

○ **(성과평가)** RISE 사업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연차-중간-종합평가)**를 추진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설계·집행 및 예산지원 시 반영**

- **지자체**(지역RISE 센터) **주도로 대학의 사업 관리**를 실시하고, (가칭)**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자료: 교육부

❑ 다만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사업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대학 현장의 우려 등이 존재하므로, 특히 사업초기에는 성과관리 체계에 따른 기본적인 성과관리에 더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각종 컨설팅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RISE 사업의 지역지원 플랫폼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RISE 사업은 기존의 대학지원사업을 넘어서 인구소멸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임. 우리나라는 매년 약 50만명이 귀농, 귀촌을 하고 있으나, 2년 안에 서울 등으로 돌아오고 있음. 그 주된 이유는 병원,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인프라 부족이라고 함. 또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들도 효과적인 사용처를 찾지 못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교육부는 RISE 사업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업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MOU를 추진하고 있음.

< 부처별 MOU 체결 현황 및 주요 협업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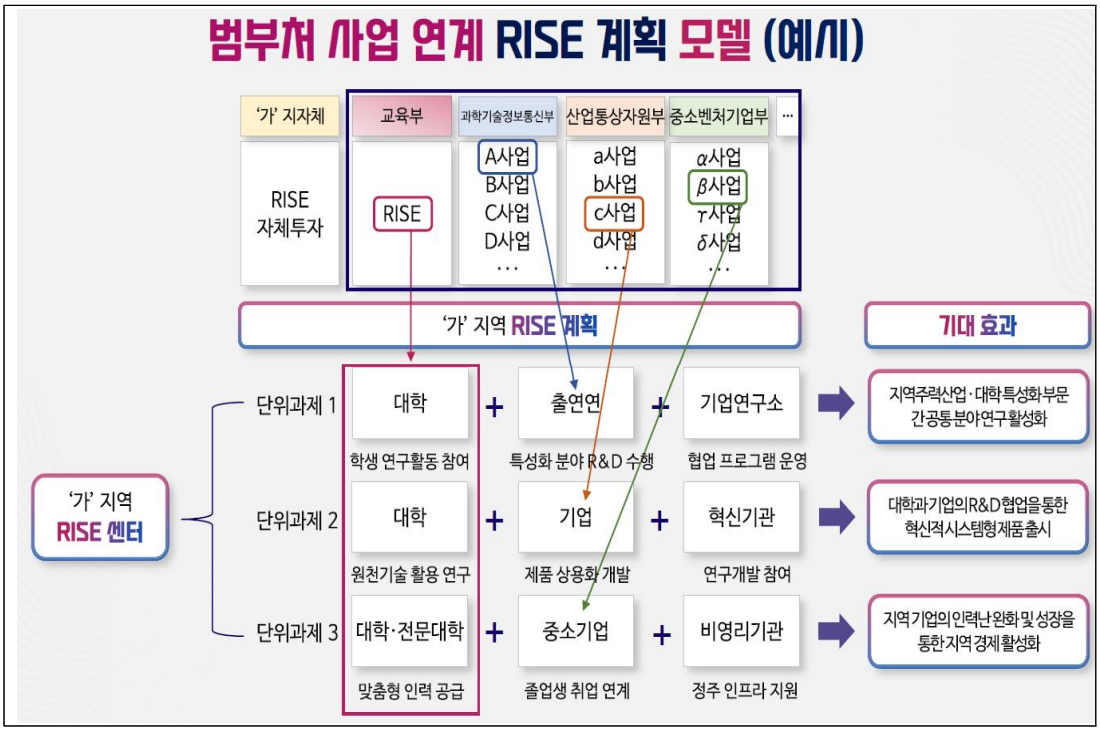
협업 부처	MOU 체결 일자	주요 협업사항
과기정통부	`24.8.22.	· **지역의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해 **대학-출연연 간 벽허물기** 추진
산업부		· 산업부 펀드자금을 지원받는 **지역 유망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학이 운영하고, **채용연계**까지 추진
중기부	`24.10.14.	· **대학 내 창업교육**,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강화 등 지역대학 중심**의 **창업지원체계 강화**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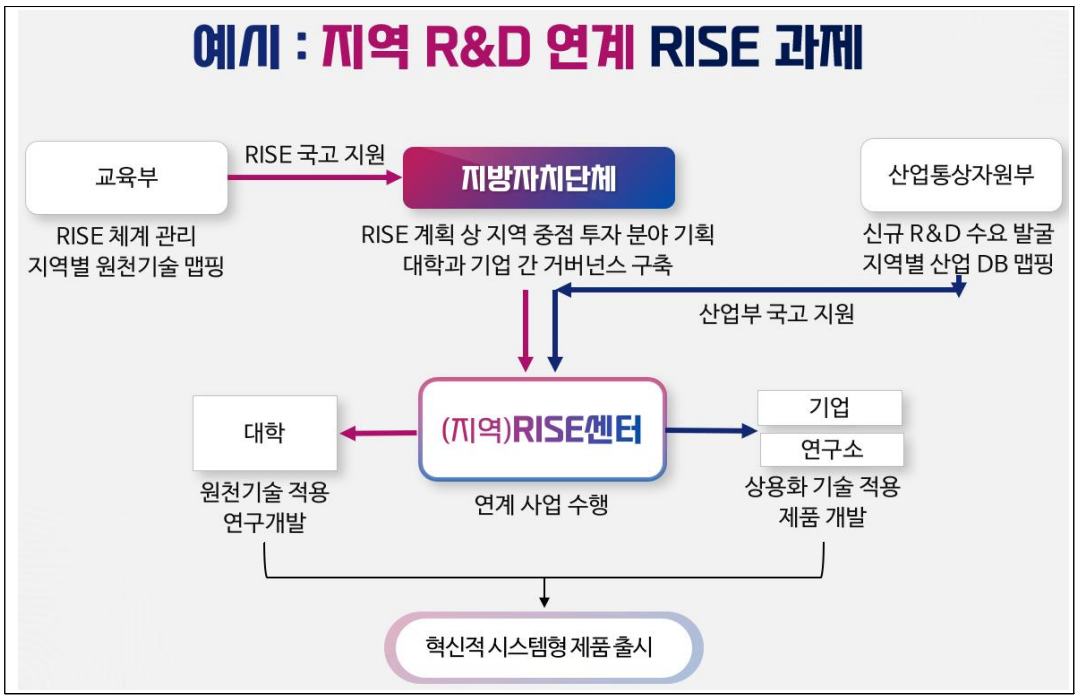
❑ 또한, 교육부는 이른바 '범부처 정책메뉴판'을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가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을 RISE와 연계하여 지역자율 RISE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범부처 사업의 RISE 연계 유형 예시 >

①유형 : 정책메뉴판으로 범부처 사업을 제시하고, **지역자율**로 RISE 5개년 계획 반영



②유형 : 1유형 + **지역RISE센터 예산 집행 연계** 및 **성과관리 협업**



③유형 : 2유형 + **RISE로 예산 통합(자치단체 보조 전환) 후 지역자율 집행**

※ 중앙부처 인재양성사업의 고특회계 단계적 이관 협의

자료: 교육부

❑ 이처럼 교육부는 지역지원을 위해 사업단위에서 범부처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더해 RISE 사업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복권기금 등이 효과적으로 지역지원에 쓰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바, 이하에서 검토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122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임.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현황 >

구 분	2022년분 기금 집행률			2023년분 기금 집행률		
	23.12.	24.3.	24.12. (예상)	23.12.	24.3.	24.12. (예상)
기초지원계정	37.6%	47.2%	92.6%	19.4%	26.1%	71.8%
광역지원계정	97.7%	97.7%	-	93.0%	94.0%	-
합계	52.6%	59.8%	94.4%	37.8%	43.1%	77.4%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2024년 3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7개(2개 시, 1개 구, 4개 군), 관심지역 중에서 6개(3개 시, 3개 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개(1개 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0%인 지방자치단체 현황 >

구 분	2022년분 기금			2023년분 기금		
인구감소지역 (89개)	-	1개 구	2개 군	2개 시	1개 구	4개 군
관심지역(18개)	-	-	-	3개 시	3개 구	-
광역자치단체 (15개)	-	-	-	1개 광역시	-	-

자료: 행정안전부

❑ 지방대학 활성화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RISE와 연계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제고 및 목적 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짐.

❑ 일례로 경북의 'K-U 시티 프로젝트'는 교육부 RISE 예산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연계[257]하여 RISE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또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대학 연계형 은퇴자 마을'인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지방대에서도 RISE 및 연관 기금, 특별회계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학 및 지방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실제로 스탠퍼드대 등 100여개 미국대학이 이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대학교, 동명대학교가

257) **(RISE 예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지역인재의 정주 지원에 활용

캠퍼스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있음.

❑ 학교복합시설[258]과 관련하여서도 RISE 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259]의 국민체육센터사업(수영장 등 실내종합체육센터)을 연계할 수도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바, 체육교육분야에서 RISE와 동 기금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0]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

25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59)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0) 의안번호 제2202956호,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에 있음.

❑ RISE 사업과 녹색자금의 연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산림청 소관 녹색자금[261](25년 775억 2,800만원 편성)은 복권기금 법정배분액의 5.846% 등을 배분받아 운용되는 자금으로서 학교숲 조성, 도시림 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음. 비수도권 지방대학에 숲을 조성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으며, 걷기좋은 숲길과 꽃길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인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즐겨 방문하게 할 수 있음.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 7곳이 연평균 약 193만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1,278억원의 절감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262]

---

2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2)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흡수량 국제표준 검증서 획득」(환경부 보도자료, 2024.10.24.)

❑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263], 기후대응기금 등 지역에 지자체에 지원되는 다양한 예산이 동 사업에 연계될 수 있어 보임.

< 지역 지원 연관 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년(A)	'25년 계획안(B)	'24년 대비	
			B-A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868,920	14,744,002	875,082	6.3
국민체육진흥기금	3,405,115	3,038,327	△366,788	△10.8
기후대응기금	2,391,807	2,622,389	230,582	9.6
복권기금	8,358,048	8,868,492	510,444	6.1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000	1,000,000	0	-

❑ 따라서 지역 지원과 연관되는 기금들이 RISE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메뉴판'을 보완하여 각 지역의 RISE 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26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 16. (생 략)

참고 1 정책메뉴판 구성 ('24.1.)

부처	사업명 (예산사업명)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 기업이 청년 등을 先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 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으로 훈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 ○ 지역고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산맞 사업평가지원, 컨설팅 및 교육, 시스템운영, 사업홍보 등 지역 고용 인프라 확충 위탁 사업실시('06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에서 실시한 지역 내 인력수요·공급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공동훈련센터(대학 등)에서 인력양성(중소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을 위한 훈련과정 개설 및 공급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저학년 진로교육 확대 등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K-디지털 플랫폼	○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자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 대상 디지털 분야 훈련을 직접 운영하고, 훈련 인프라를 개방·공유하는 공동훈련센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	○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중·고급 SW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수요 기반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하고, 비전공자에 대한 SW융합교육 등 대학 SW교육혁신
	교육훈련 (지역지능화혁신 인재양성)	○ 대학의 ICT·지능화 기술역량을 활용, 지역 기업의 지능화 혁신을 지원 ○ 연구수행 및 지역연구 인력양성
	기업·창업 성장지원	○ 연구개발특구 거점대학을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 ○ 창업아이템 검증 및 투자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부처	사업명 (예산사업명)	사업 내용
		창업 유도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을 대학(산단)에 채용하여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으로 활용
	네트워크형 캠퍼스SW 아카데미	○ 지역 대학·기업이 지역의 전략 산업 등에 특화된 디지털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하여 SW인력 수요 대응 및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
	캠퍼스SW 아카데미	○ 기업이 대학 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역량이 검증된 SW전문인재 양성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 대학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Open-Lab을 구성하여, 지역기업에 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지역주도SW성장 지원	○ 지역SW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성장지원
	지역SW사업 운영 및 활성화	○ 지역SW산업 진흥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제고를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고도화, 성과 홍보 활성화
	디지털 혁신지구	○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23~) - 디지털 기업·인재의 수요와 일치하는 지역 내 최적입지*에, 정부의 디지털 생태계 육성 관련 지원을 고밀도로 집약 * 넓은부지, 도심외곽을 선호하는 전통산업 입지와 차별화된 첨단산업 입지 경향 반영 - 지자체 주도로 디지털 신산업 성장 입지 설정 및 발전계획(10년 이상 단위) 수립 → 정부는 적합성 검토 후 조성지역 지원
국토 교통부	캠퍼스 혁신 파크	○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기업공간, 주거, 문화복합시설이 집적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 혁신도시 인근의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여 융합캠퍼스 조성
농림 축산 식품부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중소·중견 식품기업 재직자(교육생) 대상 석사과정 등록금(65%)과 계약학과 운영비 지원 등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 한식 분야 전공자 및 취창업 희망자 대상으로 한식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처	사업명 (예산사업명)	사업 내용
문화 체육 관광부	콘텐츠분야 인재육성	○ 콘텐츠분야 창·제작 인력양성을 위해 도제식 밀착교육 실시(창의인재 동반사업),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기업·지역전문기관이 함께 하는 교육운영 (콘텐츠원캠퍼스운영)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	○ 농·산·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활력이 저하된 문화취약지역 지역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활력지수 하위 30% 이하 지자체가 기획한 사업 지원
	관광전문인력양성	○ 관광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경쟁력강화 맞춤형 관광인재 육성, 우수호텔아카데미 육성, 관광산업 통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 지역 문화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 일경험 제공으로 지역문화 인력의 단계적 성장 지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 지원 등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우수 인재와 동포 가족의 지역정착 체류 특례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필요 인재 규모를 파악하고, 정착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
산업 통상 자원부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국가혁신클러스터별 특성에 따른 지역주도의 신기술 개발, 전후방 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① (글로벌확장형) 지역 클러스터 사업 영역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성과확대형 과제 ② (중추기술구축형)클러스터 중추 기술 및 공급망 분석·강화를 위한 역량 제고형 과제 ③ (문제해결형) 스타트업육성, 아이템 발굴 등 클러스터 성장 다각화를 위한 자유 공모 과제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 혁신도시의 산·학·연·관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기업의 개방적 혁신 지원 * 시제품·디자인팩토리,테스트베드,연구시설·장비 활용 등을 통해 혁신 주체 간 협업활성화
	산학융합촉진지원	○ 산업단지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 조성을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취

부처	사업명 (예산사업명)	사업 내용
		업이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비수도권 14개 시도에 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 지역거점을 연계하여 지정)의 신산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활동, 네트워크 구축·운영, 해외 진출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시범사업	○ 대학 연구소를 통한 미래 산업의 원천핵심기술 개발·축적 및 산업계 기술 공급 체계 마련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해외특화지역 역량을 갖춘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ASEAN·인도·중남미·중동 등 특화지역 집중을 통해 각 지역의 언어·법령, 무역 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 전문인력 육성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청년석.박사연구인력일자리지원)	○ 최대 3년간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고용장려금)으로 청년 석·박사 일자리 지원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 뿌리산업 관련 학과 운영 중인 대학을 선정하여 기량검증을 통해 취업 대상 인력을 선발, 뿌리기업 고용 연계 후 비자 변경(D-2에서 E-7-4)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등)가 고급기술 창업팀에 투자·보육하고, 정부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학연Collabo R&D(R&D)	○ (산학협력기술개발)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지원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 중소기업 재직자 학위취득 지원, 전문대-특성화고 연계 직업교육 지원
	지역중소기업공동 수요기술개발 (R&D)	○ 대학·연구기관·지역 조합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창업중심대학	○ 대학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

부처	사업명 (예산사업명)	사업 내용
		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형 대학의 선도모델 창출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화 촉진 및 고도화를 지원하여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 지역대학의 비기술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소멸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
	지역혁신공모사업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24년도 행안부-중기부 공동공모를 통한 13개 지자체 390억원 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	○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를 지원 ○ 성장성 및 고용창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스타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형 R&D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 지역혁신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분야 중소기업 시제품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지원 ○ 시군구 연고 산업별 특화된 지역혁신기관 주도로 지역 중소기업 성장 촉진프로그램 지원 ○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지역혁신자원, 정보의 조사분석 및 제공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 14개 시도와 협력하여 R&D, 판로, 인력, 정책자금 등 개별 협업과제 적합한 메뉴판식 지역 자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광역 선도기업	○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정책금융 연계 추진 ○ R&D기획, 제품고급화, 디자인, 브랜드개선, 마케팅 등 초광역 혁신 성장 바우처지원 ○ 포럼 및 세미나, 기술교류회,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글로벌 마켓 진출 모색 등 전용 네

부처	사업명 (예산사업명)	사업 내용
		트워킹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 17개 지역이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여 기획한 3개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기부-지역이 협력하여 집중 지원
행정 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 고용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 중심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지자체 중심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운영비 (홍보, 컨설팅, 현장점검등)
	주민참여지역문제 해결확산	① (실패 자산화 및 재도전 문화 확산) ② (디지털 기술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 ③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운영) ④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⑥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지역활력타운조성	○ 은퇴자, 청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 다양한 주택공급방식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 ○ 8개부처 및 광역지자체 연계 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 일자리, 문화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

참고 2 경북 RISE 기본계획 중 'KU시티-공동기획형'

단위과제 ❸ 공동기획형(BYC형)

기본 방향	■ 지방소멸위기 지역에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미래먹거리 특화산업단지 기획
추진 주체	■ 대 학: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연구단지 캠퍼스 구축 ■ 기 업: 대학과 협력하여 기술연구 및 투자 ■ 지자체: 대학 캠퍼스 및 분원 적극적 유치

사업기간 및 예산 — 연도별 예산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계	'25	'26	'27	'28	'29
예산	45,450	**13,700**	9,090	9,090	9,090	9,090

추진 과정: 의견수렴 → 협의회 구성 → 공모 및 선정 → 협의체 운영 → 결과보고

성과 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건, %) 계	'25	'26	'27	'28	'29
핵심 교육부 핵심성과지표						
자율 시군별 정주 지수						
대학 대학 자율지표						

주요 내용

■ 지역-대학 연계 기반 특화산업 육성 및 맞춤형 인재 양성
- 예) 봉화군-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 연구센터
  • 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 봉화캠퍼스 운영
  • 태산, 엔에스비, 에이비솔루션, D&W그룹, 팜다원 등 관련 기업 유치

■ 지역핵심자원 연계 공동기획형 특화산업 체계 구축
- 예) 청송군-대구가톨릭대학교 항노화 청송캠퍼스 조성
  • (지역) 고등학교 및 지역기업 현장실습 공동 교육
  • (대학) 특화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재 양성

■ 의료 취약지역 순회 진료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 예방의학과·보건소·복지관 연계 활동 및 지원 강화

기대 효과	■ 지역의 미래먹거리 특화산업 발전 ■ 지방소멸위기 극복
연계 사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 **(중기부)** 초광역 선도기업 ■ **(산자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3)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내역사업 편성 필요

❑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교당 총 5년간 약 1,000억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2025년 각 글로컬대학별 지원액에 대한 가정치는 존재하나, 명확한 예산안 규모는 부재한 상황임.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내내역사업 산출내역 >

☐ 글로컬대학의 2025년 지원 가정치

<전제 1> 약 3,900억원+α

○ (전제) 단독유형 지원액 50억→100억→200억→325억→325억
통합유형 지원액 80억→150억→400억→435억→435억

※ 2·3차년도 지원액은 글로컬대학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변동 可

○ (2023년 지정, 3차년도 지원금) 2,800억원 (단독 200억원×6개 + 통합 400억원×4개)

○ (2024년 지정, 2차년도 지원금) 1,100억원 (단독·연합 100억원×8개 + 통합 150억원×2개)

○ (2025년 지정, 1차년도 지원금) 추후 결정 예정

<전제 2> 약 4,400억원+α

○ (전제) 단독유형 지원액 50억→100억→250억→300억→300억
통합유형 지원액 80억→150억→400억→435억→435억

※ 2·3차년도 지원액은 글로컬대학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변동 可

○ (2023년 지정, 3차년도 지원금) 3,100억원 (단독 250억원×6개 + 통합 400억원×4개)

○ (2024년 지정, 2차년도 지원금) 1,100억원 (단독·연합 100억원×8개 + 통합 150억원×2개)

○ (2025년 지정, 1차년도 지원금) 추후 결정 예정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2024년까지 별도의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세가지 일반재정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 왔음.

< 2023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원구조 >

국립대	국립대 육성 사업	전체예산 4,568억원	=	① 포뮬러 사업비 (60%, 2,741억원)	+	②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1,827억)	글로컬대학 / 대학별 차등지원
사립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전체예산 1,900억원 (1조1,009억원)	=	① 포뮬러 사업비 (60%, 1,140억) (66개교 전부)	+	② 특성화 계획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760억)	글로컬대학 / 대학별 차등지원
전문대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전체예산 600억원 (6,220억원)	=	① 포뮬러 사업비 (60%, 360억) (69개교 전부)	+	② 특성화 계획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240억)	글로컬대학 / 대학별 차등지원

자료 : 교육부

❑ 이에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교육부는 관련 국회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의결하였으며,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글로컬대학 사업을 내내역사업으

로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설명자료에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산출 근거 >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2024) 1,202,500 → (2025요구) 1,704,651백만원, +41.7% - (요구)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예산 - (산출) 지역 RISE 계획 추진 : 1,699,651백만원(17개 시도 × 평균 99,980백만원*)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부가를 통한 글로컬대학 등 지원 사업관리비 : 5,000백만원 *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 운영 및 성과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 포함

자료 : 교육부

❑ 예산안이 성립하려면 정부가 「국가재정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서류[264]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

26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2010. 5. 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등에는 글로컬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예산으로 성립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글로컬대학 사업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동 사업을 국회 심의에 의한 내역변경을 통해 살릴 필요가 있을 것임.

<사학진흥기금>

1)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2861-300)[26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2861-300)사업은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및 재정여건 개선·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사학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세부사업 >

사업 종류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교육여건 개선 사업	• 미래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ESG 중 환경 관련 사업,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
	• 교육환경 안전 강화 지원사업	재해 피해복구 및 방재·방역 지원, 노후시설 개선 지원, 노후 기자재 및 학교 안전 인프라 개선, 장애인(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기숙사 관련 사업
	• 교육특화 지원사업	부속병원 관련 사업, 학교기업 관련 사업
재정여건 개선 사업	•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따른 유·무형 고정자산 취득 지원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사업	ESG 중 환경 관련 사업,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매입, 개·보수 및 신·증축 지원
	• 운영비 지원사업	법인, 학교, 부속병원 운영비 지원사업(중등이하 제외)
	• 대환대출 사업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운영비 포함)을 위한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예산안은 2,180억 6,300만원으로,

265) 문의: 02-6788-5188

전년에 비해 1,490억 6,300만원(216.0%)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 (B)		증 감	
			요구안	조정안	(B-A)	%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77,307	69,000	218,063	218,063	149,063	216.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사립의대 융자수요액 융자 조건 및 한도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라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의학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저금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작년에 비해 1,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하였음.

< 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 산출 근거 >

ㅇ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24) 69,000→('25요구) 218,063백만원, +216.0%**

- **(요구)** '25학년도 정원증원 사립의대 의학교육환경개선 융자 수요 172,840백만원 및 사립학교 교육·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 융자 수요 45,223백만원, 총 218,063백만원
- **(산출)** (정원증원 사립의대 융자수요 172,840백만원 x 지급율 100%) + (의대 외 일반 사립학교 사학진흥기금 융자수요 총 180,890백만원 x 지급율 25%*) = 218,063백만원

* 의대 융자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융자 지급율을 25%로 하향 설정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4예산	'25요구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69,000백만원	218,063백만원
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ㅇ '24년 융자사업 수요 172,600백만원x 40% ≒ 69,000백만원	ㅇ '25년 사립학교(법인) 융자사업 수요액 180,890백만원 x 25% = 45,223백만원
② 정원증원 사립의대 (부속병원) 융자	(신규)	ㅇ '25학년도 정원증원 사립의대(부속병원) 융자 수요액 172,840백만원 x 100% = 172,840백만원

자료: 교육부

❑ 이에 따라 2025년 정원증원 사립대 의과대학의 융자수요액 1,728억 4,000만원을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서에 따르면,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에 한해서는 고정금리 연 1.5%의 이율(비 의과대학은 연 2.77%)을 적용할 예정임.

< 정원증원 의대 융자 및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 조건 비교 >

구분	일반 융자	정원증원 의대 융자
지원 한도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250억원	한도 없음
융자 이자율	변동금리 (`24.3분기 기준 2.77%)	고정금리 연 1.5% (`25년에 한하며 `26년 이후 변동 가능)

*2024년 3/4분기 공자기금(총괄계정) 예탁금 이자율 3.510%

❑ 의료대란 사태가 문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의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행하는 융자지원사업은 융자수요의 전체를 지원하기보다, 각 지원대상별 융자한도를 정하여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가능한 많은 대상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대상이 책임감을 갖고, 자구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동 사업은 여타 융자사업과 달리 융자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융자 신청이 사전 수요조사 금액보다 크게 들어옴을 고려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융자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융자를 신청하는 대학간의 형평성, 신청 대학의 예측가능성 등에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융자 신청 및 지원 한도

○ **(융자 신청)** 사업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제한)** 융자 배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지원 한도)** 일반 융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정원 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는 한시적(~'30년 예정)으로 한도 제한 없이* 지원**

* 융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하되 예산 부족 시 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MIN(①, ②)

① 누적지원금 :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 – 융자신청 마감일 융자금 잔액**

*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병원재산 장부가액+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의 규모별 차등

규모별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법인기준 상한액	**900억원**	**800억원**	**700억원**	**600억원**

** 법인+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융자금 잔액

②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 250억원*

*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융자배정 합산 금액

※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는 한시적(~'30년 예정)으로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하며, 누적지원금 및 당해연도 융자지원 한도액 산출 시 해당 융자금은 제외

※ 관할청에서 위치변경 등 승인을 득한 학교이전사업의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달 가능성,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상한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5 융자 조건

○ **(이자율)** 일반 융자와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차등 적용

일반 융자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융자이자율 산출방식*에 따라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4.3분기 기준 연 2.77%)	**고정금리 연 1.5%** ('25년에 한하며 '26년 이후 변동 가능)

* 이자율 산출 시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 관련 금액(공자기금 차입금, 융자 지원금)은 모두 제외함

○ **(연체이자율)** 해당 분기 융자이자율 + 3%p

○ **(사용시기)** 융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 ~ 사업완료 시까지

○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운영비 지원사업은 5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단, 거치기간은 5년 이내)

❑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과대학에 대한 과도한 융자 지원은 다른 비 의과대학 자금 융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됨. 사립대학 재정위기 또한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대로의 지나친 융자 지원 쏠림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과도한 융자지원 규모로 인한 사학진흥기금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음. 동 사업 및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사업을 위해 사학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약 1,200억원을 전입해 온 것에 더해 기금 예수금을 1,400억원 가까이 차입하였음. 이는 이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편성된 예산 1,700억원을 넘어서 이자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함. 다만, 올해 이자분에 대해서는 일반전입금을 통해 저리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17억 3,700만원을 보전하였음.

< 2025년 사학진흥기금 기금 예수액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계획(수정)	99,193	▪ '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예수액 : 12,322,000천원 ▪ '24년 주택도시기금예수금 예수액 : 86,871,000천원
2025계획안	235,477	▪ '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예수액 : 172,840,000천원 ▪ '25년 주택도시기금예수금 예수액 : 62,637,000천원

< 2025년 사학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금 산출내역 >

구 분	'24예산	'25요구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69,000백만원	218,063백만원
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 '24년 융자사업 수요 172,600백만원x40%≒69,000백만원	◦ '25년 사립학교(법인) 융자사업 수요액 180,890백만원 x 25% = 45,223백만원
② 정원증원 사립의대(부속병원) 융자	(신규)	◦ '25학년도 정원증원 사립의대(부속병원) 융자 수요액 172,840백만원 x 100% = 172,840백만원

❑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사학진흥기금의 설치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주요 사업의 부족자원을 공자기금 및 주택기금 예수금을 통해 조달하는 기금 구조상 부채 규모의 적정한 관리를 하여 기금 건전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중 사학진흥기금 평가 >

2 재원구조의 적정성

(단위: 백만원, %)

자체수입비중		86.84%	차입금 및 정부내수입비중	33.83%
기금 적정규모	MIN	165,063	순자산	493,670
	MAX	283,257	중기가용자산	-263,079
부채/자산		69.24%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은 86.84%로 적정함.

- 과거 5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96.86%이고 향후 3개년의 자체수입 비중은 83.44%임.

- 그러나 <u>자체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융자원금 및 이자회수 중 상당부분은 차</u>

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지출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자체수입비중은 58.97%로 낮아짐

- 융자사업비의 평균 지출액은 2,188억원(2021년~2024년제외)에서 2021년~2024년 1,397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상지출이 감소하여 자체수입비중이 100%를 초과함. 2025년부터는 융자사업비가 2,217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여 자체수입비중이 60%대로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금의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33.83%로 적정함.

- 과거 5개년 정부 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27.22%이지만, 향후 3개년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44.12%로 외부재원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외부 재원은 주로 공자기금 예수금과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이며, **향후 융자사업비가 증가하여 외부재원의 의존도는 2024년 33.97%에서 2026년 49.4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69.24%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수준에 있음.**

- 2023년 말 기준 자산은 1,605,143백만원이며, 부채는 1,111,473백만원임. 부채 중 차입부채 규모는 1,101,203백만원,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08%임.
- 향후 수지총괄표에 따르면 **차입금의 규모는 2024년 104,374백만원에서 2026년 203,220백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부채관리 및 구체적인 부채상환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본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적정규모 보다 과소함.

- 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263,079백만원으로 적정규모 최소기준 165,063백만원과 최대기준 283,257백만원의 범위보다 현저히 과소한 상태임.
- 중기가용자산 규모의 과소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차입부채의 비중을 낮추어야하며 부채 관리 및 구체적 상환계획의 마련이 필요**함.

❑ 이상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자구노력 촉진,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 사학진흥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향후 의대 정원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의대관련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 보임.

(2)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 지급율 보전 필요

❑ 동 사업은 2025년 정원증원 사립대 의과대학의 융자수요액 1,728억 4,000만원을 100%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의과대학 외 사립대학에 대한 융자사업은 전체 융자사업 수요액의 25%만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3년의 경우 융자수요의 40% 가량을 지급해왔으며, 코로나 이전에도 40%를 상회하는 지급율로 예산을 편성해 왔음.

< 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산출 세부내역 >

구 분	'24예산	'25요구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69,000백만원	218,063백만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ㅇ 융자 지원사업 운영 - '24년 융자사업 수요 172,600백만원x 40%* ≒ 69,000백만원 * 최근 5년 융자 수요 대비 평균 지급률 적용	ㅇ 융자 지원사업 운영 - (의대융자) '25년 정원증원 사립의대 융자수요액 172,840백만원 x 100% = 172,840백만원 -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 '25년 융자사업 수요액 180,890백만원 x 25%* = 45,223백만원 * 의대 융자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융자 지급율을 25%로 하향 설정

자료: 교육부

❑ 이처럼 의대 외 사립학교에 대한 융자규모 축소는 기존에 사립대학들이 추진하던 사업들을 축소,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목적으로도 지원되는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 지원액의 삭감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2023~2025년 융자 신청액 및 사전 수요조사 금액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정부안)
예산(A)	885	690	452.2
신청액(B)	2,456	2,178	-
신청액 대비 예산 비율(A/B)	36.0	31.7	-
사전 수요조사 금액(C)	1,246	1,726	1,808.9
사전 수요조사 금액 대비 신청액 비율(B/C)	197.1	126.2	-

※ 1) 사전 수요조사는 매년 2월중 진행, 실제 융자신청은 매년 10월중 진행함
2) 2025년 신청액은 현재 융자신청 접수 기간으로 접수 마감('24.10.31) 이후 확인 가능함

❑ 아울러 현재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동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수요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정일자
220266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4인	2024-08-08	2024-09-24
2203809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2024-09-09	미상정
220444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3인	2024-09-30	미상정

❑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사립대학 재정위기도 고등교육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처해야할 중요 사안인만큼 이에 대응하는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액을 최소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4333-353)[26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4333-353)사업은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지역·필수의료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예산안은 1,200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 (B)		증 감	
			요구안	조정안	(B-A)	%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	-	120,050	120,050	-	-

자료: 교육부

266) 문의: 02-6788-5188

나) 검토의견 :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 동 사업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과 유사하게, 사립학교 부속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임.

❑ 이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정원 증원된 의과대학 뿐만 아니라, 증원되지 않은 대학병원들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퇴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 동 사업의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이 있어 보임. 먼저, 사업 지원 대상 측면에서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과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음. 동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도 융자지원대상에 사립대학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포함하고 있음.

❑ 교육부는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반해, 동 사업은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구두로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이 서류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동 사업의 계획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융자사업 개요 >

○ **(목적)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추진

○ **(지원 대상) 사립학교 부속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사업 주체)** 교육부, 위탁기관

○ **(대출 재원 및 규모) 사학진흥기금, 1,2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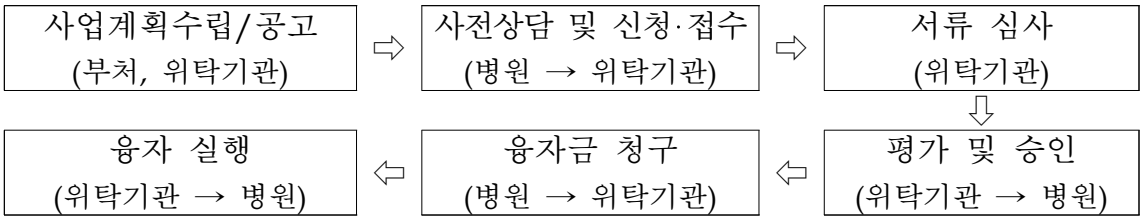
○ **(대출금리) 연 2.77%**('24.3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사학진흥기금,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24.3분기 융자 이자율 연 2.77%와 동일

○ **(대출기간)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 사학진흥기금,「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상환기간과 동일

○ **(사업 추진 체계)**



자료 : 교육부

❑ 또한,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이 교육부에서 조사한 융자수요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융자수요 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동 사업의 예산 1,200억원은 지원 가능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기관 수를 설정하였음.

< 2025년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투자내용 >

□ 융자금 : **120,000백만원** = 상급 종합병원 4개소 x 최대 20,000백만원 + 종합병원 20개소 x 최대 2,000백만원 * 신청금액 접수 후, 총 융자금액(천이백억) 내에서 병원당 세부 한도액 조정 ** 신청금액이 총 융자금액(천이백억) 미달시, 최고 한도액 조정 □ 위탁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운영비 27백만원 + 인건비 23백만원(2,276천원x2명x10개월x50%)

자료 : 교육부

❑ 이는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의 시급성으로 인해 정량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수치에 기반하지 않은 예산 책정은 예산의 비효율적 분배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상을 고려했을 때, 동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는 하나, 사업대상 설정, 예산 산출 등 미비한 측면들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일반회계>

1)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4143-300)[26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4131-300)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기반 안착을 통해 지역단위 평생학습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900만원(△2.9%)이 감액된 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67) 문의: 02-6788-5193

< 2025년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1,900	995	966	△29	△2.9
○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	1,290	640	660	20	3.1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310	355	306	△49	△13.8
○ 평생학습지수 운영	300	-	-	-	-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미취학·저학년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필요

❑ 내역사업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은 지역단위의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장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임.

❑ 2011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24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7.6%인 198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 학습격차 완화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 환경 친화 활동, 지역 인재 양성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기반 확장 및 주민 평생학습기회를 도모하였음.

<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누적)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학습도시수	175개	181개	188개	195개	198개

자료: 교육부

❑ 최근 지역경제 위기, 인구감소에 따른 지자체 소멸 위기 문제가 주요 지역현안으로 제시되면서,[268] 교육부는 2022년부터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

268)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예결위 공통설명자료, p725

자체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3.1%)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편성[269]하였음.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안) >

○ **평생학습 그린 도시(친환경, 도시재생)** 친환경, 생태계 보존, 탄소제로 등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보전시키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모델 ○ **평생학습 블루 도시(스마트, 디지털)**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청장년층의 IT전문 인력양성 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모델 ○ **평생학습 퍼플 도시(휴면, 리더)** 지역의 인적자원으로서, 평생학습마을리더, 행복학습매니저 등 평생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모델 ○ **평생학습 레드 도시(네트워크, 자원연계)**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을 공유하여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평생학습도시 모델 ○ **평생학습 골드 도시(산업, 일자리)** 지역 내 기업 등 산업체와 연계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평생학습도시 모델

자료: 교육부

<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예산안 산출내역 >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4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640백만원** 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240백만원 나.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400백만원	66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660백만원** 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160백만원(2개×80백만원) 나.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500백만원(10개×50백만원)

자료: 교육부

❑ 한편, 1990년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국제결혼 증가 추세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다문화 사회’[270]로 접어들

269) 24년도 예산은 23년도 예산 12억 9,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50%) 삭감됨.
270) 김선숙·조소연·진재찬, “한국의 다문화정책,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4권제2호, pp4~5, 2024. 5.

면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수용하고 국가 차원의 법, 제도, 정책을 마련[271]하였음.[272]

❑ 다문화가족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273] 및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어 및 해당 모국어 언어능력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육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다문화 아동 언어발달이나 모국어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274] 교육부 차원의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이주민이란 국내 입국하여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며, 이주민이 총 인구의 5% 이상일 때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됨.”

271) **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동 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종합서비스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72) 이병호·한승수,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p16, 2016. 12.

273)「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책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주말지도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실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이주 외국인 현황 >

(단위: 천명, %)

구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
전체 이주민	1,764(3.4)	2,054(4.0)	2,156(4.2)	2,258(4.4)	2,460(4.8)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	1,413(80.1)	1,651(80.4)	1,695(78.6)	1,752(77.6)	1,935(78.7)
외국인 근로자	541(30.7)	528(25.7)	455(21.1)	403(17.9)	470(24.3)
결혼이민자	159(9.0)	166(8.1)	173(8.1)	175(7.8)	180(7.3)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191(10.8)**	**226(11.0)**	**261(12.1)**	**282(12.5)**	**290(11.2)**
한국국적취득자	159(9.0)	176(8.6)	199(9.2)	223(9.9)	235(9.6)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 재구성

❑ 또한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과 한국국적취득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저출산,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을 우리나라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275]이 필요할 것임.

---

274) 박은정,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6, 2021. 11.

275) 김선숙·조소연·진재찬, “한국의 다문화정책,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4권제2호, p6, 2024. 5.

“이주민이란 국내 입국하여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며, 이주민이 총 인구의 5% 이상일 때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됨. …중 략… 다문화 사회로 비교적 일찍 진입한 서구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민자와 그 자녀의 적응과 사회통합에 가장 결정적 요인을 언어습득으로 보고 다문화 가족 지원 중 언어학습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독일** 역시 ‘지원과 요구(Fordern und Fördern)’라는 이주민 정책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독일의 언어와 사회가치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일과 함께 이민자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 취학아동이 학습 관련 영역에서 적응도와 아동정체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등 학교생활에서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외모의 차이와 함께 낮은 한국어 수준[276]이 요인으로 파악됨.[277]

❑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더 나아가 우리 사회로 원활하게 통합[278]하기 위하여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실례로 안산과 같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279]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평생교육시설에서 한국어 기초를 닦고 학교에 진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280]을 제시하였음.

---

276) 임동선·백수정·김송이·한지윤,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 지지탐색”, 다문화교육연구 Vol.13. No.3, pp142~143., 2020. 9.
“외국인 어머니는 자연스러운 모국어를 사용하는 대신 서툰 한국어를 사용하여 자녀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한 외국인 어머니와 질적, 양적으로 원활히 의사소통 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사용은 곧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 지지 탐색다문화 아동에게 있어서 양질의 언어 자극의 부재를 의미하며, 그들에게서 보이는 높은 언어발달지연 비율의 원인 중 일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277) 김정현·성미영·정현심·권윤정,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19권제3호, p457, 2010. 6.

278) 김선숙·조소연·진재찬, “한국의 다문화정책,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4권제2호, p7, 2024. 5.
“다수의 다문화가정 내 학령기 청소년은 언어습득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따돌림,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비행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279)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2023.9.**
* ’22년 기준, 다문화 밀집학교 71개교(다문화학생 비율 90% 이상 1개교, 70~90% 6개교, 50~70% 9개교, 30~50% 55개교)
(’19년) 38개교 → (’20년) 47개교 → (’21년) 55개교 → (’22년) 71개교

280) 2024년도 국정감사 경기도교육청 현장 시찰(2024.10.14.)

❑ 그러나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 학습격차 완화라는 목표하에 지역 침체, 공동체 붕괴,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 등 지역문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전략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습격차 원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미취학·저학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교육부는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사회 전체 경쟁력 향상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취학·저학년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281]

281) 참고로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9.)**"에 따라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①한국어 교육체계 강화, ②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 ③다문화 밀집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의 과제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사업(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미취학 아동 한국어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2)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4701-301)[28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4701-301) 사업은 ①중·장년층, 장애인, 군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다양한 맞춤형 원격교육 모델(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수학습방법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소외계층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②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하여 원격대학을 평가·인증하고 학사지원하는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 및 학사지원”, ③원격대학 교육과정의 추천 및 학습이력을 통합·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성인학습자 교육지원 포털시스템 운영”, ④디지털·AI를 활용한 사이버대학 교육과정 고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2억 2,000만원(119.4%)이 증액된 4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82) 문의: 02-6788-5193

주요증액 사유로는 원격대학 기관평가 인증 및 학사지원 사업에서 전년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5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 19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임.

< 2025년도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1,860	1,860	4,080	2,220	119.4
○ 소외계층 원격교육활성화	1,540	1,540	1,540	0	전년동
○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 및 학사지원	40	40	360	320	800.0
○ 성인학습자 교육지원 포털시스템 운영	280	280	280	0	-
○ 디지털 교육환경고도화 지원	-	-	1,900	1,900	순증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 사이버대학은「고등교육법」제2조[283]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최근에는「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2. 10. 18. 시행) [284]에 따라 사이버대학에서도 석·박사 학위과정을 둘 수 있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내역사업인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은 2개년('25~'26) 사업[285]으로, 사이버대학(5개교)에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및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38억원 중 2025년에는 사업운영비 1억원과 함께 각 학교에 3억 6,000만원씩 총 18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총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28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84)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85) **1차년도(25년)**: AI·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맞춤형 환경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2차년도(26년): 1차년도 사업분석 및 교육과정운영 우수모델 도출·확산

<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예산안 >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신규)	(신규)	1,900백만원	○ 사업 출연금(350-02)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360백만원 × 5교 = **1,800백만원** •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대학에 LED 벽, 3D 카메라 등 AI·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교수학습기기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은 이를 활용하여 실감형,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학생은 실험, 실습, 실기 등의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됨.

< 신기술 교수학습 기기 활용 예시 >



자료: 교육부

❑ 한편, 고등교육 분야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에듀테크 산업은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별학습(적응형 학습), AR · VR을 활용한 실감형 교육, 소셜 미디어 · 클라우드 컴퓨팅 · 플랫폼을 활용한 소셜러닝(Social Learning), 대학의 온라인 공개수업 서비스(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교실 밖 사전 수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교실 안에서는 학생 또는 교수와 심화된 토론 수업을 하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286]

< 신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훈련 사례[287] >

구분	교육훈련 영역
카네기멜론 대학	VR·AR 도시설계
톨레로 대학	VR·AR 해부학, 신체 체험 프로그램
알레르타 대학	VR·AR 재활 경험, 휠체어 경험
싱가포르 난양폴리텍 대학	VR·AR 가스터빈 공학 교육
한양대학교	VR 교육도서관
스탠포드 대학	SICKO[288]
구글	G Suite for Education[289]
기타	Platzi[290], Udemy[291], Udacity[292], Argo[293], VR Lab 및 Virtual Crash Lab[294]

❑ 특히 2012년부터 대학 수업을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해

286) 정민호·김수영·나윤주, "대학의 에듀테크 도입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인식 및 수요 분석-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Vol. 41 No.3, p35, 2020. 8. 31.
287) 이지은, "에듀테크로 촉발되는 고등교육의 위기와 기회", 한국경영학회, KBR 제24권, p151, 2020. 1. 31.
288) 수술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과 수술법을 교육하는 게임 기반 가상 훈련 프로그램
289) 무제한 용량의 클라우드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고 문서, 드라이브, 캘린더, 채팅, 라이브 방송등 실시간 수업 및 협업을 지원하며, 다양한 콘텐츠 와 소프트웨어, 학습지원 도구를 제공함.
290) 실시간 방송(댓글)과 이러닝을 결합한 서비스
291) 이용자가 이러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292) 기술 분야 교육에 특화된 MOOC로 공학과 IT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강의 기획부터 인증까지 서비스를 제공
293) 국내 경영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으로 게임러닝과 플립드러닝 방식을 병행
294) VR을 활용한 실험실 교육 가상 시뮬레이션 제공

외 MOOC[295](Udacity, Coursera, edX)가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MOOC 열풍이 불었고, World Bank와 UNESCO-APEC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까지 MOOC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이후 COVID-19 영향으로 Udacity, Coursera, edX 등 해외 플랫폼 가입자가 폭증하며 MOOC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대화형 훈련,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온라인 포럼, 멘토링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바,[296]

Coursera의 경우, 지금도 강좌를 여러 나라 언어로 자막을 통해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통해 강사의 음성, 입모양까지 반영하여 자동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육분야에서 국가, 언어, 제도의 벽을 허물려는 시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격 고등교육 수단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2015년 2월 시범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도입 및 정착 시기(1단계), 2018년~

295)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인터넷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뜻하는데, 교수자의 강의 영상을 일방적으로 청강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296) 엄미라·안세원·이예리·이다원, “국내외 MOOC 특성과 학습경험 비교에 관한 사례연구”,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대학교수-학습연구 15권제4호, pp34~35, 2022. 10.

2020년 글로벌화 및 부가가치 창출시기(2단계), 2021년 이후 열린 고등교육 체제 구축(3단계)에 들어선[297] 상황이나, 공공 주도라는 한계 때문에 아직 다양화, 고도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298][299]임.

< 해외 MOOC[300] 및 K-MOOC 현황 >

(2024년 9월 기준)

구분	Udacity	Coursera	edX	K-MOOC('24.9.)
목적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좌 제공	세계 유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world-class 온라인강의 제공	교육의 접근성 향상, 대학과 온라인의 교수학습 향상, 연구를 통한 교수학습 발전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양질의 고등 평생교육 기회 제공
런칭	2012.2.	2012.4.	2012.5.	2015.10.
주제 영역	IT 분야	모든 분야	모든 분야	모든 분야
강의수	350강+	7,000강+	4,600강+	2,715강
회원수	169만명	1,480만명	860만명	152.6만명
사용 플랫폼	자체개발	자체개발	자체개발 (Open edX)	자체개발
매체	PC, 모바일	PC, 모바일	PC	PC, 모바일
영리추구여부	영리	영리	영리	비영리
설립주체	기업	기업	대학	공공
파트너수	13기관+	300기관+	60기관+	207기관

297) 정채관·정영옥·김승환, 해외 MOOC 동향 및 학습자 지원 정책 조사: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국가평생교육진흥원, p2, 2022.

298) K-MOOC는 2015년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총 1,358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음. 2021년 '학습자 중심 K-MOOC 2.0' 계획 수립을 통해 인문·사회 등 다양한 교양 강좌를 신설하고 평생학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K-MOOC 이수 결과는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성인 학습자의 학점은행에 반영하는 등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음.

299) 정미강·구양미, 역량 기반 무크 서비스를 위한 학습·운영 서비스 요소 분석-애회 무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업교육학회,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Vol..20 No.3 p59, 2018.

300) 김한성·김자미·박형용, "고등교육 혁신사례 탐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이슈리포트, pp7~8, 2017. 11.

파트너		대학, 기업, 비영리단체	대학, 기관	대학, 기업	대학, 공공기관, 기업
관계	주체	플랫폼 운영, 강의 제공 및 운영	플랫폼 제공	플랫폼 제공	플랫폼 운영, 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파트너	강의커리큘럼 개발지원	강의개발 및 운영	강의개발 및 운영, 연구	강의개발 및 운영
투자기관		기업	기업, 대학	기업	정부
주요대상		취업/이직준비생	대학생, 일반인	대학생, 일반인	대학생, 일반인
인증방법	Badge	●(유료)	●(유료)	●(유료)	○(무료)
	수료증	●(유료)	●(유료)	●(유료)	○(무료)
	학점인정		●(유료)	●(유료)	○(무료)
	학위수여	●(유료)	●(유료)	●(유료)	

자료: 교육부

❑ 더욱이 「고등교육법」 제10조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이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301]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은 대학과 전문대학과 달리[302]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지원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303]으로, 2024년도 예산 기준 사이버대학 평균

301)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3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하여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303) 현재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2004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 2024년 10

지원단가는 일반대학의 0.8%, 재학생 1인당 지원단가는 0.8%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해외 원격교육의 발전 속도에 비해 원격대학의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임.

< 대학의 종류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 현황과 근거 >

대학의 종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304]
학교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근거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법」	**없음 (민법상 사단법인)**

❑ 동 사업 또한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와 방법도 전체 20개의 사이버대학 수[305]의 25% 수준인 5개 대학에 각각 3억 6,000만원씩 지원하는 수준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의 가상 실험실습 학습콘텐츠 제작 수준, AI·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만큼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사이버대학

월 현재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이 김문수 의원(의안번호 2202779), 김대식 의원(의안번호 2204619)가 각각 발의되어 우리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

304) 원격대학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1개교, 사이버대학 20개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가 설립·운영 중에 있음. 다만, 원격대학에 해당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회원대학에 속해 있음.

305)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 제외
참고 1.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참고 2. 사이버대학 운영 현황

이 어느 정도 수준의 AI,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비록 동 사업이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대학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면이 있지만,

해외 원격교육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강사의 입모양, 발음을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원격교육 동향과 비추어 볼 때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계획 없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원격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306]

❑ 따라서 교육부는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의 기술 및 인력 수준과 자체 투자 노력, 국·내외 AI·디지털 원격교육 기술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함께, 나아가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

306)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4134-500)" 사업을 추진하면서 XR(확장현실),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디지털 신기술로 구현한 가상의 환경을 통해 실험·실습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온라인 학습의 한계 및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과 공유할 계획으로, 원격대학에 속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시행주체가 되어 3개 단위 시스템으로 단계별로 추진 중인바, 참고할 필요가 있음.
*(1단계) 가상실습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시스템 구축('25년)
(2단계) 학습분석 빅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26년)
(3단계) 학습역량 관리 공유 시스템 구축('27년)

는 재정 지원 규모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307]

307) 참고로 K-MOOC와 관련하여 세부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의 내역사업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은 전년까지 별도의 내역사업이었던 ‘매치업(Match業) 운영’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에 통합·편성하면서, 전년대비 65억 8,300만원 감액(△33.9%)된 128억 1,8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참고 1.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기준 : '24.4.1)

학위과정	설치 주체 (학교법인)	대학명	개 교 (최초개교)	2024학년 입학정원	'24.4.1.기준 편제정원	'24.4.1.기준 재학생수	소재지	동법인학교
학사과정	건양학원	건양사이버대	'12	1,068	3,336	2,999	대전	건양대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	'09('01)	3,000	9,200	7,460	서울	경희대
	고려중앙학원	고려사이버대	'09('01)	2,449	7,378	7,343	서울	고려대
	광동학원	국제사이버대	'09('03)	900	2,900	2,639	수원	군장대
	한문화학원	글로벌사이버대	'10	1,100	3,626	2,489	천안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영광학원	대구사이버대	'09('02)	1,500	3,800	3,364	경산	대구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10('02)	990	3,630	2,419	서울	-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	'09('02)	1,000	2,800	2,163	부산	동서대
	동원육영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09('04)	1,750	4,790	4,602	서울	한국외대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	'10('01)	3,000	9,750	6,848	서울	-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	'09('01)	3,270	10,660	10,083	서울	신일중·고
	대양학원	세종사이버대	'09('01)	2,180	6,890	6,126	서울	세종대
	숭실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	'09('01)	1,650	4,900	4,551	서울	-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	'09('02)	1,500	4,685	4,196	익산	원광대
	열린학원	한국열린사이버대	'11('01)	1,000	3,000	2,812	서울	-
	한양학원	한양사이버대	'09('02)	3,440	10,680	10,883	서울	한양대
	화신학원	화신사이버대	'09	568	1,566	1,436	부산	부산경상대
	태재학원	태재대학교	'23	100	400	22	서울	-
전문학사과정	영진교육재단	영진사이버대	'10('02)	1,300	2,600	2,315	대구	영진전문대
	이후학원	한국복지사이버대	'11	1,000	2,000	1,904	경산	-
사이버대학(20교)				32,765	98,591	86,654		
학사과정	경북학원	영남사이버대	2001	600	1,585	940	경산	영남외대
전문학사	한민족학원	세계사이버대	2001	1,300	2,600	1,788	경기 광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교)				1,900	4,185	2,728		
계				34,665	102,776	89,382		

자료: 교육부

※ 영남사이버대 : 2003년 세민디지털대에서 영남사이버대로 교명변경 및 학제 전환(2년제 → 4년제)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 2008년 한성디지털대에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로 교명 변경
※ 화신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09. 3월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에서 화신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고려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10. 2.26. 한국디지털대에서 고려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국제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11. 9. 1 국제디지털대에서 국제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숭실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12. 6. 5 한국사이버대에서 숭실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한국열린사이버대 : 2011년 개교이후 2016. 6. 30 열린사이버대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영진사이버대 : 2010년 개교이후 2017. 3. 1 영진사이버대학에서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참고 2. 사이버대학 운영 현황(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 포함)

※ 2009년부터 「고등교육법」 상의 사이버대학으로 개교·운영

학년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사이버대학)												
총 학교수	9	15	16	17	17	17	17	17	18	19	20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입학정원 총계	6,220	16,700	20,600	22,600	23,550	23,550	21,060	25,680	27,960	29,400	30,735	32,760	33,410	33,410	33,410	33,410	33,410	33,410	33,410	33,945	33,945	33,909	34,215
신입생 등록자수 (등록률)	5,235 (84.2%)	9,920 (59.4%)	10,987 (53.3%)	10,459 (46.3%)	14,620 (62.1%)	18,138 (77.4%)	17,370 (82.5%)	21,001 (81.8%)	22,814 (81.6%)	23,979 (81.5%)	25,750 (82.7%)	24,767 (75.6%)	25,331 (75.8%)	24,804 (74.2%)	25,327 (75.8%)	26,256 (78.6%)	24,719 (74.0%)	25,188 (75.4%)	25,285 (75.7%)	25,577 (75.3%)	28,479 (89.9%)	28,249 (83.3%)	27,366 (80.0%)

학생현황 ('24.4.1.기준)

<학부>

○ 입학정원 : 34,665명

○ 재학생수(정원외 포함) : 89,382명(131,674명)

○ 졸업생수('22학년도) : 35,742명

<특수대학원, '23.9.기준> ※ 9개 대학 17개 특수대학원(석사과정)

○ 입학정원 : 1,054명

○ 재학생수 : 2,655명

○ 졸업생수('22학년도) : 760명

(연령별) '23학년도 입학 기준 : 25세 이상 신입생 수 비율 80.1%,

(직업별) '23학년도 입학 기준 : 신입생 중 직장인 비율 71.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한국장학재단출연(2638-300)[30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4,079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5억 3,100만원(11.0%)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자 면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임.

308) 문의: 02-6788-5193

<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장학재단 출연	335,541	367,382	407,913	40,531	11.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이자	198,530	191,020	186,863	△4,157	△2.2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6,225	18,863	37,870	19,007	100.8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1,022	874	761	△113	△12.9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	9,755	9,045	10,493	1,448	16.0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14,806	26,684	46,500	19,816	74.3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11,862	27,489	27,315	△174	△0.6
○ 고유사업비	43,005	42,118	41,854	△264	△0.6
○ 재단운영비	50,336	51,289	56,257	4,968	9.7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ICL 이자면제 사업규모 적정성 재검토 필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309]는 대출자 중 군 복무자와 기초·차상위 계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하여는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장학재단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이라 함) 이자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0억 700만원 증액(100.8%)된 37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이자면제 사업이 전년 대비 4억 6,300만원 감액되었으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310] 및 시행일(2024. 7.1.)에 맞

3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3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2023. 12. 26. 개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 채무자에 대하여 재학기간 뿐만 아니라 휴학기

추어 2024년도 예산에 1학기분만 반영하였던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다자녀 이자면제, 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 사업[311]의 예산을 2025년도 예산안에는 1년분으로 반영한 것이 주요 증액사유로 파악됨.

< 2025년도 ICL 이자면제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18,863백만원	37,870백만원
산출	① 군이자면제: 992백만 원 : 58,236백만 원(17,463명 × 3.34백만 원('24년 1인당 대출잔액)) × 1.70%(대출금리)) ②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2,593백만원 : 1,197백만원 (140,771백만원 × 1.7% × 6/12 (재학중 이자면제)) + 1,397백만원 (164,305백만원 × 1.7% × 6/12 (의무상환 개시 전 이자면제)) ③ 다자녀 이자면제: 7,064백만 원 : 2,313백만원 (272,171백만원 × 1.7% × 6/12 (재학중 이자면제)) + 4,750백만원 (558,858백만원 × 1.7% × 6/12 (의무상환 개시 전 이자면제)) ④ 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 8,214백만 원 : 966,320백만원 × 1.7%(대출금리)×6/12	① 군이자면제: 529백만 원 : 31,071백만 원(8,211명x3.78백만 원('25년 예상 대출잔액))×1.70%(대출금리) ②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4,928백만 원 : 289,903백만 원 × 1.7%(대출금리) ③ 다자녀 이자면제: 17,731백만 원 : 1,043,015백만원 × 1.7%(대출금리) ④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9,844백만 원 : 579,059백만원 × 1.7%(대출금리) ⑤ 상환 유예자 이자면제: 4,838백만 원 : 29,236명(상환유예 승인 인원) × 165,482원 (1인당 이자 상환액)

자료: 교육부

❑ 최근 3년 간 ICL 이자면제 사업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율을 살펴보면

간 및 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함.

○ 재난 발생 시에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의무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유예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아울러,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311)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위소득 이하 이자면제 사업에서 상환 유예자 이자면제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음.

2022년은 57.9%, 2023년에는 68.4%에 불과하고, 2024년도의 경우에도 8월말 기준으로 41.7%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별 내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아도 2023년도 다자녀 이자면제 사업을 제외하면 60% 중반에서 2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이러한 집행부진은 동 사업 내 모든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ICL 이자면제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기준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율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율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율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율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2,119 [1,409]	66.5	8,091 [4,684]	57.9	8,625 [5,903]	68.4	18.863 [7,863]	41.7
- 군 이자면제	2,119 [1,409]	66.5	1,869 [1,203]	64.3	1,665 [1,050]	63.1	992 [693]	69.9
- 기초차상위계층 이자면제	-	-	2,308 [459]	19.9	2,642 [583]	22.1	2,593 [913]	35.2
- 다자녀 이자면제	-	-	3,914 [3,022]	77.2	4,318 [4,269]	98.9	7,064 [4,785]	67.7
- 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	-	-	-	-	-	-	8,214 [1,472]	17.9

자료: 한국장학재단

❑ 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혜자 인원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으로 실제 수요보다 과다 계상하여 추산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임.

❑ 또한 이러한 부진한 사업 추진 상황에서도 동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2년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 특히 2023년 이후 2년간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씩 증가되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3.4배 늘어난 규모인 378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 2025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황으로 같은 원인으로 내년 또한 예년과 같이 집행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바, 교육부는 집행부진에 대한 주원인으로 보이는 사업 수혜인원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산을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312)]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 사업은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 출연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내역사업으로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 대상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음.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5,929억 2,600만원(12.6%)이 증액된 5조 3,13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312) 문의: 02-6788-5193

<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446,000	4,720,453	5,313,379	592,926	12.6
○ 국가장학금 지원	3,901,796	4,097,498	4,485,299	387,801	9.5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376,445	469,125	635,774	166,649	35.5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856	57,626	57,827	201	0.3
○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107,883	97,184	97,963	779	0.8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	34,435	34,435	순증
○ 운영비(인건비)	2,020	2,020	2,081	61	3.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신규사업[313]으로 운영비 700억을 포함하여 총 34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예산(A)	2025예산안(B)	증 감	
			(B-A)	%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34,435	34,435	순증
○ 주거안정장학금	-	33,735	33,735	순증
○ 운영비	-	700	700	순증

자료 :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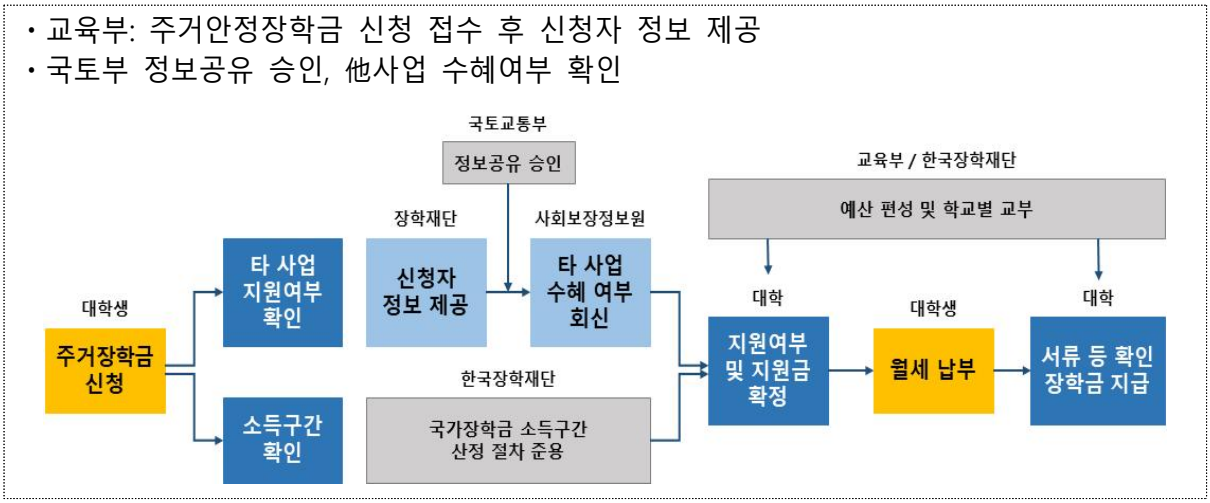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①본거주지(부모 주소지)와 다른 시·도로 진학하거나 통학이 사실상 어려운(대중교통 기준 2시간 이상) ②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314]을 지원하되,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타부처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315]의 수혜

313) 저소득층 중심 주거장학금 지원(안),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3.5.
314) 방학 제외한 8개월을 지원하되,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포함하여 연 최대 240만원 지원
315) **(국토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자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 안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부처 간 정보 연계 개념도 >



자료 : 교육부

❑ 교육부는 2025년도 동 장학금의 지원 대상자를 1학기 22,115건, 2학기 20,045건으로 추산[316]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총 337억 3,500만원으로 산출하였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8% 이하)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316)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규모 산출 세부내역]**
① '23년 국가장학금 신청한 기초·차상위 학생 중 기혼, 원격대학 재학, 타 주거 지원사업(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 수혜 규모 제외(약 11만명)
② '부모 주소지(주민등록상)와 대학 소재지의 시·도가 상이한 인원*을 대상으로 샘플링(320명)을 통해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별 비율 산출
③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 수에 120분 이상 이동시간 소요 비율(63.8%) 곱하여 학기당 지원규모** 도출
* 총 66,094건(▲1학기 34,662건 ▲2학기 31,432건)
** 총 42,169건(= 66,094건 × 63.8%, ▲1학기 22,115건 ▲2학기 20,054건)

<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규모 산출 세부내역 >

(단위 : 명, 백만원)

학기 구분 (기초차상위 1유형·다자녀)	'23년 예상 수혜 건수	기혼 및 원격대학 (중복제외)	청년 월세 등 수혜 인원	시/도 분리 진학*	이동시간***					
					60분 이하	60분 ~90분	90분 ~ 120분	120분 ~ 150분	150분 ~ 180분	180분 ~
				100%	6.8%	12.7%	16.7%	15.1%	11.4%	37.3%
1학기	96,574	14,932	5,698	34,662	2,357	4,402	5,789	5,234	3,952	12,929
2학기	87,724	13,598	5,176	31,432	2,137	3,992	5,249	4,746	3,583	11,724
합 계	**184,298**	**28,530**	**10,874**	**66,094**	**4,494**	**8,394**	**11,038**	**9,980**	**7,535**	**24,653**
소요 예산				**52,.875**	**3,592**	**6,715**	**8,830**	**33,735**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 월세(국토부) 중복 수혜율 5.9% ('23년 1학기 기준)

** 부모·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상이한 추정 인원 (기혼·원격대학 및 타 사업 수혜 인원 제외 후, 부모 주소지 자료 소지자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

*** 주소지부터 대학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시간 (320명 샘플링하여 비율 산출)

자료 : 교육부

❑ 주거안정장학금과 같은 취지인 국토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 첫해인 2022년은 43억원, 지난해에는 212억원이 불용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까다로운 지원요건[317] 때문에 신청자 수는 49만 5,000명에 달했음에도 실제 지원을 받은 청년은 16만 4,000명 수준으로 신청자 대비 33%에 머물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318]

❑ 동 사업의 취지가 통학이 사실 상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관련

317)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

318) 뉴시스,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기준 까다로워…신청자 3명 중 1명만 조건 충족", 2024.10.4.
중앙일보, “50만명 신청에 16만명만 선정…청년월세사업, 왜 돈 남았나”, 2024.10.5.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나 국가 재정 상 한계를 감안할 때, 통학거리라는 조건을 설정한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2시간 이내의 통학거리라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를 통해 학비에 대한 부담은 덜하겠지만 교재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학점관리에 소홀해져 장학금을 놓치게 되는 악순환[319]에 놓이게 될 것임.

더욱이 입학 후 취업준비를 위한 해외연수,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스펙 쌓기가 명문대생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력의 차이가 취업준비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320]인바,

통학거리가 2시간 이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원을 받는 학생 및 경제적으로 양호한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고, 사업예산 불용액 발생 규모에 따라 타 부처 사업과 같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319) 전희정,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학생활 참여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여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연구 2019 Vol.19 no.4, p1022, 2019.

320) 이지혜·채재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평생학습사회 제9권제1호, p2, 2013. 4. 30

❑ 따라서 동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사례를 반면교사하여 통학거리라는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2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시작부터 모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바, 우선 교육부가 산출한 주민등록상 부모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의 시·도가 상이한 기초·차상위 가정 대학생 66,094건을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42,169건은 앞서 교육부가 산출한 66,094건과 23,925건이 차이가 나는데, 이들에게 모두 주거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191억 4,000만원(23,925건×200천원×4개월)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까지 조사된 “주소지부터 대학까지 대중교통을 이용시간별 대학생 수”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지원 당위성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의 규모에 대해 재정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를 거쳐 동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가장학금 전체 불용규모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①저·중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②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③지역대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인재장학금”, ④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다자녀국가장학금”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3,878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3,693억 3,600만원(13.9%) 증액되었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신·편입생 지원을 폐지하고, 입학금 지원 예산 소요분을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환을 통해 900억원(△25.7%) 감액되었음.

< 2025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예산(A)	2025예산안(B)	증 감	
			(B-A)	%
□ 국가장학금 지원	4,097,498	4,485,299	387,801	9.5
○ 국가장학금 Ⅰ유형	2,659,851	3,029,187	369,336	13.9
○ 국가장학금 Ⅱ유형	350,000	260,000	△90,000	△25.7

구 분	2024예산(A)	2025예산안(B)	증 감	
			(B-A)	%
○ 지역인재장학금	80,000	80,000	0	0
○ 다자녀장학금	1,055,649	1,137,776	82,127	7.8
○ 사업운영비	1,998	2,339	341	17

자료 : 교육부

❑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지원기준[321]에서 ①학령인구 감소(△1.95%) 추세를 반영하되, ②추가로 2024년까지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던 9구간(약 50만명)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③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6.42%)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 2025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기준 >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24년	Ⅰ유형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
	다자녀	첫째둘째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												
'25년	Ⅰ유형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100**
	다자녀	첫째둘째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135**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200**

자료: 교육부

321) 2024년에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 ①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②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둘째 이하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함.

< 2025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4년 예산	변동액					'25년 예산(안)
		학령인구 감소 (△1.95%)	기준 중위소득인상 (6.42%↑)	9구간 신규지원	신편입생 지원중단	고용정보 연계시스템	
①Ⅰ유형	2,659,851	△22,964	44,134	315,166	33,000		**3,029,187**
②다자녀	1,005,649	△36,301	13,812	130,616			**1,113,776**
③Ⅱ유형	350,000				△90,000		**260,000**
④지역인재	80,000						**80,000**
⑤운영비	1,998					338	**2,336**
합계	**4,097,498**	**△59,265**	**57,946**	**445,782**	**△57,000**		**4,485,299**

자료: 교육부

❑ 가구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국가장학금”은 그간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과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는데,

내년 예산안에 그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9구간까지 지원을 확대한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90% 이상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고 2023년도의 경우에도 91.0%라는 양호한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전체 규모로 보았을 때 불용액은 3,645억 7,900만원 규모로 9구간 지원액 4,457억 8,200만원 대비 0.82배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재원을 활용한다면 타 구간 학생들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이는 9구간 학생들의 2025년도 예산안의 지원단가(100만원, 135만원, 200만원) 보다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유형별 사업예산 및 실집행결과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국가장학금 (실집행액)	**3,550,349 (3,542,241)**	**3,485,265 (3,438,601)**	**4,134,819 (3,809,957)**	**4,030,777 (3,666,198)**	**4,097,498 (3,253,103)**	**4,485,299**
-Ⅰ유형 (실집행액)	2,325,071 (2,276,368)	2,243,950 (2,231,684)	2,834,604 (2,490,164)	2,648,720 (2,375,890)	2,659,851 (2,117,966)	3,029,187
-Ⅱ유형 (실집행액)	400,000 (401,346)	400,000 (393,251)	300,000 (299,730)	300,000 (298,783)	350,000 (286,943)	260,000
-지역인재 (실집행액)	80,000 (75,307)	80,000 (79,764)	80,000 (76,405)	80,000 (75,726)	80,000 (73,334)	80,000
-다자녀장학금 (실집행액)	742,337 (786,217)	759,095 (731,398)	917,995 (941,516)	999,837 (913,594)	1,005,649 (774,008)	1,113,776

자료: 교육부(운영비 제외)

❑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사업 전체 불용규모를 고려하여 신규로 지원하는 9구간도 타 구간과 마찬가지로 셋째 이상 다가구 자녀에게는 전액 지원하거나, 더 여력이 된다면 둘째 이하 자녀의 가구에게도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대응과 함께, 대상·지원구간·지원액 설정 시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한 소득-지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 1. 학자금 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추이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2	I유형		450	225	135	90	-	-	-	-	-	-
'13	I유형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
'14	I유형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
	다자녀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
'15	I유형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
	다자녀		480	480	480	450	450	450	450	450	450	-
'16	I유형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다자녀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450	-
'17	I유형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다자녀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450	-
'18	I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19	I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0	I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1	I 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2	I 유형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90	350	-
	다자녀	2명↓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3명↑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23	I 유형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90	350	-
	다자녀	2명↓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3명↑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24	I 유형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
	다자녀	2명↓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
		3명↑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25 (안)	I 유형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100
	다자녀	2명↓	전액	570	570	570	480	480	480	450	450	135
		3명↑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200

자료: 교육부

(3) 양질의 교내 근로 업무 확보 노력 강화

❑ 내역사업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대학별 예산 배분방식은 2025년도 총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별 예산 신청금액, 전년도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근로유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고,

지원대상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국내 대학 중 재단이 승인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서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우선선발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이 수립한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배정된 예산 내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음.

❑ 교내근로의 주요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일반 교내 근로 유형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과 ②봉사유형으로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 있음.

< 근로장학생 선발 요건 >

기본 요건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소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단,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우선선발 요건			
경제적 수준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舊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교내근로장학금 시급 상향(교외 12,220→12,430원, 교내 9,860→10,030원) 및 교내근로장학생 대상인원을 확대(7.5→13.5만명)한 결과, 2024년 본예산 대비 1,62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57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2024년 대비 2025년 산출내역 >

구분	'24 예산	'25 예산안
예산	**469,125백만원**	**635,774백만원**
산출	- 교외근로장학금 : 256,559백만원 : 6.5만명×12,220원×323시간 - 교내근로장학금 : 195,228백만원 : 7.5만명×(**9,860**원×80%)×330시간 ※ 20% 대학 대응투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15,600백만원 : 8.0천명×15,000원×130시간 - 사업운영비 : 1,738백만원	- 교외근로장학금 : 260,968백만원 : 6.5만명×12,430원x323시간 - 교내근로장학금 : 357,468백만원 : **13.5만명**×(**10,030원**×80%)×330시간 ※ **20% 대학 대응투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15,600백만원 : 8.0천명×15,000원×130시간 - 사업운영비 : 1,738백만원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주요 증액 요인은 대상자가 7.5만명에서 13.5만명으로 6만명 증가했기 때문인데 대학의 교내 근로수요[322]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25년도 교내 근로장학금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893억 6,700만원 규모인 대학의 대응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10월 현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바,

비록 과거 학생들이 교내 근로장학생을 우선하는 수요가 많았고, 대학도 행정지원 인력 수요도 충분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교내 근로장학생 6만명이라는 추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장학생 대부분이 학과, 행정실, 도서관 등 대학 내 행정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수요조사 없이 과거 경험만으로 6만명이 늘어난 13.5만명으로 사업규모를 추산한 것은 근거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22) 교육부의 다른 세부사업인 “(1231-300)장애학생 교육지원”에도 교내근로장학금 지원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2025년 예산안 19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두 사업은 수혜자가 장애대학생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전자는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 또는 대학생이 아닌 사람도 채용할 수 있으나, 후자는 재학생만이 채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단순노동, 영업·판촉, 정치활동, 유흥시설, 향락업종 등 근태 관리가 불가한 업무, 주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을 근로장학생에게 배정금지 업무로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업무로 종교시설, 음식점업(카페 포함) 관련 업무, 물류·유통·프랜차이즈 현장 관련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주로 교외 근로장학생의 업무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교내 근로장학생 근로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과, 행정실, 도서관 등 대학 내 행정 등 업무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내 근로 역시 단순노동 등에는 근로장학생을 배정하지 않도록 한 업무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최근까지 대학들은 교내 근로생들이 할 일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 시간 때우기와 '쌈짓돈' 마련의 기회 정도로 교내 근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323]을 고려하면,

일시에 교내 근로장학생 6만명이 늘어나는 경우 대학에서 근로를 통해 근로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사회·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323) 이은준, "교내 근로대학생의 교내외 근로시간에 따른 집단 구분과 특성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제22권제1호, p68, 2024. 2.

제고하기 위한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교내 근로장학금 유형별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교내근로내용	수혜인원 (지원액)			예산안
			’22	’23	’24 1학기	’25
예산액 (지원액 합계)			**158,831 (136,910)**	**151,608 (145,886)**	**195,228 (77,201)**	**357,468**
일반 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74,034명 (134,204)	75,390명 (143,185)	37,994명 (75,902)	-
봉사 유형	장애대학생 봉사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3,577명 (2,599)	3,554명 (2,558)	1,712명 (1,220)	-
	외국인유학생 봉사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169명 (107)	194명 (143)	89명 (79)	-

※ 동일학기 교내·외 중복인원 별도 산정

자료: 교육부

❑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3년도 기준 근로장학금 신청 대비 선발율이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 및 학생의 근로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까지 대학의 대응 투자가 문제없이 이루어져왔고, 증가분 1,622억 4,000만원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5억 6,0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 또한 참여 대상 대학 414개(’24년 대학알리미 기준)를 고려하면 대학의 평균 추가 부담 대응투자금액은 9,7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교내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대학 대응투자액 >

(단위: 백만원, '24.8월말 기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129,984**	**141,801**	**158,831**	**151,608**	**195,228**	**357,468**
-대학대응투자 계획액	32,496	35,450	39,708	37,902	48,807	89,367
-대학대응투자 실행액*	28,996	33,103	34,591	36,666	19,300	

* 연간 교내 장학금 집행액 대비 대응투자 실행액

[대학 대응투자 비율]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응투자 비율	20.2%	20.2%	20.2%	20.1%	20%

자료: 교육부

❑ 그러나 학생들의 근로의식 고취,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근로 수요와 대학의 대응투자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 외에도 신규 장학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는 7억원의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음에 반해, 늘어나는 교내 근로사업의 운영비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대학의 사업수요 확인, 근로장학생 배정업무 및 근태 파악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 유형과는 달리 학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외에도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늘어나는 6만명에 대한 교내 근로업무가 단순반복 업무가 아닌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내 프로젝트 연구 참여 등과 같은 양질의 업무가 많아질 수 있도록 교내 근로장학생 업무가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세심히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일시에 1,622억 4,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20% 규모인 대학 대응투자와 실집행이 예산안에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32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4134-303) 사업은 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과 ②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325] 운영'은 대학·공공기관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와 '매치업(Match業) 운영'[326]으로 구성되고,

---

324) 문의: 02-6788-5193

325)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인터넷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뜻하는데, 교수자의 강의 영상을 일방적으로 청강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326) **"매치업(Match業) 운영 사업"**은 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해당 분야의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인증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인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degree)"***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후, 2019년도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나노디그리**"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성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직무능력을 비교적 단기간에 습득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의 원격교육업체 유다시티(Udacity)의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에서 시작됨. "나노(nano)"는 학습 내용의 세분화 및 단기화를, "디그리(degree)"는 학습 내용에 대한 기업의 인증을 뜻함. 매치업은 한국형 나노디그리의 명칭임.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성인의 디지털 분야 재교육·향상교육을 통한 역량함양을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4억 3,300만원(△12.5%)이 감액된 169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28,301	19,401	16,968	△2,433	△12.5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28,301	19,401	12,818	△6,583	△33.9
○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	4,150	4,150	순증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양질의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적정규모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169억 6,800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서 전년대비 65억 8,300만원(△33.9%) 감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 41억 5,000만원 증액된 것임.

❑ K-MOOC 강좌 개발 사업 중 “국내외석학 강의 제작” 사업은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의 강의를 방송으로 제공하고 K-MOOC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소양 함양과 지식의 대중화하려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송국이 강좌 개발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해당 방송 영상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K-MOOC 플랫폼에 상시강좌로 등록하면 일반 대중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방송영상을 K-MOOC 플랫폼에 인문·사회·공학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시강좌[327]로 등록하고 있는데, 강좌 음성은 한국어 더빙으로 진행되지만 형식에 따라 자막(한국어, 영어), 수어 방송으로도 등록하

327) 학습자의 필요 시 언제나 상시로 학습할 수 있고, 이수증이 발급됨.
①대학강좌, ②대학외강좌, ③교양강좌(EBS, TV조선, JTBC) ④취업역량강화강좌

여 외국인과 시각·청각 장애인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음.[328]

❑ 사업 첫해인 2021년, EBS ‘위대한 수업’과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를 제작·방송한 이후, 올해는 EBS ‘위대한 수업 4’, CJENM ‘놀라운 증명’, TV조선 ‘거인의 어깨’가 방송 중이나, 해당 내용이 2025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MOOC 교양강좌 운영현황 >

구분	총 예산	선정기관 및 프로그램명
’21년	65억원	▲ EBS ‘위대한 수업’ (50억원, 40명)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인생수업’ (15억원, 15편)
’22년	66억원	▲ EBS ‘위대한 수업 2’ (50억원, 40명) ▲ JTBC ‘차이나는 K-클라스’ (16억원, 20편)
’23년	66억원	▲ EBS ‘위대한 수업 3’ (50억원, 40명) ▲ JTBC ‘히든 히어로즈’ (16억원, 20편)
’24년	40억원	▲ EBS ‘위대한 수업 4’ (15억원, 20명) ▲ CJENM ‘놀라운 증명’ (12.5억원, 20편) ▲ TV조선 ‘거인의 어깨’ (12.5억원, 20편)
’25년	미반영	

자료: 교육부

❑ EBS ‘위대한 수업’의 경우, 마이클 센델, 안도 타다오, 그레고리 맨큐, 유발 하라리, 폴 크루그먼, 폴 케네디 등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각 분야 석학들의 강의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후 제인 구달,

328) K-MOOC 외에도 EBS 홈페이지와 자체 사이트(수강료 $9.99/월)에서 수강 가능하나, 같은 강의임에도 해외수강 여부, 자막 제공 여부, 요약집, 더빙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피에르 가니에르, 제임스 카메론, 조 말론, 제임스 다이슨,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세계적인 예술가, 활동가, 기업가, 노벨상 수상자까지 강사와 강의 분야를 다양화하면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딥페이크 등 가짜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대중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계층 간 지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지식·교양 프로그램 시청자 평가 조사에서 선호도, 재시청의향, 추천 의향 등 주요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장 추천하는 프로그램' 타이틀을 얻는 등 대중들의 호응 또한 큰 상황으로,

2025년 예산안에 동 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중단된다면 그간 프로그램의 공익적 취지와 가치를 이해하고 적은 출연료로도 출연했던 세계적인 강사들을 섭외해 온 노하우 뿐만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및 직장 등에서 교육용 콘텐츠로서 활용도까지도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329]가 있음.

❑ 즉, 동 사업을 통해 K-MOOC이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양질의 정보

329) 뉴스핌, [국감]'노벨상 동문회' EBS-위대한수업' 폐지 위기…이주호 "예산 복원 노력할 것", 2024. 10.24.
연합뉴스, '위대한 수업' 막 내리나…EBS "정부 예산 편성 안 돼", 2024.10.16.
해럴드경제, EBS '위대한 수업'이 예산이 없어 못만들게 된다면 괜찮겠습니까?, 2024.10.1.

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민 소양 함양 및 지식의 대중화라는 평생교육 제도의 취지와 콘텐츠를 통한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 및 확대하려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K-MOOC에 대중들의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양질의 강의 컨텐츠를 개발·확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 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최근 정부는 AI·디지털(AID)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30대 이상 성인(30+)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발표(2024.10.16.)하면서 4대 추진과제[330]를 제시하였음.

❑ 2025년도 신규사업인 “성인의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사회참여가 많은 30~40대 성인의 학습수요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학습하고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기회를 집중 제공함으로써,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스킬·리스킬링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하 “AID30+”이라 함)임.

< 성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예산안 >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신규)	(신규)	4,150백만원	○ 사업 출연금(350-02): 4,150백만원 가. AID30+ 집중교육과정 : **2,550백만원** - (17개 × 150백만원) = 2,550백만원 나. AID 도약 강좌 : **1,500백만원** - (30개 × 50백만원) = 1,500백만원 다. 사업관리비 :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 100백만원

자료: 교육부

330) **(4대 추진과제)** ①대학 중심의 성인 AI·디지털 역량 제고, ②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세상, ③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평생학습 지원, ④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 지원

❑ 동 사업은 “AID30+ 집중교육과정”과 “AID 도약강좌”로 구성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AID30+ 집중교육과정”[331]은 성인의 AI·디지털 분야 업스킬링·리스킬링을 위해 대학을 통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4주) 캠프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활용한 교육과정으로,

온라인 과정으로 시·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오프라인 과정은 재직자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주말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현직자 멘토링 등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단기에 AI·디지털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② “AID 도약강좌”[332]는 대학이 제공하는 분야별 AI·디지털 융합강좌 묶음을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장기(12주)에 걸쳐 이수하고, 이수결과는 인증평가를 거쳐 대학 총장 명의로 디지털 배지, 소단위 전공 등으로 역량을 인증하는 방식[333]으로 운영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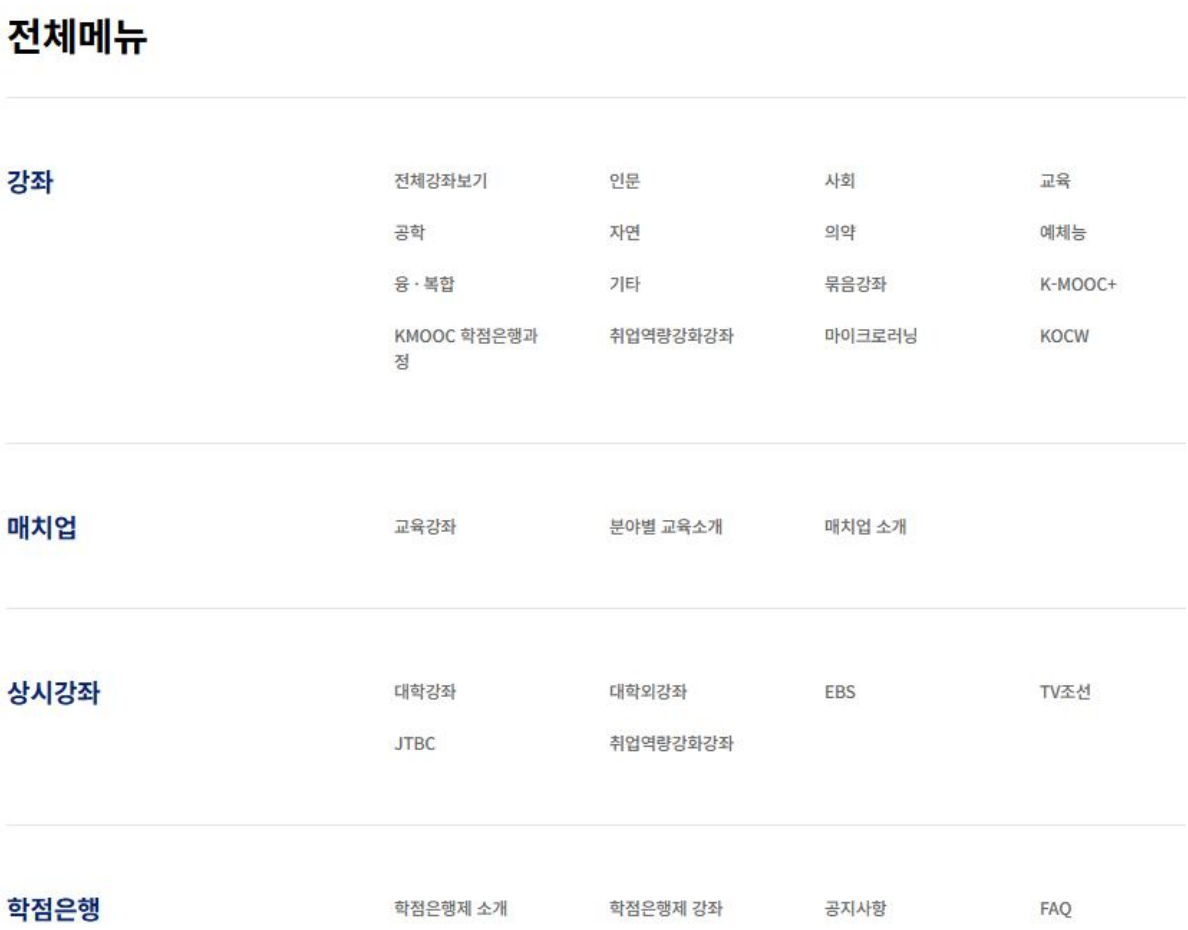
---

331) **(AID30+ 집중캠프 20교)**시도별 규모를 고려하여 17개 시도에 20개교 지정
※ **(교육과정 예시)** 디지털 문제해결력 등 직무영역의 필수과정인 **①(일반직무)** 온라인 협업도구(Google workspace, MS Teams 등), 데이터 분석 실무 등 **②(특정산업)** AI기반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 실제 문제해결 등을 위한 융합형 과정 등

332) 3개 내외의 강좌를 묶어 온라인 교육과정(20개교)을 운영
※ **(데이터 마케팅 분야 예시)**빅데이터 기반 수요 분석, 생성형 AI 활용 마케팅 전략 수립 묶음 강좌 수강 → 실시간 비대면 학습, 프로젝트 과제 수행 → 인증평가 → 인증서 발급

333) “**매치업(Match業) 운영 사업**”의 경우, 핵심직무를 제안한 대표기업이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 대한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직무능력인증서(대표기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동명의)를 발급하고 있음.

< K-MOOC 플랫폼 제공 강좌 메뉴 >



자료: K-MOOC 홈페이지

❑ 그러나 현재 K-MOOC 플랫폼에는 ①실습·토론 등 온·오프라인 과정이 융합된 심화강좌인 “K-MOOC+”, ②특정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강좌를 묶은 커리큘럼인 “묶음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각각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방식의 “AID30+ 집중교육과정”과 AI·디지털 융합 강좌 묶음인 “AID 도약강좌”의 사업내용과 방식에

서 유사한 면이 있어 보임.

❑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학점인정, 대학원 진학 등 정규 학위과정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동 사업이 3~40대 성인 직장인들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라는 점이 기존 사업과 차이[334]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AI·디지털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적합성이 높은 학습과정은 무엇인지, 해당 학습 수요는 충분한지, 기존 K-MOOC 및 매치업(Match業) 사업과 어떻게 차별화할 지에 대한 계획과 설명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보임.

❑ 더욱이 최근 4년간 K-MOOC 수강통계가 보여주듯이 수강건수 하위 강좌는 대부분 50건을 넘기지 못하고, 상위강좌라 하더라도 일부 1~2개 강좌를 제외하면 대부분 5,000건 이하만을 기록하고 있는 점 및 전체 수강건수 규모 또한 매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K-MOOC 강의 컨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아무리 우수한 내용의 신규 컨텐츠라 하더라도 기존 컨텐츠와 차별성을 대중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당초 설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334) 참고 1. 기존 K-MOOC 과정과 신규 AID 사업 비교

❑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동 사업이 K-MOOC과 같은 플랫폼에서 기존의 K-MOOC 및 매치업(Match業)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사업에서 AI·디지털 분야만 단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사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최근 4년간 K-MOOC 강좌 수강통계 >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8.
상위강좌	1	12,172	20,411	9,508	5,372
	2	11,722	19,004	9,506	4,638
	3	4,270	4,302	7,762	4,112
	4	3,787	2,391	4,649	3,214
	5	3,310	1,978	3,518	2,761
	6	3,152	1,829	3,181	2,022
	7	3,150	1,757	2,521	1,424
	8	3,136	1,629	2,205	1,380
	9	2,744	1,589	1,909	1,348
	10	2,661	1,498	1,851	1,309
	계	**50,104**	**56,388**	**46,610**	**27,580**
하위강좌	1	5	7	6	6
	2	29	23	10	18
	3	39	25	11	20
	4	42	25	13	21
	5	46	33	13	28
	6	48	35	17	28
	7	49	36	18	31
	8	49	37	18	32
	9	55	40	20	32
	10	55	41	20	33
	계	**417**	**302**	**146**	**249**

자료 : 교육부

참고 1. 기존 K-MOOC 과정과 신규 AID 사업 비교

	K-MOOC	매치업	AID 30+ 집중교육과정	AID 도약강좌
목적 및 내용	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	대표기업-교육기관 협업으로 개발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첨단 분야 직무능력 향상 지원	성인의 AI·디지털 분야 업스킬링·리스킬링을 위해 대학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캠프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AI·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디지털 배지, 소단위 전공 등으로 역량을 인증하는 온라인 강좌
수강 대상	모든 국민	모든 국민 (신기술·신산업 분야 종사자·구직자 중심)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개발 주체	대학 등	대표기업-교육기관 (대학 등) 컨소시엄	대학 등	대학 등
학습 방식	온라인	온·오프라인 (기초과정은 온라인, 심화과정은 온·오프라인 연계형)	온·오프라인 연계형 (오프라인 과정은 평일 저녁·주말 활용)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실습 등 포함)
학습 기간	과정당 6~18주 (대학 학기운영과 유사)	과정당 18주 내외 (분야별 4개 과정 운영)	과정당 4주 이내	과정당 18주 내외 (강좌당 6주 내외×3강좌 묶음)
학습 내용	고등교육 수준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 운영	대표기업이 도출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핵심직무를 바탕으로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디지털 스킬을 익히기 위한 교육과정	직무 분야별 AI·디지털 융합 스킬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 묶음
특징	역량있는 대학의 우수한 강좌 공개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과 연계 운영하여 현장적합성 높은 인재양성	성인학습자 맞춤형 설계(4주 이내 단기, 비전공자를 위한 난이도)를 통한 손쉬운 업스킬링	학습 후 인증평가를 거쳐 디지털 배지, 소단위 전공 등으로 역량 인증

자료 : 교육부

7. 책임교육정책관

<일반회계>

1)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33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031-302) 사업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과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지원 및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4억 2,200만원(42.6%)이 감액된 19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335) 문의: 02-6788-5184

< 2025년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585.9	3,338	1,916	△1,422	△42.6
○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1,080.4	1,830	300	△1,530	△83.6
○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485.5	114	140	26	22.8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운영	20	-	-	-	-
○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	1,394	1,476	82	5.9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내역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336]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337]인데, 이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자료 개발·보급 등을 그 내용으로 함.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는 교육과정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델, 평가기준 등 개발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의 단위학교 안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② '2022 개정교육과정 후속지원'은 초·중등교육과정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에 따른 후속지원 정책

336)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3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발굴하는 사업이며,

③ ‘과학·수학교육 진흥지원’은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 과학·수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수학·과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그러나 내역사업 중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은 그 주된 목적을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먼저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과학고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338]간 공동(Advanced Placement)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이 관련 대학에 입학 후 해당 과목을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과는 별개로 과학고와 과기대 간의 교육 연계를 확대하여 우수 과학 인재의 조기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또한 “과학·수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는 과학·수학교육 과학·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및 이를 위한 종합지표 조사 및 분석, 기초연구를 그 내용으로 함.

338)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 2022~2024년 과학 · 수학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내역 >

구 분	연도	연구명	수행기관
과학	2022	2022 과학교육 종합지표 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	넥스트퍼블릭
	2023	과학교육 종합지표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2023	2023 과학교육 종합지표 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	넥스트퍼블릭
	2024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2024	과학교육 종합지표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2024	2024 과학교육 종합지표 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	넥스트퍼블릭
수학	2023	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현황·성과 분석 연구	대한수학교육학회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제3차 융합교육 종합계획 보고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자료: 교육부

향후 발표될 제5차 과학·수학교육 종합계획(2025~2029)은 그 내용상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교육과정의 개정에 맞추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5년을 주기로 발표하는 것이고, 국내외 과학교사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교류를 지원하는 등 교육과정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개정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한편, “과학·수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은 초등교사, 중등 과학·수학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으로서, 최근 3년간 과학 76종, 수학 60종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음.

< 최근 3개년 과학·수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 현황 >

과목	개발 연도	예산액(백만원)	산출물
과학	2022	275	32종
	2023	160	24종
	2024	231	20종(예정)
수학	2022	261	9종
	2023	100	44종
	2024	347	7종(예정)

자료: 교육부

교수학습자료는 학년·단원을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육과정 개정 이후 필요에 따라 신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교육과정에 기반한 자료를 개발[339]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과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과학·수학교육 진흥지원'은 2023년까지는 구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1031-403)의 내역사업이었다가, 2024년부터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이 재구조화되면서 일부 내역사업은 신규 사업인 이공계 창의융합지원(1031-406)으로, 여타 내역사업은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으로 편입된 것임.

339) 참고자료 <2023~2024년 과학·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황> 참조.

❑ 2024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의 내역사업으로 편입될 당시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이 동 사업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41.8%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 동 내역사업이 전체 사업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77%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동 사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예산		2025 예산안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 기능별 분류(합계)	3,338	100	1,916	100
·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1,830	54.8	300	15.7
·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	114	3.4	140	7.3
·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1,394	**41.8**	1,476	**77**

자료: 교육부

이는 ‘교육과정 개정 정책연구’ 내역사업의 예산안 규모가 2025년에 크게 줄어드는 것에 기인하는데,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직후(~’24.)에 학교급별 공통사항과 총론(교육과정 주요 내용) 및 학교급별 성취수준 개발(’24년 약 1,440백만원) 등 주요 연구를 대부분 수행하였고, 차년도부터는 교육과정 단계적 적용[340]에 따라 2026년 적용될 학교급·학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340) (’24.) 초1·2 → (’25.) 초3·4, 중1, 고1 → (’26.) 초5·6, 중2, 고2 → (’27.) 중3, 고3

향후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내역사업이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계속 존속한다면 그 예산액이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따라서,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내역사업은 동 세부사업의 사업목적과는 관련성이 다소 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 세부사업 예산 안에서 80%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부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 추진경과를 외부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관리·평가의 제고를 위해서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 내역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자료 **2023~2024년 과학·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황**

과목	연도	연번	내역	교수학습자료명	개발자(수행기관)	지급액
과학	2023	1	과학탐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총 21종*) *학년군별 교수학습자료 2종 개발 (총 20종=10종×2종)	알고두와 함께하는 롤링볼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24명	50백만원
		2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까닭 알아보기		
		3		메타버스 탐험, 지진과 화산의 신비한 세계		
		4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식물의 종과 관계없이 모두 같을까?		
		5		스마트전구를 활용한 별의 온도와 색깔 관계 탐구		
		6		한반도의 기후는 어떻게 변할까?		
		7		센서를 활용한 중화적정 탐구하기		
		8		마이크로비트 해양탐사장비 만들기		
		9		소음공해 해방 프로젝트		
		10		빅데이터 기반으로 불쾌지수가 높은 자리 찾기		
		11		건축구조에 따른 소음변화 비교분석하기		
		12		지구는 정말 이산화탄소 때문에 뜨거워진 것일까?		
		13		새는 전기 막아라		
		14		기후변화를 해결할 대체에너지 태양광 발전		
		15		멸종 위기 꿀벌을 지키자		
		16		'건강한 나'를 위한 맞춤 식단 설계하기		
		17		늘어나는 고수온 현상: 수온은 얼마나 상승하였을까?		
		18		함께 만드는 식물 성장 디지털 앨범		
		19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영화제		
		20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는 카드뉴스 제작		
		21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하자!		
		22	융합선택 교수학습자료 (총 2종)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고교 융합선택 과목 핵심교원 연수 교재	DGIST	80백만원
		23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고교 실험 과목 교수학습자료	DGIST	

과목	연도	연번	내역	교수학습자료명	개발자(수행기관)	지급액
		24	실험 안전 이슈페이퍼 (총 1종)	안전한 과학실험실 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김ㅇㅇ 교수 (공주대 산학협력단)	30백만원
	2024	1	과학탐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총 17종*) * 학년군별, 과목별 교수학습자료 2종 내외개발	초등학교 3~4학년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지능형 과학실 발전협의체 17팀	51백만원
		2		초등학교 5~6학년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3		중학교 1학년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4		중학교 2학년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5		중학교 3학년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6		통합과학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7		물리학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8		화학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9		생명과학 지능형 과학실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10		지구과학 지능형 과학실 과학탐구 교수학습자료 개발 예정		
		11	고교 융합선택 과목 자료 (총 3종)	고교 융합선택 원격연수 자료(3종)	한국과학창의재단	180백만원 (예정)
수학	2023	1	수학 공학도구 활용 관련 교수학습 자료개발 (총 20종)	똑똑 수학탐험대를 활용한 단위 분수 크기 비교	임ㅇㅇ 교수 (공주대 산학협력단)	50백만원
		2		계산기를 활용한 소수의 나눗셈 문제 해결		
		3		엑셀을 활용한 무리수의 개념 탐구		
		4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식 배열에 따른 규칙 탐구		
		5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비례 탐구		
		6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일차함수의 그래프 탐구		
		7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이차함수의 그래프 탐구		
		8		폴리패드를 활용한 벽화 만들기		
		9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원주율 탐구		
		10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삼각형의 작도		
		11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삼각형의 합동 조건 탐구		
		12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정다면체 탐구		
		13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삼각형의		

과목	연도	연번	내역	교수학습자료명	개발자(수행기관)	지급액
				외심 탐구		
		14		알지오매스를 활용한 닮은 도형의 성질 탐구		
		15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원주각의 성질 탐구		
		16		통그라미를 활용한 자료 수집과 분석		
		17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평균 구하기		
		18		모의실험과 통그라미를 활용한 대푯값 탐구		
		19		통그라미를 활용한 통계적 문제해결		
		20		CODAP을 활용한 상자그림 탐구		
		21	수학 디지털 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총 24종)	(초1~2 수와 연산) 우리반의 숨겨진 보물 찾기	김ㅇㅇ 교수 (고려대 산학협력단)	50백만원
		22		(초1~2 변화와 관계) 스크래치로 나만의 규칙을 활용한 무늬 만들기		
		23		(초1~2 도형과 측정)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라		
		24		(초1~2 자료와 가능성) 친구들의 마음을 통계로 읽어요		
		25		(초3~4 수와 연산) 분수 피자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완성해라		
		26		(초3~4 변화와 관계) 규칙을 이용해 메타버스 미로에서 탈출하라		
		27		(초3~4 도형과 측정) 이상한 직사각형 나라의 정사각형		
		28		(초3~4 자료와 가능성) 산불 조심하세요!		
		29		(초5~6 수와 연산) 오늘의 날씨를 알아볼까요		
		30		(초5~6 변화와 관계) 지오지브라로 두 양의 관계를 찾아라		
		31		(초5~6 도형과 측정) 가상현실 세계에서 쌓기나무 탐구하기		
		32		(초5~6 자료와 가능성) 통계의 힘으로 우리 지역 문제 해결하기		
		33		(중1 수와 연산) 소인수분해를 친구와 갖고 놀자		
		34		(중1 변화와 관계) 찾았다. 정비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성질		

과목	연도	연번	내역	교수학습자료명	개발자(수행기관)	지급액
		35		(중1 도형과 측정) 평면을 채워줘 정다각형 그리는 거북이		
		36		(중1 자료와 가능성) 급식실의 잔반을 줄여라		
		37		(중2 수와 연산) 공학용 계산기로 순환소수 파헤치기		
		38		(중2 변화와 관계) 빙고게임으로 다항식의 사칙연산 마스터 되기		
		39		(중2 도형과 측정) 사람 많은 곳의 근처에는 무엇이 있을까		
		40		(중2 자료와 가능성) 던져라 던져 동전 던지기 확률 실험		
		41		(중3 수와 연산) ChatGPT와 무리수 탐구하기		
		42		(중3 변화와 관계) 이차함수 $y=ax^2+bx+c$의 그래프 모양 탐구		
		43		(중3 도형과 측정) 한치의 오차 없이 접선 긋기		
		44		(중3 자료와 가능성) 서핑 여행 어디로 가야할까		
	2024	1	수학 교수학습 자료개발 (총 7종)	고등학교 신설과목(직무 수학) 웹 기반 콘텐츠	㈜셈웨어	257백만원 (예정)
		2		고등학교 신설과목(수학과 문화) 웹 기반 콘텐츠		
		3		알지오매스 활용 지원 교수학습자료(초5~6)		
		4		알지오매스 활용 지원 교수학습자료(중1)		
		5		알지오매스 활용 지원 교수학습자료(중2)		
		6		알지오매스 활용 지원 교수학습자료(중3)		
		7		탐구활동-평가 일체형 공학도구 모델 및 프로토타입 개발	오ㅇㅇ 교수 (홍익대 산학협력단)	90백만원 (예정)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2) 사업 성과 개선 및 이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과학·수학교육 진흥 지원'의 내역사업 중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3억 7,600만원으로, 2024년도의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됨.

❑ '과학·수학교과 대학과목 연계 이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과학고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341] 간 공동AP(Advenced Placement)[342]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AP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진학하도록 독려하고 과학고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의 교육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과학 인재의 조기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부는 과학고(20개교) 교육과정에 대학 과목(14개)[343]에 준하는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이 관련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보아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

341) 과학기술특성화대학: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342) 공동AP 과정: 과학고등학교·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교과목을 선이수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343) (수학) 미적분학 I·II, 확률 및 통계, 선형대수학 총 4개, (물리) 일반물리 I·II, 일반물리학실험 I·II 총 4개, (화학) 일반화학 I·II, 일반화학실험 I·II 총 4개, (생물) 일반생물, (정보)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 동 사업 시행에 따라 최근 5년(2020~2024년) 간 공동AP 과정을 이수한 과학고 학생의 수는 총 4,850명으로 1년 평균 970명 수준임. 공동AP 과정은 고등학교 3학년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기간동안 과학고 3학년 졸업생은 총 5,481명이었으므로 전체 학생의 약 88.5%가 공동AP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여짐.

< 최근 5개년 공동AP 과정 운영 성과 현황 >

(단위: 명, %)

연도	과학고 졸업생 수 (A)	공동AP 이수자 수 (B)	공동AP 이수 비율 (B/A×100)	과기특성화대학 진학 학생 수 (C)	대학 학점 인정자 수 (D)	과기특성화대학 학점인정 비율 (D/C×100)
2020	1,079	985	91.2	347	221	63.7
2021	1,141	999	87.6	399	241	60.4
2022	1,093	948	86.7	409	234	57.2
2023	1,068	927	86.8	454	271	59.7
2024	1,100	991	90.1	429	301	70.2
계	5,481	4,850	88.5	2,038	1,268	62.2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2024년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여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총 429명이고 그중 70.2%에 해당하는 301명의 학생이 공동AP 과정 이수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은바, 2023년 454명의 졸업생 중 59.6%인 271명만이 학점 인정을 받았던 것에 비해 학점 인정 비율이 10%p 이상 개선되는 등 준수한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성과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참여 대학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사업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동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학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5개교인데, 과학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중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37.2% 수준에 불과함.

< 과학고 졸업생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 현황 >

(단위: 명)

연도	과학고 졸업생 (3학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학자					
		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	계
2020	1,079	134	53	16	99	45	347 (32.2%)
2021	1,141	128	93	58	55	65	399 (35.0%)
2022	1,093	140	77	80	69	43	409 (37.4%)
2023	1,068	137	101	66	119	31	454 (42.5%)
2024	1,100	143	97	82	91	16	429 (39.0%)
계	5,481	682	421	302	433	200	2,038 (37.2%)

자료: 교육부

같은 기간 동안 공동AP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총 4,850명이지만 5개 대학에 입학한 2,038명을 제외한 2,812명의 학생은 해당 이력을 활용하지 못했음. 기존 5개 협력대학 외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발굴

하여 졸업하는 다수의 학생이 과학고등학교 재학 중 공동AP 과정을 이수한 이력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현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생 학점 인정 현황 자료 >

(단위: 명, %)

연도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계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진학 학생	학점 인정	인정 비율
'20	134	97	72.4	16	6	37.5	45	20	44.4	99	52	52.5	53	46	86.8	347	221	63.7
'21	128	101	78.9	58	16	27.6	65	17	26.2	55	28	50.9	93	79	84.9	399	241	60.4
'22	140	105	75.0	80	19	23.8	43	6	14.0	69	41	59.4	77	63	81.8	409	234	57.2
'23	137	96	70.1	66	22	25.8	31	6	22.6	119	56	47.1	101	91	90.1	454	271	59.7
'24	143	119	83.2	82	31	25.0	16	4	37.8	91	53	58.2	97	94	96.9	429	301	70.2
계	682	518	76.0	302	94	31.1	200	53	26.5	433	230	53.1	421	373	88.6	2,038	1,268	62.2

자료: 교육부

KAIST와 POSTECH의 경우 5년 평균 학점인정 비율이 각각 76%와 88.6%로 상당히 수치가 높은 데 비해 GIST와 DGIST는 그 비율이 각각 31.1%와 26.5%로 비교적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더 많은 과목이 각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는 개별 학교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셋째, 공동AP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학고별 공동AP 과정 이수자 수 현황 >

(단위: 명)

연도	세종과고	한성과고	부산과고	부산일과고	대구일과고	인천과고	인천진산과고	대전동신과고	울산과고	경기북과고	강원과고	충북과고	충남과고	전북과고	전남과고	경북과고	경산과고	경남과고	창원과고	제주과고	계
‘20	118	98	70	68	47	48	46	28	42	68	47	15	0	35	55	24	34	63	51	28	985
’21	125	100	76	70	48	51	47	0	50	75	48	0	0	40	72	21	37	65	50	24	999
’22	94	91	76	71	45	52	47	0	45	67	45	0	0	36	69	32	35	66	51	26	948
’23	99	94	74	63	52	46	50	0	46	64	43	0	0	38	63	21	39	60	48	27	927
‘24	112	97	78	81	48	49	52	0	46	73	45	0	26	31	60	22	35	70	46	20	991
계	548	480	374	353	240	246	242	28	229	347	228	15	26	180	319	120	180	324	246	125	4,850

자료: 교육부

과학고별 공동AP 과정 이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수자 수를 기록한 학교는 세종과학고등학교로 최근 5년간 해당 과정 이수자가 548명이고, 다음으로 한성과학고등학교 학생 480명이 동 과정을 이수하였음. 이에 비해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와 충북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8명과 15명, 26명의 학생만이 공동AP과정을 이수하였는데, 5년간 충남과고는 2024년, 나머지 두 학교는 2020년 1개년만 교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됨.

타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공동AP 과정을 이수하여 관련 대학 진학 시에 학점을 인정받는 혜택이 주어지는 데 비해 일부 공동AP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각 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대상 학생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동AP과정은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과목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 현재 학업성취도 상위 20%(서울/경기 10%・경남 15%, IQ 140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졸업을 허용하고 있고, 상위 40%에 대하여는 상급학교 조기입학[344]을 허용하고 있어 입학생 중 약 30%의 학생이 조기졸업・조기입학 제도를 통해 2학년 과정만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고 있음.

344) 학업 성취도가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KAIST, UNIST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합격하면 조기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따라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과학·수학 등 교육을 이수한 2학년 2학기의 경우에는 공동AP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재 3학년 1학기에 비해 3학년 2학기에 운영되고 있는 과목의 수가 현저히 적으므로, 3학년 2학기에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과목을 개설하도록 독려할 경우 수혜 학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부는 동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하여 대상 학생,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의 예산액 수준으로는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일반회계>

2)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34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1031-303)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지원, 교과용도서의 지속적인 질 관리,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미래 교과서 발행 체계 대비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및 우수 사례 발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검정심사 운영 지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45) 문의: 02-6788-5184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9,800만원(1.7%)이 감액된 5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4,708	5,727	5,629	△98	△1.7
○ 교과용도서 개발	3,308	2,997	1,159	△1,838	△61.3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72	151	152	1	0.7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및 우수 사례 발굴	15	40	50	10	25.0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886	975	975	0	0
○ 검정심사 운영 지원	-	508	498	△10	△2.0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90	31	50	19	61.3
○ 교과서 정책자문단 운영	40	39	40	1	2.6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지원	-	886	2,605	1,719	194.0
○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81	100	100	0	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교과용도서 심의회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

❑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및 교과서의 상시 수정·보완, 가격 결정, 정책자문단 운영, 검정심사 운영 지원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 교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 56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56억 2,900만원 중 '교과용도서 심의회' 내역사업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의수당", "회의실 임차료" 1억 4,960만원은 예상 산출 기준 이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교과용도서 심의회 내역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

○ 교과용도서 심의회 : 152백만원 - (심의수당) 137.5백만원 * (산출)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 × 25명 × 22회 - (회의실 임차료 등) 12.1백만원 * (산출) 550천원 × 22회 - (사업추진비) 2.4백만원 * (산출) 1.2백만원 × 2개 교과(국어, 도덕)

❑ 초등학교 국정도서는 개발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개발단계(① 원고본 → ②개고본 → ③현장검토본 → ④수정본)별로 최소 1회씩

심의[346]를 거쳐 1개 학기·1개 과목 교과서에 대한 심의는 최소 4번 이루어지는 구조임.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

① 원고본[초안] 심의→② 개고본[수정안] 심의→③ 현장검토본[시범교과서] 심의→현장적합성 검토→④ 수정본 심의→⑤ 감수본(전문기관 감수) → ⑥ 결재본 → ⑦ 최종본 승인→현장 보급

❑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는 이러한 심의를 진행하는 조직으로, 심의회 관련 예산은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심의수당, 회의실 임차료, 사업추진비로 반영되어 있으며, 심의수당과 회의실 임차료는 각각 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횟수에 단가(1인당 심의수당, 1회분 회의실 임차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음.

❑ 2025년 심의회 예상 횟수는 심의수당과 회의실 임차료에서 각각 22회로 반영되었으나, 22회라는 2025년 심의회 예상 횟수는 교과용 도서 개발 일정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실제 운영 횟수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 초1·2학년, 2025년 초3·4학년, 2026년 초5·6학년 순으로 적용됨에 따라 초등학교 국정도서의 개발 일정 및 교과용도서 심의회의 심의 일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일정(안)에 맞추어 수립하고 있음.

346) 심의는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로 이루어지며, 서면심의 1회와 대면심의 1회를 묶어 하나의 심의로 간주함.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 일정(안)>

구분	국정도서 개발 기본 계획 수립	편찬기관 공모/선정	발행사 선정	교과서 편찬 및 심의회 운영		발행·공급	사용 (학교)
				현장검토본 개발 (원고본, 개고본)	현장적합성 검토		
	→	→	→	<심의, 감수 등 병행>		→	→
1~2학년군	'22. 6.	'22. 10.	'22.12.	'23. 1.~'23. 3.	'23. 4.~'23.12.	**'24. 2.**	'24. 3.
3~4학년군	'22. 11.	'23. 4.		'23. 7.~'23. 12.	**'24. 3~'24. 12.**	'25. 2.	'25. 3.
5~6학년군	(도덕) '23. 9. (국어) '23. 12.	(도덕) '23.12. (국어) '24.4.		**'24. 8.~'25. 2.**	'25. 3~'25. 12.	'26. 2.	'26. 3.

학년(군)	교과	책수	개발 및 적용 일정(안)				
			'22	'23	'24 (초1~2)	'25 (초3~4)	'26 (초5~6)
1~2	통합(안전 포함)/국어/수학	교과서 28책, 지도서 12책		개발 현장검토	적용		
3~4	국어/도덕	교과서 10책, 지도서 6책			개발 현장검토	적용	
5~6	국어/도덕	교과서 6책, 지도서 6책				개발 현장검토	적용
계(68책)		교과서 44책, 지도서 24책					

자료: 교육부

<국정도서 개발 일정 (2024년 10월 기준)>

추진 내용	초1~2 국어, 수학, 바·슬·즐(40책)		초3~4 국어, 도덕(16책)		초5~6 국어, 도덕(12책)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별 편찬기관 선정	'22.10.		'23.3.		도덕: '23.12. 국어: '24.4.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구성	'22.11.		'23.6.		'24.5	
원고본 심의	'23.1.	'23.5.	'23.8.~10.	**'24.3.**	**'24.8.**	**'25.1.**
개고본 심의	'23.2.	'23.6.	'23.10.~12.	**'24.5.**	**'24.10.**	'25.2.
현장검토본 심의	'23.3.	'23.7.	**'24.1.**	**'24.7.**	**'24.12. ~'25.1.**	'25.4.
현장적합성 검토	'23.5~7.	'23.9~12.	**'24.3.~7.**	**'24.9.~12.**	'25.3.~7.	'25.9.~12.
수정본 심의	'23.10.	**'24.3.**	**'24.10.**	'25.2.	'25.10.	'26.2.
감수본 국립국어원 감수	'23.11.	**'24.5.**	**'24.11.**	'25.4.	'25.11.	'26.4.
결재본	'23.12.	**'24.6.**	**'24.12.**	'25.5.	'25.12.	'26.5.
현장적용	**'24.3.~**	**'24.9.~**	**'25.3.~**	**'25.9.**	**'26.3.**	**'26.9.~**

자료: 교육부

❑ 위 일정에 따르면, 초1·2학년의 1·2학기 국어, 수학, 바·슬·즐(통합교과)과 초3·4학년 1학기 국어, 도덕은 2024년 연말까지 원고본·개고본·현장검토본·수정본 4단계의 심의를 모두 마칠 예정이고, 2025년에는 초3·4학년 2학기 국어, 도덕과 초5·6학년 1·2학기 국어, 도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구체적으로, 초3·4학년 2학기 국어, 도덕은 수정본 심의만 남아있고, 초5·6학년 1학기 국어, 도덕은 현장검토본 심의와 수정본 심의, 초5·6학년 2학기 국어, 도덕은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수정본 심의를 운영할 예정임[347]. 이에 근거하여 심의회 예상 횟수를 재산정하면, 초3·4학년군 2학기본 2회, 초5·6학년군 1학기본 4회, 초5·6학년군 2학기본 6회로 총 12회의 심의가 예상되는 상황임.

* 심의수당 : 1인 250천원(서면 100천원, 대면 150천원) × 25명 × **12회** = 75백만원 * 회의실 임차료 : 550천원 × **12회** = 6.6백만원 ※ 2025년도 심의 예상 횟수 : 12회 - 초3·4학년군 2학기본 심의 2회: 교과별 1회(수정본) × 2개 교과(국어, 도덕) - 초5·6학년군 1학기본 심의 4회: 교과별 2회(현장검토본, 수정본) × 2개 교과(국어, 도덕) - 초5·6학년군 2학기본 심의 6회: 교과별 3회(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 2개 교과(국어, 도덕)

347) 다만, 초5·6학년 2학기 국어, 도덕 수정본 심의는 2026년 2월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심의회 예상 횟수에서 제외함.

❑ 이러한 예상 횟수 12회는 초5·6학년군 1학기 국어, 도덕 과목의 현장검토본 심의가 ’24.12.～’25.1.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2024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모두 2025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단계별 1회 운영 시 최대한의 수치로 산출한 것임.

❑ 12회는 교육부가 산출한 22회와는 상이한 것으로,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제재글 분량이 증가하고, 타 교과(사회, 과학 등)와의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검토 내용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완성도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을 위해 개발 단계별 최소 2～3번 추가 심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의 심의회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348], 초3·4학년군 1학기 국어, 도덕은 심의가 완료되었고 2학기 국어, 도덕은 수정본 심의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23.7.21.～’23.7.27.의 국어과 집필 세목에 대한 서면심의와 ’24.1.10.의 도덕과 현장검토본 사전협의회만을 기존 예상보다 추가로 심의했으므로(합산하여 1번) 고학년에서 단계별로 2～3번 추가 심의를 운영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국정도서 개발 일정과 2023년도 및 2024년도 교과

348) 참고자료 <2023년, 2024년 교과용도서 심의회 개최 현황> 참조.

용도서심의회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관련 예산안의 적정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2023년, 2024년 교과용도서 심의회 개최 현황**

□ 2023년도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개최 현황

학년군 / 교과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4	3	3**	-	-	-
수학	7*	4				
통합교과	5	3				
도덕			2	-	-	-
계	16	10	5			

* 현장검토본(전자저작물) 추가 심의('23.4월), 수학 준비물 추가 심의('23.12월) 포함

** 집필세목에 대한 서면심의 추가 운영('23.7월)

※ 심의 단계별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포함하여 1회로 산정한 것임.

□ 2024년도 교과용도서(편찬)심의회 개최 현황(9월말 기준)

학년군 / 교과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	1	2*	3	1	-
수학	-	2				
통합교과	-	1				
도덕			2*	-	1	-
계		4	4	3	2	

* 현장검토본 사전협의회 추가 운영('24.1월)

※ 심의 단계별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포함하여 1회로 산정한 것임.

(2)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필요

❑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349]에 해당하는 것이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은 일반연구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교과용도서 가격결정'은 원활한 교과용도서 발행·공급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검정 교과용도서 가격산정·협의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중 국·검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 용역 40백만원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예산안 산출근거 >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50백만원 - (국·검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 용역) 40백만원 * (산출) 20백만원×2회 -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 개최) 6백만원 * (산출) 200천원×10명×3회 - (가격결정 관계자 협의 등 업무추진비) 4백만원 * (산출) 20천원×20명×10회

자료: 교육부

349)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31

❑ 그러나 국·검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은 교과용도서의 정가총액·원가를 산출하고 가격적정성을 검토하며, 감수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지식 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이고, 행사운영 등 일반업무의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용역비(260-14)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개년 교과서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 현황 >

연도	계약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
2022	**2022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	장태요 세무회계 사무소	2022.6.27. ~ 2022.7.26.	2022학년도 2학기 국정 교과용도서(100책) 정가총액 산출 및 책별정가 산출 내역 검토, 감수보고서 작성 등	10
	2023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	장태요 세무회계 사무소	2022.11.25. ~ 2022.12.24.	2023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380책) 정가총액 산출 및 책별정가 산출 내역 검토, 감수보고서 작성 등	15
2023	**2023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	장태요 세무회계 사무소	2023.6.5. ~ 2023.7.4.	2023학년도 2학기 국정 교과용도서(68책) 정가총액 산출 및 책별정가 산출 내역 검토, 감수보고서 작성 등	10
	2024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	장태요 세무회계 사무소	2023.11.28. ~ 2024.1.14.	2024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379책) 정가총액 산출 및 책별정가 산출 내역 검토, 감수보고서 작성 등	15 (차년도 이월, 일반연구비 집행)
	2024년 신간 검정도서 가격적정성 검토 연구	한울회계법인	2024.1.16. ~ 2024.3.31.	2024년도 검정심시 출원 교과용도서(92책 721종)의 가격협상을 위한 기초가격 산정(원가계산 및 가격적정성 검토)	19 (차년도 이월, 일반연구비 집행)
2024	**2024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	장태요 세무회계 사무소	2024.7.24. ~ 2024.8.22.	2024학년도 2학기 국정 교과용도서(76책) 정가총액 산출 및 책별정가 산출 내역 검토, 감수보고서 작성 등	10 (일반연구비 집행)
	2024년 신간 검정도서 가격적정성 검토 연구	미정	미정	2025년도 검정심시 출원 교과용도서(미정)의 가격협상을 위한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및 가격적정성 검토	15 (일반연구비 집행 예정)

자료: 교육부

❑ 2022년도 결산에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었던바, 당시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향후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하겠다는 의견으로 수용하였고, 2023년도 사업 추진 중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연구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전용 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20.)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1031-303)	운영비 -일반용역비 (210-14)	15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1031-303)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260-01)	국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비목 변경 의견에 따라, 당초 편성된 일반용역비 비목(210-14목)을 사업 성격에 맞게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변경 편성·집행

자료: 교육부

❑ 그러나,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은 이전 예산과 동일하게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상황이므로, 교육부는 2024년도 가격산정 및 감수용역에 대해서도 일반용역비를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고, 향후 예산 비목에 맞게 일반연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3)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35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2011년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립학교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초등늘봄교실 리모델링,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등 총 2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350) 문의: 02-6788-5184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의 2025년도 예산안은 574억 3,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억 8,500만원(1.5%) 감액되었음.

< 2025년도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45,004	58,320	57,435	△885	△1.5
○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2,466	2,744	3,708	964	35.1
○ 초등늘봄교실 리모델링	42	42	41	△1	△2.4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배치	1,037	1,337	1,299	△38	△2.8
○ 유아교육 지원	1,135	1,239	1,213	△26	△2.1
○ 깨끗한학교 만들기	1,827	1,888	1,862	△26	△1.4
○ 교과교실제 운영	1,280	1,200	1,166	△34	△2.8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2,066	2,066	1,860	△206	△10.0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0,397	29,454	26,819	△2,635	△8.9
○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202	202	196	△6	△3.0
○ 학교 Wee 클래스 상담 지원	1,245	1,277	1,277	0	0.0

○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764	767	745	△22	△2.9
○ 진로교육활성화 지원	726	738	717	△21	△2.8
○ 학교 안전강화	310	310	301	△9	△2.9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	200	194	△6	△3.0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58	258	251	△7	△2.7
○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4,879	4,879	5,026	147	3.0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104	95	92	△3	△3.2
○ 교원연구비 지급	1,293	1,328	1,291	△37	△2.8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1,824	1,824	1,865	41	2.2
○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1,984	2,312	3,947	1,635	70.7
○ 상설연구학교 역량강화 지원	324	324	315	△9	△2.8
○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지원	400	400	300	△100	△25.0
○ 산업재해 예방	443	454	441	△13	△2.9
○ 국립부설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	400	-	-	-
○ 과학·수학·융합교과 교실지원	-	2,582	2,509	△73	△2.8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면밀하지 못한 산출근거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 부적절

❑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됨[351].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받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반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학교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이원적 체제[352]임.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은 의무교육기관인 국립부설 초·중학교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따른 국립 고등학교 교과용도서(학생 및 교사용 교과서·지도서)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3항[353],「교육기본법」 제8조[354]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355] 등을 근거로 운영됨.

---

351)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352)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53)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54)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2025년도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3,500만원 증액(70.7%)된 3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교과서 · 지도서 구입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예산(A)	2025예산안(B)	증 감	
			(B-A)	%
○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2,312	3,947	1,635	70.7

자료 : 교육부

❑ 증액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서책형 교과서의 단가가 인상되었는데[356], 2025년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초 1·2에서 초 3·4, 중 1, 고 1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하였고,

둘째로,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초 3·4, 중 1, 고 1의 수학·정보·영어 과목에 도입될 예정이고, 정부 정책상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을 병행할 것이므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또한 예산안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임.

❑ 교육부에 따르면, 서책형 교과서의 단가 인상 및 AI 디지털교과서의 신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재부와 협의한 끝에 전년 대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55) '19.4.9. 당정청협의

356) 2025학년도 적용 신간 검정 교과서는 평균 149.6% 가량 가격이 상승했음. 참고자료 <2025학년도 적용 신간 검정도서 가격 총괄> 참조.

비 70% 인상한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교과서·지도서 단가를 비롯한 예산안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음.

< 2025년도 교과서 · 지도서 구입 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25년 예산안
■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 3,947백만원 · 초등학교 {224,650원(교과서단가)×8,308명(학생·교사수)} + {738,860원(지도서단가)×480명(교사수)} · 중학교 {161,210원(교과서단가)×3,287명(학생·교사수)} + {95,680원(지도서단가)×274명(교사수)} · 고등학교 {172,970원(교과서단가)×6,580명(학생·교사수)} + {56,100원(지도서단가)×565명(교사수)}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이러한 단가 산정은 면밀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먼저, 2025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서책형 교과서 가격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357]에 따른 교육부고시 제2024-338호(2024.9.11.)로 정가가 확정되었는데,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2024.9.2.)까지 국회에 제출[358]해야 하므로 서책형 교과서의 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당초 개발 일정에 따르면 8월까지 검정심사를 마치고 구독료가 확정되었어야 하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11

357)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7조(정가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58)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월에서야 검정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현재 시점('24.10월말)에서도 구독료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임.

<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검정) 개발 및 보급 로드맵 >

<table>
<tr><th>'24.1~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h>'25.1~2월</th></tr>
<tr><td colspan="2">AI 디지털교과서 개발</td><td colspan="3">검정심사</td><td colspan="2">학교 선택 및 적용</td></tr>
<tr><td colspan="2">• 공동활용콘텐츠, 접근성, 보안인증 등 개발 지원
• AIDT 프로토타입을 통한 현장 피드백 제공</td><td colspan="3">내용·기술 심사</td><td>합격 공고</td><td>학교별 AIDT 선택</td><td></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2">현장적합성 검토 및 보완</td></tr>
</table>

자료: 교육부

❑ 또한, 향후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가 확정된 이후, 구독료가 현 예산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한다면[359]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수학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과서를 우선 구입하고, 지도서(전자저작물 등)는 필요한 범위 내로 구입하여 예산운용을 효율화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 검정도서 기준 초등 지도서 평균 가격은 98,498원으로 교과서 평균 가격인 9,947원[360] 대비 약 10배 가량 높은 상황임에도, 현 예산안에서는 교원 1인 1지도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위해 학년 연구실에 비치하는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지도서 단가를 교과서 단가의 3배 가량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고려할 때,

359) 언론보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 측에서는 책당 월 8,000원 수준으로 구독료 책정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청 측은 5,000원 수준의 구독료를 제시하고 있음.
360) 참고자료 <2025학년도 적용 신간 검정도서 가격 총괄> 참조.

지도서 구입비를 추가로 절감하여 교과서 구입비·구독료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가 예상보다 높게 결정되는 등 상황에서 교과서 구입비·구독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처럼 2025년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사업의 예산안 편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교과서 가격, 구독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며, 향후 교과서 구입비·구독료가 부족한 경우에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교육부는 2025년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교과서 구입비·구독료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자료 **2025학년도 적용 신간 검정도서 가격 총괄**

구분	급	과목군	정가 고시 가격	현재가 대비	비고
교과서	초	수학	10,335원	141.4%	
		과학	9,228원	150.8%	
		사회	11,291원	148.4%	
		체육	9,310원	196.8%	
		미술	9,124원	199.2%	
		음악	8,269원	202.2%	
		영어	11,217원	269.6%	
	소계		9,947원	155.9%	
	중	수학	13,140원	183.8%	
		과학	13,284원	257.9%	
		국어	9,951원	182.3%	
		사회	11,269원	176.6%	부도 포함
		영어	10,719원	155.8%	
	소계		11,259원	178.7%	
	고	수학	9,396원	133.7%	
		과학	9,912원	122.5%	
		국어	12,413원	152.9%	
		사회	10,740원	128.2%	부도 포함
		영어	9,382원	143.2%	
	소계		10,418원	134.9%	
	교과서 평균		**10,366원**	149.6%	
지도서 (전자 저작물 포함)	수학		104,516원	83.9%	
	과학		106,834원	89.7%	
	사회		109,855원	101.4%	
	체육		50,823원	94.9%	
	미술		53,361원	163.6%	
	음악		106,620원	122.4%	
	영어		128,957원	162.4%	
	지도서 평균		**98,498원**	96.5%	

자료: 교육부

8. 학생건강정책관

<일반회계>

1) 고등학교 무상교육(1602-300)[36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1602-300) 사업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362]의 일부(47.5%)를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는 사업이었으나, 2025년에는 2023년 정산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성하였음.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9,386억 3,100만원(99.4%)이 감액된 5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고등학교 무상교육	902,807	943,898	5,267	938,631	△99.4

자료 : 교육부

361) 문의: 02-6788-5184
362)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나) 검토의견: 법률안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0년에 고등학교 2·3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도입되어,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363]되었음.

❑ 당초 동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47.5%(국가 부담분)를 시·도교육청에 증액교부하는 내용이었으며, 동 사업 부담분 외에 나머지 47.5%는 시도교육청이,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었음.

< 고교 무상교육 주체별 비용 부담 현황 >

(단위: 억원)

부담 주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47.5%)	9,431	9,146	9,097	9,447
교육청(47.5%)	9,431	9,146	9,097	9,447
지자체(5%)	992	963	958	994
합계	19,855	19,254	19,152	19,889

자료: 교육부

363) 2020년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고1은 국고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조기 시행이었음.

❑ 동 사업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36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365]인데, 후자의 교부금법상 특례규정은 국가가 47.5%에 해당하는 비용을 증액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0년 특례규정 도입 당시 5년간의 유효기간을 두면서 유효기간 종료('24.12.31.) 전까지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을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

❑ 그러나 특례규정의 일몰이 임박한 현시점까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에는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는 제

---

364)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

3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법률 제16673호(2019. 12. 3.)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외하고 2023년 정산분에 해당하는 52억 6,700만원만 편성되었음.

❑ 교육부는 세수 결손 및 신규 재정 수요 증가, 시·도교육청 보유기금 감소 등이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2019년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증액 교부 없이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366]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특례규정의 일몰 이후 기존의 국고부담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5,430	603,370	812,975	653,636	688,732	722,794

주) '23년 이전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교부 기준, '24년은 확정예산(세수 재추계 미포함) 기준, '25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367]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은

366)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수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현재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반론 또한 존재함.

< 고등학생 수 전망>

(단위: 만명)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학생 수	131	131	129	130	134	131	128

자료: 교육부

구조적인 특성상 세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2024년에도 29.6조원 가량의 세수 추계 오차가 예상[368]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통교부금 예산 중 10.4조원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하는 등 최근 교부금의 안정적 조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의견과 같이 증액 교부를 중단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역시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22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부담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10.29.)에서 3건의 법률안[369]을 심사하여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바,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79%에 해당함.
368) 기획재정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4.9.26.
369)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문정복의원안은 3년 연장, 진선미의원안은 삭제, 서영교의원안은 5년 연장하는 내용임.

9. 교원학부모지원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2232-322)[37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2232-322) 사업은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공교육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의 예산 18억 7,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	-	1,877	1,877	순증

자료: 교육부

370) 문의: 02-6788-5189

나) 검토의견: 사업 예산 규모 및 수행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교육부는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AI 기술 및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역량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한 집중 연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2023년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방향과 관련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2024년 4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공교육의 변화가 교사의 자율적·주도적 수업혁신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업무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 수업에 도입되고, 이후 학년과 과목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28년에는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임[371].

교육부는 앞서 제시한 방안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를 초·중등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에 도입하기 위하여, 2024년에 AI 디지털교과서

371) 다만, (대상)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을 제외하고, (교과목) 심미적 감성 및 사회·정서능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과목인 도덕, 음악, 미술, 체육을 제외함.

개발과 이를 활용한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갈 교사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초·중등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양성과정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 예산안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025년도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은 교육대학 등 74개교에 대해 학교당 2,400만원의 구독료를 지원하는 구독료 지원비 17억 7,700만원과 출연기관의 사업관리비 1억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 18억 7,700만원
- AI 디지털 교육 지원: 74개교* × 2,400만원 = 17억 7,700만원
  * 74개교: 교육대학 10개교, 사범대학 45개교, 교육대학원(사범대미설치) 19개교
- 사업관리비 1억원

자료: 교육부

그러나 동 사업에서 지원기준이 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심사가 완료되는 11월말 최종 합격 발표 후에 결정될 예정임.

교육부는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의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학교당 일괄 배분하는 형태로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대학별로 수요를 제출받아 학교의 규모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지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등의 파악을 위해 사업 예산안은 구체적인 단가와 수요를 근거로 산출될 필요가 있음.

❑ 둘째, 2024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5년 초·중등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2024년에 교원양성과정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세부사업에 편성된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372]

372) 예산 편성 사업명은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사업임.

과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임.

< 교원양성과정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사업 비교 >

구분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교사 재교육 지원
세부사업명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2025년 신규)	·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2024년 종료)	·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2024년 단년도 종료)
회계명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목적	·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교실혁명의 주체가 되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대상 인프라 구축 지원	· 미래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적용 및 교사의 수업 혁신을 위해 대학의 체계적 교원 연수 체계 구축 지원
사업기간	· 2025. 1. ~ 12.	· 2024. 6. ~ 2025. 6.	· 2024. 9. ~ 2025. 6.
사업수행	· 출연	· 출연(한국연구재단)	· 출연(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대상	· 초·중등 교원양성대학·기관 * 개별	· 초·중등 교원양성대학·기관 중 5주기 역량진단 결과 A, B 등급 대학 *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초·중등 교원양성대학·기관 * 컨소시엄
사업 주요내용	· 교원양성과정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 교원양성과정 개선 모델 개발 - 필수과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혁신 역량 강화 - 중점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원 양성체계 구축, 지역 수요 기반의 교원 양성체계 구축 및 확산 등	· 교원 및 예비교원이 수업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컨소시엄 내·외의 교류·협력을 통해 디지털 교육 연수 노하우 공유 및 성과 확산 프로그램 개발 - 교원양성 정규교육과정 내 AI 디지털교과서 등을 사용한 디지털 기술 기반 수업 모델 개발 - 현직 교원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예산액	· 18억 7,700만원 -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17억 7,700만원 - 사업관리비 1억원	· 49억원 -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 44억원 - 사업관리비 5억원	· 19억원[1)] - 교사 재교육 사업 지원비 15억 6,000만원 - 사업관리비 3억 4,000만원

주: 1) 2024년 사업 예산편성액은 30억원이나,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교사 대상 디지털 연수와의 중복성 문제로 연수 운영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었고, 사업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축소되어 사업 예산액은 19억원으로 계획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은 미래 역량과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초·중등 교원양성대학·기관 중 5주기 역량진단 결과에서 A, B 등급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등(단독 또는 컨소시엄)은 교원양성과정 개선 모델을 개발하는데,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혁신 역량 강화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이 포함됨.

동 사업은 2023년에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사업으로 10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의 사업 유보 요청(2023.4.)으로 보류되었고, 2024년에는 4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여건 변화로 중요한 사업 내용이 바뀌는 등 검토가 필요하여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6월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24년 7월에 배정된 예산으로 2025년 6월까지 사업이 수행될 예정임.

다음으로, 교사 재교육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적용 및 교사의 수업 혁신을 위한 대학의 체계적 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초·중등 교원양성대학·기관을 대상으로, 교사 재교육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교원 및 예비교원이 수업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교원양성 정규교육과정 내 AI 디지털교과서 등을 사용한 디지털 기술 기반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이 포함됨.

동 사업은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신설되어, 이를 활용한 디지털 연수와 중복되지 않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배정받아 2025년 6월까지 사업이 수행될 예정임.

이와 같이 교원양성과정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포함된 두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과 대상, 내용, 기간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도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이 2024년에 편성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출연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비 17억 7,700만원 외에 출연기관의 사업관리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출연기관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나이스[373] 접근 권한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나, 교원양성기관의 교수 및 예비교원은 해당 권한이 없어 별도의 계정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에 대한 대학별 수요를 종합하여 단가 협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수행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에 필요한 출연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73)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전자정부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국가 정책 기반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국 12,000여개 학교, 17개 시·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 교육행정 업무 및 학생·학부모, 민원인 대상 대국민서비스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효율화를 지원함(www.neis.go.kr).

❑ 넷째,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과목 운영 대학 수’이며 목표치는 전체 사업대상의 약 50%인 40개교로 설정됨.

이와 같은 성과지표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과목이 한 과목만 있어도 실적에 포함되므로 사업성과의 정교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향후 교과목 개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을 통해 신설된 교과목 수 등 사업에 따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연금급여 (6131-400)[37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연금급여 (6131-400)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2) 2025년도 계획안 현황

❑ 동 사업은 의무적 지출사업[375]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 2024년 대비 4,371억 5,200만원(9.7%)이 증액된 4조 9,216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연금급여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계획 (A)	2025계획안 (B)	증 감	
				(B-A)	%
□ 연금급여	4,362,354	4,484,529	4,921,681	437,152	9.7

자료: 교육부

374) 문의: 02-6788-5189

37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나) 검토의견: 연금급여 사업의 수요를 고려한 기금 내 계획액 배분 조정 필요

❑ 연금급여 사업의 최근 5년간 계획액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계획 변경 및 결산액이 확정된 2021~2023년 기준의 연평균증가율은 당초 계획액의 경우 9.8%이나, 연급급여 수요 증가로 인한 수정 계획액은 12.9%, 결산액은 12.7%로 각각 당초 계획액 보다 높게 나타남.

2024년에도 연금급여 사업의 당초 계획액 대비 초과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3,563억원 규모의 기금계획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수정 계획액의 2021~2024년 기준 연평균증가율은 12.1%로 당초 계획액의 연평균증가율 9.6% 대비 2.5%p 높게 나타남.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9.7% 인상된 4조 9,21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를 포함한 2021~2025년의 연평균증가율은 9.6%로 2021~2024년과 유사한 수준임.

< 최근 5년간 연금급여 사업 기금계획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연평균증가율		
						'21~'23	'21~'24	'21~'25
당초(A)	34,077 (8.7)	37,032 (8.7)	41,083 (10.9)	44,845 (9.2)	49,217 (9.7)	9.8	9.6	9.6
수정(B)	34,380 (8.4)	38,605 (12.3)	43,784 (13.4)	48,408[1)] (10.6)	-	12.9	12.1	-
변경액(B-A)	303	1,573	2,701	3,563	-	-	-	-
결산(C)	34,373 (8.5)	38,597 (12.3)	43,624 (13.0)	-	-	12.7	-	-
부족액(C-A)	296	1,565	2,541	-	-	-	-	-

주: 1) 2024년도 수정 계획액, 증가율, 변경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규모 기준임
1.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1년 이후 추이에서 나타난 기금계획변경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연금급여 사업 계획액으로 변경된 주요 재원은 국채외채권매입(9703-975), 주식매입(9703-976) 등 여유자금운용(9703) 단위사업에 편성된 세부사업의 계획액임.

< 연금급여 사업 기금계획변경 상세 내역 >

(단위: 억원)

구분	계획액			기금계획변경		
	당초 (A)	수정 (B)	변경액 (B-A)	일자	종류	변경내역
2021	34,077	34,380	303	'21.12.03.	자체	· 303억원: 퇴직수당급여→연금급여
2022	37,032	38,605	1,573	'22.11.14.	자체	· 500억원: 퇴직수당급여→연금급여
				'22.11.30.	협의	· **1,073억원: 국채외채권매입**→연금급여
2023	41,083	43,784	2,701	'23.12.06.	협의	· **2,782억원: 주식매입**→연금급여
				'23.12.14.	자체	· △81억원: 연금급여→퇴직수당급여
2024(안)	44,845	48,408	3,563	'24.10.18.	협의	· **3,563억원: 주식매입**→연금급여 * 협의 중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여유자금운용(9703) 단위사업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계획액은 전년도 운용 잔액을 기반으로 여유자금 회수를 통한 수입과 운용을 통한 지출액으로 산정됨.

< 2025년도 여유자금운용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잔액 (추정)	2025년 계획안		
		수입액	지출액	잔액
통화금융기관예치	483,256	420,277	451,101	514,08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699,259	2,742,500	2,643,380	5,600,139
국 채 매 입	3,462,005	273,258	436,502	3,625,249
국채외채권매입	4,370,839	886,176	516,586	4,001,249
주식매입	5,017,466	508,387	2,031,139	6,540,218
기타유가증권매입	6,502,532	572,427	1,183,711	7,113,816
합 계	25,535,357	5,403,025	7,262,419	27,394,751

주: 2025년 수입액은 여유자금 회수(매도, 상환), 지출액은 운용(매입, 투자)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와 같은 여유자금운용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 사업은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이므로, 부족한 재원을 여유자금운용 사업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임.

❑ 연금급여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한 2024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이 9.6%로 같은 기간 수정 계획액의 연평균증가율 12.1%를 2.5%p 하회하고, 2021년 이후 추이에서 기금계획 변경액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376]하고 있음.

376) 2021년 303억원 → 2022년 1,573억원 → 2023년 2,701억원 → 2024년(안) 3,563억원

또한 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9만 6,91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2만 5,56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377]도 2021년 527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581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202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급자 수 등 추이 >

(단위: 명, 만원, %)

구분	실적			중기 추계		연평균증가율	
	2021	2022	2023	2024	2025(안)	'21~'23	'21~'25
수급자 수[1)]	96,916 (8.2)	104,517 (7.8)	112,622 (7.8)	118,619 (5.3)	125,565 (5.9)	7.8	6.7
기준소득월액	527 (2.5)	535 (1.5)	547 (2.3)	559 (2.1)	581 (3.9)	1.9	2.5

주: 1) 수급자 수는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기준
1.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연금급여 사업의 계획액 부족으로 기금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금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연금급여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계획안 편성 단계에서 적정 규모의 금액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금급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금액이 편성되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계획안의 재원 배분 조정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37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일반회계>

1) 교육기부활성화사업(1035-404)[378]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기부활성화사업(1035-404)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의 매칭을 연계하는 내용의 사업임.

동 사업은 2024년까지 교육기부 자원 발굴, 체계적 지원 강화,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됨.

동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사업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신규 내역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역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수행할 예정임.

---

378) 문의: 02-6788-5186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6,300만원(1.9%)이 감액된 3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교육기부활성화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기부활성화사업	3,670	3,313	3,250	△63	△1.9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예산 감액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전체 규모로는 3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2024년도 예산의 1.9%인 6,300만원만이 감액되었으나, 신규 내역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된 5억원을 제외하면 5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7%가 감소함. 특히, 내역사업 중에서도 “체계적지원 강화” 사업이 2024년 대비 2억 3,200만원(53.7%)가 감액되었고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7,600만원(33%) 감액되어 감소폭이 큰 상황임.

< 2025년도 교육기부활성화사업 내역사업별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기부활성화사업	3,670	3,313	3,250	△63	△1.9
○ 교육기부자원발굴	683	683	680	△3	△0.4
○ 체계적지원 강화	610	432	200	△232	△53.7
○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886	836	560	△276	△33.0
○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1,391	1,362	1,310	△52	△3.8
○ 은퇴인력 등 활용 개인 교육기부	100	-	-	-	-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신규)	-	-	500	순증	순증

자료 : 교육부

< 세부사업 및 주요 감액 내역사업 예산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20년 대비
□ 세부사업 예산 총액	4,373	4,293	3,863	3,670	3,313	2,750*	△1,623 (△37.1%)
체계적지원 강화	768	768	680	610	432	200	△568 (△74.0%)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1,016	936	886	886	836	560	△456 (△44.9%)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예술 스포츠 재능기부	2,094	2,094	1,844	1,391	1,362	1,310	△784 (△37.4%)

* 2025년도 예산안 27억 5,000만원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예산 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교육부

❑ 동 세부사업 예산은 2016년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고(56억 1,400만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6억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부터 감액되기 시작하여, 2025년 예산안에는 2020년 대비 16억 2,300만원(37.1%)이 감액된 27억 5,000만원이 편성됨.

동 사업 내역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예산 대비 “체계적지원 강화” 사업은 5억 6,800만원(74%)의 예산이 감액되었고,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사업은 4억 5,600만원(44.9%),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사업은 7억 8,400만원(37.4%)이 감액됨.

❑ 이러한 사업비 감소 추세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 수, 개인교육기부자 증가 추이, 교육기부 참여 대학생 동아리 수 등 사업의 성과 또한 부진한 측면이 있음.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성과 현황 >

(단위: 명,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자 수	8,314,448	8,608,488	2,249,599	5,552,845	5,786,733	5,977,887
개인교육기부자 증가 (전년대비)	281	201	244	146	111	115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수	581	570	200	355	353	335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 교육부는 동 사업 예산 감액을 고려하여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액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세부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신규 내역사업과 기존 사업 간의 연계 강화 필요

❑ 동 사업 2025년 예산안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규모는 5억원 수준임.

정부안 예산 편성 당시 교육부는 17개 부·처·청과 협의하여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2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은 각 부처 소관 예산 사업으로 수행하고, 총괄 및 관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역할 및 예산을 분담하였음.

< 부처별 늘봄 프로그램 개발 관련 2025년도 예산 편성 현황 >

부처	분야 (백만원)	부처	분야 (백만원)
과기부	디지털배움터(450)	중기부	청소년비즈쿨(100)
보훈부	나라사랑(160)	해수부	해양문화(531)
국토부	공간정보교육(55)	환경부	환경교육(576)
기재부	경제교육(450)	기상청	기상기후(680)
농림부	농촌체험(220), 식생활(275), 동물복지(126)	농진청	농촌교육(935)
문체부	문화예술(3,200), 미디어교육(700)	산림청	숲교육(290)

산업부	주니어공학교실(164)	특허청	발명교육(500)
여가부	자기계발(300)	식약처	튼튼먹거리탐험대(565)
교육부	프로그램 총괄·관리(500)		

자료: 교육부

❑ 한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각 부처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품질을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었는데, 동 사업은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등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부활성화사업”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됨.

교육부는 늘봄학교와 교육기부는 상호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 향후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모든 학년까지 확대 적용되면 기존의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늘봄학교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해당 교육기부활성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교육기부와 늘봄학교는 그 내용과 취지가 상이하고 운영기준과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이 교육기부의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과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379]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 사업은 장애학생 대상 예술중·고등학교인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과 전국단위 모집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인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그리고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인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세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4년 9월 2일 개교하였음.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억원(34.8%)이 증액된 31억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고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에 2025년도 예산안 31억원이 편성됨.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경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음.

379) 문의: 02-6788-5186

< 2025년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기부 활성화	17,349	2,300	3,100	800	34.8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	-	-	-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17,349	2,300	-	Δ2,300	순감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	3,100	순증	순증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동 사업은 2017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교육부가 2017년 기준 174개교였던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면서[380] 구체적으로 통합유치원, 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충하겠다는 추진과제를 설정함에 따라 시작된 사업임.

380) 2023년 6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94개소로 증가하였음.

❑ 사업 시작 당시 계획에 따르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하였는데,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4년 9월에 개교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3년 6개월 지연되었고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는 아직 공사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2025년 1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기 편성된 사업비 잔액 177억 4,8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조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안에는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또한 현재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177억 4,800만원을 전액 집행할 예정임.

< 2025년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 >

	계획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비고
1월	· 공사 착공		소요기간: 착공일로부터 960일
2월	· 공사(토 및 지정공사)		
3월		1,900	
4월	· 공사(골조공사)		
5월			
6월		3,400	

7월	· 공사(골조공사)		
8월			
9월		4,000	
10월			
11월			
12월		8,448	

자료: 교육부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2024년 10월 현재 기준 103억 7,9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는데, 교육부는 2024년 내에 설계비 잔액 8억 4,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20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비 등 잔액 95억 3,500만원과 신규편성된 31억원 등 총 126억 3,500만원을 2025년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임.

< 2025년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 >

	계획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비고
1월	· 조달청 입찰 검토		소요기간: 착공일로부터 900일
2월			
3월	· 계약 및 공사 착공		
4월	· 공사(토 및 지정공사)		
5월		1,800	
6월	· 공사(골조공사)		
7월			
8월		3,800	

9월	· 공사(골조공사)		
10월		3,000	
11월			
12월		4,035	

자료: 교육부

❑ 그러나,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2025년 공사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 6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8월에 공사 품의 및 조달청 계약 의뢰를 마치고 11월 중으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10월 현재 여전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 단계에 있음. 2025년 1월 공사 착공을 위하여는 2024년 11월과 12월 내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조달청 입찰 검토, 공사계약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특수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에도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 1월 조달청 입찰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2024년 11월과 12월 내에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공사 품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2024년 완료 예정이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10월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의 계획에 비해 상당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가 반복해서 이월된 바 있으므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육부는 2025년 계상된 31억원의 사업비가 또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비 이월에 따른 이자수입 정산 필요

❑ 동 사업은 교육부 직접수행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각 국립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이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함)」 제11조[381]에 따른 대학회계로 전출되어 각 국립대학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회계 이전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로 정산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동 사업 역시 사업비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특히, 동 사업은 2019년 예산이 각 국립대학에 처음 교부된 후 집행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었는데, 이에 따라 계속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비교적 사업이 신속하게 수행된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 이자수입 규모가 크지 않지만,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과 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2019년 이후 각각 5,640만원과 2,67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전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는 약 8,33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음.

---

38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 내역사업별 이자수입 발생 내역 >

(단위: 천원)

내역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상)	계
부산대	700	1,400	3,100	15,800	17,700	17,700	56,400
공주대	134	54	-	-	-	-	188
교원대	-	-	600	5,100	10,600	10,400	26,700
계	834	1,454	3,700	20,900	28,300	28,100	83,288

자료: 교육부

❑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동 사업 사업비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각 국립대학이 다음 연도 자체수입금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별도 구분 없이 대학 자체수입금에 총액으로 세입처리되므로 사용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민간경상보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382]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연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은 없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개별사업의 협약·규정 등에 의해 사업비가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임.

38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사업의 경우 교육부는 「국립대학 회계법」 제11조[383] 및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384]이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이자수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비 이자수입을 다음 해 자체수입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임.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국립대학회계로 사업비를 이전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0-303)” 사업과 “국립대학 인건비(2702-100)”,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등의 사업 역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반납 없이 다음 연도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임.

❑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국립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국립대학 운영지원(2700)” 프로그램 사업에 해당하여 이자수입 등을 다음 해 각 대학이 학교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당초 사업비의 지급 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 반면,

동 사업은 “학생지원(1200)” 프로그램 및 “장애인 교육지원(1231)” 단위사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목적이 대학의 운영 지원과는 전혀 무관한바,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비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38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이자수입

384) **「2024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나. 자체수입
1) [재원]
○ 대학(원) 등 입학금 및 수업료, 수강료, 사용료, 자산매각대금, 이자수입 등

아울러, “국립대학 인건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등의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비가 교부되어 집행잔액과 이자의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은 데 비해, 동 사업은 기교부된 수백억원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됨에 따라 이자발생의 규모 또한 비교적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참고로, 출연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85]이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한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출연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와 같은 “기관운영출연금”의 경우 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출연금의 경우에도 기관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특정 사업집행을 위한 “사업출연금(350-02)”의 처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과 특정 사업 집행을 위해 교부한 예산에 대한 처리 또한 그 편성 취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임.

38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5쪽 참고

❑ 동 사업 집행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산절차 따라 이자수입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11. 교육자치협력안전국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38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387][388].

❑ 사회기반시설을 BTL 방식으로 건설하는 경우, 공사 완료 후에 국가는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받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종료일까지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며, 국가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국고로 보

386) 문의: 02-6788-5187

38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88) BTL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와 달리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주로 사용됨.

조할 수 있음.

❑ BTL사업의 특성상 정부지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 예산심사시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하고 있음[389].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1604-300)[390] 대상학교에 대한 정부지급금 166억 8,200만원과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2740-300)[391] 대상학교에 대한 정부지급금 1,223억 6,600만원이 이에 해당하는바,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37억 5,900만원(32.1%)이 증액된 1,39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392].

---

389)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2)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사업(2742-302)으로 지원하고 있는 BTL 임차금(출연금)은 제외함.

< 202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79,711	105,289	139,048	33,759	32.1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	6,575	16,682	10,107	153.7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국립대학 시설확충)	79,711	98,714	122,366	23,652	24.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정부의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마련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증액 필요

❑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과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지급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준공 이후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급금(임대료)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대상학교 53교에 대한 임대료 133억 4,900만원과 2022년도 대상학교 34교에 대한 임대료 33억 3,3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1억 700만원 증액(153.7%)된 16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393].

< 202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58,484	288,601	△69,883	△19.5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58,484	288,601	△69,883	△19.5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6,575	16,682	10,107	153.7

자료 : 교육부

393) 2024년도의 경우 2021년도 대상 48교에 대한 임대료 65억 7,500만원이 배정되었음.

또한,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내역사업 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은 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무 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립대학 34개교 92동의 BTL 사업에 대한 20년간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전년대비 236억 5,200만원 증액(24.0%)된 1,22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394].

< 202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5,309	1,092,909	87,600	8.7
○ BTL정부지급금	98,714	122,366	23,652	24.0

자료 : 교육부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미래형 '스마트 미래학교'로 개축·리모델링하기 위해 2021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적 교수학습 지원과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의 3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도 추진되고 있음.

394) [교육부 제공] (`24년) 35교 77동 →(`25년) 34교 92동(15동 추가) * 한경대 및 한국복지대 통합으로 1개교 감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사업은 37개 국립대의 부족한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도 추진되고,

주요사업으로 국립대학의 학생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생활관을 확충하는 '국립대학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과 국립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거나, 부족한 교육·연구·실습 공간을 확보하는 '국립대학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이 있음.

❑ BTL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최종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20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임대료 + 운영비)을 매 분기 말일까지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동안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 건설이자 + 물가변동비)에 매 5년마다 재산정한 수익률을 더하여 산출되고 있음.

❑ 이 중 물가변동비의 경우 가격산출기준시점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총사업비[395]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집행액에 가격산출기준시점 대비 물가변동률{(준공 시점 직전 분기 GDP디플레이터 지수 / 가격산출기준시점 직전 분기 GDP디플레이터 지수)-1}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집행액 * 물가변동률

$$\text{※ 물가변동률} = \frac{\text{준공시점 직전 분기 GDP 디플레이터 지수}}{\text{가격산출기준시점 직전 분기 GDP 디플레이터 지수}} - 1$$

❑ 그러나, '준공시점 직전 분기 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경우 준공날짜를 기준으로 지수를 파악할 수 있으나, '가격산출기준시점 직전 분기 GDP 디플레이터 지수'의 경우 교육부에 따르면 가격산출기준시점에 대한 법령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격산출기준시점에 따라 GDP 디플레이터 지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가격산출기준시점에 따라 물가변동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격산출기준시점을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검토 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BTL 사업의 경우 통상 예산을 편성하는 직전년도 해에 타당성 분석 검토가 이

395) (교육부 제공)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

루어지므로 직전년도 1월 1일이 이에 해당하므로, BTL 사업에 대한 사업 고시[396]가 있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을 가격산출기준시점으로 보고 이로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를 산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교육부는 2022년 8월 31일 이전까지 최초로 고시된 사업[397]은 가격산출기준시점을 '고시일'로 정하여 고시한바[398], 물가변동비를 고시일로부터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에 대하여 산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 비해 전년도 1월 1일(가격산출기준시점)부터 고시일까지 통상 약 2년간의 물가변동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보임[399].

❑ 한편 건설부문 물가상승률의 경우 2021년 11.86%, 2022년 5.92%로 나타났는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음.

< 연도별 건설부문 GDP디플레이터 지수 및 물가상승률 >

구분	'13 (4Q)	'14 (4Q)	'15 (4Q)	'16 (4Q)	'17 (4Q)	'18 (4Q)	'19 (4Q)	'20 (4Q)	'21 (4Q)	'22 (4Q)	'23 (4Q)
GDP 디플레이터지수	99.763	101.617	100.856	101.909	105.594	108.718	111.224	112.717	126.087	133.552	136.012
물가상승률		1.86%	-0.75%	1.04%	3.62%	2.96%	2.31%	1.34%	11.86%	5.92%	1.84%

자료: 교육부(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396) BTL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말함.
397)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대한 BTL 사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최초로 고시된 사업임.
398) 실무절차에 따라 통상 연말에 고시가 이루어짐.
399) 교육부는 재정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완료 시점에 공사비가 확정되고, 곧바로 입찰 공고를 하므로 물가변동분 미반영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이렇듯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하였고, 교육부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과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에 대한 BTL 사업시행자[400]의 전년도 1월 1일(가격산출기준시점)부터 고시일까지 물가변동비 미반영 기간을 소급한 물가변동비 반영 요청이 있었음[401].

❑ 이에 대하여 정부는 경제장관회의(2024.10.2.)에서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변동 위험 합리적 분담 특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고시되어 협약이 체결된 사업 중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를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2024.10.14.)하였으며[402],

이와 같은 계획 변경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2024.09.02. 제출)

400) 교육부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2021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1년~2022년에 상당한 수준의 건설비 물가상승이 있었는바, 2021년 최초 고시하여 협약을 체결한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해당하며,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21년부터 '22년까지 최초 고시하여 협약 체결한 국립대학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함.

401) 손실 뻔한 BTL…교육부는 요지부동, 2023.09.12., 대한경제
BTL 공사비 정상화 '물꼬'…시장 전반 확대될까, 2024.01.25., 대한경제
교육시설 BTL 공사비 보전 물거품… 중소건설사 허리 휜다, 2024.08.07., 파이낸셜뉴스

40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건설·운영 및 지원
13 (공사비변동 위험 합리적 분담) 정부공사비 부담('21~'22년) 완화 특례* 등 마련 ** (BTL) '22.12.31일 이전 최초 고시되어 협약 체결된 사업 중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 반영

이후에 이루어진바, 해당 사업의 예산안 심사시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24개이며, 이 중 2025년 말까지 준공예정인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18개로 '가격산출기준시점~고시일'까지의 물가변동비가 8억 9,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중 BTL 사업 정부지급금으로 사용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가격산출기준시점 소급 적용에 따른 '25년 정부지급금 증액분(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시도	사업명(BTL)	학교명	고시일(재고시일)	준공예정일	정부지급금 증액분(50%)		
						2024년(A)	2025년(B)	합계(C=A+B)
1	서울	유현초 외 1교	유현초	21.12.30.	2025.07.14	-	16	16
			수유초		2026.07.14			
		청량중	청량중	21.12.30.	2025.07.22	-	13	13
2	부산	구포초 외 1교	구포초	21.12.28.	2025.02.27	-	47	47
			금사초		2025.02.27			
		부민초 외 1교	부민초	21.12.28.	2025.02.27	-	41	41
			봉래초		2025.02.27			
3	대구	대구고산초 외 3교	고산초	21.12.28.	2024.02.22	37	56	93
			명덕초		2024.02.22			
			서도초		2024.08.20			
			달성중		2024.08.20			
4	인천	인천여상 외 1교	인천여상	21.12.30.	2024.11.16	10	31	41
			인천예술고		2024.08.16			
5	대전	충남기계공고 외 2교	충남기계공업고	21.12.29.	2024.10.22	9	37	46
			대전문화초		2024.10.22			
			대전백운초		2024.10.22			

6	울산	방어진초	방어진초	21.12.27.	2025.05.01	-	14	14
7	경기	부천남초 외 2교	부천남초	21.12.28.	2024.07.22	21	43	64
			부천동초		2024.09.30			
			팔탄초		2024.05.04			
		용인초 외 3교	용인초	21.12.28.	2024.06.25	25	43	68
			안양남초		2024.08.31			
			노진초		2024.05.04			
			화성화수초		2024.05.04			
		죽산고 외 3교	죽산고	21.12.28.	2024.06.02	25	37	62
			죽산중		2024.06.02			
			양성초		2024.05.03			
			양성중		2024.05.03			
		퇴계원중 외 2교	퇴계원중	21.12.28.	2024.05.29	27	47	74
			경의초		2024.05.29			
			경의유		2024.05.29			
8	충북	삼양초 외 2교	삼양초	21.12.28. (22.02.04.)	2025.02.28	4	43	47
			남성초		2024.09.18			
			옥천고		2024.05.13			
9	충남	직산초 외 4교	직산초	21.12.30.	2024.08.15	-	29	29
			천안일봉초		2024.08.15			
			천안북중		2025.03.31			
			청양중		2025.03.31			
			태안중		2025.03.31			
10	경북	연일초 외 2교	연일초	21.12.29.	2025.01.09	9	37	46
			불국사초		2024.11.25			
			아포초		2024.11.30			
		청송초 외 2교	청송초	21.12.29.	2024.12.30	7	38	45
			영양초		2024.12.28			
			영해초		2024.12.30			
11	경남	단성중고 외 3교	단성중고	21.12.28.	2025.01.19	5	57	62
			봉덕초		2024.11.29			
			칠서초		2024.11.14			
			가야초		2024.11.14			
		밀양초 외 3교	밀양초	21.12.28.	2024.05.31	31	53	84
			진영대흥초		2024.05.31			
			웅동초		2024.05.31			
			마산용마고		2024.05.31			
합계 (국비 30%)		**18개 사업**				**210**	**682**	**892**

자료 : 교육부

❑ 또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23개로 이 중 2025년 말까지 준공예정인 사업 10개의 ‘가격산출기준시점～고시일’까지의 물가변동비가 9억 3,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가격산출기준시점 소급 적용에 따른 '25년 정부지급금 증액분(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고시일	준공예정일	학교명	시설임대료 증액분(50%)		
					2024년 (A)	2025년 (B)	합계 (C=A+B)
1	제주대 외 1교 시설개선 BTL사업	2021.12.15.	2025.01.01.	제주대학교	-	74	74
				한국해양대			
2	부산대 외 1교 시설개선 BTL사업	2021.11.05.	2024.12.31.	부산대학교	-	94	94
				부산교육대			
3	경상국립대 외 3교 시설개선 BTL사업	2021.12.23.	2024.08.30.	경상국립대	34	135	168
				안동대학교			
				순천대학교			
				경북대학교			
4	전북대 외 2교 시설개선 BTL사업	2021.12.17.	2024.12.31.	전북대학교	-	109	109
				군산대학교			
				공주교육대			
5	한국교통대 외 3교 시설개선 BTL사업	2022.06.30.	2025.01.30.	한국교통대	-	100	100
				한국교원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6	전남대 생활관 BTL사업	2021.11.26.	2025.03.30.	전남대학교	-	90	90
7	한국해양대 외 1교 생활관 BTL사업	2021.09.29.	2024.08.30.	한국해양대	22	90	112
				한국교통대			
8	공주대 생활관 BTL사업	2021.12.23.	2025.03.30.	공주대학교	-	91	91
9	강원대학교 생활관 BTL사업	2022.09.23.	2025.09.30.	강원대학교	-	41	41
10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 BTL사업	2022.12.22.	2025.09.30.	한국교원대	-	51	51
합계(국비 100%)					**56**	**874**	**930**

자료 : 교육부

12. 영유아정책국

<일반회계>

1) 영유아보육료 지원[403]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2조 6,731억원) 대비 5,669억 3,900만원(21.2%)이 증액된 3조 2,400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인상(69.4%→70.2%)하고, 최근 5개년 평균 미지급금을 반영하여 미지급금을 전년 대비 687억 1,100만원(421.5%) 증액함에 따른 것임.

403) 문의: 02-6788-5192

< 2025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 영유아보육료 지원	3,163,445	2,673,100	3,240,039	566,939	21.2
- 0~2세 보육료	-	2,400,235	2,892,683	492,448	20.5
- 장애아 보육료	-	71,109	73,447	2,338	3.3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28,309	28,637	328	1.2
- 연장보육료 지원	-	77,485	80,567	3,082	4.0
- 미지급금 지원	-	16,300	85,011	68,711	421.5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9,612	79,612	-	-
-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	50	82	32	64.0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와 산출기준을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404]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기관보육료 및 부모보육료)[40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406]

❑ 동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는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 유인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었음.

---

404)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405) **(지원방식)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
※ 3~5세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 통해 지원
-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문, 인터넷, 모바일, ARS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0~2세,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4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차등보조율 ± 10%)이며, 2025년도 예산안 기준 평균보조율은 70.2%임.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제도 >

○ **(문제점)**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234만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원) 지급 곤란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보조금 형태)**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3.3.28) (영아 보육여건 개선)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 검토로 추진

○ **(지원금액)**

- (0세반(정원 3명)) 현원 2명인 경우 **629천원** 추가 지원
- (1세반(정원 5명)) 현원 3명인 경우 **684천원**, 현원 4명인 경우 **342천원** 추가 지원
- (2세반(정원 7명)) 현원 4명인 경우 **696천원**, 현원 5명인 경우 **464천원**, 현원 6명인 경우 **232천원** 추가 지원

< '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계	1,169	817	626	1,273
부모보육료	540	475	394	587
기관보육료	629	342	232	686

자료: 교육부

❑ 교육부에 따르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실집행액은 '24. 8월 말 기준 625억 9,100만원으로 78.6%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교육부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각 연령별 반이 개설되지 않은' 어린이집 비율이 '23년도 대비 감소하여 동 사업의 신설로 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의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 각 연령반이 미개설된 어린이집 비율 >

(기준: 각 연도 8월말, 단위: %)

구분	0세반 미개설	1세반 미개설	2세반 미개설	0세반, 0·1세 혼합반 미개설	1세반, 1·2세 혼합반 미개설	2세반, 2·3세 혼합반 미개설
2021년	52.2	32.7	27.0	26.3	10.8	26.3
2022년	45.6	31.4	27.6	22.4	10.6	27.1
2023년	41.9	27.5	28.7	21.6	9.4	27.9
2024년	37.5	24.1	23.5	19.4	8.7	22.6

자료: 교육부

< 민간 · 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수 >

(기준: 각 연도 8월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소당 영아반 수(개)	3.8	3.8	4.0	4.1	4.3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시행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 정원 미충족으로 인한 부족한 보육료 수입을 인센티브(보조금)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영아반이 개설(유지)된다면, 기관 이용을 원하는 영아가 언제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보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영아반 입소 대기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아동의 반편성을 변경하거나 동일 아동을 입·퇴소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기준[407], 지원절차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 한편,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의 '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796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①전년 대비 국고보조율이 상승(69.4% → 70.2%)하였고, ②연령에 따른 반별 정원 및 현원에 따른 지원금액이 '24년도 예산안 편성 시('22년도 말 기준)와는 차이가 있음에도 '25년도 예산안 산출에 있어 이와 같은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법령에 규정된 영유아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지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 지급대상에 대한 추계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음.

---

407) 교육부 지침(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음

(기본 전제) 인센티브는 정원을 미충족한 '공석'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 기준으로 공석**이 아닌 자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지원
※ 월중 입·퇴소에 따른 이동이 있더라도 영아반 인센티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 기준으로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생성됨에 유의
※ 해당 반에 지급된 기관보육료와 인센티브의 합이 반별 기관보육료 최대 지원금액(정원 충족 시 기관보육료×정원)을 넘을 수 없음
(퇴소 아동) 재원 중인 아동이 월중 퇴소하여 말일 기준으로는 공석인 경우, 해당 월의 인센티브는 퇴소아동 대상으로 지급된 '일할계산' 기관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퇴소아동 없이 공석) 기존 재원 아동이 있는 경우, 공석 대상 인센티브 전액 지원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예산안 산출내역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24) 79,612백만원 → ('25요구) 79,612백만원 (전년 동) - (지원대상) 0~2세반 현원이 정원 대비 50% 이상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 (지원단가) 0세반 629천원, 1세반 342천원, 2세반 232천원 - (국고보조율) ('24) 69.4% → **('25) 70.2%**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9,612백만원 ・(0세반) **6,190개**×629천원×1명×12×**69.4%** ・(1세반) **7,255개**×342천원×**1~2명**×12×**69.4%** ・(2세반) **7,674개** ×232천원×**1~3명**×12× **69.4%** ※ 연령별 반 개수와 지원단가 산출 기준 인원은 **22년도 말 기준** 어린이집 반 개수 및 정원/현원 현황을 반영한 사항임.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9,612백만원 ・전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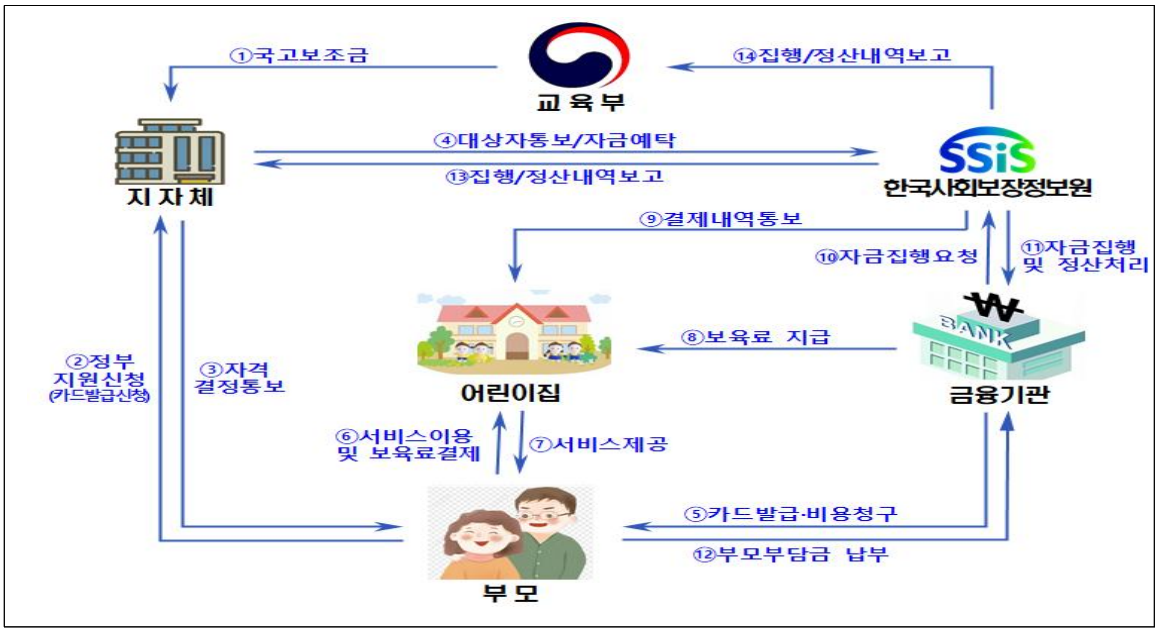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이라는 신규 사업의 도입에 따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사업성과와 산출기준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미지급금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중 바우처의 형태로 영유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중 당해 연도 예산의 부족으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사업[408]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할 금액을 미납한 경우에 다음 연도에 해당 부모보육료 미지급금을 금융기관에 정산 지급하기 위한 것임.[409]

< 부모보육료 집행절차 >



자료: 교육부

408)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는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금융기관(카드사업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의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409) 예를 들어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데, 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에 대한 해당 월 부모보육료를 25년 1월에 금융기관(카드사)에 정산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서도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전자 바우처 통합카드사업 용역계약」에 의한 카드사 대납(1개월) 처리를 통해 25년도로 유예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2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임.** 다만, 금융기관(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기관보육료의 경우에는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당해 연도에 지급함.

❑ ‘미지급금 지원’의 ’25년도 예산액은 850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163억원 대비 687억 1,100만원(421.5%)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최근 5개년 평균 미지급금을 반영한 사항임.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지급금은 ’19년도 926억 1,300만원, ’20년도 167억 700만원, ’21년도 158억 7,200만원, ’22년도 1,296억 300만원, ’23년도 1,702억 6,000만원으로 평균 850억 1,100만원이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한 ’20년도와 ’21년도를 제외하면 평균 약 1,308억원 수준임.

❑ 한편,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3년도에는 ‘0~2세 보육료’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배정을 통해 1,383억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도 1,702억 6,0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금액이었음.

< 최근 4년간 영유아보육료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3,395,239	-	3,395,239	△80,000	3,315,239	3,315,239	97.6	100.0
2022	3,202,771	△24,660	3,178,111	-	3,178,111	3,178,111	100.0	100.0
2023	3,025,145	-	3,025,145	138,300	3,163,445	3,163,445	100.0	100.0
2024 (7월 기준)	2,673,100	-	2,673,100	-	2,673,100	2,298,923	86.0	86.0

자료: 교육부

❑ 전자바우처 형식의 보조금 집행 방식은 카드사용일과 자금 정산일의 차이로 인해 지급 및 정산 절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는 미지급금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서도 영유아보육료 예산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410]'에 위반되지 않도록 '미지급금'을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의무지출 대상 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10)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시간제보육 지원[41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시간제보육 지원(1633-336)’은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으로, 부모에게는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250억 500만원) 대비 30억 1,300만원(12.0%)이 증액된 280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은 2024년도 하반기에 확충된 신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285개반(독립반 20개반, 통합반 1,265개반)의 보육료·인건비·운영비 지급 기간(6월분→12월분)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다만, 내역 사업 ‘사업운영·관리’는 인건비가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어 일부 감액되었음.

411) 문의: 02-6788-5192

< 2025년도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 시간제보육 지원	20,413	25,005	28,018	3,013	12.0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9,863	24,505	27,627	3,122	12.7
- 사업운영·관리	450	500	391	△109	△21.8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100	-	-	-	-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관리 필요

❑ 동 사업은 ’1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독립반 모형으로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별도채용을 통해 운영해 왔으나, ’24년부터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315개반(독립반 850개반, 통합반 1,465개반)으로 대폭 확충하되, 특히 통합반 모형(181개반→1,465개반)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임.

교육부에 따르면, ’24년 8월 기준 총 1,927개반(독립반 831개반, 통합반 1,096개반)을 운영 중에 있고,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배정 및 지정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함.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절차 >

○ 지정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연도내 배정된 물량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제공기관을 지정
○ 지정 절차

선정계획 공고	→	희망기관 신청	→	1차 서류심사 및 선정	→	현장확인	→	2차 최종심사 및 선정
(시·군·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자료: 교육부(2024년 보육사업안내, p. 304)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반, 연도말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월 기준
시도	17	17	17	17	17	17	17	17	17
시군구	155	155	153	154	164	177	176	185	190
관리기관[1)]	78	18	18	18	18	18	18	18	18
제공기관[2)] (기관/반)	347 /382	382 /437	373 /443	402 /490	578 /681	740 /857	796 /946 (독 816, 통 130)	827 /1,000 (독 819, 통 181)	1,587/ 1,927 (독 831, 통1,096)

주1: '16년까지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7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
주2: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독립반만 운영, 2022년부터 독립반·통합반 구분
자료: 교육부

❑ '24년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반 모형은 기존 독립반 모형과 달리 정규 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면서 시간제보육반으로 운영하는 모형으로, 별도의 보육공간을 마련하거나 시간제보육 담임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당초 '23년 2차 시범사업[412)]의 경우 이용대상을 6개월 이상부터 5세 영유아까지 확대하였으나, 시범사업 결과 36개월 이상 아동의 이용 건수는 전체의 4.1% 수준으로 낮고, 유아반의 경우 정규보육반 아동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

412) 통합반 모형은 1차 시범사업('22.9.~'23.2.) 및 2차 시범사업('23.7.~'23.12.)을 운영한 바 있음.

고하여 ’24년도 본사업 시행 시에는 이용대상을 6개월 이상부터 2세반 영유아로 운영 중임.

< 시간제보육 제공 유형에 따른 운영기준 구분 >

구 분	독립반	통합반
개요	○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교사 대 아동비율(0세반 1:3, 1세반 1:5 등) 준수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시간 단위 예약·이용	○ 월~금 9:00~16:00, 시간대별 예약·이용 ① 오전 9:00~12:00, ② 오후 13:00~16:00, ③ 종일 9:00~16:00
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 영유아	○ 6개월~2세반 영유아
지원시간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지원내용	○ 시간제보육반 교사 인건비(평균 275만원) 및 운영비(반당 50만원)	○ 운영비(반당 40만원)
보육료	○ 시간당 5천원(부모부담 2천원)	
지원기관	850개반(‘24년 예산 기준)	1,465개반(‘24년 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의 ’2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7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 증액은 ’24년도 하반기에 확충된 신규 시간제보육 제

공기관 1,285개반(독립반 20개반, 통합반 1,265개반)의 보육료·인건비·운영비 지급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지원물량 및 지원단가는 '24년도와 동일함.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예산안 산출내역 >

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 ('24) 24,505백만원 → ('25요구) 27,627백만원, 3,122백만원 증액
- (요구) 시간제보육료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2,315개반) 및 관리기관 운영비·인건비 지원
- (산출)
· **보육료** : ('24) 5,472백만원 → ('25요구) 6,883백만원(+25.8%)
* 지원물량 : 2,315개반(독립반 850개반, 통합반 1,465개반) (전년동)
* 지원단가 : 3천원/시간 (전년동)
* **반평균 이용시간 : 독립반 243시간, 통합반 120시간**
· **인건비** : ('24) 14,461백만원 → ('25요구) 14,624백만원(+1.1%)
* 지원인원 : 886명(독립반 850명, 관리기관 36명) (전년동)
* 지원단가 : 2,751천원 (전년동)
· **운영비** : ('24) 4,572 → ('25요구) 6,120백만원(+33.9%)
* 지원물량 : (독립반·관리기관) 868개반 (전년동), (통합반) 1,465개반 (전년동)
* 지원단가 : (독립반·관리기관) 500천원 (전년동), (통합반) 400천원 (전년동)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충 현황은 '24년 8월 기준 총 1,927개반(독립반 831개반, 통합반 1,096개반)으로 당초 목표인 2,315개반(독립반 850개반, 통합반 1,465개반)과 비교하여, 각각 독립반은 97.8%, 통합반은 74.8%에 해당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보육료 산정에 있어 ①지원물량 및 시간당 지원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②반평균 이용시간은 독립반 243시간, 통합반 12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근 5년('19~'23)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반평균 이용시간은 143시간으로 시간제 보육 이용률 제고가 필요해 보임.

특히, 최근 5년('19~'23)간 1인당 평균 건수는 7건, 이용시간은 월 28시간으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시간인 월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연도별 이용현황 >

(단위: 개소, 반, 건, 시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8월말)	
							독립반	통합반
기관당 (평균)	이용건수	82	24	24	39	57	57	15
	이용시간	294	89	91	150	230	223	56
반당 (평균)	이용건수	68	20	20	33	48	49	13
	이용시간(A)	243	74	78	128	193	191	48
	이용아동수(B)	9	3	3	4	6	7	2
	이용시간/이용아동수(A/B)	26	28	30	29	32	27	24
1인당 (평균)	이용건수	7	6	8	7	8	7	6
	이용시간	26	25	31	28	31	28	23

자료: 교육부

< 2024년도 연령별 독립반과 통합반 이용건수 >

(기준: 24.8월, 단위: 건(%))

구분		합계	6~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이용건수	독립반	326,213 (100.0)	75,559 (23.1)	221,706 (68.0)	28,948 (8.8)	-
	통합반	7,840 (100.0)	2,589 (33.0)	4,742 (60.5)	410 (5.2)	99 (1.3)

자료: 교육부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당수 가구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시간제 보육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요에 맞는 제공기관 공급 확대 및 이용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동 사업의 인지도를 높여야 함을 제시한 바 있음.

다만, 교육부는 SNS 채널 운영, 서포터즈 운영,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를 시행했으며, 향후 예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함.[413]

413) **시간제보육 서비스 사업 홍보 내용 및 계획(자료: 교육부)**

ㅇ 홍보 내용
- (SNS 채널 운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시간제보육 및 양육정보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수요자 참여 이벤트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연중)
- (서포터즈 운영) '23년 40명→ '24년 70명 확대 운영 중, 실제 시간제보육 이용 및 후기 콘텐츠 업로드(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 (디자인 홍보물) 폼보드, 포스터, 배너 제작 및 배포
- (KTX 차내 영상 광고) '24. 8.5.~9.4.까지 KTX(372,000회), KTX-산천(89,280회)

ㅇ 향후 계획
- (예비 이용자 타겟)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과 협업하여 영유아물품 배포
- (생활 밀착형 홍보)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포커스 미디어 등 활용
- 시간제보육 부모 이용 가이드 영상(임신육아종합포털 탑재) 및 가이드북 제작, 배포
- 지상파 방송 등 홍보영상 광고

❑ 둘째,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개시 첫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완화는 시간제보육 확충목표 달성을 위한 유인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운영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100%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관련 교육부 지침(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간제보육을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사업개시 월 포함 1년간 100%를 지원”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월부터는 직전 1년(사업개시 다음 월~직전 월)의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 실적에 따라 다음 해 2월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22년까지는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하였으나, ’23년도 이후 “개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1년간 100%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한 것임.

한편, 최근 3년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 기준 통합반(시범사업)의 경우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제공기관의 비율이 전체 125개소 중 110개소(88.0%)에 달하였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현황 및 지원기준 >

(단위: 개소, %)

연도	계 (기관/반)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80시간 이상
2021년도	740/857		255(34.46)	178(24.05)	307(41.49)
2022년도	전체 796/946	통합반* (108/136)	**79(73.15)**	20(18.52)	9(8.33)
		독립반 (688/810)	73(10.61)	129(18.75)	486(70.64)
2023년도	전체 827/1,000	통합반* (125/181)	**110(88.0)**	12(9.6)	3(2.4)
		독립반 (702/819)	10(1.42)	30(4.27)	662(94.30)
지원기준 ※ 통합반은 인건비 미지원		인건비(독립반)	1년간 미지원	1년간 100% 지원	
		운영비(공통)	1년간 미지원	전월 실적(80시간 이상) 충족 시 지원	1년간 100% 지원

주: *1차 통합반 시범사업('22.9.~'23.2.), *2차 통합반 시범사업('23.7.~'23.12.)
자료: 교육부

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사업개시 연도 보조금 100% 지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개시 2차년도 이후에도 해당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지정취소 되거나,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414] 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41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지침)에 따르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지정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취소를 하거나, 제공기관이 희망하여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지정취소 사유**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 시간제보육 보조금 지원기준 >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세부 지원 내용</th></tr>
<tr><td>보육료</td><td colspan="2">◦보육료 시간당 5,000원(정부지원금 60% + 부모부담금 40%)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td></tr>
<tr><td>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td><td colspan="2">(지원조건)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직전 1년(전년도 3월~당해연도 2월까지)동안의 월 평균 이용시간(1개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 제공기관에서 2개반 이상 운영 시 반 평균 이용시간의 월 평균 이용시간 기준
- (인건비 지원기준)
·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에 해당될 경우, 1년간 100% 지원
·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미만에 해당될 경우, 1년간 미지원
※ 인건비 지원의 경우, 독립반만 해당함(통합반은 인건비 미지원)
- (운영비 지원기준)
·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80시간 이상에 해당될 경우, 1년간 100% 지원
·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 ~ 80시간 미만에 해당될 경우, 전월 실적(80시간 이상) 충족 시 운영비 지원
·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미만에 해당될 경우, 1년간 미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사업개시 월 포함 1년간 100% 지원.
1년 이상 되는 월부터는 직전 1년(사업개시 다음 월 ~ 직전 월)의 월 평균 이용시간 실적에 따라 다음 해 2월까지 차등 지원</td></tr>
<tr><td rowspan="2">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내용</td><td>독립반</td><td>(인건비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100% 지원 또는 미지원
◦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100% 지원 또는 미지원
◦ (공통) 교사수당 2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30만원(100%) 지원 또는 미지원(1개반 기준)</td></tr>
<tr><td>통합반</td><td>(수당 지원내용)
◦ 교사수당 10만원
※ 시간제보육 통합반 교사가 대표자·원장 등을 겸직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운영 불가
(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30만원(100%) 지원 또는 미지원(1개반 기준)</td></tr>
</table>

자료: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p. 44-45

❑ 셋째,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수당(독립반 월 20만원, 통합반 월 10만원)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시간제보육 제공으로 인한 사무업무 추가, 시간제 이용 아동의 적응문제 등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23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415]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업무수준,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고, 보육 업무 외 '보육 프로그램 준비'와 '예약, 결제, 문서관리 등 사무업무' 비중이 높은 편이며, '6-36개월 월령별 발달 차이'에 대해 담당교사의 60%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특히, 통합반 담당교사의 경우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 적응의 어려움이 정규반 아동 보육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보육과정 운영 시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의 참여로 인한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음.

---

415) **2023년 시간제보육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2023년 12월, 한국보육진흥원**

< 시간제보육 독립반 담당교사 조사 결과 >

□ 시간제보육교사로서 일에 대한 보람에 대해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업무수준,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 낮은 편**
- 시간제보육교사 만족도 평균(100점 평균 기준) 일에 대한 보람 73.4점 > 업무내용 68.5점 > 급여수준 60.6점 > 업무수준 58.3점 > 근무시간 57.3점
- 최근 3개년간 담당교사의 일에 대한 보람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업무수준, 급여수준, 근무시간 만족도는 하락 경향 지속됨

□ **보육 업무 외 '보육 프로그램 준비'와 '예약, 결제, 문서관리 등 사무업무' 비중이 높은 편이며, '6-36개월 월령별 발달 차이'에 대해 60%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육 외 주된 업무는 '보육 프로그램 준비'(1순위 22.4%) > '예약, 결제, 문서관리 등 사무업무'(21,4%) > '당일예약 관리'(16.4%) 순
- 업무상 어려움은 '6-36개월 월령별 발달의 차이'(61.3%) > '신입 원아의 적응'(45.0%) > '홍보 관련 업무'(43.4%) 순으로, 지난해 대비 신입 원아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큰 폭 증가함('22년 29.9% → '23년 45.0%, +15.1%p)

이에 대해 교육부는 통합반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므로 기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간제 이용 아동의 적응문제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교사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 수입을 교사 휴식시간 보장 등을 위한 대체인력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 따라서, 교육부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확충과 함께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사업개시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며,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대폭 확충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3)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416)]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1635-354)’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13억 800만원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1,892	1,314	1,308	△6	△0.5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308	1,308	1,308	-	-
- 누리과정 연수지원	571	-	-	-	-
- 기본경비	13	6	-	△6	△100.0

자료: 교육부

416) 문의: 02-6788-5192

나) 검토의견: 유치원교사·보육교사 통합연수체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통한 원활한 제도도입 추진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417]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418]

<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요 >

□ **(교육과정) 직무교육(일반직무 및 특별직무) 및 승급교육으로 구분**
○ (직무교육) 어린이집 근무 이후 정기적으로 이수(매3년 마다 1회, 40시간)
- 일반직무교육: 모든 원장 및 보육교사
- 특별직무교육: 영아반, 장애아반, 방과후 반 담임교사 및 운영 원장

○ (승급교육) 원장 자격 취득 및 상위 자격 취득(3급→2급, 2급→1급)을 위한 교육(80시간)

---

417)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삭제 <2011. 8. 4.>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이며, 평균보조율은 48.0%임.

< 교육분야별 대상자 및 교육시간 >

교육 분야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직무	일반직무교육	경력 3년마다	40시간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업무시작 이전 (채용 6개월 이내)	
승급	2급 승급교육	3급 취득한 후 경력 1년 이상	80시간
	1급 승급교육	2급 취득한 후 경력 2년 이상	
	원장 사전직무교육	원장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의2,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제4항 [별표7]
* 법 제51조에 따라 보육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 위임

□ **(교육기관) 집합보수교육기관 83개소, 온라인보수교육기관 5개소('24년)**
○ (집합) 시도에서 매년 공모 및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온라인) 교육부에서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제도 활용, 특별직무교육 실시 기관 선정 (2년 주기)

□ **(예산 현황) '24년 1,308백만원**
- (집합교육 지원단가) 일반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 (온라인교육) 고용부 환급과정으로 최대 11만원 적용

□ **(교육실적) 일반직무교육 12,190명, 승급교육 9,213명**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은 '21년도 대비 '24년도에 46.9% 감소('21년 24억 7,400만원 → '24년 13억 1,400만원)하였고, 최근 3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평균 81.2%, 평균 교육실적은 86.0% 수준임.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교육계획 대비 이수 실적이 다소 낮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낮아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최근 4년간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2,474	-	2,474	△12	2,462	2,459	99.4	99.9	2,462	2,118	86.0
2022	2,227	-	2,227	-	2,227	2,212	99.3	99.3	2,211	1,777	71.8
2023	1,892	-	1,892	-	1,892	1,892	100.0	100.0	1,892	1,621	85.7
2024 7월기준	1,314	-	1,314	-	1,314	965	73.4	73.4	959	337	25.6

자료: 교육부

< 최근 4년간 어린이집 교원 교육실적 현황 >

(단위: 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32,331	29,225 (90.4%)	29,148	23,668 (81.2%)	24,773	21,403 (86.4%)	24,773	-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의 '25년도 예산액은 기본경비 제외 전년도와 동일한 13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예산안 산출내역 >

① 보수교육 지원 : ('24) 1,314 → ('25요구) 1,308백만원(△6백만원)
- (요구) 기본경비 제외 전년 동
- (산출) 1,308백만원 = 24,773명 × 110천원 × 국비보조율 48%
  * **지원단가(전년동)** : ('24년) 11만원(1인) → ('25요구) 11만원(1인)

자료: 교육부

❑ 그런데,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419]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고, ’25년도에는 현행 3년 주기 40시간에서 매년 30시간으로 확대하되, ’27년도까지는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에도 ’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됨.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통합법 시행 전까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지속 유지하되, 연간 직무연수(보수교육) 시간의 단계적 상향을 위해 4대 분야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통합법 시행 후 직무연수(보수교육) 체제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419)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024. 6. 27.)

4 **통합연수체계 마련**

○ **(4대 분야 중점 연수)**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중점 추진

* 교육청·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분야	내용
교육과정 실행	사립유·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역량 강화 지원
영·유아지원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성 강화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영유아 마음건강, 정서·심리 지원 역량 강화
특별한 영유아지원	특수교육대상, 장애위험,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요구에 대응

○ **(연수시간 상향) 직무연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27., 연 60시간)하고, 이에 따른 **연수 지원**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수형태 다양화**

※ (現**유치원교사**) 공립매년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사립매년 30시간의 법정 필수·자율연수
(現**보육교사**) 매 3년마다 40시간 연수

* (’25) 연 30시간 → (’26) 연 45시간 → (’27) 연 60시간

○ **(문화 조성)**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 조성**

다만, 유보통합 실행 계획과 관련하여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중점 연수를 시행하고, 직무연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통합연수체계 마련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부족해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연수체계의 도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연수체계 도입을 차질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420]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1조 8,863억 600만원) 대비 756억 500만원(4.0%)이 증액된 1조 9,619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보조율을 인상(51.8%→52.8%)하고, 인건비 지원단가를 3% 인상함에 따른 것임.

420) 문의: 02-6788-5192

<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810,784	1,886,306	1,961,911	75,605	4.0
- 보육교직원 인건비	1,059,558	1,123,712	1,169,743	46,031	4.1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73,548	246,170	250,923	4,753	1.9
- 보조, 대체교사 지원	458,162	486,377	510,615	24,238	5.0
- 어린이집 운영지원	19,516	30,047	30,629	582	1.9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 단가 현실화 필요

❑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421]에 근거하여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취약보육(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 후, 그 밖의 연장형)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422]

❑ 내역 사업인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25년도 예산은 인건비 지원단가를 공무원 처우개선률 수준으로 3% 인상하고, '24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실제 국가와 지방 간 평균 분담비율을 적용한 국고보조율 52.8%를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460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조 1,697억 4,300만원임.

---

421)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 7.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4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이며, 2025년도 예산안 기준 평균보조율은 52.8%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안 산출내역 >

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 24) 1,123,712 → (’ 25) 1,169,743백만원, +4.1%

1.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 (’ 24) 927,625 → (’ 25) 973,894백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 24년 대비 3.0% 인상
 - 지원인원 : 72,567명(전년동)

▸ 산출내역 : 973,894백만원
·(원장) 8,081명 × 51,412천원 × 0.8(지원비율) × 보조율 52.8% = 175,490백만원
·(영아반 교사) 40,805명 × **34,091천원** × 0.8(지원비율) × 보조율 52.8% = 587,594백만원
·(유아반 교사) 15,600명 × **34,091천원** × 0.3(지원비율) × 보조율 52.8% = 84,240백만원
·(조리원) 8,081명 × 29,664천원 × 1(지원비율) × 보조율 52.8% = 126,569백만원

2.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 (’ 24) 38,880 → (’ 25) 40,820백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 24년 대비 3.0% 인상
 - 지원인원 : 2,656명(전년동)

3.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 24) 52,309 → (’ 25) 54,704백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 24년 대비 3.0% 인상
 - 지원인원 : 3,052명(전년동)

4.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인건비 : (’ 24) 35,566 → (’ 25) 37,198백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 24년 대비 3.0% 인상
 - 인건비 지원인원 : 2,357명(전년동)

5. 방과후 교사 인건비(82명): (’ 24) 702 → (’ 25) 180백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 24년 대비 3.0% 인상
 - 지원인원 : 82명 → 20명(△62명)

6.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 (’ 24) 68,630 → (’25) 62,947백만원
 - 인건비 지원단가 ’ 24년 대비 3.0% 인상
 - 지원인원 : **7,928명 → 6,960명(△9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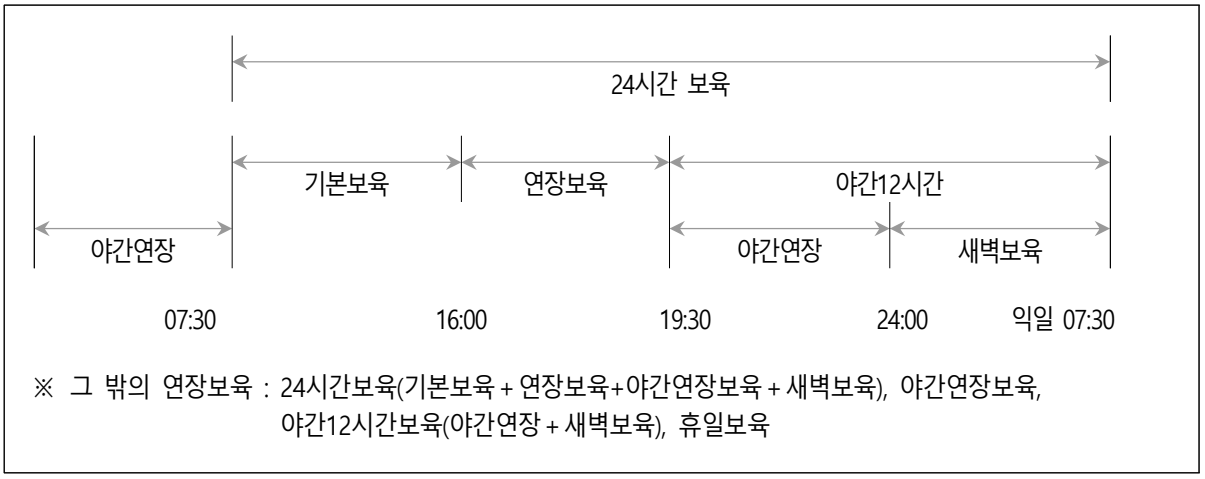
▸ 산출내역 : 62,947백만원
·(야간연장, 국공립 등 월급여형) 1,800명 × **34,091천원** × 0.8(지원비율) × 보조율 52.8% = 25,920백만원 ※ ’ 24년 1,462명
·(야간연장, 민간·가정 월급여형) 2,500명 × 22,627천원× 1(지원비율) × 보조율 52.8% = 29,867백만원 ※ ’ 24년 3,450명
·(야간연장, 수당형) 1,000명 × 6,018천원 × 1(지원비율) × 보조율 52.8% = 3,177백만원
※ ’ 24년 2,220명
·(24시, 국공립 등) 30명 × **34,091천원** × 0.8(지원비율) × 보조율 52.8% = 432백만원
※ ’ 24년 27명
·(24시, 민간형) 80명 × 22,627천원 × 1(지원비율) × 보조율 52.8% = 955백만원
※ ’ 24년 103명
·(휴일) **100명** × **60천원** × 65일(연평균) × 보조율 52.8% = 205백만원
※ ’24년 44명
·(토요) **1,450명** × **60천원** × 52일(’ 24년 토요일 수) × 보조율 52.8% = 2,388백만원
※ ’24년 622명

자료: 교육부

❑ ’25년도 교사 인건비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중 야간연장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휴일 및 토요일 근무 교사 지원인원은 전년도 대비 증가(666명 → 1,550명, 132.7%)하였음.

한편,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423]으로 하되,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는데, 특히 ’23년도까지는 토요일에 운영하여도 인건비 추가 지원이 없었으나, ’24년도부터 토요보육 수당 신설로 취약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 >



※ 그 밖의 연장보육 : 24시간보육(기본보육 + 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 새벽보육),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야간연장 + 새벽보육), 휴일보육

423)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07:30~19:30), **토요일은 8시간(07:30~15:30) 운영이 원칙임.**

❑ 다만,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야간연장, 24시간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금액이 기본보육 교사의 인건비 지원기준금액과 동일하게 편성(34,091천원)되어 있으나, 근무 여건[424]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한 인건비 지원기준금액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휴일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원기준금액[425]도 1일 8시간 근무기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임.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1일 8시간, 1주 간 40시간의 근로시간 초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장·야간 및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426]

---

4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새벽 05:30~07:30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 15:00 이후 실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함).

425)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지원기준금액은 60,000원(1일)이나, 2025년도 최저임금의 일급은 80,240원임.

426)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현황 >

(단위: 명, 천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지원인원(명) ※ 보육교사 기준	국공립·법인	48,907	53,307	53,446	56,405	56,405
	영아전담	2,460	2,196	2,196	2,056	2,056
	장애아전문	2,302	2,302	2,321	2,120	2,120
	장애아통합 (인건비 지원)	1,653	1,818	1,693	1,973	1,973
	방과후 교사	82	82	82	82	20
	그 밖의 연장형 (야간연장, 국공립 등 월급여형 기준)	1,426	1,462	1,462	1,462	1,800
지원기준 금액(천원)	원장	47,223	47,884	48,698	49,915	51,412
	보육교사	31,313	31,751	32,291	33,098	34,091
전년대비 단가인상률(%) ※보육교사 기준		1.2	1.4	1.7	2.5	3.0

주: 지원인원은 연평균 이용 실적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지원기준금액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7호봉, 보육교사 7호봉 수준으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인상률을 일괄 책정함.

자료: 교육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단위: 원, %)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결정고시일
2022년	9,160	73,280	1,914,440	5.05	21.08.05
2023년	9,620	76,960	2,010,580	5.0	22.08.05
2024년	9,860	78,880	2,060,740	2.5	23.08.04
2025년	10,030	80,240	2,096,270	1.7	24.08.05

주: 일급은 8시간 기준이며, 월급은 209시간기준(고시기준)임
자료: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현황 참고)

❑ 아울러, 정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2.12.)'에 따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방안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적정 급여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당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라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을 위해 맞춤형돌봄(아침돌봄, 저녁돌봄) 제공, 휴일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요일·휴일 거점기관 운영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교육부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427)]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641-300)'은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1,080억 7,500만원) 대비 307억 8,300만원(28.5%)이 감액된 77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출생아 수 및 양육수당 지급률 감소에 따른 것임.

< 2025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65,186	108,075	77,292	△30,783	△28.5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65,186	108,075	77,292	△30,783	△28.5

자료: 교육부

427) 문의: 02-6788-5192

나) 검토의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효과적인 제도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428]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429]

<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월령(개월)	지원금액	월령(개월)	지원금액	월령(개월)	지원금액
24~35개월	100천원	24~35개월	156천원	24~35개월	200천원
36~85개월	100천원	36~47개월	129천원	36~85개월	100천원
		48~85개월	100천원		

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자료: 교육부

428)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 ⑦ (생 략)

4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차등보조율 ± 10%)이며, 2025년도 예산안 기준 평균보조율은 67.8%임.

❑ 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양육과 시설이용 간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09년도 최초 도입 시에는 '0~1세,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였다가 '13년도부터는 '0~6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10여 년간 유지되었으나,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감소하였음.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추진경위 >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국정과제(일반과제)로 채택
-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양육수당 지원제도 도입 보고('08.3.)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08.12.)**
- **양육수당 지원 사업 시행('09.7.~)**
-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11.1.)**
  · 지원연령 확대 : ('10) 24개월 미만 → ('11) 36개월 미만
  · 지원단가 인상 : ('10) 월 10만원 → ('11) 월 10~20만원
  * (지원단가)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미만 10만원
- 농림부 농어촌 양육비 지원사업 이관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도입('12.1.)
-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시설 미이용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을 통한 **어린이집·유치원 미 이용아동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실시('13.3.~)**
- 양육수당 지원기간 확대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19년~)
  * ('18) 취학 전년도까지 지원(생후 84개월 미만) → ('19)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생후 86개월 미만)
- **양육수당 지원대상 변경** :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22년~)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단가
'09.7월~'10년	▪0~1세, 차상위	▪10만원
'11~'12년	▪0~2세, 차상위	▪0세(12개월 미만) : 20만원 ▪1세(24개월 미만) : 15만원 ▪2세(36개월 미만) : 10만원
'13~'18년	▪0~6세, 全계층 * 취학 전 연령 12월까지(최대 83개월)	▪0세(12개월 미만) : 20만원 ▪1세(24개월 미만) : 15만원 ▪2~6세(24~84개월 미만) : 10만원
'19년~'21년	▪0~6세, 全계층 *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5개월)	▪0세(12개월 미만) : 20만원 ▪1세(24개월 미만) : 15만원 ▪2~6세(24~86개월 미만) : 10만원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급률을 살펴보면, '20년도 25.3%에서 '23년도 5.7%로 77.5% 감소하였고, '20년도 이후 전 연령 모두 가정양육수당 지급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22년 이후 가정양육 비율이 높은 만 0세와 만 1세가 영아수당(2022년)·부모급여(2023년)의 도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급률(연도말 기준) >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영유아수	2,539,955	2,358,466	2,169,077	1,999,372
	지원인원	642,095	560,768	280,267	113,556
	비율(%)	25.3	23.8	12.9	5.7
만 0세	영유아수	272,400	253,946	249,031	230,018
	지원인원	243,132	232,863	0	0
	비율(%)	89.3	91.7	0.0	0.0
만 1세	영유아수	302,800	272,400	253,946	249,186
	지원인원	187,316	158,980	139,692	0
	비율(%)	61.9	58.4	55.0	0.0
만 2세	영유아수	326,900	302,800	272,400	260,562
	지원인원	64,249	53,307	39,745	28,921
	비율(%)	19.8	17.6	14.6	11.1
만 3세	영유아수	357,700	326,900	302,800	272,337
	지원인원	34,313	26,399	20,862	14,796
	비율(%)	9.6	8.1	6.9	5.4
만 4세	영유아수	406,300	357,700	326,900	302,676
	지원인원	32,688	23,987	21,417	18,718
	비율(%)	8.0	6.7	6.6	6.2
만 5세	영유아수	438,420	406,300	357,700	326,822
	지원인원	37,356	30,204	26599	23,793
	비율(%)	8.5	7.4	7.4	7.3
만 6세	영유아수	435,435	438,420	406,300	357,771
	지원인원	43,041	35,028	31,952	27,328
	비율(%)	9.9	8.0	7.9	7.6

주: 영유아수는 통계청 매년 출생아수를 0세인원으로 산출, 1세 이후는 전년도 대상아동 통계 연령상향반영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은 '21년도 대비 '24년도에 85.8% 감소('21년 7,607억 7,900만원 → '24년 1,080억 7,500만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 또한 연례적으로 감소('21년 95.6% → '22년 92.4% → '23년 79.0%)하였음.

< 최근 4년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760,779	-	760,779	-	760,779	760,779	100.0	100.0	760,779	727,551	95.6
2022	508,163	△25,256	482,907	△1,689	481,218	481,218	99.7	100.0	481,218	446,125	92.4
2023	175,854	-	175,854	△10,668	165,186	165,186	93.9	100.0	165,186	138,995	79.0
2024 7월기준	108,075	-	108,075	-	108,075	86,460	80.0	80.0	86,460	48,308	44.7

자료: 교육부

❑ 가정양육수당 사업은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축소되었고, 지원대상인 24~86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급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액 및 집행률 모두 낮아지는 추세임.

또한, 동 사업의 목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지원단가가 '09년 제도도입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10만원/월, 농어촌 및 장애아동 기준 상이)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정양육 부모의 정책 체감도[430]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 달성도에서도 양육수당 수혜자의 만족도가 만족 수준(만족 75점, 2023년 71.6점)에 달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1	71	73	71	71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축소 및 상대적으로 단가인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25점, 보통 : 50점, **만족 : 75점**, 매우만족 : 100점)	설문지/ 육아정책연구소
	실적	**72**	**80**	**71.6**	-	-			
	달성도	101.4	112.7	98.1	-	-			

자료: 교육부

아울러, 가정양육수당 사업 도입 시와 비교하면 양육 인프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유사한 보편적 자녀양육지원 제도들이 도입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아동수당과 사업목적[431], 지급방식 등에서 유사한 중복 사업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430)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12월, p. 206

> 아동 학계와 영유아 부모, 여성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는 0~2세 전계층으로 확대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유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하락 추세를 보였고**, 부모들에게 '안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으로 주어 기관 이용을 부축이게 만들었다. 본 조사에서도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하였고 정책의 도움정도도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431)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보편적 자녀양육지원 사업 현황(2024년 기준) >

구분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432]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433]
제도도입	2009년	2022년	2018년	2022년
지급대상	시설 미이용 가정양육 아동 (24~86개월 미만)	2세 미만	8세 미만	출생아동
지급금액	10만원/월 * 농어촌 및 장애아동 기준 상이	50만원/월(1세~2세) 100만원/월(1세 미만)	10만원/월	첫째 200만원/1회 둘째 이상 300만원/1회
소득기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급방식	현금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현금	원칙 바우처, 예외 현금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자료: 교육부

---

432)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4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 따라서, 교육부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영유아 양육 가구 및 지역적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가정의 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434]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601-300)’은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3조 2,106억 3,100만원) 대비 1,086억 1,800만원(3.4%)이 감액된 3조 1,020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동 사업의 내역 사업 중 ‘유치원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가 전년 대비 3.5% 증가함에 따라 467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린이집 취원 대상 감소로 1,293억 4,800만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임.

---

434) 문의: 02-6788-5192

< 2025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470,037	3,210,631	3,102,013	△108,618	△3.4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470,037	3,210,631	3,102,013	△108,618	△3.4
① 유치원 유아학비		1,295,668	1,342,371	46,703	3.6
②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384,008	362,839	△21,169	△5.5
③ 어린이집 보육료		1,476,128	1,346,780	△129,348	△8.8
④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등		54,827	50,023	△4,804	△8.8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지원방식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 동 사업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제27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등[435]에 따라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436])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교부금 사업임.

---

435)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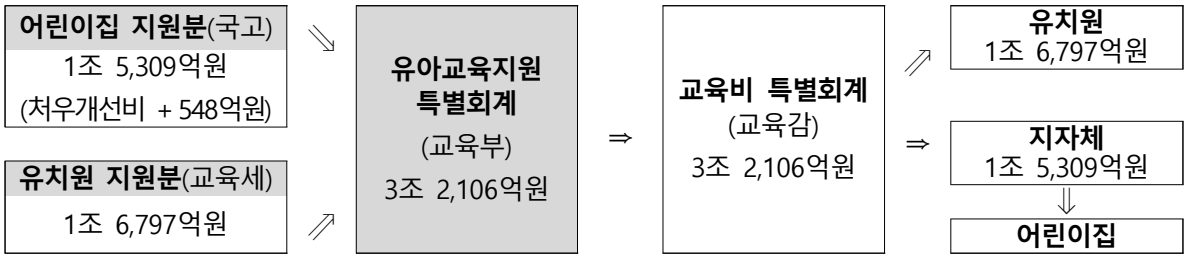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436) 누리과정은 만 3~5세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임.

❑ 구체적으로 유치원 원비 등은 교육세로, 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국고(교육부)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유특회계로 전출하여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구조임.

< 누리과정 예산 지원 구조(2024년) >



자료: 교육부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안 산출내역 >

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4) 3,210,631 → ('25예산안) 3,102,013 백만원, △3.4%

◦ (내용)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1,705,209백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1,396,804백만원

◦ **(산출) 유치원(1,705,209백만원) + 어린이집(1,396,804백만원)**

① 유치원 유아학비(1,342,370백만원)

공립 138,757명* × **100천원** × 12개월 = 166,508,400천원

사립 349,959명* × **280천원** × 12개월 = 1,175,862,240천원

* '25년도 취원대상 인원('24.3 생년월일 기준 '25년 취학대상(2019.1.1. ~ 2021.12.31.) 유아 수) × '25년도 예상 취원율(공립 15.8%, 사립 40.4%, '24.4.기준 취원율 반영)

②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362,839백만원)

공립 130,757명** × **50천원** × 12개월 = 78,454,200천원

사립 338,553명** × **70천원** × 12개월 = 284,384,520천원

** '24.4. 기준 유아 나이스 및 e-유치원 시스템상 방과후 과정 연령별 참여율 (공립 평균 97.5%, 사립 평균 98.1% 반영)

③ 어린이집 보육료(1,346,781백만원)

320,662명* × **350천원** × 12개월 = 1,346,780,400천원

④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등(50,023백만원)

320,662명 × **13천원** × 12개월 = 50,023,272천원

* '25년도 취원대상 인원('24.3 생년월일 기준 '25년 취학대상(2019.1.1. ~ 2021.12.31.) 유아 수) × '25년도 예상 취원율(36.8%) 반영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예산 산출에 있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인원은 유아 수와 예상 취원율을 반영한 것이고, 지원단가는 '22년도 이후 국·공립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35만원[437]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원단가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및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고, 다만 '24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세 유아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며, 이와 별도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유아학비를 지원 중이라고 함.

< 24년도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단가(월) >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만원	28만원	28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7만원	7만원
계	**15만원**	**35만원**	**35만원**

자료: 교육부

❑ 그러나, 구체적으로 현재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급·간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①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외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으나, ②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438] 내

437)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단가: ('13~'19) 22만원 → ('20) 24만원 → ('21) 26만원 → ('22~'24) 28만원

438)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에서 급·간식비를 집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식의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439]

참고로, 어린이집의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에 급·간식의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어 0~2세 보육료에 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함.[440]

❑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현실적인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441]으로 제시한 바 있고,

---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39) 교육부의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2023.9.13.)에 따르면, ’22년 기준, 유치원은 교육청별 2,800~3,435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비 내 집행(2,500원 + 지자체 일부 보조)하고 있음. ※ 유치원은 통상 1일 1식을, 어린이집은 1일 2식 이상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간)식비 지원 격차가 추가로 발생함.

44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4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참고

이에 교육부는 '23년 유특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442]에 급·간식비 등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지자체가 협의하여 별도 재원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서도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443]하고 있음.

❑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 및 실천방안'(2023.9.13.)에서 선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유특회계 집행지침, 적극행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나,[444] 현재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급·간식비 지원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442) **(2023년 유특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지자체가 협의하여 유특회계 외 교육청·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추가지원 가능

443)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91**

444)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2023.9.13.), 교육부, p. 6

Ⅳ. 우선 이행과제 및 실천방안

□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급간식비 추가지원('23) **선도**

○ **유특회계 집행지침**, **적극행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 시도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만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 지원 가능(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23.3)

○ 유치원·어린이집간 급(간)식비 지원 차액, 선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액 설계에 따라 **최소 210원**에서 **최대 2,690원**까지 지원

※ ('23) 경기(2,690원), 인천(1,000원), 충북(1,000원, 광역 40%, 기초 60% 분담), 전북(650원, 교육청·지자체 각 50% 분담), 부산(210원), ('24) 전남(400원), 인천(1,880원) 등

아울러, 누리과정의 지원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의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료에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한 급·간식의 재료비를 포함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누리과정 지원금 외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유치원과 비교하여 격차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임.

다만,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라 5대 상향평준화 과제의 하나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25년도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를 통합한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마련을 계획 중에 있다는 의견임.[445]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이 양질의 급·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지원방식에 대한 형평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445)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1 5대 상향평준화 과제

3 단계적 무상교육 · 보육 실현

○ **(무상교육·보육 실현)**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까지 단계적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
- 우선,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
※ 이미 무상인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지원 확대
- 향후, 통합모델과 연계한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무상교육·보육 계획 수립·추진

(2)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영유아교육·보육 재원의 안정성 확보 필요

❑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교육과 돌봄 기관이 이원화되어 기관선택에 따라 서비스의 질 차이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 초기 영유아 단계부터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출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로 추진되었음.

❑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3.1.30.) 하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23.4.4.)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2023.12.26. 일부개정, 2024.6.27. 시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한 바 있음.

❑ 한편, 현재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①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446]에 따라

---

44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도와 명령)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②유치원은 「유아교육법」[447]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임.

다만, 3~5세 유아에 대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비용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를 통해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4조[448]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유아교육·보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어린이집 간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일부 연계 운영되고 있음.

---

447)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448) **「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③ (생 략)

❑ 그런데,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관 방식, 재정이관 규모, 이관시점 등이 현재 협의 중으로 세부적인 비용추계나 재원 조달방안 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449]

449)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3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1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개요) 기관 간 균형적인 질 제고**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도/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이관방식) 일괄 이관**(광역·기초 일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관방안 확정**

○ **(재정이관) 국고 대응투자**('23년 기준, 약 3조)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23년 기준, 약 2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 세부 이관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

○ **(이관시점) '24년 말**까지 **업무·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괄 개정

- 특히 경과 기간 동안 ❶후속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규정 정비**, ❷교육청-지자체 간 **인력 교류**, ❸지역 내 실질적 유보통합 추진 기구로서 **지역별 유보통합추진단 역할 강화** 추진('24.~)

* 시·도/시·군·구/시·도교육청별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육 조례 등

2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비용지원구조 개편) ❶기관 유형, ❷수요자 선택권, ❸기관 자율성 ❹서비스 질 제고**를 고려하여, **통합기관 유형별 지원구조 개편 검토**

※ (現**유치원**) 기관 유형에 따라 비용지원구조 설계

(現**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❶인건비 지원유무, ❷연령(0~2세, 3~5세)에 따라 설계

- 통합기관 유형별 비용지원구조 및 항목 설계 및 관련 법령 및 제도·지침 마련

※ 기관 현황, 지역별 인구 추계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 효율적 지원구조 방안 마련

○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과정에서 누수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통합적 재정기반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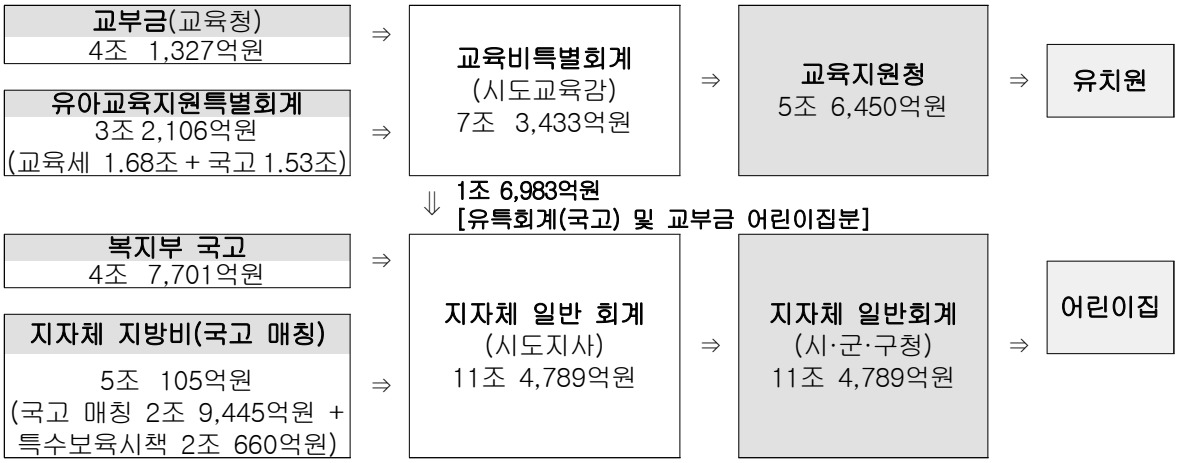
-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이원화 구조**(유아교육특별회계*, 복지부 국고)의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 취학직전 3년의 유아(3~5세)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25.12월 종료 예정)

-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회계 법안 마련** 및 관계기관, 국회 등과 협의·소통 및 **법안 통과 추진**('24.下)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450]는 영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지원·이관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하고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고, 소요예산 추정이나 재원확보 방안이 부재하므로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검토 및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집행체계(2024년 기준) >



자료: 교육부

< 영유아 교육·보육예산 규모(2024년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총계	누리과정 비용			기타 교육·보육비용		
		예산	재원	소관	예산	재원	소관
유아교육 (유치원)	56,450	16,797	유특회계 (교육세)	교육부	39,653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청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114,789	15,309	유특회계 (국고)	교육부	47,701	국고	교육부
					1,674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청
					29,445	지방비(국고매칭)	지자체
					20,660	지방비(특수보육시책)	지자체
계	171,239	32,106			139,133		

자료: 교육부

450)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8., pp. 8-9 참고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아교육비 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사업의 ’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조 2,106억원 대비 1,086억원이 감액된 3조 1,020억원(유아교육 1조 7,052억원, 영유아보육 1조 3,9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생애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보통합의 취지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대응투자(약 3조) 및 시책사업예산(약 2조)을 포함한 교육·보육비용의 재정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아울러, 3~5세 유아에 대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지원의 법적 근거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른 재정이관 규모, 재원확보 방안 및 근거 법령 마련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해 보임.

다만, 교육부는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25년 말)에 대응하고, 유특회계와 일반회계 등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중앙재원을 안정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통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국가책임 원칙을 실현하고, 한시적(일몰법) 형태의 재원조달이 아닌 상시법령 체계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가칭)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비용지원구조 개편, 특별회계 신설 등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및 근거 법령 마련 등 안정적·통합적인 재정기반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 소속기관

가. 국립특수교육원

<일반회계>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4131-303)[451]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4131-303) 사업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평생교육법」 제19조의2[452]에 따라 설치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두 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

451) 문의: 02-6788-5186

452) **「평생교육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억 1,000만원(5.6%)이 증액된 5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7,554	5,534	5,844	310	5.6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지원 종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자체운영 유인 마련 필요

❑ 동 세부사업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5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5조의2[453]에 따라 장애인

453)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여 지역 기반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2024년도(37억 8,000만원)에 비해 3억 1,500만원(8.3%) 증액된 40억 9,500만원이 편성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4,648	4,618	2,948	7,554	5,334	5,84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500	1,500	1,500	5,300	3,780	4,095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동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하여 2021년에는 19개 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지원하였고 2024년도 예산으로는 6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동 사업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은 최대 3년만 이루어질 수 있는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3년간 지원을 받은 19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지원 연한 초과로 2024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지원종료 19개 지방자치단체와 2023년 신규지정되었으나 2024년 국비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하여 2024년 현재 총 82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있음. 참고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현황 >

연도		모집 계획(개)	지정신청 지자체 수(개)	선정 지자체 수 (개)	선정률(%)
2020		10	17	10	58.8
2021		15	20	19	95
2022		30	51	32	62.7
2023	1차	53	63	63	100
	2차	10	4	4	100
	3차	10	3	3	100
	계	73	70	70	100
2024		63	60	60	100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 그런데, 국립특수교육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원종료 19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있으나 5개(26.3%)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3년간의 국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100% 지방비의 투입이 필요하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체운영의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454]에 따라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정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포함하여 모든 평생학습도시를 국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 장애인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운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일반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4143-300) 사업의 경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을 1개년간 지원하되,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자체운영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4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특수교육원은 국비지원이 종료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자체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참여 독려 필요

❑ 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82개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참여 지역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향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대도시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임.

❑ 가장 많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총 18개 도시(58.1%)가 지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는 전체 15개구와 1개군 중 87.5%에 달하는 14개 구가 지정됨. 이에 비해 전라・경상권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3개 도시(21.4%, 13.6%), 경상북도 4개(18.1%)와 경상남도 1개(5%) 도시가 지정되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특히 전체 82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7개, 그 밖에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27개로 54개 도시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에는 28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대도시 편중 경향이 있음.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광역 (지정/전체, 지정비율)	시·도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현황	2024년도 보조금 (천원)
서울특별시 (7/25, 28%)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337,540
부산광역시 (14/16, 87.5%)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355,000
인천광역시 (2/10, 20%)	**계양구, 서구**	116,152
대구광역시 (4/9, 44.4%)	달서구, **동구, 서구**, 수성구	201,373
광주광역시 (5/5, 100%)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345,000
대전광역시 (2/5, 40%)	**대덕구, 서구**	100,000
울산광역시 (1/5, 20%)	**울주군**	65,000
세종특별자치시 (1/1, 100%)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18/31, 58%)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851,244
강원특별자치도 (4/18, 22.2%)	강릉시, **동해시, 춘천시, 평창군**	180,000
충청북도 (8/11, 72%)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419,710
충청남도 (5/15, 33.3%)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205,000
전북특별자치도 (3/14, 21.4%)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168,576
전라남도 (3/22, 13.6%)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150,000
경상북도 (4/22, 18.1%)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255,405
경상남도 (1/18, 5%)	**남해군**	30,000
제주특별자치도(-)	-	

주) 2024년 국비지원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명은 진하게 표시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제출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총 13억 4,900만원을 지원받은 한편, 전라권(전북, 전남)과 경상권(경북, 경남)에는 각각 3억 1,900만원과 2억 8,500만원이 지원되어 권역별 예산 지원 편차 또한 발생하고 있음.

국립특수교육원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수도권에 50% 이상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으며 장애인구 역시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특수교육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재정능력이 부족한 중소도시의 경우 국비지원을 통한 기반 마련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국비와 지방비의 대응투자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예외적으로 그 비율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소도시의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음. 2024년 실제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을 받은 60개 도시 중 7개 도시(11.7%)에 대하여 매칭 비율상 혜택이 주어짐(최대 62:38,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군・구의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조직과 인력 수준, 예산 지원 현황,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이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재정 능력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이와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업 공모에 앞서 지방 소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국립국제교육원

<일반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4532-650)[455]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선발·지원, 연수시설 운영을 활용하여 초·중등학교의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운영을 통해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 2025년도 예산안 현황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억 5,200만원(3.0%)이 증액된 8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455) 문의: 02-6788-5187

< 2025년도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13,287	8,350	8,602	252	3.0
○ 한국어능력시험운영	10,635	6,546	6,786	240	3.7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701	970	973	3	0.3
○ 연수시설운영	351	391	397	6	1.5
○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303	327	330	3	0.9
○ 글로벌역량강화연수운영	298	116	116	0	0.0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나) 검토의견: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증액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456]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여 시험 결과를 국내 대학 입학, 취업, 체류 자격 등에 활용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평가기준 마련 및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 지속 증가 및 시험 시행횟수 증회[457] 등 사업의 확대 규모를 고려하여 전년대비 2억 4,000만원 증액(3.7%)된 6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8,350	8,602	252	3.0
○ 한국어능력시험운영	6,546	6,786	240	3.7
-상용임금(110-03)	288	297	9	3.1

456)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7) (국립국제교육원 제공) 2014. 연 5회 시행, 2022. 연 6회 시행, 2023. 연 9회 시행, 2024. 연 12회 시행(9월말 기준)

구 분	2024예산 (A)	2025예산안 (B)	증 감	
			(B-A)	%
-일용임금(110-04)	99	130	31	31.3
-일반수용비(210-01)	2,010	1,394	△616	△30.6
-공공요금및 제세(210-02)	92	90	△2	△2.2
-급식비(210-04)	18	18	0	0.0
-특근매식비(210-05)	1	1	0	0.0
-임차료(210-07)	4	4	0	0.0
-복리후생비(210-12)	4	4	0	0.0
-일반용역비(210-14)	3,785	4,552	767	20.3
-국내여비(220-01)	21	21	0	0.0
-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0	0.0
-사업추진비(240-01)	11	11	0	0.0
-정책연구비(260-02)	100	150	50	50.0
-고용부담금(320-09)	68	69	1	1.5
-자산취득비(430-01)	15	15	0	0.0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 종류[TOPIK Ⅰ(초급), TOPIKⅡ(중·고급), TOPIK 말하기 평가]에 따라 평가영역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로 구분되며,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입학·졸업 요건, 외국인 직원 채

용, 인센티브 가점 부여 등에 활용되고 있음.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영역 및 배점>

구분		평가영역(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시험 등급		
토픽 PBT	토픽 I	듣기(30) 읽기(40)	200점(100분)	초급	1급	80점 이상
					2급	140점 이상
	토픽 II	듣기(50) 쓰기(4) 읽기(50)	300점(180분)	중·고급	3급	120점 이상
					4급	150점 이상
					5급	190점 이상
					6급	230점 이상
토픽 IBT	토픽 I	듣기(30) 읽기(30)	400점(85분)	초급	1급	132점 이상
					2급	208점 이상
	토픽 II	듣기(40) 쓰기(3) 읽기(40)	600점(150분)	중·고급	3급	204점 이상
					4급	262점 이상
					5급	331점 이상
					6급	412점 이상
토픽 말하기 평가		말하기(6)	200점(30분)	초급	1급	20점 이상
					2급	50점 이상
				중급	3급	90점 이상
					4급	110점 이상
				고급	5급	130점 이상
					6급	160점 이상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활용처>

구분	관련 기관	관련 지침	활용처	비고
국내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 입학·졸업 요건으로 토픽 활용 가능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국내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항목 중 '공인 언어능력(한국어)' 지표로 활용	신입생 30% 이상 3급, 재학생 40% 이상 4급 보유'가 평가지표로 활용
	법무부	「사증 발급 안내 매뉴얼」	· 20개 이상 체류 관련 자격에 반영	
	국내 기업	기업의 직원 채용, 인사고과 지침 등	· 외국인 직원 채용, 인센티브 가점 부여 등	
국외	대학	대학 학사지침	· 한국어학과 학점 인정, 졸업 요건 등	
	한국 기업	기업의 직원 채용, 인사고과 지침 등	· 현지 직원 채용, 인센티브 가점 부여 등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의 경우 토플(TOEFL[458]) 응시료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459],

458)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약자로서,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주관 하에 시행되는 영어 능력 시험임.

459) 2024년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는 토플 응시료의 13.5%~32% 정도에 불과함(환율 1달러=1,350원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과 토플 응시료(2015년~2024년) >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
(8월~)</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
(~9월)</th></tr>
<tr><td rowspan="5">응시료</td><td rowspan="2">토픽 PBT</td><td>토픽 I</td><td colspan="5">35,000원</td><td colspan="5">40,000원</td></tr>
<tr><td>토픽 II</td><td colspan="5">40,000원</td><td colspan="5">55,000원</td></tr>
<tr><td rowspan="2">토픽 IBT</td><td>토픽 I</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70,000원</td></tr>
<tr><td>토픽 II</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95,000원</td></tr>
<tr><td colspan="2">토픽 말하기 평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80,000원</td></tr>
<tr><td colspan="3">수입액(백만원)</td><td>5,094</td><td>5,787</td><td>7,462</td><td>8,029</td><td>9,563</td><td>5,382</td><td>9,215</td><td>7,286</td><td>13,078</td><td>12,113</td></tr>
<tr><td colspan="3">토플 응시료 (달러)</td><td colspan="2">185</td><td colspan="2">190</td><td>200</td><td>210</td><td colspan="4">220</td></tr>
</table>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주1 : 2020년 토픽 응시료 인상 - 제71회(2020.8.23.) 시험부터 적용

❑ 2024년 9월말 기준 93개국 377개 지역에서 총 49만여명이 한국어능력시험에 지원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는바[460], 토플(TOEFL)처럼 국제적인 어학능력평가시험으로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10년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현황 >

연도	지원자 수(명)	증감(전년 대비)	시행 국가 및 지역 수
2015년	206,778	△1,671(0.8% 감소)	68개국 222개 지역
2016년	250,141	43,363(21.0% 증가)	72개국 238개 지역
2017년	290,638	40,497(16.2% 증가)	70개국 255개 지역

460)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자수가 감소함.

연도	지원자 수(명)	증감(전년 대비)	시행 국가 및 지역 수
2018년	329,224	38,586(13.3% 증가)	76개국 267개 지역
2019년	375,871	46,647(14.2% 증가)	83개국 282개 지역
2020년	218,869	△157,002(41.8% 감소)	42개국 179개 지역
2021년	330,016	111,147(50.8% 증가)	75개국 284개 지역
2022년	357,395	27,379(8.3% 증가)	81개국 312개 지역
2023년	421,812	64,417(18.0% 증가)	88개국 330개 지역
2024년 (~9월)	493,432	71,620(17.0% 증가)	93개국 377개 지역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주1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원자 감소

❑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으로 동 시험을 한국어 능력 평가 국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서 수입대체경비는 국가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초과지출을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음[461].

461)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의 수입은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면허료 및 수수료)로 구성되는데, 2021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는 30만명 이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과소 계상함에 따라 2021년 39억 8,200만원, 2022년 25억 1,700만원, 2023년 51억 3,200만원, 2024년 59억 4,800만원[462] 등 연례적으로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편성 >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				세출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C)	수납률 (C/A)	본예산 (A)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증감**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21	8,162	9,215	9,215	113	5,010	3,982	-	44	9,036	8,769	175.0	97.0	267
2022	5,383	7,286	7,286	135	5,245	2,517	2,191	81	10,034	9,568	182.4	95.4	466
2023	8,700	13,078	13,078	150	6,086	5,132	-	-	11,218	10,635	174.7	94.8	583
2024	6,546	12,113	12,113	185	6,546	5,948	-	-	12,494	9,164	140.0	73.3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취소(중국 등)로 예비비 편성
** 국립국제교육원 수입대체경비(연수 및 교육과정운영) 사업 간 조정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분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대한 국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

462) 2024년 9월말 기준

사항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실적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과소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마다 반복되는 세출예산의 과소계상은 예산 증액에 대한 부처 내 한도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부는 지출한도 외로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